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6호 2017.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 공석구 ■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된 漢長城 東端 문제 고찰 - 『中國歷史地圖集』의 사례를 중심으로 6
- 채미하 ■ 666년 고구려의 唐 封禪儀禮 참여와 그 의미 48
- 전종한·이명희 ■ 중국의 역사지도 편찬에 관한 기초연구 - 역사지리학의 관점 92
- 최진열 ■ 唐 前·後期 羅唐戰爭 서술과 인식 - 『唐會要』와 『通典』의 분석을 중심으로 136
- 정안기 ■ 1930년대 만주국 공업화와 특수회사 연구 194
- 조수룡 ■ 전후 북한에서의 소련계 숙청과 국적 문제(1954~1958) 246
- 장현근 ■ 대중화주의와 신중화주의 - 개념적 정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288
- 백미연 ■ 동북아 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 구성 -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324

서평

- 백선례 ■ 버티차에서 피어난 생태환경사적 상상력 - 『동유라시아 생태환경사』
(우에다 마코토 지음, 임성모 옮김, 2016, 어문학사) 366
- 전영욱 ■ 식민지 유산을 새롭게 생각하기 - 『동화와 배제 -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이정선, 2017, 역사비평사) 374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85

Contents

Articles

- Kong Seokkoo ■ The Issue Regarding the Han Long Walls in the *Historical Atlas of China*: With Its Eastern End to Cheongchun River of Korea 6
- Chai Miha ■ The Reasing of Goguryeo's Participating in Bongseon Ceremony in 666 and Its Meaning 48
- Jeon Jonghan & Lee Myeonghee ■ A Foundational Study on the Compilation of Historical Atlas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Geography 92
- Choi Jinyeoul ■ The Understanding of the Silla–Tang War in the Period of Tang Dynasty in the Search of Analysis of *Tangbuiyao* and *Tongdian* 136
- Joung Anki ■ Manchurian Industrialization and Special–purpose Companies in the 1930s 194
- Jo Sooryong ■ The Purge of the Soviet Fraction and Nationality Problems in Postwar North Korea(1954–1958) 246
- Chang Hyunguen ■ Greater Sinocentrism and Neo–Sinocentrism: Conceptual Definition and Korean Confrontational Strategy 288
- Baik Miyoun ■ The Construction of Paradigm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Transnational Justice Paradigm 324

Book Review

- Baek Seonlye ■ Ecological Historic Imagination Rising From the Buttered Tea 366
- Jeon Youngwook ■ Re-thinking about the Colonial Legacy 374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된 漢長城 東端

문제 고찰 - 『中國歷史地圖集』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석구 | 한밭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中國歷史地圖集』의 漢長城과 연구결과의 확산
- III. 漢長城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 IV. 漢長城 line 東端에 대한 비판적 검토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中國歷史地圖集』¹에 제시된 漢나라 시기의 長城과 관련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책에 제시된 漢나라 시기의 長城(이하 한장성)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西漢왕조 시기에 축조되었다는 장성이 압록강을 넘어와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중국학계의 역사인식, 영토인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외국에까지도 그와 같은 영향력을 파급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고대 역사에서의 국경인식에 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의 연구,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또 다른 입장에서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서 작성되었다. 차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계의 보다 진전된 토론과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 문제와 관련한 필자의 선행연구인 燕·秦 왕조 시기의 장성 문제²에 이어서 진행된 것이다.

* 투고: 2017년 1월 17일, 심사 완료: 2017년 5월 12일, 게재 확정: 2017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2016년 12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상고사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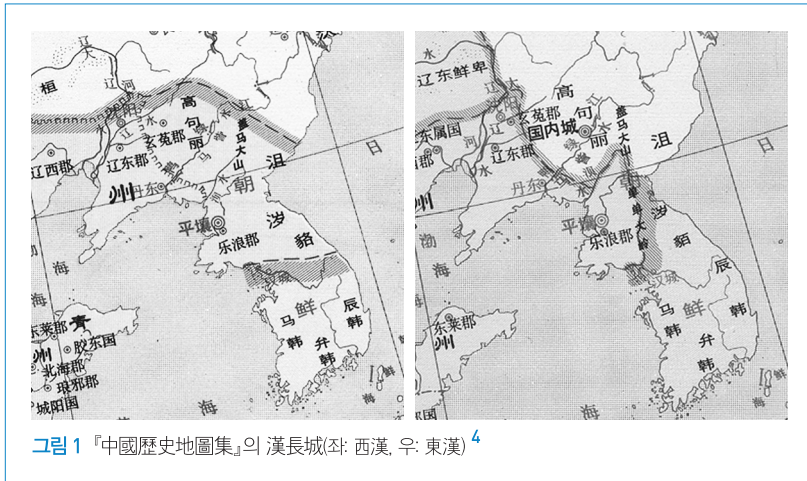
1 1982년에 공식 출간된 『中國歷史地圖集』(譚其驤 主編, 地圖出版社)은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이라는 전제하에서 종전의 여타 역사지도집과는 달리 역사 속에 나타난 중국 역대 왕조의 강역을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역사상의 중국, 중원 왕조, 지방정권, 변강정권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왕조 단위로 표현하던 기존 지도의 모호성을 탈피하였다. 이 책은 표준연대를 설정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중국역사는 여러 민족이 함께 만든 것이라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바탕으로 한 강역관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중국의 역사지도, 역사교과서의 전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책은 1975년 내부 발간본을 수정하여 출간한 것이다.

2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長城 考察」, 『백산학보』 99; 공

II. 『中國歷史地圖集』의 漢長城과 연구결과의 확산

1. 『중국역사지도집』에 제시된 漢長城

『中國歷史地圖集』³(이하 『지도집』)에는 서한왕조 시기와 동한왕조 시기의 지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 한반도 관련 지도는 4본이 있다. 西漢왕조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2본, 東漢왕조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2본이다.



〈그림 1〉은 서한왕조와 동한왕조 시기의 疆域이다. 漢왕조 시기 한반도 지역에 해당하는 疆域의 변화상을 제시하였다. 가장 큰 차이는 장성 표현의 유무에 있다. 西漢왕조 시기에는 장성을 표현하였는데 비하여, 東漢왕조 시기에는

석구, 2015, 「中國歷史地圖集의 平壤지역까지 연결된 秦長城에 대한 검토」, 『선사와 고대』 43; 공석구, 2016, 「秦장성 東端인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호.

3 譚其驥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第2冊, 地圖出版社.

4 譚其驥 主編, 1982, 위의 책, 13~14쪽(西漢), 40~41쪽(東漢).

장성을 표현하지 않았다. 서한왕조 시기의 경우, 강역 경계선 내부에 장성 경계선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장성 경계선과 강역 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동한왕조 시기에 이르러는 장성 표현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 정권의 영역 경계선(政權部族界)을 표현하였다. 특이한 것은 동한왕조의 ‘정권부족계’ 외곽 지역에 고구려를 표기하였다. 이는 『지도집』 찬자가 고구려를 동한왕조의 강역 경계선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적인 정권으로 이해하였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과 연관시켜 볼 때, 당시 중국학계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필자는 서한의 강역 경계선 내부에 표기된 장성의 존재를 주목하였다. 장성을 표현한 ‘西漢時期全圖’(13~14)와 부분도에 해당하는 ‘幽州刺史府’(27~28)를 살펴보자.⁵ 이와 관련하여 『지도집』은 책자 앞 부분에 제작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西漢時期圖組編例’를 보면 여기에 표현된 행정구역(郡, 國)의 경계는 成帝 元延 말년(기원전 9년), 郡·國의 명칭 등은 平帝 元始 2년(기원후 2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설명이 있다.⁶

〈그림 1〉의 왼쪽 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그림은 서한왕조 시기의 강역도이다. 비례척은 21,000,000:1에 해당한다. 분홍색 계열의 색깔로 그 강역 경계선(西漢 政權部族界)을 표시하였다. 한왕조가 설치한 행정구역인 주·군·도호부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었다. 한반도 지역을 보면 樂浪郡·玄菟郡·濊貊 등을 표기하였는데, 서한의 강역 경계 내부로 표현하였다. 강역 경계의 외곽 지역은 다른 색깔로 표현하였다. 그 지역에 존재하는 정치세력들을 각기 기록하였다. 한반도 내부에는 馬韓·辰韓·弁韓, 한반도 북쪽에는 肅慎·夫

5 이 글에 인용한 지도는 1982년에 공식 간행된 『지도집』이다. 한편 이 지도를 1975년에 간행된 내부본 『지도집』과 비교해보면 지명 등의 표기방식 등에서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자체 수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장성 line과 장성 표기 방식은 동일하다. 따라서 장성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은 이미 1975년 이전에 결정된 것이었다.

6 이에 비해서 동한왕조 시기 지도에 제시된 행정구역의 기준연대는 順帝 永和 5년(기원후 140년)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餘·鮮卑 등이 그리고 서북쪽에는 ‘匈奴’가 표기되었다.

그런데 한나라 강역의 북쪽과 동쪽 지역을 살펴보면 장성을 표현하였다. 『지도집』에 제시된 장성 line은 푸른색의 선으로 표현하였다. 푸른색의 선에 대하여 『지도집』 앞부분에 제시된 도례를 찾아보면 ‘長城’ 또는 ‘The Great Wall’ 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한장성이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요령성 무순시 부근의 어느 지점에서 남쪽으로 꺾여 내려오는 장성 line의 외곽부에는 바깥세계에 살고 있던 세력(고구려·현도군·숙신·부여·옥저·예맥)들을 기록해 넣었다. 그렇다고 하여 장성 바깥의 지역이 중국역사상의 강역과 관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⁷ 특이한 것은 장성의 외곽부에 현도군, 낙랑군이 표기된 것이다.

〈그림 2〉는 서한왕조의 강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낸 부분도이다. 동북방에 해당하는 ‘幽州刺史部’이다. 비례척은 4,200,000:1에 해당한다. 〈그림 1〉 왼쪽 지도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서한왕조의 동북방 강역 경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서한왕조의 영토 경계선(政權部族界)을 분홍색으로 표현하였다. 경계선 밖에는 오환·부여·숙신과 마한·진한 등을 표기하였다. 강역 경계선 안에는 요동군·현도군·낙랑군의 명칭과 함께 고구려·예맥 등을 표기하였다. 여기서 고구려가 표기된 것은 현도군 소속의 고구려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서한왕조의 ‘政權部族界’ 내부에는 작은 글씨로 한사군 명칭을 표기하였다. 현 강원도 지역에 臨屯郡(前108年~前82年), 현 황해도 지역에 眞番郡(前108年~前82年)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현 함경남도 남부 지역에는 滄海

7 『지도집』 1의 ‘總編例 13’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지도가 포괄하는 지역에는 모든 소수민족의 분포 지역과 이들이 수립한 정권이 소유한 영토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지도가 포괄하는 지역의 기준은 1720년대에서 1840년 아편전쟁 이전 시기의 판도를 역사상의 중국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범위 안에 존재한 민족은 모두 중국 역사상의 민족이고, 이 범위 안에서 건립한 정권은 모두 중국 역사상의 정권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중국의 민족이 아니고, 중국의 정권도 아니라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당시 흉노·숙신·부여 등은 중국 소수민족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역사인식이 지도집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내부에 속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한장성 line을 살펴보면 요동군과 현도군의 경계선으로서도 표현되었다. 한반도 북부 지역의 강역 경계선 안쪽으로는 遼西郡·遼東郡 등의 명칭이 보인다. 현재의 지명과 서한왕조 시기의 옛 지명을 함께 기록하였는데, 압록강을 ‘馬訾水’, 청천강을 ‘溟水’, 대령강을 ‘沛水’, 대동강을 ‘列水’로 표기하였다. 한편 장성 line은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 하류의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고 있다. 장성이 끝나는 지점에 ‘番汗’이라는 표기가 있다. 여기서 변한이라는 표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변한은 요동군의 속현에 해당하는 변한현을 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장성 line의 내부 지역은 요동군에 해당한다. 이 그림을 통해 서한왕조 시기에 요동군의 경계를 청천강 부근까지 포함시켰다.

〈그림 2〉에서 장성 line을 살펴보자. 〈그림 2〉는 〈그림 1〉 왼쪽 지도와 유사한 양상이다. 하지만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장성 line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한장성을 ‘ㄱㄱㄱ’ 부분과 ‘ㄴㄴㄴ’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요서군과 요동군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요서군 서쪽 방향으로는 선이 연결된 실선 형태로(ㄱㄱㄱ), 요동군의 동쪽 방향으로는 선이 연결되지 않은 점선 형태로(ㄴㄴㄴ)로 표시하였다. 이처럼 점선 형태로 표시된 장성 line(ㄴㄴㄴ)은 청천강 하류 지역까지 도달하였다.

2. 연구결과의 확산과 재생산

『중국역사지도집』이 공식 발간된 이후, 이 책에 제시된 학술적인 내용은 이후 중국학자들에게 보편적인 역사인식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박물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이 연구결과가 공식자료로 채택된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경향을 정리해보면 『지도집』 출간 이후 그 내용을 보다 세분화·구체화시키는 연구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지도집』의 역사인식이 외국에까지 확산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림 3 중국의 역대 장성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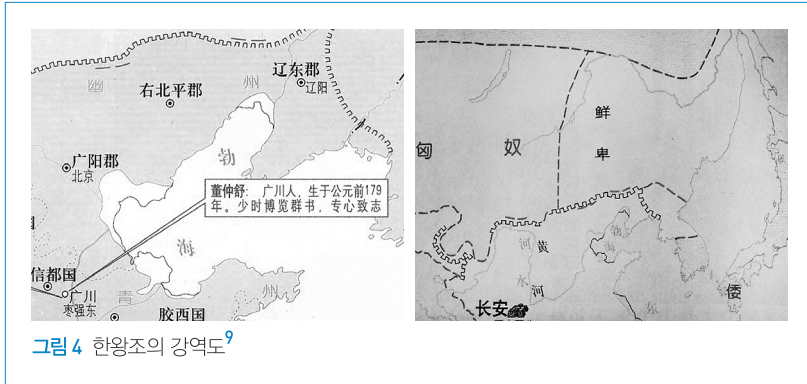
는 점이다. <그림 3>을 보자.

<그림 3>은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百度百科』에서 長城(中國古代第一軍事工程) 항목에 소개된 내용이다. 주황색으로 표기된 한나라 시기의 장성이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에서 역사 상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상당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 역사기록(燕장성:襄平, 秦장성:요동)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1) 중국의 각종 교과서

『지도집』의 영향을 받은 사례는 중국의 일부 역사교과서에서 발견되고 있다.

8 『百度百科』, 長城(中國古代第一軍事工程), <http://baike.baidu.com/item/%E9%95%BF%E5%9F%8E/14251?fr=aladd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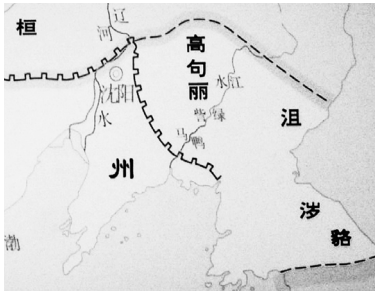
〈그림 4〉는 관련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두 지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한장성이 한반도 중북부 지역까지 연결된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지도집』(제2책, 지도출판사, 13~14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유사한 사례는 더 있다.¹⁰ 문제는 『지도집』에서는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선이 연결되지 않은 점선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비하여, 〈그림 4〉 오른쪽 지도의 경우처럼 일부 교과서에서는 장성 Line을 왜곡하여 실선 형태로 표현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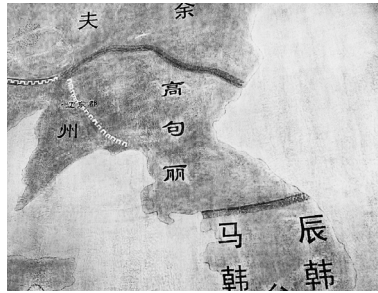
2) 박물관 등 공공기관

『지도집』의 영향을 받은 사례는 중국의 공공박물관에도 있다. 〈그림 5〉는 관련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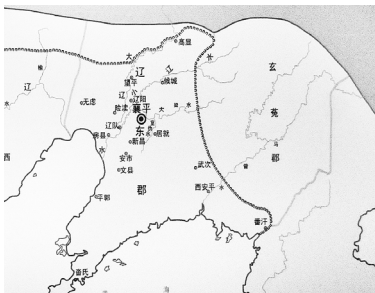
- 9 〈그림 4〉 左: 中國地圖出版社·人民教育出版社 編著, 2006, 『歷史地圖冊』 3(必修), 6쪽. 이 책 7쪽에도 漢長城이 동일하게 표현된 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4〉 右: 中央教育科學研究所·中國地圖出版社 編, 2003, 『中國歷史』 七年級 上冊, 68쪽.
- 10 朱漢國 主編, 2001,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上冊, 77쪽. 上海中小學課程教材改革委員會, 2003, 九年制 義務教育課本 『歷史』 (試用本) 七年及第一學期, 上海世紀出版集團·上海教育出版社, 52쪽.



1. 중국 국가박물관(북경시)



2. 산서박물관(태원시)



3. 요양박물관(요양시)



4. 길림성박물관(장춘시)

그림 5 漢長城 東端을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한 중국의 공공박물관

〈그림 5〉 지도 1은 북경시에 소재한 중국국가박물관에 걸린 패널이다. ‘漢時期全圖’라는 제목인데, 한왕조의 강역을 색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한왕조의 경계가 한반도 중북부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내부에 ‘高句麗’·‘濊貊’ 등을 표기하였다. 거기에 장성 line을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시켰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성 line을 실선 형태(ㄱㄴㄷ)로 표현하였다. 『지도집』(그림 2)을 왜곡한 것이다. 지도 2는 중국 태원시에 소재한 산서박물관에 걸린 패널이다. ‘漢時期全圖’라는 제목인데, 한왕조의 강역을 한반도 중북부 지역까지 포함시켰다. 한왕조의 강역 안에 포함된 한반도 중북부 지역에다가 ‘高句麗’라고 표기하였다. 흰색으로 장성 line을 표현하였는데 그 장성이 청천강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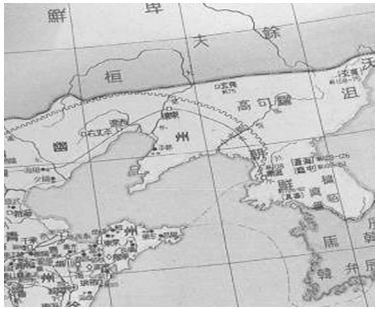
역까지 연결되었다. 장성의 서쪽 부분에 ‘幽州’라고 표기하였다. 지도 3은 요양 시에 소재한 요양박물관에 걸린 패널이다. ‘西漢遼東郡襄平城位置圖’라는 제목인데, 장성 line이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되었다. 역시 長城 line을 실선 형태(——)로 표현하여 『지도집』을 왜곡하였다. 지도 4는 2016년 10월 신축 개관한 장춘시 소재 길림성박물관에 걸린 패널이다. ‘吉林省歷史地圖·西漢’이라는 제목이다. 이 지도는 『지도집』(그림 2)과 유사하다. 역시 장성 line을 실선 형태(——)로 표현하여 『지도집』을 왜곡하였다.

이와 유사한 지도는 단둥시에 소재한 호산장성역사박물관에 걸린 패널(漢長城走向圖)에서도 볼 수 있다. 『지도집』(그림 2)과 동일한 것이다. 이 박물관에는 또 다른 장성 관련 패널이 걸려 있는데, ‘漢長城防禦圖’라는 제목이다. 이 패널에는 한반도 지역의 한장성이 실선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동일한 박물관에 걸린 패널에서도 장성의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북경시 팔달령에 소재한 중국장성박물관에 걸린 패널(漢代屯田示意圖)과 요령성 본계시에 소재한 본계박물관에 걸린 패널(西漢遼東郡襄平城位置圖), 집안박물관(2014년 개관), 길림시박물관 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장성이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되었다는 역사인식은 분명 『지도집』을 비롯한 중국학계의 연구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Ⅲ. 漢長城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1. 『중국역사지도집』 공식 출간 이전

『지도집』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한장성을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시켰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 6>을 제시한다.



고힐강 지도집¹¹



곽말약 지도집¹²

그림 6 『지도집』 공식 출간 이전의 역사지도집

〈그림 6〉은 『지도집』 공식 출간 이전에 발표된 중국의 역사지도집이다. 顧頡剛 지도집과 郭沫若 지도집에서 관련 부분을 추출한 것이다. 먼저 〈그림 6〉 고힐강 지도집을 살펴보자. 이 지도집에는 한반도까지 연결된 서한왕조 시기 지도 2본이 제시되었다.¹³ 노란색으로 서한의 강역을 표기하고 그 내부에 장성을 표현하였다. 장성 line은 ‘ㄱㄱㄱ’와 같이 실선 형태로 표현하였다. 현재의 지명인 ‘平壤’ 지역이 ‘樂浪’이라 표기하고는 장성 line을 낙랑 서쪽 지역까지 연결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은 ‘第9圖’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고힐강 지도집의 편찬과정에 『지도집』 편찬자인 譚其驤이 깊숙하게 관여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장성의 동단 지점을 평양 서쪽 지역까지 연결하여 『지도집』과는 상이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6〉 곽말약 지도집을 살펴보자. ‘西漢時期形勢’이다. 기원후 2년을

11 顧頡剛·章巽 編者, 譚其驤 校者, 1955, 『中國歷史地圖集 - 古代史部分 -』, 地圖出版社(第8圖 西漢的人民起義和政區劃分圖).

12 郭沫若 主編, 1979, 『中國史稿地圖集(上)』, 中國地圖出版社[西漢時期形勢(西紀 2年)], 30쪽.

13 第8圖 西漢的人民起義和政區劃分圖와 第9圖 西漢帝國和四隣圖에 해당한다.

기준 연대로 표현한 것이다. 장성 line을 ‘ㄱㄱㄱ’ 부분과 ‘×××’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로 표기된 부분을 한반도 중북부 지역까지 연결하였다. 자세히 보면 현재의 청천강을 ‘溟水’라는 고대 지명으로 표기하고는 ‘×××’를 청천강 부근까지 연결시켰다. ‘×××’에 대한 도례를 찾아보면 ‘障塞’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6〉에 나타난 것처럼 한반도 중북부 지역까지 장성을 연결시킨 것은 양자가 동일하다. 하지만 그 동단 지점(고힐강: 평양 서쪽 지역, 괄말약: 청천강 유역)과 표현방식(고힐강: 長城, 괄말약: 障塞)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장성 line의 통과 지점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자를 비교해볼 때 괄말약 지도집이 『지도집』의 장성 line과 보다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한편 1975년 『지도집』 내부분 발간 직후 고고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견해가 제출되었다. 1976년 왕희는 부신 → 개원 → 봉성 → 압록강 → 안주 → 대동강 → 평양까지 이르는 장성 line을 주장하였다.¹⁵ 1979년 이문신은 부신 → 창무 → 범고 → 개원 → 신빈 → 관진 → 압록강에 이르는 line을 주장하였다.¹⁶ 1982년 이진복은 이문신의 주장을 계승하여 장성 line이 압록강을 넘어 평양 부근 용강 지역까지 연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러한 견해들은 결과적으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지도집』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해서 한장성 line이 고고학적 유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14 이는 담기양이 이미 1948년에 발표한 「秦郡新考」에서 제시한 秦 장성 line과 유사한 것이다. 역시 담기양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15 王灰, 1976, 『中國歷史地理 上冊 - 歷代疆域形勢』, 學生書局, 173쪽.

16 李文信, 1979,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 『社會科學輯刊』 1979-1, 150쪽.

17 李殿福, 1982,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1982-1, 62쪽. 그는 연·진 장성의 동단을 낙랑군 수성현에 소재한 갈석으로 파악하였다.

2. 『중국역사지도집』 출간 이후

『지도집』이 공식 출간된 이후 청천강까지 표현된 한장성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현황을 알아보자.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장성 line에 대하여 『지도집』의 주장을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자. 첫째로, 『지도집』의 line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중국학계는 대체로 『지도집』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보완하는 연구성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연구자의 대부분은 문헌사료를 해석한 학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결론은 대체로 『지도집』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연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周振鶴은 『지도집』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한장성을 청천강까지 연결시켰다.¹⁸ 顧頡剛·史念海는 한장성이 동북으로는 조선의 평양 남쪽까지 이르렀다¹⁹고 하였다. 또한 王綿厚는 사료상에 나타나는 갈석산을 비정하여 한장성이 평양 서남쪽의 용강군까지 연결되었다고 주장²⁰하였다.

둘째로, 『지도집』의 line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이는 주로 유적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고고학자들은 『지도집』과 전혀 상이한 장성 line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학계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구체화되었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요령성 및 길림성 지역에서 장성 유적을 조사한 견해²¹들이 꾸준히 발표되면서 이

18 周振鶴, 1984, 『西漢政區地理』, 人民出版社, 208쪽.

19 顧頡剛·史念海, 2000, 『中國疆域沿革史』, 商務印書館, 69쪽.

20 王綿厚, 1994, 『漢漢東北史』, 遼寧人民出版社, 209쪽.

21 馮永謙·何溥澄 編著, 1986,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孫杰, 1997, 「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 『遼海文物學刊』 1997-2;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63; 許志國, 2007, 「遼北境內燕秦漢長城及相關遺迹遺物的發現和研究」, 『博物館研究』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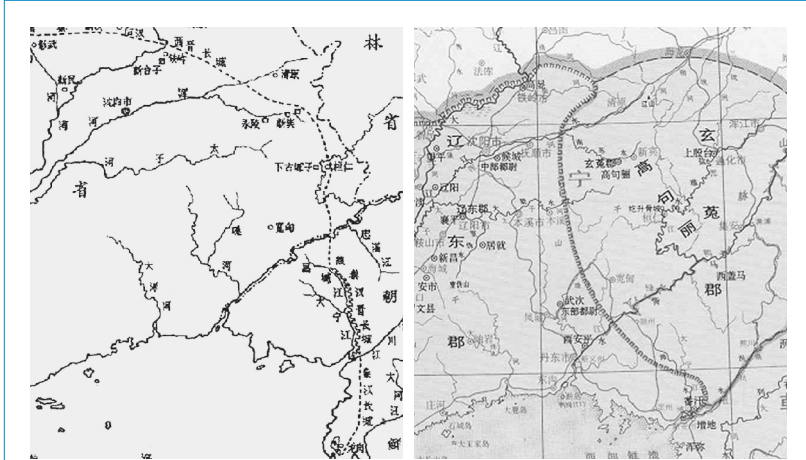


그림 7 馮永謙(좌),²² 『중국역사지도집』(우)의 장성 line 비교

지역에서 장성 line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한장성 line에 대한 고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림 7>을 보자.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역대 장성을 연구해 온 풍영겸은 요령성 지역을 통과하는 한장성 line을 제시하였다(<그림 7> 좌). 이를 『지도집』의 line(<그림 7> 우)과 비교해보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그런데 풍영겸이 제시한 장성 line을 살펴보면 점선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추정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장할 만한 고고학적인 논거가 분명치 않다는 사실에 그 배경이 있다. 하지만 압록강을 넘어온 한장성 line은 『지도집』과 유사하게 표현하였다. 주목할 것은 한반도로 들어온 장성이 대령강 유역에 해당하는 지점에 한해서는 갑자기 실선으로 바뀌어 표현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은 북한학계의 조사보

22 馮永謙, 1996, 『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4쪽.

23 馮永謙은 한장성 line을 대동강 입구 북안의 갈석에서부터 대령강·창성강을 거쳐 압록강을 지나 관전→환인→신빈→청원→철령→법고로 이어지는 line을 설정하였다. 馮永謙·何溥濤 編著, 1986, 앞의 책, 內表紙 도면 참조.

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87년 청천강 북쪽의 대령강에서 장성유적(大寧江長城)²⁴이 발견되었다는 북한학계의 조사보고가 있었다. 이 소식은 장성 문제를 고심해오던 중국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풍영겸 역시 이 소식에 자극받아 대령강장성을 한장성의 실제 유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파악하게 된 논거는 요동군 소속의 변한현을 청천강 부근의 박천 지역에 비정한 『지도집』의 해석을 계승한 데 있다.²⁵

중국학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은 대령강장성을 중국 燕·秦·漢의 장성유적으로 해석한다. 연·진 장성의 기초 위에다가 한장성을 덧씌운 것으로 이해하여, 대령강장성을 한왕조 시기 장성의 실제 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지도집』 이후 1997년 鄭君雷²⁶가 주장하였고, 뒤이어 1998년 李健才²⁷와 張博泉·魏存成²⁸ 등이 동조하였다. 대령강장성이 고고학적으로 한장성의 실제유적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2006년 景愛²⁹에게로 연결되었다. 이는 최근의 장성 관련 연구³⁰를 통해서도 그러한 인식이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압록강 이남 즉 청천강까지 연결된 장성 line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 현황은 아직까지도 『지도집』의 연구 성과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24 평안북도 박천군 중남리에서 시작하여 원남리를 지나 영변군 고성리를 경유하여 태천군 용흥리→학당리→덕화리→풍림리→양지리→동창군 학봉리→학승리→봉룡리→학성리→신안리로 이어져 그 길이가 무려 120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5 이와 같은 인식은 이후 『東北歷史地理』(孫進己·馮永謙, 1988, 黑龍江人民出版社, 292~293쪽)로 계승되었다.

26 鄭君雷, 1997, 「大寧江長城的相關問題」, 『史學集刊』 1997-1, 70쪽.

27 李健才, 1998, 「公元前3—公元前2世紀古朝鮮西部邊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1998年 5期, 199쪽.

28 張博泉·魏存成, 1997, 『古代東北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29 古長城은 대령강을 따라 대령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과 청천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부근에 걸쳐 있다.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181쪽.

30 范恩實, 2015, 「燕秦漢東北“長城”考論」, 『中國邊疆史地研究』 25-3, 48쪽.

한편 중국학계의 최근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알아보면 『지도집』의 한장성 line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도집』과는 상이한 한장성 line을 설정한 주장이 나타났다. 요령성 무순시와 훈하 주변 지역에서 발견된 다수의 봉수를 비롯한 관련 유적을 한장성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³¹ 결국, 2009년 발간된 『중국문화지도집-요령분책』을 보면 요령성 지역의 한장성을 신빈현까지 연결시켰다.³² 이후 중국학계는 국가적 차원의 장성자원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³³에서 한장성을 동쪽으로 조금 더 연장시켰다. 2009년 9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길림성 장성조사 공작대가 장성을 새로이 찾아냈는데 장성이 기존의 신빈현에서 통화현까지 10.9km 연장된다고 발표하였다.³⁴ 이는 무순 지역에서부터 통화 지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발견된 수십 개에 달하는 봉수 유적을 장성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성과³⁵를 도입하여 해석한 결과였다. 이후 이러한 연구성과를 계승한 후속 연구가 발표되었다.³⁶ 최근 개관한 길림성박물관에는 통화현 지역까지 한장성 line을 연결한 공

31 孫守道, 1992, 「漢代遼東長城列燧遺跡考」, 『遼海文物學刊』 1992-1 및 蕭景全, 2000, 앞의 논문.

32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西安地圖出版社, 37쪽.

33 중국에서 장성의 범주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대되고 시행된 것은 2005년 ‘長城保護工程總體事業方案’의 제정과 2006년에 국무원 명의로 장성보호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을 계기로 한다. 장성보호조례 제2조를 보면 장성의 범주 안에 관애·봉화대·둔루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후일 장성의 길이가 대폭 늘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다.

34 『搜狐新聞』, 2009. 9. 23. “吉林境內現秦漢長城遺址 起點向東推進10.9公里”.

35 蕭景全, 2000, 앞의 논문, 82쪽.

36 李樹林·李妍, 2011, 「燕秦漢遼東長城 障塞遺址的 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 2011-2; 李樹林·李妍, 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 2012-2. 이와 같은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이성제, 2014, 「중국장성조사 사업과 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중국역대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식패널이 등장하였는데, ‘通化縣漢長城’이라고 표기하였다.³⁷

이와 같은 중국학계의 새로운 견해를 『지도집』의 한장성 line과 비교해볼 때 상이하다. 『지도집』에 제시된 line이 애당초 학술적 근거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명 이와 같은 중국학계의 새로운 견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천강까지 연결한 한장성 line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통화현을 지나 청천강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line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line에 대한 합리적인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를 기대한다.³⁸

IV. 漢長城 line 東端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왕조 시기를 살던 당시 사람들은 장성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집』에 표기된 한장성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사료가 있다. 효문제(기원전 202~기원전 157)가 흉노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 잘 나타난다.

37 2016년 10월 개관한 중국 吉林省博物院(長春市 소재)에는 통화현 지역의 봉수와 성곽 유적을 소개한 패널이 걸려 있는데 ‘通化縣秦漢長城’이란 제목이 붙여져 있다. 설명에 따르면 통화현 지역의 진·한 장성을 2010년 국가장성지원 항목으로 공식 분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유적을 한장성으로 해석한 견해에 대해서는 좀 더 고고학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현재까지 제시된 고고학 자료를 한장성과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38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 중에는 대령강장성과 연결시켜 북한의 자강도 자성군에서 12.8km에 달하는 장성(압록강장성)에 대한 언급도 있다. 2014년 가을에 이수림이 발견하였는데 이 장성은 문지 3, 봉수지 7, 정장지 3, 성보지 3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李樹林·賈雲章, 2014, 「燕秦漢遼東長城形制考古調查研究」, 『邊疆考古研究』 16, 147쪽. 하지만 이 주장을 목측에 불과한 것이라 평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範恩實, 2016, 「近年來有關燕秦漢東北長城的最新考古調查與認識」, 『동아시아 고고학의 최신 성과와 해석』, 동북아역사재단, 177쪽.

先帝께서 명하기를, 장성 이북에서 활을 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는 (흉노) 선우의 명령을 받고, 장성(長城) 안에서 의관을 정제하고 사는 (사람들의) 땅은 짐이 다스린다.³⁹

서한왕조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인식했던 장성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선제는 한고조 유방이다. 장성을 경계로 하여 내부 지역은 한나라 영토이고, 장성의 외곽 지역은 흉노의 땅이라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장성은 당시에 분계선이자 국경선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장성 line 동단과 낙랑군

『지도집』에서는 한장성과 낙랑군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였을까? 우선 『지도집』 편찬자인 담기양의 역사인식을 알아보자. 담기양은 중국역사 속에서 낙랑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할 것인지 표현 기준을 제시하였다.

역사상의 중국 정권은 역사상의 중국 범위 바깥 지역까지도 관할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몇몇 지역이 비록 역사상 중국의 범위 안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이 분명히 중국 왕조의 판도 안에 속한다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漢왕조와晉왕조 사이에 일찍이 조선의 서북부에 樂浪·帶方 등의 郡을 설치했었고, 漢왕조와 唐왕조 사이에 베트남의 북부에 교지·구진·일남 등의 郡을 설치했었다. 이들 군현이 설치된 지역은 당연히 漢·晉·唐 왕조 강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베트남이 비록 역사상의 중국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역사상의 樂浪·교지 등 郡을 漢·唐 等 왕조의 영토였다고 해도

39 『漢書』 권94上, 「匈奴列傳」 64上, “先帝制, 長城以北引弓之國受令單于, 長城以內冠帶之室朕亦制之”.

틀린 말은 아니다.⁴⁰

이와 같이 담기양은 낙랑군을 중국의 역사 경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기양의 역사인식을 염두에 두고서 『지도집』에 표기된 낙랑군과 한장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장성 line과 낙랑군의 표현방식을 대조해보면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다. 한장성을 요동군의 동쪽 경계로 표현하였다. 한장성 외곽 지역에 玄菟郡·樂浪郡의 명칭을 표기하였다. 그렇다면 여기 표현된 장성은 그 의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장성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지도집』에 제시된 서한왕조 시기의 지도는 특정 연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표준연대⁴¹라 하였다. 행정구역의 명칭은 平帝 元始 2년(기원후 2년), 행정구역의 경계는 成帝 元延 말엽(기원전 8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한 것이다.⁴²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림 2>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한장성 line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도집』에 표현된 한장성 line은 요동군과 현도군의 경계로서 또는 요동군과 낙랑군의 경계로서 나타났다. 그림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요동군의 동쪽 경계선상에 표기된 장성이 그 외곽 지역을 방어하는 듯한 형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장성을 이민족 방어

40 譚其驤, 1991,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 1991年第1期, “歷史上的中國政權 有時管到了 歷史上中國範圍以外的地方, 我們也得承認 這些地方 雖然不在歷史上的中國範圍之內, 確在幾個中國王朝版圖之內. 例如, 漢·晉間 曾在朝鮮西北部設置過樂浪·帶方等郡, 漢·唐間 曾在越南北部設置過交趾·九真·日南等郡, 這些設郡縣的地方, 當然是漢·晉·唐等王朝疆域的一部分, 所以朝鮮·越南雖然不在 歷史上的中國範圍之內, 但歷史上的樂浪·交趾等郡則 爲漢·唐等王朝的領土, 那是無可諱言的”.

41 표준연대란 역사상 중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지도 제작의 기준연대를 말한다.

42 이에 비해 동한 시기의 지도를 보면 변화상이 나타나는데 장성을 표현하지 않았다. 제시된 행정구역의 기준 연대는 順帝 永和 5년(140년)의 상황이다.

의 상징물이라고 전제할 때 요동군의 동쪽 외곽 지역을 방어대상, 즉 외적으로 설정한 모습이 되었다. 그 외곽 지역에 현도군과 낙랑군이 표기되었다. 그렇다면 『지도집』은 낙랑군과 현도군 지역을 외적이 살고 있는 이민족의 땅으로 인식한 격이 되고 말았다.

과연 그럴까? 이 사실은 『지도집』 편찬 당시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담기양의 낙랑군에 대한 역사인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표현된 것이다. 낙랑군(기원전 108년), 현도군(기원전 107년)의 설치 연대와 한장성을 표현한 기준(표준)연대를 비교해보자면, 오히려 중국학계의 기존 역사인식과는 상이한 모습을 띄고 있다. 중국학계의 전통적인 역사인식은 기원전 108년 이래의 낙랑군을 한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담기양의 역사인식을 충족하자면 청천강까지 표현된 한장성은 오류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표준연대로 설정한 기원전 8년 당시의 관점에서 요동군과 낙랑군의 군 경계선을 장성으로 표기한 것은 중국학계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지도집』에 표현된 한장성, 낙랑군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낙랑군의 위치 문제에 대한 관점이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음은 주지하는 바다. 그렇다면 낙랑군의 위치를 현 평양 지역 중심으로 비정하고 있는 학계의 통설은 잘못된 것일까? 둘째는 청천강까지 연결된 한장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인데, 한장성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었을까? 하는 관점이다. 필자는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다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문헌사료의 해석 문제

한장성을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시킨 『지도집』의 학술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알아보자. 燕·秦 장성이 그랬듯이, 『지도집』에서 장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당시 왕조의 경계선이자 강역 경계선이었다. 그런데 『지도집』에서 한장

성의 경우는 위와 같은 장성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은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한 장성은 왕조의 국경선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요동군의 동쪽 경계를 표현하였다. 한장성 경계의 외곽 지역에 玄菟郡·樂浪郡이 표기되었다. 이렇게 郡 경계선으로 표현된 한장성은 그 역할과 관련하여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도집』에서 한장성을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된 논거를 알아보자. 관련 사료 A를 제시한다.

A-1: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以拒胡.⁴³

A-2: 使蒙恬將三十萬, 北逐戎狄, 收河南, 築長城, 因地形, 用制險塞, 起臨洮, 至遼東, 延袤萬餘里.⁴⁴

사료 A는 한반도까지 연결된 연·진 장성에 대한 사료적 근거에 해당한다. 『지도집』에서 漢왕조의 장성 경계를 청천강까지 표현한 사료적 근거는 사료 A를 배경으로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燕장성의 동단을 ‘襄平’, 秦장성의 동단을 ‘遼東’으로 기록하였다.⁴⁵ 하지만 여기서도 한나라 장성이 한반도 청천강까지 연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는 전혀 없다. 이 점은 청천강까지 연결된 한장성의 존재 여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집』을 비롯한 중국학계는 청천강 유역까지 한장성을 연결시켰다. 그렇게 연결시킨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일까? 『지도집』에서 한장성을 표기하게 된 사료적 배경은 다른 데 있었다. 관련 사료 B를 제시한다.

43 『史記』卷110, 「匈奴列傳」 50.

44 『史記』 88, 「蒙恬列傳」 28.

45 사료 A를 해석하여 연·진 왕조의 장성이 한반도 중북부 지역까지 연결되었다는 중국학계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필자가 지적한 바 있다. 공석규,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長城 考察」, 『백산학보』 99.

B-1: 自始燕時, 嘗略屬真番朝鮮, 爲置吏築鄣.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涿水爲界 屬燕.⁴⁶

B-2: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⁴⁷

사료 B-1은 한왕조와 고조선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양국의 경계를 涿水라고 하였다. 사료 B-2는 전국시기 燕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양국 경계를 滿潘汗이라고 하였다. 『지도집』은 사료 A에서 관련 논거를 찾을 수 없자, 국경 관련 기록인 사료 B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고, 마침내 한장성을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것이다. 그렇게 표기하게 된 상황을 알아보자. 첫째로, 『지도집』은 요동고새를 복구하고 패수에 이르렀다는 B-1의 내용에서 涿水を 한왕조와 고조선의 경계로 이해하였다. 그리고는 패수의 위치를 청천강에 비정하였다. 결국 한나라와 고조선과의 국경은 청천강이 되었다.

둘째로, 『지도집』은 B-2에 나타난 ‘滿潘汗’을 한왕조의 요동군 속현 가운데 하나인 변한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변한현에 대해서는 “番汗〈沛水出塞外, 西南入海〉”⁴⁸라 하여 沛水가 변한현을 흐른다는 주석 기록을 주목하였다. 이 沛水의 위치를 대령강에 비정하였다. 이는 진풍이라는 학자의 주장⁴⁹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涿水=청천강, 沛水=대령강이라는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변한현의 위치를 대령강변에 소재한 박천 지역으로 비정하였다. 이후 1988년에 간행된 『지도집』의 해설서⁵⁰에서는 한왕조 시기 변한현의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정하였다. 대령강변의 박천 지역에 위치한 ‘古博陵城’이 변한

46 『漢書』卷65, 「朝鮮」.

47 『三國志』,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東夷 韓傳의 裴松之註.

48 『漢書』28下, 「地理志」8下, 遼東郡.

49 陳澧撰, 1872, 『漢書地理志水道圖說』, 開明書店.

50 譚其驤 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4쪽.

현의 행정치소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기에 이르렀다.⁵¹

『지도집』은 이와 같은 논의와 해석 과정을 거쳐 한장성 line을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하였다. 사료 B를 보면, 고조선의 국경은 연나라(만반한), 한나라(패수)이다. 그런데 사료 B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만반한과 패수는 서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燕代의 국경인 만반한은 漢代에 이르러 방어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 이에 한왕조와의 국경은 요동고새 방향의 패수 지역으로 후퇴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만반한과 패수의 위치를 대령강의 박천 지역, 청천강과 같이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비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료 A는 연·진 왕조의 장성 동단이고, 사료 B는 고조선과 중국 왕조(燕·秦·漢) 간의 국경을 설명한 것이다. 장성과 국경은 의미가 다른 것이므로 서로 구분해야 한다. 사료 B는 국경을 설명한 것이지, 장성의 존재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지도집』은 사료 B에 나타난 고조선과 한왕조 간의 국경을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장성으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한장성은 사료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장성 유적의 實在 문제

『지도집』이 공식 발간된 이후, 중국학계는 대체로 한장성이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제시한 『지도집』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문제점이 있다. 먼저 장성 line을 표현한 방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도집』에서 장성을 표현한 방식은 두 가지이다. ‘ㄱㄱㄱ’와 ‘ㄴㄴㄴ’의 두 종류로 표현하였다. 이 중에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된 장성은 ‘ㄴㄴ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부분(ㄴㄴㄴ)에 대한 『지도집』의 해설내용을 찾아보면, 고고

51 이와 같은 연구내용은 일찍이 1930년대 이병도의 연구(李丙燾, 1933, 「溟水考」, 『靑丘學叢』 13)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학적으로 장성 유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였다고 한다.⁵² 따라서 『지도집』은 실증적으로 장성 유지가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정하여 장성으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표기한 배경에 대해서, 필자는 앞에서 『지도집』보다 선행 출판된 역사지도집을 참조한 것⁵³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자. 이와 같은 유적의 존재 유무 및 장성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1975년 『지도집』의 내부본이 발간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견해차가 나타났다. <그림 8>을 보자.

<그림 8> 왼쪽 지도는 1975년에 간행된 『지도집』 내부 발간본이다. 청천강까지 연결된 한장성을 『지도집』에서 확인해보면 내부 발간본과 1982년 공식 간행본의 경우 표현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장성에 대한 표현방식과 영역 인식은 적어도 1975년 이후부터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지도는 1979년에 간행된 곽말약의 『中國史稿地圖集』이다. 이 책은 장성(□□□)과 장새(×××)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는데, 한반도까지 연결된 장성 line을 ‘×××’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양자를 비교하면, 장성 line이나 표현방식 등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도례를 비교해보면, 『지도집』 내부본의 경우엔 長城으로, 『중국사고지도집』의 경우에는 障塞로 표기하고 있다. 『지도집』 내부 발간본의 경우 ‘□□□’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지도집』의 간행 시기를 감안해 볼 때, 『중국사고지도집』은 『지도집』의 내용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을 장새로 구분하여 표현하게 된 배경은 『중국사고지도집』이 『지도집』(1975년 내부 발간본)의 장성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장성 line의 통과선 및 표현방식에서 양자 간에 분명한 차이가 나

52 『지도집』 제1책의 ‘總編例 11항’의 내용을 보면 “전국시대, 진왕조 등의 장성과 邊塞를 표시하였는데, 유지가 있는 것과 유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을 부호를 달리 표기하였다”라는 설명이 있다. 청천강 유역 한장성의 경우 연장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표기하여 고고학적으로 흔적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53 공석구, 2014,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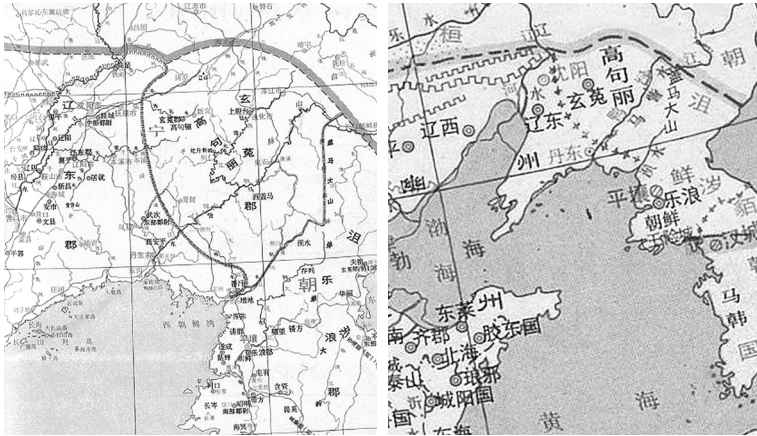


그림 8 『중국역사지도집』 내부 발간본(좌), 『中國史稿地圖集』(우)

타난 현상을 비교해 볼 때, 필자는 장성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필자는 청천강까지 연결된 한장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 1982년 『지도집』이 공식 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그림 8>의 장성 line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불확실하다는 의미에서 ‘ㄷㄷㄷ’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1987년 북한학계에서 대령강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사, 발표되었다. 이후 중국학계는 『지도집』에 표기된 장성 line을 대령강장성과 동일한 실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중국학계의 보편적인 경계 인식으로 계승되고 있다(<그림 3> 참조). 더군다나 중국학계는 그 이전에 존재했다는 연·진 왕조 장성의 실체와도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학계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필자가 구체적으로 지적해온 바가 있다.⁵⁴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령강장성은 고고학적으로 고구려 또는 고려시대의 장성 유적에 해당하며, 중국 측이 주장하는 연·진 장성과는 전

54 공석구, 2014, 위의 논문 및 공석구 2015, 앞의 논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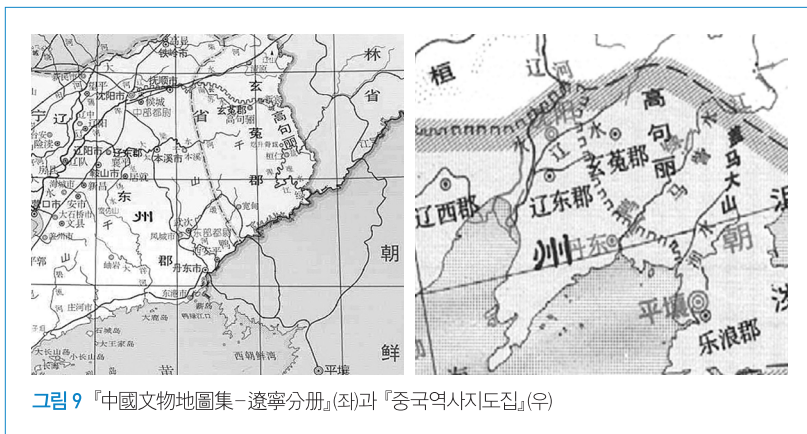


그림 9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좌)과 『중국역사지도집』(우)

혀 관계가 없다. 대령강장성의 실체를 중국 왕조의 장성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중국학계의 관련 연구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장성과 대령강장성을 연관시키는 연구도 잘못된 것이다. 필자는 청천강까지 연결된 한장성 line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또 다른 중국 측 자료를 통해 지적하고자 한다. <그림 9> 두 지도를 서로 비교해 보자.

<그림 9> 왼쪽 지도는 2009년 국가문물국에서 공식 편찬한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⁵⁵이다. 이 책은 중국 고고학계의 최신 성과를 종합하여 발간한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적인 유적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인데, 이 지도를 보면 한장성 line이 중국 요령성 신빈현까지 그려져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장성의 동단을 신빈현까지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는 한장성에 대한 2009년 당시 중국학계의 공식 견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림 9> 오른쪽의 『지도집』 장성 line과 왼쪽 지도를 서로 비교해보자. 양자 간에 line이 상이한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도집』에서 제시된 한장성 line은 이후

55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西安地圖出版社, 37쪽.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청천강을 ‘涇水’로 표기하였다. 한장성과 그 주변의 옛 지명을 표현해낸 것이다. 여기서 변한은 서한 요동군 소속의 변한현을 말한다. 이 그림대로라면 한장성의 동단 지점은 변한현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청천강 유역에 표기된 변한현은 요동군과 낙랑군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압록강에 인접한 지역에 ‘西安平’, 그리고 그 북쪽 지점에 ‘武次 東部都尉’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요동군 소속의 서안평현과 요동군 동부도위부가 설치되었던 무차현에 해당한다. 『지도집』을 비롯한 중국학계는 무차현의 위치를 압록강변의 북쪽 지역으로 파악하였다.⁵⁶ 그렇다면 동부도위부가 설치된 무차현은 요동군의 동쪽 변경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림 10>처럼 변한현은 요동군 동부도위부가 설치된 무차현의 경계에서 멀리 벗어나 동남쪽의 외곽 지역에 설치된 상황이 되었다. 이는 한왕조 시기 주로 변경 지역에 설치되는 부도위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위치 관계가 합리적이지 않다.⁵⁷

그렇다면 변한현의 위치는 어느 곳일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위략』에 기록된 만반한이 『한서』, 「지리지」에 나타나는 요동군 소속의 변한현과 연관된다는 해석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다음 사료 C를 보자.

-
- 56 구체적인 위치는 요령성 봉성현에 소재한 평지성인 유가보고성(劉家堡古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譚其驤 主編, 1988, 앞의 책, 12쪽; 崔玉寬, 1988, 「鳳城發現西漢武次縣城遺址」, 『中國文物報』16; 孫進己·馮永謙, 1988, 『東北歷史地理』卷1, 黑龍江人民出版社, 292~293쪽.
 - 57 한편 중국학계에서 이와 같은 『지도집』의 문제점을 인식한 듯한 연구성과(許志國, 2010, 「遼北燕秦漢長城及相關遺蹟遺物的發現和研究」,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도 있다. 허지국은 종전 학계의 견해와는 다르게 무차현의 위치를 대령강변의 박천 지역으로 비정하였다. 그는 동부도위부가 설치된 무차현의 위치를 박천 지역의 박릉성으로 비정하였다. 나아가 변한현의 위치를 영변 세죽리 유적 부근으로 비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변한현을 영변 지역으로 비정하게 된 학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언뜻 『지도집』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변한현을 청천강 유역으로 비정한다는 점에서는 『지도집』의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C-1: 遼東郡 …… 縣十八, 襄平·新昌·無慮·望平·房·候城·遼隊·遼陽·
險瀆·居就·高顯·安市·武次·平郭·西安平·文·番汗·沓氏,⁵⁸

C-2: 遼東郡 十一城 …… 襄平·新昌·無慮·望平·候城·安市·平郭(有鐵)·
西安平·汶·番汗·沓氏,⁵⁹

사료 C는 요동군의 변천과정을 설명한다. 서한왕조 시기 요동군 소속 18縣이 동한왕조 시기에 이르러 11城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동군의 행정구역 개편은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 이민족의 등장에 따라 축소해가는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서한 시기 요동군의 군사적 요충지에는 서부도위(무려현: 복진현 대량갑토성), 중부도위(후성현: 심양시), 동부도위(무차현: 봉성현 유가보고성) 등의 部都尉를 배치하였다. 부도위는 주로 邊郡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그 성격은 한족이 아니라 이민족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행정기구로서 알려져 있다.⁶⁰ 따라서 토착원주민의 거주지나 이민족과 직면하는 방향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⁶¹ 당시 요동군 지배 상황과 변한현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11>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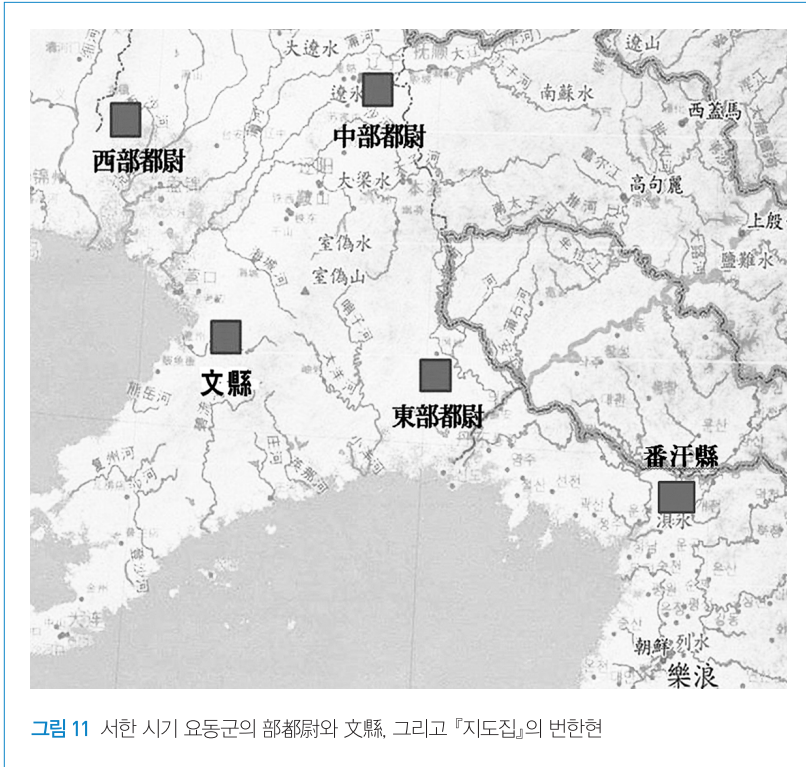
<그림 11>은 『지도집』에 제시된 변한현과 그 주변에 위치한 행정 지명을 몇 개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변한현의 위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한왕조 시기 요동군이 18縣에서 11城으로 축소되는 과정

58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 변한현에 ‘沛水出塞外, 西南入海’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59 『後漢書』권30, 「志」23, 郡國5 幽州 遼東郡.

60 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지배 - 部都尉 및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 」, 『역사학보』 217 참조.

61 권오중, 2004, 「漢代 邊郡의 部都尉」, 『東洋史學研究』 88. 부도위의 임무는 지역 및 그 주변에 거주하는 이민족을 관리, 통치하는 것이어서 문관직이 아니라 주로 무관직이 파견되었다. 일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후한 시기 옥저 땅을 낙랑군 동부도위에 소속시켰다. 그 배경은 옥저 지역에 설치된 현도군이 주변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자 현도군을 서북쪽으로 이주한 데 따른 것이다. 『後漢書』권85, 「東夷列傳」 75, 東沃沮.



을 거치는 과정⁶²에서 문현과 변한현은 『한서』, 「지리지」 및 『후한서』, 「군국지」에 계속 등장한다. 문현과 변한현은 서한왕조 시기부터 동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요동군 소속의 행정적인 현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바꿔 말하자면 문현과 변한현은 이민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요동군 내부의 행정적 지배질서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들은 그 위치가 서로 인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동한 시기에 이르러서 요동군 소속 도위

62 東漢 대에 이르러 행정구역 조정과정에서 방현·협독현은 요동속국으로, 후성현·고현현·요양현은 현도군으로 관할이 바뀌었으며, 거취현과 방현은 폐지되었다.

부가 폐지되었으며, 특히 동부도위부가 설치되었던 무차현은 현이 아예 폐지되고 말았다. 縣으로서의 행정적 기능까지도 상실한 것이다.⁶³ 이는 고구려의 확장에 따른 한왕조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하겠다. 이를 통해 축소된 요동군의 행정적인 관할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변한현의 위치는 무차현이 후한 대에 이르러 폐지된 상황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차현은 문현과 변한현의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료 C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 변한현의 위치를 비정해 본다면, 변경 지역에 설치된 동부도위부(무차현)보다 서쪽 지역, 다시 말하자면 요동군의 내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설정하여야 옳다고 생각한다.⁶⁴ 따라서 필자는 변한현의 위치는 문현의 위치와 연관시켜 비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문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삼국지』 등 이후 사서에 나타나는 사료를 통해 개략적인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營口市 탕지 부근의 영수구고성,⁶⁵ 海城縣 절목성촌 한성유지,⁶⁶ 大石橋市 영안향 진보촌 한성유지⁶⁷ 등의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요동의 서쪽 지역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문현과 나란히 기재된 변한현도 이 부근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변한현의 위치를 청천강 주변으로 비정하는 견해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변한현이 동부도위부에서 동남쪽으로 한참 벗어난 외곽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63 이는 무차현의 동쪽 지역에 인접하여 살면서 계속 세력을 넓혀가던 고구려와의 갈등에 따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64 동한이 멸망한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도 ‘변한현’은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에도 縣의 기능이 복구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은 역시 고구려의 확장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이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65 譚其驤 主編, 1988, 앞의 책, 13쪽.

66 孫進己·王綿厚 主編, 1988, 『東北歷史地理』 1, 黑龍江人民出版社, 296, 379쪽.

67 馮永謙主編, 1996, 『營口市文物志』, 遼寧民族出版社, 51~52쪽.

V. 맺음말

1982년 공식 간행된 『중국역사지도집』은 서한왕조 시기의 장성 line을 한반도 청천강까지 연결시켰다. 이렇게 연결시키게 된 과정,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청천강까지 연결된 서한왕조의 장성 line이 『지도집』에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문헌사료를 비롯한 학술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선행의 역사지도집을 참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사실 요령성·길림성 지역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까지 연결된 장성 line의 실체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명한 근거가 없다. 단적인 사례로서, 2009년에 중국문물국에서 간행한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을 보면 한장성의 동단을 요령성 신빈현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나아가 그해 중국장성자원 조사과정에서 문물공작대는 고고학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장성을 통화현까지 연장시켰다. 이를 『지도집』의 장성 line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지도집』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중국의 통화현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까지 들어온 장성 line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漢長城이 청천강까지 연결되었다는 인식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된 배경은 1987년 북한학계의 조사성과를 왜곡한 데서 기인한다. 중국학계는 관념적으로 대령강장성을 한장성에 대한 실제 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령강장성을 실제 조사한 결과 고구려 및 고려시대에 축조된 유적으로 밝혀졌다. 필자는 고고학적인 증거로 볼 때 청천강까지 연결된 漢長城은 실재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파악하였다.

『지도집』에서 서한장성의 동단 지점을 청천강까지 표현하게 된 사료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서한장성의 동단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도집』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한왕조와 고조선의 국경으로 나타난 사료를 확대해석하여 한장성 동단을 표현하였다. 한

장성 관련 사료와 한-고조선 간의 국경 관련 사료는 용어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별도의 내용이다. 이로써 근본적인 사료해석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요컨대 문헌사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지도집』의 주장은 논거가 분명치 않다고 파악하였다.

한장성의 東端과 관련하여 『지도집』이 주장한 변한현의 위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박천 지역의 고박릉성으로 비정한 변한현의 위치는 한왕조 시기 요동군의 部都尉 설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박릉성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한왕조 시기의 郡縣城 관련 유적이 아니다. 고려시대에 축조된 음성류의 성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도집』은 서한장성을 표현한 표준연대를 제시하였다. 행정구역 명칭은 기원후 2년, 행정구역 경계는 기원전 8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지도집』은 장성 경계의 외곽 지역에 현도군·낙랑군 등을 표기하였다. 낙랑군·현도군 지역을 외적이 살고 있는 이민족의 땅으로 인식한 격이 되고 말았다. 중국학계는 기원전 108년 이래의 낙랑군을 한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집』에 제시된 상황을 해석해보면, 이와 같은 자신들의 견해를 스스로 부정한 격이 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사료

『史記』, 『三國志』, 『漢書』, 『後漢書』

저서 및 논문

-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長城 考察」, 『백산학보』 99.
- 공석구, 2015, 「中國歷史地圖集의 平壤지역까지 연결된 秦長城에 대한 검토」, 『선사와 고대』 43.
- 공석구, 2016, 「秦장성 東端인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호.
- 권오중, 2004, 「漢代 邊郡의 部都尉」, 『東洋史學研究』 88.
- 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지배 - 部都尉 및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 『역사학보』 217.
- 範恩實, 2016, 「近年來有關燕秦漢東北長城的最新考古調查與認識」, 『동아시아 고고학의 최신 성과와 해석』, 동북아역사재단.
- 이성제, 2014, 「중국장성조사 사업과 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중국역대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李丙燾, 1933, 「淇水考」, 『靑丘學叢』 13.
- 『百度百科』 長城 - 中國古代第一軍事工程, <http://baike.baidu.com/item/%E9%95%BF%E5%9F%8E/14251?fr=aladdin>.
- 『搜狐新聞』, 2009년 9월 23일자.
-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 顧頡剛·史念海, 2000, 『中國疆域沿革史』, 商務印書館.
- 顧頡剛·章巽 編者, 譚其驤 校者, 1955, 『中國歷史地圖集 - 古代史部分 -』, 地圖出版社.
- 郭沫若 主編, 1979, 『中國史稿地圖集(上)』, 中國地圖出版社.
-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 - 遼寧分冊』, 西安地圖出版社.
- 譚其驤 主編, 1975, 『中國歷史地圖集』, 地圖出版社(內部本).

- 譚其驥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第2冊, 地圖出版社。
- 譚其驥 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彙編·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譚其驥, 1991,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1991年 第1期。
- 範恩實, 2015, 「燕秦漢東北“長城”考論」, 『中國邊疆史地研究』25-3。
- 上海中小學課程教材改革委員會, 2003, 九年制 義務教育課本 『歷史』(試用本) 七年及第一學期, 上海世紀出版集團·上海教育出版社。
- 蕭景全, 2000, 「遼東地區 燕秦漢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2000-3。
-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漢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63。
- 孫傑, 1997, 「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 『遼海文物學刊』1997-2。
- 孫守道, 1992, 「漢代遼東長城列隧遺跡考」, 『遼海文物學刊』1992-1。
- 孫進己·馮永謙, 1988, 『東北歷史地理』, 黑龍江人民出版社。
- 王綿厚, 1994, 『漢漢東北史』, 遼寧人民出版社。
- 王灰, 1976, 『中國歷史地理 上冊-歷代疆域形勢』, 學生書局。
- 李健才, 1998, 「公元前3 一公元前2世紀古朝鮮西部邊界的探討」, 『社會科學戰線』1998年 5期。
- 李文信, 1979,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 『社會科學輯刊』1979-1。
- 李樹林·賈雲章, 2014, 「燕秦漢遼東長城形制考古調查研究」, 『邊疆考古研究』16。
- 李樹林·李妍, 2011, 「燕秦漢遼東長城 障塞遺址的 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2011-2。
- 李樹林·李妍, 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2012-2。
- 李殿福, 1982, 「東北境內燕秦漢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1982-1。
- 鄭君雷, 1997, 「大寧江長城的相關問題」, 『史學集刊』1997-1。
- 周振鶴, 1984, 『西漢政區地理』, 人民出版社。
- 朱漢國 主編, 2001,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七年級 上冊, 中國地圖出版社·人民教育出版社 編著, 2006, 『歷史地圖冊』3(必修)。
- 中央教育科學研究所·中國地圖出版社 編, 2003, 『中國歷史』七年級 上冊。
- 陳澧撰, 1872, 『漢書地理志水道圖說』, 開明書店。
- 崔玉寬, 1988, 「鳳城發現西漢武次縣城遺址」, 『中國文物報』16
- 馮永謙 主編, 1996, 『營口市文物志』, 遼寧民族出版社。
- 馮永謙, 1996, 『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馮永謙·何溥澐 編著, 1986,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許志國, 2007, 「遼北境內燕秦漢長城及相關遺跡遺物的發現和研究」, 『博物館研究』
98.

許志國, 2010, 「遼北燕秦漢長城及相關遺蹟遺物的發現和研究」,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된 漢長城 東端 문제 고찰 - 『中國歷史地圖集』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석구

『中國歷史地圖集』은 西漢왕조 시기의 長城 line을 한반도 청천강까지 연결시켰다. 이렇게 연결시키게 된 과정,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지도집』에 청천강까지 연결된 서한장성을 그리게 된 배경은 문헌사료를 비롯한 학술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 중북부 지역까지 연결시켰던 선행의 역사지도집을 참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사실 요령성·길림성 지역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까지 연결된 장성의 실체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근거가 없다. 단적인 사례로, 2009년에 중국 문물국에서 간행한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을 보면 한장성의 동단을 요령성 신빈현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나아가 그해 중국장성자원 조사과정에서 문물공작대는 고고학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장성을 통화현까지 연장시켰다. 『지도집』의 line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지도집』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중국의 통화현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한

반도까지 들어온 장성 line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장성이 청천강까지 연결되었다는 인식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된 배경은 1987년 북한에서 발견된 대령강장성에 대한 조사성과를 왜곡한 데서 기인한다. 중국학계는 관념적으로 대령강장성을 한장성에 대한 실제 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령강장성을 실제 조사한 결과 고구려 및 고려시대에 축조된 유적으로 밝혀졌다. 필자는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서한장성은 허구라고 이해하였다.

『지도집』에서 서한장성의 동단 지점을 청천강까지 표현하게 된 사료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서한장성의 동단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도집』은 한왕조와 고조선의 국경으로 나타난 사료를 확대해석하여 한장성 동단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한장성 관련 사료와 漢-古朝鮮의 국경 관련 사료는 용어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별도의 내용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사료해석의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요컨대 문헌 사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지도집』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사료해석으로도 청천강까지 연결된 한장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도집』은 서한장성을 표현한 표준연대를 제시하였다. 행정구역 명칭(기원 후 2년), 행정구역 경계(기원전 8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도집』은 장성 경계의 외곽 지역에 현도군·낙랑군 등을 표기하였다. 낙랑군·현도군 지역을 외적이 살고 있는 이민족의 땅으로 인식한 격이 되고 말았다. 중국학계는 기원전 108년 이래의 낙랑군을 한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집』에 제시된 상황을 해석해보면, 이와 같은 자신들의 견해를 스스로 부정한 격이 되고 말았다.

주제어: 中國歷史地圖集, 譚其驤, 漢나라, 長城, 청천강, 낙랑군

ABSTRACT

The Issue Regarding the Han Long Walls in the *Historical Atlas of China*: With Its Eastern End to Cheongchun River of Korea

Kong Seokkoo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issue of long walls documented in the *Historical Atlas of China*. This book shows that the Western Han dynasty of China had extended its long walls to the banks of Cheongchun river in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rcheological basis for the existence of such long walls are very weak.

First, documentations explaining the eastern end of Han Long Walls and its construction do not currently exist, which leads to the main problem of the *Atlas*. Second, long walls connected to Cheongchun river does not fully reveal its archaeological substance. Thus, this book hardly presents any background relics.

Meanwhile, routes of the long walls in the *Atlas* substantially differ

from the ones that Chinese scholars have suggested in their recent studies. Based on these grounds, how far east the Han long walls has reached to needs to be reconsidered. The evidence strongly suggests that the Han long walls reaching the Cheongchun river is an invented line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Keywords: The Historical Atlas of China, Tanqixing, Han kingdom, The Great wall, Lolang, Manbanhan, Chungchun river

666년 고구려의

唐 封禪儀禮 참여와 그 의미

채미하 |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666년 당 봉선의례 기록 검토
- III. 고구려의 당 봉선의례 참여 배경
- IV. 봉선의례의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7세기 중반은 동아시아 사회가 격변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해 지금까지 당과 삼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삼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이를 통해 7세기 중반에 대한 이해는 넓고 깊어졌다. 특히 이 시기 국제질서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666년 당의 봉선의례이다.

封禪의 封은 둔덕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쌓아 올리는 것이고, 禪은 평평한 제단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쓸어내리거나 어느 지역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다. 원시적인 封-禪 의식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산과 하천 및 여러 신들에 대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봉과 선이 결합하여 태산이 중심이 된 것은 진(秦)이나 한(漢) 초기부터였다고 한다.¹

666년 당의 봉선의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당시의 국내의 상황에서 신라와 백제, 고구려가 태산의 봉선의례에 참여한 사실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특히 고구려 북남이 봉선의례에 참여한 이유와 관련해서 기왕 연구에서 664년 7월 봉선조서를 반포한 이후부터 보장왕 또는 구 귀족 세력을 상대로 공작을 벌인 결과 북남이 봉선을 위해 입조하였고, 이를 통해 고구려 내부의 갈등을 획책하였다고 보았다.² 하지만 위와 같은 이해와 관련해서 봉선과 불안정은 상극이라고 하면서, 당 측천무후는 연개소문의 사망으로 고구려에 내분이 있었

* 투고: 2017년 1월 16일, 심사 완료: 2017년 5월 15일, 게재 확정: 2017년 5월 19일

1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제9장 봉선의식」, 『비단길과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368~370쪽.

2 김영하, 2000, 「고구려 내분의 국제적 배경 - 당의 단계적 전략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10; 김영하, 2007, 『신라중대사학회연구』, 일지사, 109~113쪽; 김영하, 2010,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304쪽.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권을 세계에 천명할 수 있는 봉선에만 집중하였다고 보았다.³

이처럼 기왕의 연구에서는 당이 고구려의 보장왕 등 구 귀족을 상대로 봉선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복남의 입조를 통해서 당이 고구려의 내분을 종용하였다는가 당이 연개소문 사망 후 있었던 고구려 내분에도 봉선의례에만 집중했다는 것 역시 의문이다. 따라서 당시 당과 고구려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라의 동향, 그리고 고구려 내부 상황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취리산회맹과 연개소문의 사망이다.

취리산회맹에 대해서는 회맹이 이루어진 장소⁴ 및 백제와 신라의 동향, 그리고 당이 그것을 주도한 이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⁵ 하지만 취리산회맹과 고구려의 봉선 참여를 직접적으로 연결짓지는 않았다. 그리고 고구려가 봉선의례에 참여한 대내적인 배경으로 대체로 연개소문의 사망으로 인한 노선 변화를 지적하였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사망에 대해 각 기록은 달리 전한다.⁶ 따라서

-
- 3 서영교, 2015, 「건봉 원년(666) 봉선문제와 당의 대고구려 정책」, 『대구사학』 120, 89~95쪽.
 - 4 池内宏, 1934,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4, 東京大出版部; 池内宏, 1960, 『滿鮮史研究』 上世 2, 吉川弘文館; 지현영, 1967, 「웅령회맹·취리산회맹의 築壇 위치에 대하여」, 『어문연구』 3, 어문연구학회; 이한상·신영호, 2001, 「연미산석단과 취리산축단」, 『공주박물관기요』 창간호; 이현숙, 2009, 「취리산 유적의 고고학적 검토」, 『선사와 고대』 3; 양종국, 2009, 「웅진도독 부여릉과 신라 문무왕의 취리산회맹지 검토」, 『선사와 고대』 3.
 - 5 布山和南, 1996, 「新羅文武王五年の會盟にみる新羅唐關係」, 『駿大史學』 99; 박찬홍, 1996, 「665년 신라·백제·당나라의 취리산회맹문」, 『내일을 여는 역사』 26, 신서원; 김영관, 2009, 「취리산 동맹과 당의 백제 고토 지배 정책」, 『선사와 고대』 3; 정운용, 2009, 「취리산회맹 전후 신라의 대백제 인식」, 『선사와 고대』 31, 46쪽.
 - 6 金一出, 1949, 「春秋會盟論考」, 『歷史學研究』 1, 歷史學會; 池内宏, 1934, 앞의 논문; 池内宏, 1960, 앞의 책; 김영하, 2000, 앞의 논문; 김영하, 2007, 앞의 책;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영교, 2015, 앞의 논문.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고구려의 봉선의례 참여 배경이 취리산회맹과 관련있다는 점에서 연개소문의 사망 시점 역시 취리산회맹과 연결지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봉선의례는 당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편제하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의례를 통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666년 봉선의례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666년 봉선의례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구려가 봉선의례에 참여한 배경을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취리산회맹과 연개소문의 사망 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구려의 대내외 변화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666년 봉선의례가 당시의 국제질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이후 행해진 당과 신라의 개선의례에서 생각해볼 것이다.

II. 666년 당 봉선의례 기록 검토

666년 당의 봉선의례는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 『당서』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음은 『천지서상지』의 내용이다.

- A. 대당 인덕 3년 歲次 景寅 正月 戊辰 朔에 황제는 元日에 圜丘의 제단에서 예를 갖추어 땀나무를 태워 하늘에 고했고, 2일에 芥兵山의 정상에 올라 봉제를 지냈으며 3일에 내려와 社首山에서 선제사를 지내고 建封 元年으로 개원하였다.⁷

7 『천지서상지』 20, 封禪, “大唐麟德三年歲次景寅正月戊辰朔 皇帝以元日備禮於圜丘之壇 焚柴告天 二日登封於芥兵之頂 三日降禪於社首之山 更爲建封元年也”.

사료 A를 보면 인덕 3년(666) 정월 초하루와 3일에 걸쳐 봉선하고 건봉으로 개원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666년 봉선의례에 앞서 당에서는 659년 6월 허경종에게 봉선 준비를 지시하여, 662년 10월에 고종은 용삭 4년(664) 정월로 날짜를 결정지었고 이를 위해 용삭 3년 정월에 동도 낙양으로 행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662년 12월에 용삭 4년 정월에 예정된 봉선의례는 중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고구려와 백제와의 전쟁으로 하북 지방 사람들이 피폐했다는 것이다.⁸ 하지만 무엇보다 고구려·백제에 대한 군사원정과 부담으로 말미암아 취소하였던 것이다.⁹

이후 봉선의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신당서』에 따르면 인덕 원년, 664년 7월 정미에 조서를 내려 666년 정월 태산에서 제사 지낼 것이라고 하였고¹⁰ 봉선조서에서 주변 제국의 諸王도 665년 10월에 동도 낙양으로 집합하도록 명시하였다.¹¹ 이 봉선의례는 664년 봉선의례처럼 반복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武則天의 권력이 확립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한다.¹²

666년 봉선의례를 위해 당 고종은 인덕 2년(665) 2월에 장안을 출발하였고, 윤3월에 東都인 낙양에 도착하였다.¹³ 낙양 행차는 봉선 준비를 위한 전 단계였다. 그리고 10월에 주변국에서 온 사절과 함께 낙양을 출발하였고 12월에 태산 아래에 도착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
- 8 『자치통감』 201, 唐紀 17, 고종 용삭 2년 12월 무신(23).
 - 9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앞의 책, 391쪽; 서영교, 2014, 「당 고종 백제철병 칙서의 배경」, 『동국사학』 57, 342쪽.
 - 10 『신당서』 3, 본기 3, 고종. “麟德元年 七月丁未 詔以三年正月有事于泰山”.
 - 11 『책부원귀』 36, 제왕부 37, 봉선 2, 인덕 원년. “七月丁未朔 詔宜以三年正月 式遵故實有事於岱宗 所司詳求茂典 以從折衷 其諸州都督刺史以二年十二月便集嶽下 諸王十月集東都”.
 - 12 서영교, 2014, 앞의 논문, 344~345쪽.
 - 13 『자치통감』 201, 唐紀 17, 고종. “麟德二年 春二月壬午 車駕發京師 丁酉 至合璧宮 …… 三月 辛未 東都乾元殿成 閏月壬申朔 車駕至東都 ……”;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앞의 책.

- B. 1) ① 인덕 2년 10월 병인일(27)에 황상이 東都를 출발하였는데, 車駕를 따르는 문무의 儀仗이 수백 리를 끊이지 않았다. 營寨와 天幕을 벌려놓은 것이 들에 가득 펼쳐져 있었다. 동쪽으로는 고려에서부터, 서쪽으로는 波斯(이란 고원)와 鳥長(인도 서북부)의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朝會하고자 모인 사람은 각기 그 속한 扈從을 거느리고 양탄자로 천막을 쳤고 소·양·낙타가 도로를 메웠다. 이때에는 매년 풍년이 들어서 쌀은 한 말에 5전(錢)에 이르렀고 보리와 콩은 시장에 들어놓지도 못하였다.¹⁴
- ② ① 인덕 2년 10월 정묘일(28)에 동도에 황제가 동도를 출발하여 東嶽으로 갔는데, 御駕를 따르는 문무신하와 병사들 및 儀仗과 法物이 수백 리나 서로 이어졌으며, 늘어선 군영과 설치한 장막이 들만에 죽 늘어서 있었다. 突闕·于闐·娑娑·天竺國·罽賓·烏菴·崑崙· 왜국 및 신라·백제·고구려 등 諸蕃의 酋長들이 각각 그 족속을 거느리고 호종하였다. 穹廬와 氈帳 및 소와 양과 낙타와 말이 길을 꼭 메웠다. 이때에는 자주 풍년이 들어 쌀 한 말 값이 5전이었으며, 콩이나 보리 등은 시장에 내놓지조차 못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은 예로부터 제왕들이 封禪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성대한 적은 없었다고들 하였다.¹⁵
- ② 인덕 2년 겨울 10월 정묘일(28)에 장차 泰山에서 封禪사를 지내려고

14 『자치통감』 201, 唐紀 17, 고종, “麟德二年 冬十月癸丑 皇後表稱封禪舊儀 祭皇地祇 太后昭配 而令公卿行事 禮有未發 至日 妾請帥內外命婦奠獻 詔 禪社首以皇后爲亞獻 越國太妃燕氏爲終獻 壬戌 詔 封禪壇所設上帝·後土位 先用槁秸·陶匏等 並宜改用茵褥·豐爵 其諸郊祀亦宜准此 又詔 自今郊廟享宴 文舞用功成慶善之樂, 武舞用神功破陳之樂 丙寅 上發東都 從駕文武儀仗 數百里不絕 列營置幕 彌互原野 東自高麗 西至波斯鳥長諸國 朝會者 各帥其屬扈從 穹廬毳幕 牛羊駝馬 填咽道路 時比歲豐稔 米斗至五錢 麥豆不列于市”.

15 『책부원귀』 36, 帝王部 36, 봉선 2, “麟德二年 十月丁卯 帝發東都赴東嶽 從駕文武兵士及儀仗法物相繼數百里 列營置幕彌互郊原 突闕於闐波斯天竺國罽賓烏菴崑崙倭國及新羅百濟高麗等諸蕃酋長 各率其屬扈從 穹廬氈帳及牛羊馬填候道路 是時頻歲豐稔 斗米至五錢 豆麥不列於市 議者以爲古來帝王封禪未有若斯之盛者也”.

東都로부터 출발했다. 이 해는 풍년이 들어 쌀 한 말 값이 5전이었으며, 콩이나 보리는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¹⁶

- 3) 11월 戊子일에 황제가 濮陽에 이르렀고 寶德玄이 騎從하였다. ……
12월 丙午일에, 황제의 수레가 齊州에 이르렀고 10일간 머물렀다. 丙辰일에 靈岩頓을 출발하여 泰山 아래에 이르렀다. 有司가 산 남쪽에 圓壇을 만들었고, 산 위에 登封壇을 만들었으며 社首山の 위에 禪이 降하는 方壇을 만들었다.¹⁷

사료 B를 보면 낙양을 출발한 거대한 행렬이 태산을 향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나라는 B-1)에서는 동쪽으로는 고려에서부터, 서쪽으로는 波斯(이란 고원)와 烏長(인도 서북부) 등 諸國이었고 B-2)를 보면 突闕·于闐·娑娑·天竺國·罽賓·烏菴·崑崙·왜국 및 신라·백제·고구려 등 諸藩이었다. 이들 諸國·諸藩의 사절이 낙양에 모인 것은 봉선조서에 따른 것으로, 낙양을 떠난 행렬은 B-3)을 보면 11월에 濮陽에 이르렀고 12월에 태산에 도착하였다. 다음은 신라와 백제가 666년 봉선의례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료이다.

- C. 1) ① (가을 8월) 이에 인궤는 우리 사신 및 백제·탐라·왜 등 네 나라의 사신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돌아가 마침내 태산에서 제사 지냈다.¹⁸
② (인덕 2년) 8월 임자일(13) 熊津城에서 동맹하였다. 劉仁軌는 신라·

16 『구당서』 4, 본기 4, 고종 상. “麟德二年 冬(十月)丁卯 將封泰山 發自東都 是歲大稔 米斗五錢 麴麥不列市”; 『신당서』 3, 본기 3, 고종. “麟德二年 十月丁卯 如泰山”.

17 『자치통감』 201, 당기 17, 고종. “十一月戊子 上至濮陽 寶德玄騎從 …… 十二月丙午 車駕至齊州 留十日 丙辰 發靈岩頓 至泰山下 有司於山南爲圓壇 山上爲登封壇 社首山上爲降禪方壇”; 『구당서』 4, 본기 4, 고종 상. “麟德二年 十一月丙子 次于原武 以少牢祭漢將紀信墓 贈驃騎大將軍 …… 十二月丙午 御齊州大廳 乙卯 命有司祭泰山 丙辰發靈巖頓”.

18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5년. “(秋八月) 於是 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會祠泰山”.

백제·耽羅·倭國의 사신과 바다에 배를 띄우고 서쪽으로 돌아와, 마침내 泰山에서 제사 지내는 일에 모이게 했다.¹⁹ 고려도 太子 福男을 보내 와서 제사 지내는 데 시중들게 하였다.²⁰

2) 인문은 또 당에 들어갔다. 건봉 원년에 황제의 수레를 따라 태산에 올라가 封禪 의식에 참여하였고 더하여 우효위대장군과 식읍 400호를 받았다.²¹

3) 인덕 2년(665), 隆이 신라 왕과 웅진성에서 만나 흰 말을 잡아 맹세하였다. 인궤가 맹세하는 글을 지었으며, 이것을 금으로 새기고, 무쇠로 책을 만들어 신라 종묘 안에 두었는데, 이 맹세의 글은 신라본기에 보인다. 유인원 등이 귀국하니, 용은 무리가 흩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 또한 당나라 서울로 돌아갔다.²²

C-1)은 웅진성에서 동맹한 이후 신라를 비롯하여 백제·탐라·왜국이 유인궤와 함께 태산에 갔다고 한다. 웅진성에서의 동맹은 후술되듯이 취리산회맹이다. 신라에서는 C-2)를 보면 김인문이 봉선의례에 참여하였다. C-3)을 보면 부여용은 취리산회맹 이후 신라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유인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함께 중국으로 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신라와 취리산에서 회맹한 직후 당 고종의 태산 봉선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유인궤를 따라 중국으로 넘어가 활동

19 『당회요』 95, 신라. “[麟德二年(665)] 八月壬子(13) 高麗亦遣太子 福男來侍祠”; 『구당서』 84, 열전 34, 유인궤. “(麟德二年 八月) 于是帶方州刺史劉仁軌領新羅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赴大山之下”; 『책부원귀』 981, 외신부 26, 盟誓. “(唐高宗 麟德二年 八月) 於是 仁軌領新羅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赴太山之下”.

20 『자치통감』 201, 당기 17, 고종. “(麟德二年) 八月壬子(13) 同盟于熊津城劉仁軌以新羅百濟耽羅倭國使者浮海西還 會祠泰山”.

21 『삼국사기』 44, 열전 4, 김인문. “仁問又入唐 以乾封元年 扈駕登封泰山 加授右驍衛大將軍 食邑四百戶”.

22 『삼국사기』 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 “麟德二年 與新羅王會熊津城 刑白馬以盟 仁軌爲盟辭 乃作金書鐵契 藏新羅廟中 盟辭見新羅紀中 仁願等還 隆畏衆携散 亦歸京師”.

했던 일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표현으로 이해된다.²³ 후술되는 사료에서 태산에서 봉선의례를 마친 당 고종은 정월 19일에 태산을 출발하여 정월 24일에 산동성 곡부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이때 부여용은 곡부에 있는 공자묘에서 제사를 주관하였다.²⁴

이와 같이 신라의 김인문, 백제의 부여용은 유인궤를 따라 봉선의례에 참가하였다. 우선 김인문과 부여용은 봉선조서에 따라 낙양에 도착하여, 다른 제국의 사절과 함께 당 고종의 행렬을 따라 태산으로 향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C-2)에서 김인문이 황제의 수레를 따라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고구려 복남의 봉선의례 참여는 앞의 사료 C-1)-② 『자치통감』 기사에서 알 수 있으며, 다음도 참고된다.

- D. 1) 인덕 2년(665) 겨울 10월 계해일(24)에 고려왕 高藏이 그 아들 福南을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²⁵
- 2) ① 왕이 태자 복남(신당서에는 男福이라고 한다)을 보내어 당에 들어가 태산 제사에 참여하게 하였다.²⁶
- ② 건봉 원년(666)에 高藏이 그 아들을 보내어 조정에 들어가 太山 아래에 배석하게 하였다.²⁷
- ③ 건봉 원년 藏이 아들 男福을 보내어 천자를 따라서 태산에 封禪하고

23 양종국, 2006, 「백제 부흥운동과 웅진도독부의 역사적 의미」, 『백제문화』 35, 134~135쪽.

24 부여용은 고종의 태산 봉선의식에 참가한 뒤 고종의 명을 받아 곡부에 있는 공자묘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등 당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양종국, 2004, 『백제 멸망의 진실』, 도서출판 주류성, 111~195쪽 참고.

25 『구당서』 4, 본기 4, 고종 상. “麟德二年 冬十月癸亥 高麗王高藏遣其子福南來朝”.

26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5년. “王遣太子福男[新唐書云男福]入唐 侍祠泰山”.

27 『구당서』 199상, 열전 149상, 동이 고구려. “乾封元年(666) 高藏遣其子入朝 陪位於太山之下”.

돌아갔다. ……²⁸

D-1)을 보면 북남은 당 황제가 태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황제를 알현하였고 D-2)에서는 천자를 따라서 666년 봉선의례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보장왕 21년(662) 당의 평양 공격이 실패로 끝난 이후 666년 북남의 봉선의례 참여까지 당과 고구려의 관계는 소강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은 낙양 조정에 들어갔고 황제를 따라서 다른 제국의 사절과 함께 태산으로 향하였다. 고구려가 당의 봉선조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봉선조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역대 황제가 봉선의례를 지낸 기록을 보면 진시황 28년 이후 진2세 원년, 한 무제 元封 원년·2년·5년, 太初 원년·3년, 天漢 3년, 太始 4년, 征和 4년, 광무제 건무 32년, 章帝 元和 2년, 安帝 延光 3년, 수 문제 개황 15년에 이루어졌다. 666년 당 고종 건봉 원년의 봉선의례는 595년 수 문제 개황 15년 이후에 시행된 것으로, 지금까지 행한 봉선의례 중 가장 성대하였다. 사료 B-1)과 B-2)에서 御駕를 따르는 문무 신하와 병사들 및 儀仗과 法物이 수백리나 서로 이어졌으며, 늘어선 군영과 설치한 장막이 들판에 죽 늘어서 있었다고 하였고, 의논하는 자들은 예로부터 제왕들이 封禪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성대한 적은 없었다고들 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봉선의례는 666년 4월까지 거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건봉 원년 봄 정월 초하루 무진일에 황제가 태산의 남쪽에서 昊天上帝에게 제사를 지냈다. 기사일(2)에 태산에 올라가서 玉牒을 바치고, 上帝冊은 玉匱에 넣고 配帝冊은 金匱에 넣었는데, 모두 금으로 된 줄로 묶고 金泥로 봉합하고 玉璽로 도장을 찍어 돌려 된 상자에 넣었다. 경오일(3)에 社首山에서

28 『신당서』 220, 열전 145,동이 고구려. “乾封元年(666) 藏遣子男福從天子封秦還而 ……”.

禪을 하였는데, 皇地祇에게 제사 지냈다. 황제가 초헌을 마치니, 執事가 모두 따라서 내려갔다. 宦者가 휘장을 잡으니, 황후가 단에 올라가서 아헌하였는데, 휘장과 장막은 모두 비단에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다. 술잔에 술을 따르고 俎豆를 가득 채우며 단에 올라가 노래하는 것은 모두 宮人을 사용하였다. 임신일(5)에 황제가 朝覲壇에 나아가서 朝賀를 받고 天下를 사면하고 改元하였다. 文武官 3품 이상에게 爵 1등급씩 하사하고, 4품 이하에게는 한 계급을 더하였다. …… 병술일(19)에 車駕는 대산을 출발하였고 신묘일(24)에 曲阜에 이르러 孔子에게 太師를 추증하고 少牢로 제사를 지냈다.²⁹ 계미일에 亳州에 이르러 老君廟를 배알하고 尊號를 올려 太上玄元皇帝라고 하였다. 정축일에 東都에 이르러 옛새 동안 머물렀고 갑신일에 含璧宮에 행차하였다. 4월 갑진일(8)에 京師에 이르러 太廟를 배알하였다.³⁰

사료 표를 보면 666년 정월에 봉선행사를 거행하고 4월에 장안에 돌아와

- 29 『구당서』 5, 본기 5, 고종 하. “麟德三年 春正月戊辰朔 車駕至泰山頓 是日親祀昊天上帝於封祀壇 以高祖太宗配饗 己巳 帝升山行封禪之禮 庚午 禪於社首 祭皇地祇以太穆太皇太后文德皇太后配饗 皇后爲亞獻 越國太妃燕氏爲終獻 辛未 御降禪壇 壬申 御朝覲壇受朝賀 改麟德三年爲乾封元年 諸行從文武官及朝覲華戎岳牧 致仕老人朝朔望者 三品已上賜爵二等 四品已下七品以上加階 八品已下加一階 勳一轉 諸老人百歲已上版授下州刺史 婦人郡君 九十八十節級 齊州給復一年半 管嶽縣二年 所歷之處 無出今年租賦 乾封元年 正月五日 已前 大赦天下 賜酺七日 癸酉 宴群臣 九部樂 賜物有差 日昃而罷 丙子 皇太子弘設會 丁丑 以前恩薄 進爵及階勳等 男子賜古爵 兗州界置紫雲仙鶴萬歲觀 封巒非煙重輪三寺 天下諸州置觀寺一所 丙戌 發自泰山 甲午 次曲阜縣 幸孔子廟 追贈太師 增修祠宇 以少牢致祭 其褒聖侯德倫子孫 並免賦役”.
- 30 『자치통감』 21, 당기 17, 고종. “乾封元年 春正月戊辰朔 上祀昊天上帝於泰山南 己巳 登泰山 封玉牒 上帝冊藏以玉匱 配帝冊藏以金匱 皆纏以金繩 封以金泥 印以玉璽 藏以石_レ感 庚午 降禪於社首 祭皇地祇 上初獻畢 執事者皆趨下 宦者執帷 皇后升壇亞獻 帷帟皆以錦繡爲之 酌酒 實俎豆 登歌 皆用宮人 壬申 上禦朝覲壇 受朝賀 赦天下 改元 文武官三品已上賜爵一等 四品已下加一階 …… 丙戌 車駕發泰山 辛卯 至曲阜 贈孔子太師 以少牢致祭 癸未 至亳州 謁老君廟 上尊號曰太上玄元皇帝 丁丑 至東都 留六日 甲申 幸含璧宮 夏 四月 甲辰 至京師 謁太廟”.

서 태묘에 謁함으로써 그것을 마쳤다고 한다.³¹ 666년 정월 1일 당 고종은 태산 남쪽에서 호천상제에게 제사를 지냈고 다음 날 태산으로 올라갔다. 3일에는 태산에서 내려와 사수산에서 禪을 하였는데, 당 고종이 초헌을 하였고 아현은 측천무후였으며 5일에는 朝覲壇에 나아가 신하들에게 朝賀를 받았다. 19일에 태산을 출발한 황제의 행렬은 24일 산동성 곡부에 도착하였다. 계미에는 박주에 도착하였는데,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그해 2월 기미라고 한다.³² 황제의 행렬은 정축에 동도에 도착하고 여기에 6일간 머물렀는데, 『책부원귀』에는 3월 11일로 나온다.³³ 이후 황제는 4월 8일에 장안으로 돌아와 태묘에 배알하였다.³⁴

이처럼 666년 봉선의례는 주변 국가의 왕족과 사신이 다수 참석한 유례없는 대규모의 의식이었고 봉선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황후인 측천무후가 아현으로 참여하였다.³⁵ 이와 같은 봉선의례에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 참여하였고 고구려는 신라·백제와는 달리 태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황제를 알현하였다. 고구려의 복남은 666년 정월에서 4월까지 행해진 봉선의례에 참여하고 돌아왔으며, 신라의 김인문은 우효위대장군과 식읍 400호를 받고 당에 머물다가 668년에 돌아왔다. 반면 부여융은 당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고구려 복남이 665년 10월부터 666년 4월까지 당의 봉선의례에 참여한 대내외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31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앞의 책, 392~398쪽.

32 『구당서』 5, 본기 5, 고종 하. “麟德三年 二月己未 次亳州 幸老君廟 追號曰太上玄元皇帝 創造祠堂 其廟置令 丞各一員 改谷陽縣爲眞源縣 縣內宗姓特給復一年”; 『신당서』 3, 본기 3, 고종. “(乾封元年) 二月己未 如亳州 祠老子 追號太上玄元皇帝 縣人宗姓給復一年”.

33 『책부원귀』 113, 제왕부 114, 순행 2. “(乾封元年) 二月己未 次亳州謁老君廟 三月丁丑 至東都 甲申 發東都 還京師 幸合璧宮 四月甲辰還京師”.

34 『구당서』 5, 본기 5, 고종 하. “麟德三年 夏四月甲辰 車駕至自泰山 先謁太廟而後入”.

35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앞의 책, 392~398쪽.

Ⅲ. 고구려의 당 봉선의례 참여 배경

신라의 김인문, 웅진도독부의 부여용은 봉선의례에 참여하러 가기 직전인 665년 8월 13일에 당이 주선하여 취리산회맹을 맺었다. 취리산회맹과 관련된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것은 『책부원귀』이다.³⁶ 『삼국사기』 문무왕 5년(665) 8월 조는 『책부원귀』에 근거한 것으로, 이들 기록에는 맹문만 나온다. 그런데 『천지서상지』에는 맹문뿐만 아니라 서문도 있어 회맹문 형식이 가장 잘 정돈되어 있다. 따라서 『천지서상지』는 맹문의 글자들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맹문의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한다.³⁷

『천지서상지』 맹문에 따르면 維大唐麟德二年歲次己丑八月庚子朔十三日壬子, 665년 8월 13일에 신라왕과 웅진도독부 부여용, 칙사 유인원이 취리산에서 ‘盟’하였는데, 당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에게 신라와 서로 화친하고 우호관계를 맺게 하였다.³⁸ 이에 앞서 당은 백제 땅에 당의 사직을 세우고 정삭과 묘회를 반포함으로써,³⁹ 명목상의 백제를 설정하였으며 663년 4월에는 신라를 당의 기미주로 선포하여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36 『책부원귀』 981, 외신부 26, 맹서.

37 布山和南, 1996, 「新羅文武王五年の會盟にみる新羅唐關係」, 『駿大史學』 99, 32쪽. 취리산동맹과 『삼국유사』 1, 기이 1, 태종춘추공조에는 “新羅別記云 文虎王即位 五年乙丑 秋八月 庚子(1)”이라고 나오고,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5년조에는 8월로 나오며, 『구당서』 199上, 열전 149上, 동이 백제조와 『당회요』 95, 新羅조 및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백제조에는 인덕 2년으로 나온다.

38 布山和南은 부여용에게 제사 지내게 하고 신라와 회맹을 맺게 한 것은 당이 실질적으로 백제의 부흥, 백제의 재건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하였다. 양종국은 취리산회맹을 통해 당나라는 한반도 내에서 백제의 존재를 신라와 마찬가지로 인정해 줌으로써 신라를 압박하고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확립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도 한다. 양종국, 2009, 앞의 논문, 90쪽.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백제의 존재를 인정한다기보다는 백제 땅을 기미주로 한 것으로 보았다. 김영관, 2009, 앞의 논문; 정운용, 2009, 앞의 논문 참조.

39 『삼국사기』 28, 백제본기 6, 문무왕 20년.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⁴⁰ 그리고 다음도 주목된다.

F. (麟德 원년에 이르러) 또한 就利山에 제단을 쌓고 勅使 유인원을 맞아 피를 마시고 서로 맹세하여 산과 강으로 서약하였고, 경계를 긋고 뜻말을 세워 영원히 국경으로 삼아 백성을 머물러 살게 하고 각각 생업을 꾸려나가도록 하였습니다.⁴¹

사료 F를 보면 ‘畫界立封 永爲疆界’, 경계를 긋고 뜻말을 세워 영원히 국경으로 삼는 것이 취리산회맹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취리산회맹은 664년의 웅령맹약이 그 토대였다.⁴²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1) (2월) 金仁問·이찬 天存이 唐 勅使인 劉仁願·백제 夫餘隆과 熊律에서 함께 맹약을 맺었다.⁴³

2) 인덕 원년에 이르러 다시 엄한 칙령을 내려盟誓하지 않은 것을 꾸짖었으므로 바로 熊嶺에 사람을 보내 제단을 쌓고 함께 서로 맹세하고 그대로 맹세한 곳을 마침내 양국의 경계로 하였습니다. 모여 맹세한 일이 비록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감히 칙명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⁴⁴

40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3년.

41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가을 7월 26일 ‘大王報書云’. “(至麟德元年) …… 又於就利山築壇 對勅使劉仁願 敵血相盟 山河爲誓 畫界立封 永爲疆界 百姓居住 各營產業”.

42 지현영은 웅령맹약을 ‘제1차 웅진동맹’, 취리산회맹을 ‘제2차 웅진동맹’이라고 하였다. 지현영, 1967, 앞의 논문, 1쪽.

43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4. “(二月) 角干金仁問伊滄天存與唐勅使劉仁願百濟夫餘隆 同盟于熊律”.

44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671) 가을 7월 26일 ‘大王報書云’. “至麟德元年 復降嚴勅 責不盟誓 卽遣人於熊嶺 築壇共相盟會 仍於盟處 遂爲界 盟會之事 雖非所願 不敢違勅”.

사료 G에 따르면 문무왕 4년(664) 2월에 김인문과 이찬 천존, 당 칙사 유인원, 백제 부여용이 웅진, 웅령에서 단을 쌓아 함께 ‘盟’, ‘盟會’하였다고 한다. 취리산회맹에 참여한 사람은 칙사 유인원, 신라왕 및 웅진도독 부여용으로, 웅령맹약과는 차이가 보인다. 부여용이 웅진도독부에 귀환한 시기는 손인사가 7,000의 병사를 이끌고 웅진에 도착한 663년 7월경이었다고 한다.⁴⁵ 그런데 664년 10월에 유인원을 웅진도독부로 보냈는데, 이때 부여용이 귀환하였다고도 한다.⁴⁶ 따라서 부여용이 신라와 웅령맹약을 맺은 것은 G-1)대로 664년 2월이 아니라 664년 12월이라고도 한다.⁴⁷ 하지만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H. 용삭 3년에 이르러서 …… 신라가 곧 돌아오려 할 때 杜大夫가 “칙명에 따르면 평정을 마친 뒤에 함께 모여 맹서의 모임을 가지라고 하였으니, 임존성 한성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함께 맹세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라는 “칙명에 따르면 이미 평정한 뒤에 서로 함께 맹세를 맺으라고 하였는데, 임존성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평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백제는 간사하고 속임수가 끝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함이 언제나 변하지 않으니, 지금 비록 함께 맹세를 맺는다 하여도 뒷날 반드시 배꿈을 깨물 근심이 생길 것이다”고 하여 맹세를 맺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⁴⁸

사료 H에 따르면 용삭 3년, 663년에 당의 대부인 杜爽이 칙명에 따라 신라에게 백제와의 맹약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신라는 백제가 매우 奸詐하

45 『삼국사기』 28, 백제본기 6, 의장왕 20년; 김영관, 2009, 앞의 논문, 75쪽.

46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97~299쪽.

47 노중국, 2003, 위의 책, 302쪽; 정운용, 2009, 앞의 논문, 46쪽.

48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가을 7월 26일 ‘大王報書云’, “至龍朔三年 …… 新羅即欲廻還 杜大夫云 準勅 既平已後 共相盟會 任存一城 雖未降下 即可共相盟誓 新羅以爲準勅 既平已後 共相盟會 任存未降 不可以爲既平 又且百濟 姦詐百端 反覆不恒 今雖共相盟會 於後恐有噬臍之患 奏請停盟”.

여 배반을 끊임없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맹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하였고 설사 맹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후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시점에 신라군은 663년 10월 21일까지 당군과 함께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자 11월 4일 철군하고자 하였다.⁴⁹ 이때 당의 杜大夫가 당 고종의 칙명을 따를 것을 종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는 663년 당의 강압에 의해 백제와 664년 2월에 웅령맹약을 맺었는데, 웅령맹약의 목적은 G-1)에서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G-2)에서 ‘仍於盟處 遂爲界 盟會之事’, 그대로 맹세한 곳을 마침내 양국의 경계로 하였다고 한다. 즉 신라와 웅진도독부 부여용과의 웅령맹약에서 제1차적인 목적은 疆界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점령한 백제 고토는 웅진도독부가 있던 웅진성을 제외하고는 662년 7월 신라군과의 합동작전으로 탈취한 웅진 동쪽의 지라성과 사비로 이어지는 통로에 있던 진현성을 비롯하여 663년 가을과 겨울에 함락시킨 주류성과 임존성 정도였다.⁵⁰ 신라군은 백제 수도였던 사비성 주변의 이례성·왕흥사잠성 등을 직접 함락시켜 점령하였고 백제 남방의 거열성·거물성·사평성을 비롯하여 동방의 득안성·웅진성을 둘러싼 지역인 윤성·사정책·대산책·내사지성 등을 점령하였으며 백강 입구의 설리정도 신라군이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당군이 점령하고 있던 곳은 모두 신라군에 둘러싸인 곳이었고 실제 점령지역은 일부에 불과하였다.⁵¹

당이 선택한 백제 고토 지배전략은 신라와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백제 고토에서 신라군이 철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당은 백제 고토를 직할영토로 편입하여 웅진도독부를 이용해 신라를 견제하고 제어

49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3년. “…… 獨遲受信據任存城不下 自冬十月二十一日 攻之不克 至十一月四日 班師至舌利停 ……”.

50 노중국, 2003, 앞의 책, 329쪽.

51 김영관, 2009, 앞의 논문, 73~74쪽.

할 뿐만 아니라 고구려 경락의 전초기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⁵²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전사자의 증가와 백성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함 등을 이유로 백제 지역에 도독부를 두어 지배하는 가운데 둔전을 설치하여 고구려 공략을 위한 보급기지로 삼으려 하였다.⁵³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웅령맹약을 통해 그것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다

신라는 웅령맹약을 맺은 이후 664년 7월 김인문 등이 일선주, 한산주 군사를 이끌고 웅진부성의 당군과 함께 고구려 돌사성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⁵⁴ 하지만 사료 G-2)에서 모여 맹세하는 것이 비록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엄한 칙령이 내려져 어쩔 수 없이 백제와 맹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신라는 백제와 웅령맹약을 맺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였다. 이로 볼 때 웅령맹약은 당나라의 강력한 요구와 압력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신라는 웅령맹약에 수동적이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관련해서 유인궐의 다음 표문이 관심을 끈다.

- I. (인덕 원년) …… 폐하께서 만약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백제 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여풍이 현재 북쪽에 있고 부여음이 남쪽에 있으며 고구려와 백제는 예전부터 서로를 성원하였고 왜인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역시 백제와 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백제에 군사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백제는 도로 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백제를 진압하고 둔전(屯田)을 설치한 것은 군사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한 데에 힘입는 것입니다.⁵⁵ ……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고 다시 고구려를 취하려고 하십니다. ……

52 이도학, 1987, 「웅진도독부의 지배 조직과 대일본정책」, 『백산학보』 34, 85~86쪽.

53 김진한, 2011, 앞의 논문, 117쪽.

54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4년 7월.

55 『구당서』 84, 열전 34, 유인궐, “陛下若欲殄滅高麗 不可棄百濟土地 餘豐在北 餘勇在南 百濟高麗 舊相黨援 倭人雖遠 亦相影響 若無兵馬 還成一國”.

사료 I의 내용은 『資治通鑑』에는 인덕 원년(664) 겨울 10월 경진일(6)로 나온다.⁵⁶ 이에 따르면 유인궤는 당 고종에게 만약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백제 땅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당은 웅령맹약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회맹의 형식을 통해서 김인문이 아닌 문무왕을 참석하게 하여 양국의 경계를 확정짓지 않았을까 한다.⁵⁷

당은 웅령맹약을 통해 백제의 명맥을 유지시켜주면서 신라를 견제하고 고구려 침략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취리산회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취리산회맹은 664년 7월 봉선의례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취리산회맹 직후 신라의 김인문과 백제의 부여융이 봉선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유인궤와 함께 당에 들어갔다. 이로 볼 때 취리산회맹은 당의 봉선의례와도 불가분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은 취리산회맹을 통해 재차 고구려를 압박하면서 고구려의 봉선의례 참여도 유도하지 않았을까 한다.

당시 당과 고구려의 관계는 662년 당이 평양에서 회군한 이래 고구려와 당 사이의 전투기사는 보이지 않는다.⁵⁸ 보장왕 후기(658~668) 고구려와 당의 관계는 당의 내부 갈등이 마무리되고, 아사나하로(阿史那賀魯)의 반란도 진압되면서 양국 간 마찰로 이어졌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661년 8월 고구려 평양성을 포위하며 압박하였다. 하지만 661년 10월 철륵의 침입으로 고구려 원정에 나섰던 지휘관이 차출되었고,⁵⁹ 662년 2월에 연개소문은 蛇水 전

56 『자치통감』 201, 당기 17, 고종. 이 외 『책부원귀』 366, 장수부 27, 機略 6 劉仁軌와 『全唐文』 158, 劉仁軌 陳破百濟軍事表 참고.

57 布山和男은 취리산회맹이 당 고종이 주체가 되어 유인원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시행한 것이지만, 맹문에 당이 적극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것은 회맹의 성립과 계약 사항의 주요 참석자가 신라와 백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布山和男, 1996, 앞의 논문, 44쪽. 하지만 취리산회맹의 서문을 통해 당의 의도가 보인다 고 하였다.

58 이호영, 1997, 『신라삼국통합과 려·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202~207쪽; 김진한, 2011, 「보장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 변화와 그 배경」, 『고구려발해연구』 39, 117쪽.

59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0년.

투에서 당군을 대파하였으며, 소정방은 평양의 포위를 풀고 회군하였다.⁶⁰ 그리고 당 고종은 663년 8월 조서를 내려 원정군을 파하기로 결정했지만, 663년 토욕훈·토번의 전쟁으로 중단되었다.⁶¹

이와 같이 고구려 원정에 나섰던 지휘관이 차출되면서 잠시 소강 국면을 맞고 있는 사이 당이 봉선의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봉선의례 참여는 666년 봉선의례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필요충분한 조건이었을 것이다. 周王을 대신하여 패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제환공이 기원전 651년 葵丘會盟에서 자신의 업적을 3대의 왕들이 천명을 받은 것처럼 과신하면서 봉선례를 거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관중은 一茅三脊의 藉, 동해의 比目魚, 서해의 比翼鳥와 같은 먼 지방의 瑞祥物과 15가지 이상 주변 이민족의 특산물이 와야만 봉선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제환공의 봉선을 저지하였다.⁶² 이로 볼 때 당시 중원 제후들은 패자인 제환공을 따르고 있었지만, 주변 이민족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관중은 제환공의 봉선을 저지하였던 것이다.⁶³

이상과 같이 볼 때 취리산회맹은 당이 백제 고토를 지배함으로써 신라를 견제하고 고구려 원정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봉선의례 참여도 유도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신라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을 텐데, 다음이 주목된다.

- J. 문무왕 11년(671) 대왕이 報書하기를, 선왕이 정관 22년(648)에 입조하여 태종 문황제를 만나 받든 恩勅에서 “짐이 이제 고구려를 치려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너희 나라가 양국에 끼어서 매번 침입을 받아 편안할 때가 없을 가엽게 여김이니, ……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는

60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1년.

61 『자치통감』 201, 당기 17, 고종 용삭 3년. 이와 관련해서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연구』, 61~63쪽 참고.

62 『史記』 32, 濟太公世家 2; 『管子』 16, 封禪篇 50.

63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109~110쪽.

너희 나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려 한다” 하고 계책을 내리고 군기를 주었다.⁶⁴

사료 J를 보면 648년에 김춘추와 당 태종이 만났을 때, 당 태종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을 신라가 갖는다는 밀약을 김춘추와 맺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 문무왕은 이 밀약을 염두에 두고 취리산회맹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666년 당의 봉선의례에 참여한 김인문은 668년 당의 고구려 정벌군과 연합할 신라 군사를 징발하기 위하여 대총관 유인궤에 앞서 귀국하였고 이 해 6월 12일 당항진에 도착한 유인궤의 군사를 맞이하였다. 김인문은 신라의 대당 총관으로서 당의 군대와 합세하여 9월 21일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는 국제정세에 밝아 취리산회맹의 내용과 666년 봉선의례를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고립과 전쟁의 위험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고, 당과 4국이 유인궤와 함께 봉선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떠나자 고구려 역시 당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봉선의례 참여는 지금까지 당에 대한 강경대응에서 선회(旋回)한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봉선의례에 참여한 것은 대외적인 이유 외에 고구려의 대내적인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졌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연개소문의 사망이 관심을 끈다.

K. 1) (겨울 10월) 이 달에 고려의 大臣 蓋金이 그 나라에서 죽었다. 자식들에게 유언하여 말하였다. “너희 형제는 화합하기를 고기와 물과 같이하고 爵位를 다투지 말라.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웃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⁶⁵

64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가을 7월 26일 ‘大王報書云’.

65 『일본서기』 27, 天智紀, “(冬十月) 是月 高麗大臣蓋金終於其國 遣言於兒等曰 汝等兄弟 和如魚水 勿爭爵位 若不知是 必爲隣笑”.

2) …… 32세 때 太莫離支로 더하여 軍國을 총괄하는 阿衡元首가 되었다. 先祖의 遺業을 이으니 선비들의 마음이 悅服하였으며, 위태로운 나라의 권력을 잡아 사람들의 논란이 없었다. 이때 唐 天子의 치세는 文治를 위주로 하여 楛矢는 襄期하였다. 그런데 당시 공은 형제간의 情을 살펴보아 안으로 없애기 어려운 잡풀이 있었고, 나라의 근본을 세우려 함에 밖으로 얻어지려는 나무가 있었으니, 마침내 桃海之濱으로 하여금 禮讓에서 8條의 가르침이 어그러지게 하였고, 蕭牆 안에서는 干戈에 四羽가 떨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공은 내심 內款을 생각하였으나 일이 중앙에서 집권적으로 되지 않아, 바야흐로 나가 邊境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달래려고 하여 밖으로 荒甸을 巡征하였으니, 고조선의 옛 땅을 다스려 東方을 통치하는 새로운 官職을 당에 요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外征의 틈을 타서 두 아우 泉男産과 泉男建은 하루 아침에 兇悖하여져서 능히 無親의 차마 못할 짓을 하여 병사를 내어 안에서 저항하였다. 金環 幼子는 갑자기 살육당하였고, 玉膳과 長筵는 머지않아 顧復을 辭하였다. 공은 형제간의 관계가 소원함으로써 눈물을 머금고 檄文을 사방으로 보내니 同盟 세력이 많이 모여 마침내 단단한 각오로 창을 들었다. 장차 평양을 함락시켜 惡의 근원을 사로잡으려고, 먼저 烏骨의 교외에 이르러 곧 瑟堅의 罍를 깨뜨리려 하여, 그 도둑질을 밝히며 북을 울리면서 나아갔다. 이에 大兄 弗德 등을 보내어 表를 받들고 入朝하여 그 일들을 알리려 하였는데 마침 離反이 있어 弗德은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공은 이로 인하여 遼東으로 깃발을 돌려 군사를 海北으로 옮기고, 그 마음을 천자의 궁궐로 달려 玄菟城에서 修身하면서, 다시 大兄 冉有를 보내 정성스러운 效命을 거듭 알렸다. 曠林에 쌓인 형제간의 怨望에서 먼저 關伯의 창을 찾으니, 洪池가 가까이에서 노닐며 어찌 虞叔의 칼을 탐내겠는가. 황제께서 靑丘를 밝혀 보시어, 그 천남생의 진실한 간절함을 헤아리시며 男建과 男産의 죄를 살피시고, 번개와 천둥 같은 위엄을 내셨다. 丸山에 아직 새기지 않았으나 得來는 먼저 깨달음을 드러내시고, 梁水에 재앙

이 없지만 仲謀는 그것이 만드시 망하리라고 걱정하였음과 같은 것이다.
.....⁶⁶

- 3) ① 개소문이 죽고 장자인 남생이 대신 막리지가 되었다. 처음 국정을 맡고 여러 성에 나아가 순행하면서, 그의 동생 남건과 남산에게 남아서 뒷일을 맡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두 동생에게 일러 말하기를, “남생이 두 아우가 핍박하는 것을 싫어하여 도리어 제거하려고 하니 먼저 계책을 세우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두 동생은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이 남생에게 알려 말하기를, “두 동생은 형이 돌아와 그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형을 막고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고 하였다. 남생이 몰래 친한 사람을 보내 평양에 가서 그들을 살피게 하였는데, 두 아우가 그를 붙잡아 엿 보았다. 이에 왕명으로 남생을 불렀으나, 남생은 감히 돌아오지 못하였다. 남건이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군사를 내어 그를 토벌하였다. 남생이 달아나 국내성에 웅거하면서 그 아들 헌성으로 하여금 당에 나아가 구원을 청하게 하였다.⁶⁷

② 연개소문은 건봉 원년에 죽었다. 아들 남생이 三軍大將軍을 겸하

66 「泉男生墓誌銘」, “…… 卅二(665) 加太莫離支 摠錄軍國 阿衡元首 紹先疇之業 士識歸心 執危邦之權 人無駁議 于時蘿圖御寓 楛矢襄期 公照花照萼 內有難除之草 爲榦爲楨 外有將顛之樹 遂使桃海之濱 隳八條於禮讓 蕭牆之內 落四羽於干戈 公情思內款 事乖中執 方欲出撫邊眈 外巡荒甸 按岨夷之舊壤 請義仲之新官 二弟產建 一朝兇悖 能忍無親 稱兵內拒 金環幼子 忽就鯨鯢 玉膳長筵 俄辭顧復 公以共氣星分 旣飲淚而飛檄 同盟雨集 遂銜膽而提戈 將屠平壤 用擒元惡 始達烏骨之郊 且破瑟堅之壘 明其爲賊 鼓行而進 仍遣大兄弗德等奉表入朝 陳其事迹 屬有離叛 德遂稽留 公乃反旆遼東 移軍海北 馳心丹鳳之闕 飭躬玄菟之城 更遣大兄冉有重申誠効 曠林積怨 先尋闕伯之戈 洪池近遊 豈貪虞叔之劍 皇帝照彼青丘 亮其丹懇 覽建產之罪 發雷霆之威 丸山未銘 得來表其先覺 梁水無擊 仲謀憂其必亡 ……”.

67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5년. “蓋蘇文死 長子男生代爲莫離支 初知國政 出巡諸城 使其弟男建男產 留知後事 或謂二弟曰 男生惡二弟之逼 意欲除之 不如先爲計 二弟初未之信 又有告男生者曰 二弟恐兄還奪其權 欲拒兄不納 男生潛遣所親 往平壤伺之 二弟收掩得之 乃以王命召男生 男生不敢歸 男建自爲莫離支 發兵討之 男生走據國內城 使其子獻誠詣唐求哀”.

였고 大莫離支를 더하였다. 나가서 여러 部를 살펴보고 동생 남건과 남산이 국사를 맡았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남생은 그대들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미워하여 장차 제거하고자 합니다.” 남건과 남산은 이를 믿지 않았다. 또한 남생에게, “장차 그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남생이 첩자를 보내 가게 하였는데, 남건이 첩자를 체포하였고, 곧바로 왕명이라고 속여 남생을 불렀다. 남생은 두려워 감히 들어가지 못하니, 남건은 남생의 아들 獻忠을 죽였다. 남생은 國內城으로 달아나 지키면서 그 무리를 이끌고 거란·말갈 군사와 당에 투항하였다. 아들 현성을 보내어 호소하니, 高宗은 현성을 右武衛將軍에 제수하고, 수레·말·고급 비단·보배로운 칼을 내려주고, 돌아가 보고하게 하였다.⁶⁸

4) ① (건봉 원년) 이 해에 蓋蘇文이 죽었고, 그의 아들 남생이 대신하여 막리지가 되었다. 그의 아우 남건·남산과 화목하지 못하여 각자 朋黨을 만들어 서로 공격하였다. 남생이 두 아우에게 쫓겨 달아나 국내성에 웅거하여 死守하였고 그 아들 현성이 궁궐에 나아와 구원을 요청하였다. 조서를 내려 左驍衛大將軍 契苾何力에게 군사를 이끌고 맞아보게 하였다. 남생이 몸을 빼 도망오자, 조서를 내려 特進遼東大都督兼平壤道安撫大使를 제수하고, 玄菟郡公에 封하였다.⁶⁹

② (건봉 원년) 개소문이 죽고, 아들 남생이 대신하여 막리지가 되었다. 아우 남건·남산 두 아우가 있어 서로 원망하였다. 남생이 국내성에 웅거하

68 『삼국사기』 49, 열전 9, 개소문. “蘇文至乾封元年死 子男生 …… 兼三軍大將軍 加大莫離支 出按諸部 而弟男建男產 知國事 或曰 男生惡君等逼己 將除之 建產未之信 又有謂男生 將不納君 男生遣諜往 男建捕得 卽矯王命召之 男生懼不敢入 男建殺其子獻忠 男生走保國內城 率其衆 與契丹靺鞨兵隋唐 遣子獻誠訴之 高宗拜獻誠右武衛將軍 賜乘輿馬瑞錦寶刀 使還報”.

69 『구당서』 199上, 열전 149上, 동이 고구려. “(乾封元年) 其年 蓋蘇文死 其子男生 代爲莫離支 與其弟男建男產不睦 各樹朋黨 以相攻擊 男生爲二弟所逐 走據國內城死守 其子獻誠詣闕求哀 詔令左驍衛六將軍契苾何力率兵應接之 男生脫身來奔 詔授特進遼東大都督兼平壤道安撫大使 封玄菟郡公”.

고 아들 현성을 보내어 조정에 들어가 구원을 청하였다. 개소문의 아우 淨土도 땅을 배어 항복하기를 청했다. 이에 조서로 계필하력을 遼東道安撫大使로 삼고, 左金吾衛將軍 龐同善과 營州都督 高備을 行軍總管으로 삼았으며, 左武衛將軍 薛仁貴와 左監門將軍 李謹行을 후미부대로 가게 했다.⁷⁰

③ (건봉 원년 5월) 고려의 천개소문이 죽었고 장자 남생이 대신 막리지가 되었다. 처음 국정을 처리하게 되자 나가서 여러 성을 순시하면서 그 동생 남건과 남산으로 하여금 후사를 처리하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두 동생에게 말하였다. “남생은 두 동생이 압박하는 것을 싫어하여 속으로 제고하려고 하니 먼저 계책을 세우는 것만 못하다.” 두 동생이 이를 믿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이 연남생에게 알렸다. “두 동생은 형이 돌아와서 그들의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형을 막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남생은 몰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평양에 가서 이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두 동생이 잡아서 이를 알고 마침내 왕명으로 남생을 불렀다. 남생이 두려워서 감히 돌아가지 못하였다. 남건은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군사를 내어 그를 토벌하였다. 남생은 달아나서 別城을 지키면서 그 아들 獻誠으로 하여금 궁궐에 와서 구원해주기를 요청하였다.⁷¹

사료 K-1) 『일본서기』에는 664년 10월에 ‘高麗大臣 蓋金 終於其國’하였

70 『신당서』 220, 열전 145,동이 고구려. “(乾封元年) 蓋蘇文死 子男生代爲莫離支 有弟男建男產相怨 男生據國內城 遣子獻誠入朝求救 蓋蘇文弟淨土亦請割地降 乃詔契苾何力爲遼東道安撫大使 左金吾衛將軍龐同善營州都督高備爲行軍總管 左武衛將軍薛仁貴左監門將軍李謹行殿而行”.

71 『자치통감』 201, 당기 17, 고종. “(乾封元年 五月) 高麗泉蓋蘇文卒 長子男生代爲莫離支 初知國政 出巡諸城 使其弟 男建男產 知留後事 或謂二弟曰 男生惡二弟之逼 意欲除之 不如先爲計 二弟初未之信 又有告 男生者曰 二弟恐兄還奪其權 欲拒兄不納 男生潛遣所親往平壤伺之 二弟收掩 得之 乃以王命召男生 男生懼 不敢歸 男建自爲莫離支 發兵討之 男生走保別城 使其子獻誠詣闕求救”.

다고 한다. K-2) 「천남생묘지명」에는 천남생이 32살인 665년 고구려 보장왕 24년, 당 고종 麟德 2년에 대막리지가 되었다고 한다. K-3) 『삼국사기』와 중국 사서에는 666년 5월에 연개소문이 죽고 천남생이 대막리지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연개소문의 사망 시점과 관련해서 각 기록은 달리 전한다. 따라서 연개소문은 K-2) 「천남생묘지명」에 따라 665년에 죽었고 K-1) 『일본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삼아 그가 사망한 달을 10월로 추정하기도 하였다.⁷² 그런데 연개소문 사망 시점을 665년 10월 이전이라고 하면서, 연개소문 사망 이후 왕권을 회복한 보장왕이 당과의 적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남을 파견하였고, 남생은 국내의 정세 변화에 따라 보장왕의 온건책을 동조하였으며, 내전은 666년 6월로 보기도 하였다.⁷³ 그리고 665년에 연개소문이 사망하였고 666년 초에 고구려에 내전이 발발하였다고 하였는데, 연개소문의 자리를 이은 장남 남생이 지방 여러 성을 순시 나가면서 평양에서 동생들인 남산과 남건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기도 하였다.⁷⁴ 또한 「천남생묘지명」을 분석하면서 연남생이 아들 현성을 당 조정에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666년으로 앞선 내전기사와 해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연개소문의 사망을 664년 10월로 기록한 『일본서기』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⁷⁵

K-2) 「천남생묘지명」에 의하면 남생은 665년에 대막리지에 올랐다. 이로 보아 연개소문은 남생이 막리지에 오르기 전에 사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복남이 665년 10월에 봉선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당에 들어가 황제를 알현하였는데, 이것은 665년 8월 13일에 있었던 취리산회맹과 관련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복남을 당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8월 13일을 전후한 시점이며, 연개소문이 살

72 池内宏, 1960, 앞의 책, 278~280쪽.

73 김영하, 2007, 앞의 책, 109쪽.

74 노태돈, 2009, 앞의 책, 211쪽. 그리고 노태돈은 어떠한 분란에 따른 호구의 이산이 665년에 비열홀 지역에 있었다고 하였다. 노태돈, 1999, 앞의 책, 254쪽; 서영교, 2015, 앞의 논문, 85~87쪽도 참고.

75 서영교, 2015, 앞의 논문, 77~80쪽.

아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볼 때 연개소문은 취리산회맹 이전에 사망하였고 당은 취리산회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개소문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연개소문이 죽고 태막리지에 새로 취임한 남생이 국정을 관장할 때 형제는 K-1) 『일본서기』를 보면 연개소문의 유언에 따라 협력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K-2) 「천남생묘지명」의 “先祖의 遺業을 이으니 선비들의 마음이 悅服하였으며, 위태로운 나라의 권력을 잡아 사람들의 논란이 없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개소문 사망 후 막리지에 오른 남생은 당에 우호적이었는데, K-2) 「천남생묘지명」의 “公情思內款 事乖中執 方欲出撫邊 外巡荒甸 按 嶠夷之舊壤 請義仲之新官”, “公은 내심 內款을 생각하였으나 일이 중앙에서 집권적으로 되지 않아, 바야흐로 나가 邊境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달래려고 하여 밖으로 荒甸을 巡征하였으니, 고조선의 옛 땅을 다스려 東方을 통치하는 새로운 官職을 당에 요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보장왕은 연개소문 생전 시에 현안에 따라 왕자 고임무 등을 당에 보내 사죄 또는 조문함으로써 대당관계에서 신축성을 보이기도 하였다.⁷⁶ 이로 본다면 보장왕은 태막리지에 새로 취임한 남생과 함께 대당 온건책의 하나로 아들인 복남을 당에 보내 봉선의례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⁷

복남의 봉선의례 참여는 대당 강경노선을 견지해오던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로,⁷⁸ 이후 국정 운영이 분열되었고 당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남건은 대당 강경책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남생이 남건과 남산에게 평양을 맡기고 전국을 순행하는 가운데 형제간의 갈등이 발생하였

76 김영하, 2007, 앞의 책, 108쪽.

77 김영하, 2007, 앞의 책, 109쪽; 김진한, 2011, 앞의 논문, 118~119쪽.

78 김수태는 연남생이 당으로부터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대당 관계 개선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김수태, 1994,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상), 일조각.

다.⁷⁹ 그 과정에서 연남건은 조카인 현충을 죽였으며, 후술되는 사료 M에서 알 수 있듯이 666년 6월에 연남생은 국내성을 기반으로 당에 투항하였다.

이상에서 고구려는 당시 국제관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봉선의례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대내적인 상황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북남의 봉선의례 참여 배경은 취리산회맹과 연개소문의 사망과 연동되어 있었다.

IV. 봉선의례의 의미

5세기 고구려인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주몽설화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천하관은 중국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5세기 고구려인의 천하관의 ‘천’은 자연현상이나 이법이 아닌 인격신인 천제였고 그 천제는 왕실인 조상신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구려인은 중국과 대등한 국제관계를 맺었다. 대표적으로 장수왕이 죽고 문자명왕이 즉위하자 492년에 북위 조정은 새로 등극한 고구려왕의 親朝나 왕자의 입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조정은 이를 묵살하고 대신 從叔을 보냈다. 그러자 북위 효문제는 고구려왕의 동생이라도 보내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응징을 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고구려 조정은 이를 거절하였다.⁸⁰

하지만 고구려인의 천하관은 6세기 말 중국을 통일한 수가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 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다원적인 국제질서하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려는 고구려의 천하관을 근본적으로

79 김영하는 2000, 앞의 논문, 51쪽에서 666년 고구려 태자의 봉선의식 참여에 내분을 확책하는 당의 공작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80 『문관사림』 664, “後魏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一首”; 주보돈, 1992, 「문관사림에 보이는 한국고대사 관련 외교문서」, 『경북사학』 15; 노태돈, 1999, 앞의 책, 315쪽.

부정하는 것이었다.⁸¹ 봉선의례는 그중의 하나였다. 고대 중국의 봉선은 ‘受命王者’만이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입증하는 현실적인 功業과 이에 상응하는 符瑞도 필요하였으며 장소도 반드시 태산에 국한한 특별한 聖典으로 인식되었다.⁸² 때문에 태산에서 행한 봉선의례는 종교적·정치적 의식, 즉 天命에 대한 통치자의 감사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유일자로서의 최고의 지위를 표현하는 유력한 상징적 수단이었다.⁸³

666년 봉선의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것으로, 664년 7월 봉선조서를 반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665년 2월에 당 고종이 장안을 출발하여 낙양에 도착한 후, 10월에 낙양을 출발하여 12월 태산에 도착하여 666년 정월에 봉선을 행하고 4월에 장안으로 돌아오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때의 봉선의례는 후한 광무제의 ‘受命告天’이라는 성격을 이어받고 있지만,⁸⁴ 이것은 한층 더 공적인 것으로⁸⁵ 외국 사신까지도 포함되었다. 당 고종은 고구려까지 참석한 태산 봉선의 국내외적 의미를 “國家無事 天下泰平 華夷乂安 遠近輯睦”으로 자부하였다.⁸⁶ 이것은 비록 관용적 표현일지라도 당의 고구려에 대한 전략이 종래의 전쟁보다는 외교에 의한 복속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⁸⁷

그렇다면 고구려는 봉선의례 참여로 당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제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고구려가 당의 세계질서에 편제되기 앞서 백제와 신라는 이미 당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제되었다. 당은 백제가 멸망하고 그곳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고, 663년 4월에는 일방적으로 신라를 당의 기미주로 선포하여 신라를

81 노태돈, 2009, 앞의 책, 155~156쪽, 178~179쪽.

82 石芳令, 1989, 『中國歷代帝王泰山封禪秘聞』, 經濟日報出版社, 18~20쪽.

83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앞의 책, 372~373쪽.

84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앞의 책, 374~375쪽.

85 봉선의례는 이전의 은밀한 것에서 공개적인 것으로 변모되었다. 김상범, 2002, 「당 전기 봉선의례의 전개와 그 의미」, 『역사문화연구』 17.

86 『책부원귀』 36, 제왕부 37, 봉선 2, 건봉 원년.

87 김영하, 2007, 앞의 책, 109쪽 주69 참고.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임명하였으며⁸⁸ 665년에 김유신을 奉常正卿 平壤郡 開國公 食邑 2,000戶에 책봉하였다.⁸⁹ 취리산회맹은 춘추시대부터 있어왔던 질서로,⁹⁰ 당은 춘추전국시대의 패자와 마찬가지로 회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당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⁹¹ 특히 웅령맹약의 김인문이 취리산회맹 때 문무왕으로 교체된 것도 이와 관련지어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당은 당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고구려까지 참여한 666년 봉선의례는 그 절정이었다. 봉선의례는 당시 동아시아 정치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장이기도 하였다. 고구려 복남은 황제를 알현하고 봉선의례 과정에서 취리산회맹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논의하였을 것이고 당은 고구려에 대한 무력도발을 철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주목된다.

L. 여름 4월 天存의 아들 漢林과 庾信의 아들 三光이 모두 奈麻의 관등으로 당에 들어가 宿衛하였다. 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없애고자 하여 당에 군사를 요청하였다.⁹²

사료 L을 보면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당에 청병하였는데, 이때는 당의 봉선의례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신라의 청병 요구에 당의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아마도 당은 신라의 청병 요구에 주저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복남의 봉선의례 참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

88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3년.

89 『삼국사기』 43, 열전 3, 김유신 하.

90 布山和南, 1996, 앞의 논문.

91 박찬홍, 2006, 앞의 논문, 240~241쪽; 정운용, 2009, 앞의 논문, 63쪽.

92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6년.

지만 다음이 주목된다.

- M. 1) (건봉 원년) 6월 임인일(7)에 고려 천남생이 內附를 요청하였다. 우효위대장군 계필하력을 遼東安撫大使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돕게 하였고 左金吾衛將軍 龐同善과 營州都督 高備을 遼東道行軍總管으로 삼았으며, 左武衛將軍 薛仁貴와 左監門衛將軍 李謹行에게 뒤에서 돕게 했다.⁹³
- 2) (건봉 원년) 6월 임인일(7)에 고려의 막리지 개소문이 죽었다. 그 아들 남생이 그 아버지의 자리를 이었다.⁹⁴ 그 동생인 남건에게 쫓겨나 그 아들 헌성을 보내어 궁궐에 나아가 항복을 요청하였다. 조서로 左驍衛大將軍 契苾何力에게 군사를 이끌고 그를 맞이하게 하였다.⁹⁵
- 3) (건봉 원년) 공은 또 아들 獻誠을 入朝시켰다. 황제가 嘉賞히 여겨 멀리서 공에게 特進, 예전과 같은 太大兄, 平壤道行軍大總管兼使持節按撫大使를 拜授하여, 본래 蕃兵을 거느리고 大總管 계필하력 등과 함께 經略을 책임지게 하였다. 공은 國內 등 6城의 10여 萬戶의 書籍과 轅門을 이끌었음을 뿐만 아니라 木底 등 3城이 교화를 바라 정성을 함께하니, 당에 저항하던 조무래기들은 위태로워지고 날로 달로 궁박해졌다.⁹⁶
- 4) 6월에 고종이 좌효위대장군 계필하력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93 『신당서』 3, 본기 3, 고종. “(乾封元年) 六月壬寅 高麗泉男生請內附 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遼東安撫大使 率兵援之 左金吾衛將軍龐同善 營州都督高備爲遼東道行軍總管 左武衛將軍薛仁貴 左監門衛將軍李謹行爲後援”.

94 이 내용은 5월의 내용이다.

95 『구당서』 5, 본기 5, 고종 하. “(乾封元年) 六月壬寅 高麗莫離支蓋蘇文死 其子男生繼其父位/ 爲其弟男建所逐 使其子獻誠詣闕請降 詔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率兵以應接之”.

96 「泉男生墓誌銘」. “(乾封元年) 公又遣子獻誠入朝 帝有嘉焉 遙拜公特進 太大兄如故 平壤道行軍大總管兼使持節按撫大使 領本蕃兵 共大總管契苾何力等相知經略 公率國內等六城十餘萬戶書籍轅門 又有木底等三城希風共款 叢尔危矣 日窮月蹙”.

맞아들이니, 남생이 몸을 빠져 나와 당으로 달아났다.⁹⁷

사료 M에서 666년 6월에 천남생이 당에 내부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아듯이, 북남의 봉선의례 참여는 고구려 내부에 갈등을 야기했고 북남이 봉선의
례를 마치고 고구려에 돌아왔을 때는 내분이 더욱 심화되어, 666년 6월에 연남
생이 당에 투항하면서 내전 상태가 되었다. 남생의 당 투항에는 현성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⁹⁸ 현성은 6월에 당에 입조하여 향도가 되어 당군과 함께 출발하
고, 9월 당군은 연남생과 합류하였으며, 10월에 당의 고구려 공격이 본격화되
면서⁹⁹ 12월에 당 고종은 대고구려 원정군을 꾸렸다.¹⁰⁰ 666년 12월에는 연정
토가 신라에 귀부하기도 하였다.¹⁰¹

이상과 같이 북남의 봉선의례 참여로 고구려는 위기를 타개한 듯하지만, 고
구려의 내분은 심화되었고 신라는 이 기회를 노려 당에 청병하였던 것이다.¹⁰²
사료 L에서 문무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없애고자 당에 청
병하였으나,¹⁰³ 당은 고구려에 대한 출정을 주저하였다. 하지만 남생의 국내성
탈출을 계기로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침입

97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5년. “六月 高宗命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 帥兵應接之 男生脫身奔唐”.

98 김진한, 2011, 앞의 논문, 119쪽.

99 『구당서』 5, 본기 5, 고종 하. “(乾封元年) 冬十月己酉 命司空英國公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以伐高麗”.

100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5년;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6년.

101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6년.

102 서영교, 2015, 앞의 논문, 81쪽

103 김영하는 당의 관심을 고구려로 돌림으로써 백제를 통합하려는 신라의 전략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김영하, 2010, 앞의 논문, 306~310쪽. 한편 김수태는 백제 멸망 이후 신라는 고구려 멸망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신라는 황산벌에는 5만 명을 보냈지만,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20만 명을 보냈다. 김수태, 2014,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으로 668년 멸망하였다.

봉선의례는 통치자가 천명을 받았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를 통일하여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음을, 즉 하늘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했음을 천지에 알리는 것이었다. 주 武王은 商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늘에 알리기 위하여 태산을 여행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태산으로 가는 것은 강력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온 천하를 점유하였다는 뜻이다.¹⁰⁴ 666년의 봉선의례 역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행한 개선의례는 봉선의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수서』, 예의지에 수 문제 개황 9년에 陳을 평정한 후 宣露布禮가 보이며¹⁰⁵ 『구당서』 태종기 상 무덕 4년(621)에 천하를 大定하고 개선례를 행하였다고 한다.¹⁰⁶ 이와 같은 수 문제와 당 태종의 개선의례는 천하를 평정하고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郊勞·告奠天地祖先·露布告捷·獻俘·飲至·封賞을 하였다.¹⁰⁷ 고구려 멸망 후 당이 행한 개선의례는 다음과 같다.¹⁰⁸

- 1) ① 겨울 10월에 이적이 돌아오려고 하니, 고종이 명령하여 먼저 왕 등을 昭陵에 바치고 군대의 위용을 갖추어 개선을 연주하면서 서울에 들어가 大廟에 바치게 하였다.¹⁰⁹

104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앞의 책, 365쪽.

105 『수서』 8, 지 3, 예의 3, 『자치통감』 개황 9년 4월조에 개선의례가 적기되어 있는데, 遣使迎勞·親勞旋師·獻俘于太廟 등이 보인다.

106 『구당서』 2, 본기2, 태종 상, “四年……六月 凱旋 太宗親披黃金甲 陳鐵馬一萬騎 甲士三萬人 前後部鼓吹 俘二僞主及隋氏器物輦輅獻于太廟 高祖大悅 行飲至禮以享焉高祖以自古舊官不稱殊功 乃別表徽號 用旌勳德”.

107 胡戟 撰, 1998, 『中華文化通志-禮儀志』, 上海人民出版社, 397쪽.

108 당의 개선의식과 관련해서 「개원례」에는 보이지 않지만, 胡戟 撰, 1998, 『中華文化通志-禮儀志』, 上海人民出版社, 393~400쪽에 따르면 군례의 하나로 征伐之禮가 있는데, 그 종류로 1) 出師祭祀, 2) 命將誓師, 3) 凱旋之禮, 4) 師不功與京觀을 들고 있다.

109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7년, “冬十月 李勳將還 高宗命先以王

② (총장 원년 10월) 이적이 이르러고 하니, 황제가 명령하여 먼저 고장 등을 소릉에 바치고 군대의 위용을 갖추어 개선가를 연주하면서 서울에 들어가 태묘에 바치게 하였다.¹¹⁰

2) ① 12월에 황제가 포로를 함원전에서 받았다. 왕은 정치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므로 용서하여 사평태상백 원외동정을 삼고, 천남산은 사재소경을, 승려 신성은 은청광록대부를, 천남생은 우위대장군을 삼았다. 이적 이하의 사람들은 책봉하고 상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천남건은 금주(黔州)로 유배를 보냈다.¹¹¹

② (총장 원년) 12월 정사일(7)에 황제가 포로를 승元殿에서 받았다. 고장은 스스로 정치한 것이 아니므로 용서하여 司平太常伯 員外同正을 삼고, 천남산은 司宰少卿을, 승려 신성은 銀青光祿大夫를, 천남생은 右衛大將軍을 삼았다. 이적 이하는 책봉하고 상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천남건은 黔中으로 유배를 보냈고 扶餘豐은 嶺南에 유배를 보냈다.¹¹²

3) ① (총장 원년 12월) 정묘일(17)에 南郊에서 제사 지냈다.¹¹³

② (총장 원년 12월) 정묘일(17)에 황제가 南郊에서 제사 지내 고구려를 평정한 사실을 알렸는데, 李勣을 亞獻으로 삼았다. 기사일(19)에 太廟를 배알하였다.¹¹⁴

等獻于昭陵 具軍容 奏凱歌入京師 獻于太廟”.

110 『자치통감』 201, 당기 17, 고종. “(總章元年 十月) 李勣將至 上命先以高藏等獻于昭陵 具軍容 奏凱歌 入京師 獻于太廟”.

111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5년. “十二月 帝受俘于舍元殿 以王政非已出 赦以爲司平太常伯員外同正 以泉男產爲司宰少卿 僧信誠爲銀青光祿大夫 泉男生爲右衛大將軍 李勣已下封賞有差 泉男建流黔州”. 본 기사에는 日 이 나오지 않지만, 『삼국유사』와 『신당서』 등에 12월 7일로 나온다. 따라서 12월 7일로 편년하고 편제하였다.

112 『자치통감』 201, 당기 17, 고종.

113 『신당서』 3, 본기 3, 고종. “(總章元年 十二月) 丁卯(17) 有事于南郊”.

114 『자치통감』 201, 당기 17, 고종. “(總章 元年 十二月) 丁卯(17) 上祀南郊 告平高麗 以李勣爲亞獻 己巳(19) 謁太廟”. 『책부원귀』 12, 제왕부 13, 告功. “(唐高宗

사료 O-1)을 보면 황제가 명령하여 먼저 고장 등을 昭陵에 바치게 하였고 군용을 갖추어 개신가를 연주하고 서울로 들어와 太廟에 바쳤다고 한다. 昭陵은 당 태종 이세민과 그의 원비인 장손씨 부부를 합장한 능이다. 이처럼 고종이 소릉에 고장 등을 바치게 한 것은 당 태종의 통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O-2)에서는 당 고종이 포로를 받고 있으며 O-3)에서는 상제에 대한 제사와 태묘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⁵

이와 같은 당의 개선의례는 백제 멸망후 행해진 것과는 비교된다. 당은 660년 7월 18일 백제가 멸망한 후 소정방이 8월 2일 승전축하연과 의자왕의 항복식을 가진 뒤 9월 3일에 의자왕과 왕족 및 그 신하 93명과 백성 1만 2,000명을 데리고 당으로 돌아갔으며,¹¹⁶ 11월 1일에 고종은 낙양의 측천문루에서 그를 받아들인 후 의자왕 이하 모두를 풀어주었다고 한다.¹¹⁷

이처럼 고구려 멸망 후 당이 행한 개선의례는 백제 멸망 후 이루어진 항복식과는 달리 천하의 평정을 선포한 것이었다. 봉선의례가 고구려의 외교적 복속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선의례는 실제적인 고구려의 복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라에서도 고구려 멸망 후 개선의례를 행했는데, 다음이 그것이다.

總章元年) 十二月 帝親祠南郊 以高麗平昭告上帝”.

- 115 『당회요』에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이 12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회요』 95, 고구려. “總章元年 十二月 至新豐 詔取便道俘於昭陵 乃備軍容 奏凱樂 獻於太廟 詔以高藏政不由己 赦其罪 授司平太常伯 男產授司宰少卿 男建配流黔州 分其地置都督府九 州四十二 縣一百 又置安東都護府以統之 移其戶二萬八千於內地”.
- 116 『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삼국사기』 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
- 117 『구당서』 4, 본기 4, 고종 상. “顯慶五年(660) 八月庚辰(2) 蘇地方等討平百濟 面縛其王扶餘義慈 國分爲五部 郡三十七 城二百 戶七十六萬 以其地分置熊津等五都督府 曲赦神丘·禺夷道總管已下 賜天下大酺三 …… 十一月戊戌朔 邢國公蘇地方獻百濟王扶餘義慈·太子隆等五十八人俘於則天門 責而有之”; 양종국, 2003, 「의자왕과 백제 멸망의 역사적 의미-의자왕에 대한 재평가(2)」, 『호서사학』 36, 7~8쪽 참고.

- P. 1) 11월 5일에 왕이 포로로 잡힌 고구려 사람 7,000명을 거느리고 서울에 들어왔다.
- 2) 6일에 文武 관료를 거느리고 先祖廟를 찾아 뵙고 아뢰어 말하였다. “삼가 선조들의 뜻을 이어 당과 의로운 군사를 같이 일으켜 백제와 고구려에게 죄를 묻고서 원흥에게 죄를 물어 나라의 앞날이 크게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니, 신이시여 들으소서.”
- 3) 18일에 전쟁에서 죽은 자에게 물건을 주어 위로하였는데, 少監 이상에게는 10□□필, 從者에게는 20필을 주었다.¹¹⁸

사료 P-1)에 따르면 문무왕 8년 11월 5일에 왕이 고구려 사람을 사로잡아 왔고 6일에 왕은 문무 신료와 함께 ‘先祖廟’를 배알하여 당과 협력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실을 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3)에서 11월 18일에 죽은 자를 추증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문무왕 8년 왕이 親臨한 고구려 토벌전에 대한 개선의식의 하나로 여길 수 있다.¹¹⁹

그런데 신라의 개선의례는 당이 상제에 대한 제사를 지낸 후 태묘에 대한 제사를 지낸 것과는 달리 선조묘에만 알렸다. 신라는 진덕왕대 이후 중국 제도를 수용하고 운용¹²⁰하는 과정에서 당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질서에 편제되어갔는데, 개선의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 멸망 후 행한 개선의례는 의자왕이 660년 7월 18일에 항복하자 신라에서 천복을 보내 백제

118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8년. “1) 十一月五日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2) 六日 率文武臣僚 朝先祖廟 告曰 祇承先志 與大唐同舉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凶伏罪 國步泰靜 敢茲控告 神之聽之 3) 十八日 賚死事者 少監已上十□□匹 從者二十四 ……”.

119 채미하, 2010, 「신라의 군례 수용과 왕권」, 『한국사연구』 149; 채미하,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 117~118쪽.

120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2006,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 - 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149; 채미하, 2015, 앞의 책, 30~37쪽.

를 멸망시켰음을 알린 것¹²¹과는 비교된다. 따라서 신라의 개선의례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신라가 편제되어갔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신라가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평정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에서 고구려 복남의 봉선의례 참여는 고구려 주도의 질서체계가 무너지고 당 중심으로 고구려가 편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복남의 봉선의례 참여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고구려의 내분과 신라의 청병 등으로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였다. 이후 거행된 당의 개선의례가 당이 천하를 평정했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라의 개선의례는 백제·고구려를 평정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한 것이라고 하였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7세기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고구려가 666년의 봉선의례에 참여한 목적과 의미를 당시의 국제정뿐만 아니라 의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건봉 원년(666) 봉선의례는 당 고종이 664년 7월 봉선조서를 반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665년 2월에 장안을 출발하여 낙양에 도착한 후, 10월에 낙양을 출발하여 12월 태안에 도착하여 666년 정월에 봉선을 행하고 4월에 장안으로 돌아오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은 666년 봉선의례는 주변 국가의 왕족과 사신이 다수 참석한 유례없는 대규모 의식이었고 봉선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황후인 측천무후가 아현으로 참여하였다. 여기에 고구려와 신라·백제도 참여하였

121 『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 무열왕 7년. “王聞義慈降(七月)二十九日自今突城至所夫里城 遣弟監天福 露布於大唐”.

는데, 신라·백제는 함께 갔으나 고구려는 단독으로 갔으며 태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황제를 알현하였다.

신라의 김인문, 웅진도독부의 부여웅은 봉선의례에 참여하러 가기 직전인 665년 8월 13일에 당이 주선하여 취리산회맹을 맺었다. 취리산회맹은 당의 강압에 의해 신라가 백제와 신라의 영토를 확정지은 것으로, 664년 2월의 웅령맹약이 그 토대였다. 당은 웅령맹약을 통해 백제의 명맥을 유지시켜주면서 신라를 견제하고 고구려 침략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신라의 수동적인 태도로 웅령맹약이 잘 지켜지지 않자, 회맹이라는 형식을 구성하고 문무왕을 회맹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양국의 경계를 확정지었다. 이와 같은 취리산회맹은 당의 봉선의례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이를 통해 당은 신라와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봉선의례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보았다.

당시 국제정세에 밝은 고구려는 앞서 행해진 취리산회맹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복남은 665년 10월에 당에 들어가 황제를 알현하였다. 복남을 당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8월 13일을 전후한 시점이며, 연개소문이 살아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연개소문의 사망은 취리산회맹 이전으로, 연개소문의 사망으로 고구려의 봉선의례 참여는 탄력을 받았다고 하였다.

봉선의례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장이기도 하였다. 당은 고구려 멸망의 뜻을 분명히 하였지만, 취리산회맹을 통해 고구려의 봉선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봉선의례 참여로 당은 고구려에 대한 무력도발을 철회하려고 하였다고 보았다. 이것은 봉선의례가 끝나는 시점에서 신라의 청병 요구에 주저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복남의 봉선의례 참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복남의 봉선 참여로 고구려는 내분이 일어났고 내전으로 발전하면서 남생이 당에 귀부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는 멸망하였다.

당의 봉선의례가 고구려에 대한 외교적인 복속의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면

고구려 멸망 후 행해진 당의 개선의례는 실제적인 복속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것은 백제 멸망 이후 행한 개선의례와 비교되는 것이며, 고구려 멸망 후 개선의례를 행함으로써 천하의 평정을 만방에 선포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개선의례는 조고묘에 대한 제사만을 행한 반면 당의 개선의례는 남교에서도 행하였다. 이를 통해 당은 개선의례도 봉선의례와 마찬가지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신라를 편제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라의 개선의례는 백제 멸망 후 당에게 알린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신라의 백제·고구려 평정의 의미도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金一出, 1949, 「春秋會盟論考」, 『歷史學研究』 1, 歷史學會.
- 김상범, 2002, 「당 전기 봉선의례의 전개와 그 의의」, 『역사문화연구』 17.
- 김수태, 1994,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 김수태, 2014,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리사학보』 32.
- 김영관, 2009, 「취리산 동맹과 당의 백제 고토 지배 정책」, 『선사와 고대』 3.
- 김영하, 2000, 「고구려 내분의 국제적 배경 - 당의 단계적 전략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10.
- 김영하, 2007,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 김영하, 2010,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 김진한, 2011, 「보장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 변화와 그 배경」, 『고구려발해연구』 39.
-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세계절.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 박찬홍, 1996, 「665년 신라 · 백제 · 당나라의 취리산회맹문」, 『내일을 여는 역사』 26, 신서원.
-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 서영교, 2014, 「당 고종 백제철병 칙서의 배경」, 『동국사학』 57.
- 서영교, 2015, 「건봉원년(666) 봉선문제와 당의 대고구려 정책」, 『대구사학』 120.
- 양중국, 2003, 「의자왕과 백제 멸망의 역사적 의미 - 의자왕에 대한 재평가(2)」, 『호서사학』 36.
- 양중국, 2004, 『백제 멸망의 진실』, 도서출판 주류성.
- 양중국, 2006, 「백제 부흥운동과 웅진도독부의 역사적 의미」, 『백제문화』 35.
- 양중국, 2009, 「웅진도독 부여릉과 신라 문무왕의 취리산회맹지 검토」, 『선사와 고대』 3.
- 이도학, 1987, 「웅진도독부의 지배 조직과 대일본정책」, 『백산학보』 34.

- 이상상·신영호, 2001, 「연미산석단과 취리산축단」, 『공주박물관기요』 창간호.
- 이현숙, 2009, 「취리산 유적의 고고학적 검토」, 『선사와 고대』 3.
- 정운용, 2009, 「취리산회맹 전후 신라의 대백제 인식」, 『선사와 고대』 31.
- 주보돈, 1992, 「문관사림에 보이는 한국고대사 관련 외교문서」, 『경북사학』 15.
- 지현영, 1967, 「웅령회맹·취리산회맹의 築壇 위치에 대하여」, 『어문연구』 3, 어문연구학회.
- 채미하, 2006,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 - 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149.
- 채미하, 2010, 「신라의 군례 수용과 왕권」, 『한국사연구』 149.
- 채미하,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
-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 石芳令, 1989, 『中國歷代帝王泰山封禪秘聞』, 經濟日報出版社.
- 池内宏, 1934,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4, 東京大出版部.
- 池内宏, 1960, 『滿鮮史研究』 上世 2, 吉川弘文館.
- 布山和南, 1996, 「新羅文武王五年の會盟にみる新羅唐關係」, 『駿大史學』 99.
- 胡戟 撰, 1998, 『中華文化通志 - 禮儀志』, 上海人民出版社.

666년 고구려의 唐 封禪儀禮 참여와 그 의미

채미하

본 연구는 고구려가 건봉 원년, 666년 당의 봉선의례에 참여한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666년 정월에 행해진 당의 봉선의례는 주변 국가의 왕족과 사신이 다수 참석한 유례없는 대규모의 의식이였다. 여기에 고구려 복남이 참여하였는데, 신라의 김인문과 백제의 부여용이 함께 당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고구려 복남은 따로 당에 들어갔으며 태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당 고종을 알현하기도 하였다.

665년 8월 13일 신라 문무왕이 당의 강압에 의해 백제 부여용과 양국의 영토를 확정짓는 취리산회맹은 664년 2월의 웅령맹약이 그 토대였다. 당은 취리산회맹을 통해 백제의 명맥을 유지시켜주면서 신라를 견제하고 고구려 침략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당시 국제정세에 밝은 고구려는 취리산회맹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복남을 당의 봉선의례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연개소문의 사망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연개소문은 취리산회맹 이전에 사망하였다고 보았다.

취리산회맹은 당이 봉선의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취리산회맹을 통해 당은 신라와 백제의 봉선의례 참여를 확정지었고 고구려의 봉선의례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은 고구려 멸망의 뜻을 분명히 하였지만, 고구려 복남의 봉선의례 참여로 고구려에 대한 무력도발은 철회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봉선의례가 끝나는 시점에서 신라의 청병 요구에 당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구려 복남의 봉선의례 참여는 고구려가 당에 외교적으로 복속되었다고 한다면 고구려 멸망 후 행해진 당의 개선의례는 고구려가 당에 실제적으로 복속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신라 역시 고구려 멸망 후 개선의례를 행하였는데, 이것은 진덕왕대 이후 신라가 당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에 편제되어 가는 모습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주제어: 봉선의례, 당 건봉 원년, 666년, 고구려, 백제, 신라, 복남, 김인문, 문무왕, 부여웅, 응령맹약, 취리산회맹, 개선의례

ABSTRACT

The Reasing of Goguryeo's Participating in Bongseon Ceremony in 666 and Its Meaning

Chai Miha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Goguryeo's participation in Tang's Bongseon ceremony and its meaning in 666, Geonbong first year. Bongseon ceremony performed in January 666 was unprecedentedly large, participated by many loyal families and envoys of neighbor nations. Boknam from Goguryeo participated here and he went to Tang separately from Silla and Baekje while Kim Inmun from Silla and Booyeoyung from Baekje went together. He also paid a visit to King Gojong of Tang before leaving for Taesan.

King Munmu of Silla made Chirisanhoimaeng with Buyeoyung of Baekje forced by Tang to confirm the territorial borders of each nations in Aug 13, 665 and it was based on Woongryeongmaengyak in Feb 664. Tang intended to maintain Baekje's existence, keep Silla in check and prepare the outpost to invade Goguryeo. Goguryeo needed to hold back Chirisanhoimaeng with their knowledge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so that Boknam decided to participate in

Bongseon ceremony of Tang. This fact was connected with the death of Yeongesomun and it was thought Yeongesomun was dead before this.

Chirisanhoimaeng was made in the course of preparing Bongseon ceremony, and Tang decided the participation of Silla and Baekje in Bongseon ceremony and induced Goguryeo's participation too. Thus, Tang had made clear their intent to invade Goguryeo, but reconsidered it on account of Boknam's participation in Bongseon ceremony, as Tang did not respond to Silla's request for a dispatch of troops after ending Bongseon ceremony.

The Boknam's participation in Bongseon ceremony could be Goguryeo's diplomatic subjection to Tang but, in fact, Tang's Gaeseon ceremony after Goguryeo's collapse meant Goguryeo was subjected to Tang. Silla also performed Gaeseon ceremony after Goguryeo's collapse, and this showed the independent aspect of Silla after King Jindeuk period different from Silla's being organized to Tang's unitary world.

Keywords: Bongseon ceremony, Tang Geonbong first year, in 666, Goguryeo, Baekje, Silla, Boknam, Kim Inmun, king Munmu, Buyeoyung, Woongryeongmaengyak, Chirisanhoimaeng, Gaeseon ceremony

중국의 역사지도 편찬에 관한 기초연구 - 역사지리학의 관점

전종한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이명희 | 경희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 II. 역사지도집의 성격과 제작 목적, 내용 체계
- III. 지도학적 표현상의 특징과 주요 기법
- IV. 역사지도집에 대한 중국 내부의 평가와 연구 동향
- V. 맺음말

I. 머리말

역사지도(historical map)는 역사 속의 지리적 사실과 현상들을 현재의 관점에서 표현한 주제도를 말하고, 역사지도집(historical atlas)이란 일련의 역사지도를 책자 형식으로 엮은 것을 가리킨다. 역사지도 및 역사지도집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지리학의 고전적 전통¹이라 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지리적 변화(geographical changes through time)’와 ‘과거지리(past geographies)’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다음 단계로 역사지리학·지리학·역사학·고고학·민족학·지도학 등의 관련 분야들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각 분야의 선행 연구 성과들이 ‘과연 역사지도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타당성과 신뢰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를 놓고 충분한 학제적 검토와 일반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때 지도학 분야는 과학적 절차에 의거한 지도화 작업을 담당하는데, 필요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종이지도의 전자지도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학제적 협력 과정 속에서, 역사지리학은 역사지도집의 전체적 편찬 방향과 편집 지침, 내용 체계, 기본도 설정, 역사지도집에 수록해야 할 역사 지명의 선별과 분류 및 목록화, 시대나 주제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는 내용 요소와 그에 적절한 표현 방식, 각각의 역사지도에 대한 해제 등에 관해 연구하고 그

* 투고: 2017년 2월 15일, 심사 완료: 2017년 5월 18일, 게재 확정: 2017년 5월 19일

- 1 전중환·류제현, 1999, 「英美 歷史地理學의 최근 동향과 社會歷史地理學」, 『문화역사지리』 11, 170~171쪽; 류제현, 2002, 「문화·역사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양보경, 2002, 「전통지리학: 연구와 전망」,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전중환, 2002, 「역사지리학 연구의 古典의 傳統과 새로운 노정 -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215~252쪽; 김중근, 2015, 「한국 역사지리학의 경향과 과제」, 『역사와 현실』 95, 302~303쪽.



그림 1 『중국역사지도집』(좌)과 『중화인민공화국국가역사지도집』(우)

결과를 지도 제작에 반영하는 일들을 주로 담당한다. 이렇게 역사지도 및 역사지도집 제작과 관련한 역사지리학의 역할과 책무를 인식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 편찬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석에 접근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사지도집 제작은 역사지리학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세기 이후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1982~1987, 총8책)과 『중화인민공화국국가역사지도집(中華人民共和國國家歷史地圖集)』(2012~2016 진행 중, 총3책, 이하 『중국국가역사지도집(中國國家歷史地圖集)』이라 칭함)을 잇따라 발간하였다(그림 1). 그 결과, 현대 중국에서 역사지도집의 연구와 제작, 그리고 편찬 작업은 중국 역사지리학의 가장 특징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 최대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譚其驤 主編, 1982, 「前言」).

대략 19세기 이전까지 중국 대륙에서는 역사학의 보조 분야로서 역대 왕조의 강역 변화와 행정구역 변천을 정리하거나 기술하는 소위 ‘연혁지리(沿革地理)’가 발달하였다. 다시 말해 연혁지리는 중국의 전통적 역사지리학을 대변한다. 20세기 이후 연혁지리 중심의 중국의 전통적 역사지리학은 영어권의 ‘역사

지리학(historical geography)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연구 영역 및 방법론을 더욱 확장하는 기회를 얻었다(최은진·류현정, 2016, 207).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의 역사지리학은 역사 이해를 위한 보조 분야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나 고유한 연구 영역과 주제를 새롭게 확보해왔고, 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인 영역임과 동시에 지리학의 한 분야로 재인식되고 있다(Weimin Que, 1995, 364). 현대 중국의 역사지리학은 전통적 연구 영역이었던 강역 변화와 행정구역 변천 외에도 역사자연지리·역사인문지리·역사지역지리·역사지리학사 등을 세부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고, 역사지도집의 연구와 발간을 주된 목표로 삼는 역사지도학 또한 오랜 전통을 가진 최근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이다.²

역사지도집은 1차적으로 지도 제작의 절차와 기준에 근거하여 자료 파악의 정확성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토대로 산출되는 과학적 결과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역사지도집은 제작 주체의 공간 개념, 문화적 관념, 정치적 권력이나 이데올로기 지향,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이기도 하다(J. A. Millward, 1999, 62).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역사지도집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관점과 함께 모종의 텍스트로서 그 속에 내포된 의미의 층위를 해석해 보려는 시각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중국역사지도집』(1982~1987)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2014)을 현대 중국 역사지리학계에서 내놓은 핵심적 성과로

2 영어권 역사지리학계의 경우를 보면, 1920~1930년대 영국에서는 역사지리학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역사지리학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21년 영국 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있었으며, 1932년에는 ‘역사지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지리학회와 역사학회 간에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historical geography’를 지리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게 된다. J. E. Morris, et al., 1932, p.42. 그리고 영국의 역사지리학자 R. A. Butlin은 18세기 이후 역사지리학의 학사(學史)를 회고하면서 20세기 후반까지 개척된 주요 연구 주제로서 지형과 해안선의 변화, 경관, 권력과 통제, 촌락사회, 도시화, 산업화, 교통과 무역 등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연구 사례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R. A. Butlin, 1993; 전중환, 2002, 216쪽에서 재인용.

간주한 다음, 이 두 질의 역사지도집을 한편으로는 분석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하고자 한다. 다만, 이들 역사지도집은 발간 배경과 목적, 참여 인력, 내용 등에서 상당 부분 중첩되는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주된 분석 및 해석의 대상은 『중국역사지도집』으로 하고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전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교 서술하기로 한다.

앞에서 강조했다듯이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20세기 이후의 현대 중국 역사지리학계가 생산한 대표적 성과이다. 중국에서는 3세기 서진(西晉)의 배수(裴秀)가 ‘제도육체(製圖六體)³’의 이론을 적용해 만든 <우공지역도(禹貢地域圖)>와 8세기 당의 가담(賈耽)이 그린 <해내화이도(海內華夷圖)>를 초창기 주요 역사지도로 내세운다.⁴ 그 후 11세기 말 세안례(稅安禮)가 『역대지리지장도(歷代地理指掌圖)』라는 역사지도집을 발간하였는데, 이 안에는 소위 황제(黃帝)시대부터 북송에 이르는 44폭의 역사지도가 수록되었다. 그 뒤로도 중국에서는 많은 역사지도집들이 발간되었는데, 현대 중국에서 간행된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역대 중국의 역사지도(집)에 기록된 주요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국가가 지원 혹은 주도하여 진행된 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중국에서 출판된 두 역사지도집의 전체적 성격과 제작 목적, 지도학적 표현상의 특징과 주요 기법, 역사지도집 간행의 배후에 존재하는 정치적 의도 및 ‘중국(中國)’에 대한 개념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
- 3 제도육체란 서진의 배수가 정리한 중국 최초의 지도제도학 이론을 말한다. 제도육체, 다시 말해 ‘지도 제작을 위한 여섯 가지 요소’란, 분율(分率)·준망(準望)·도리(道里)·고하(高下)·방사(方邪)·우직(迂直)을 지칭한다. 여기서 분율은 축척, 준망은 방위, 도리는 거리, 방사는 지면 경사도, 우직은 고저의 기복과 지도상의 거리를 각각 의미한다. 제도육체는 지도 제작에 있어 이들 여섯 가지 요소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서진 시기 이후 중국의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지도 제작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4 <우공지역도>와 <해내화이도>는 문헌기록으로 전할 뿐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니라, 장차 우리나라의 역사지도집 제작을 위한 절차상의 기초 정보와 유념 혹은 경계할 점, 편찬 방향과 제작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지식, 역사지명을 비롯한 역사지리정보의 분류 및 체계화, 연구 및 제작 시스템의 구축 등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역사지도집의 성격과 제작 목적, 내용 체계

1. ‘역사상(歷史上)의 중국’의 재현인 역사지도집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 편찬 과정을 논할 때 탄치시양(譚其驤, 1911~1992)이라는 역사지리학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중국역사지도집』의 편찬을 책임 주도한 주편(主編)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도집편찬위원회의 위원 겸 상무위원, 그리고 『중국국가역사지도집』 편찬위원회의 부주임위원 겸 총편찬을 맡았던 인물이다. 현대 중국에서 발간된 국가 차원의 역사지도집들은 역사지도에 대한 그의 정신세계와 인식을 가시화한 것이고, 소위 ‘역사상의 중국(歷史上의中國)’이라는, 그의 ‘중국의 강역에 대한 관념’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편찬 과정과 내용 분석을 하기에 앞서 그의 ‘역사상의 중국’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우선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1981년 5월 하순에 열린 중국민족관계사연구좌담회(中國民族關係史研究座談會)에 강연자로 초빙된 탄치시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위대한 조국은 각 민족의 인민, 즉 변방 지역의 다양한 민족이 공동으로 건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상의 중국’을 중원 왕조와 동일시(국한)할 수 없다. 우리는 진, 한·수·당·송·원·명 등의 중원 왕조만 그릴 수는 없고, 전체 중국의 역사를 그려낼 필요가 있었다. 각 시기의 전체 중국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⁵
(방점 및 따옴표는 필자가 표시)

위 글에서 탄치시양은 ‘전체 중국’에 상당한 애국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중국역사지도집 편찬에 있어 ‘전체 중국’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전체 중국’이란 어떤 시기, 어느 범위까지의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상의 중국’, 이 문제를 처리했을까? 우리는 청초(淸朝)가 완전히 통일된 후부터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기 전까지의 중국의 판도, 즉 1750년에서 1840년대 아편전쟁 이전까지의 중국 판도를 우리 역사 시기의 중국의 범위로 정했다. 역사 시기의 중국은 이 범위를 말한다. 몇 백 년이든, 몇 천 년이든 이 범위 안에서 활동했던 민족들을 우리는 ‘중국사상(中國史上)의 민족’으로 간주했다.⁶ (방점은 필자가 표시)

그는 왜 현대 중국도 아니고 고대나 중세의 중국도 아닌, 청 시기의 중국, 그것도 청초가 영토를 최대한 확장했던 아편전쟁 이전 시기의 중국을 ‘역사상의 중국’ 또는 ‘전체 중국’이라 주장한 것일까? 그의 논리는, 먼 과거에도 ‘중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특정 시기의 중국 개념을 ‘역사상의 중국’이라 볼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의 범위 역시 역사상의 중국이라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고대와 중세 시대의 중국이 당대의 중국일 뿐 역사상의 중국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20세기 이후의 현대 중국 역시 제국주의의 침탈 이후 연해주,

5 譚其驥, 1991,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第1期, 1쪽.

6 譚其驥, 1991, 위의 글, 2쪽.

몽골 등의 일부 영토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상의 중국’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에 근거해 그는 ‘청조의 최대 강역’을 역사상의 중국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청조의 판도를 왜 역사 발전 중 자연히 형성된 것이라 하는가? …… 역사의 발전에 따라 변강 각 민족과 중원의 한족 사이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져 하나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17, 18세기가 되면 역사의 발전은 중국에 하나의 통일 정권을 형성할 것을 필요로 하였다. 중원 지역과 변강 지역을 통일된 하나의 정권으로 묶는 것이다. 청조는 이러한 역사 발전의 추세에 순응하여 통일의 임무를 완수했던 것이다.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것은 중원은 변강 지역을 필요로 하고 변강은 그것보다 더 중원 지역을 필요로 하며, 하나의 정권 아래 통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원 인민에게 유리한 것이며 변강 민족에게는 더욱 유리한 것이다.⁷ (방점은 필자가 표시)

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중국은 고대로부터 수천 년 동안 통일과 분열을 거듭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점차 완성된 의미의 통일을 이룩해 왔는데,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아 영토가 훼손되기 이전인 1750년대부터 1840년대 사이의 중국의 범위가 몇 천 년의 역사 발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국’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역사 발전이 중원과 변강 지역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17, 18세기의 중국 통일은 역사 발전의 요청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때마침 등장한 청조는 거기에 순응한 것이고, 그래서 청조의 최대 강역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것은 중원 지역에게도 유익한 것이지만, 변강 지역에게는 더욱 유리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이다.⁸

7 譚其驥, 1991, 위의 글, 3쪽.

8 최근 거젠승(葛劍雄)은 진시황부터 청대 극성 시기까지 확장된 중국의 강역은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내용에 대해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논리로 전개시켰다는 사실을 밝

그리고 이러한 ‘역사상의 중국’은 단지 관념에 머물지 않고 1982년 드디어 역사지도집의 공식 간행으로 실천된다.⁹ 『중국역사지도집』의 「전언(前言)」에서 탄치시앙은 청 시기 여지학(輿地學)을 집대성한 양서우징(楊守敬)의 『역대여지도(歷代輿地圖)』 34책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양서우징의 지도는 중원 왕조의 직할 지역만을 그렸을 뿐이다. 심지어 중원 왕조조차 완전하게 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조국은 몇 십 개의 민족이 공통으로 만든 것으로 각각의 역사시대에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중원 왕조에 예속을 당했던 자립 정권을 유지했던 간에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그리는 지역 범위는 응당 각 변방 민족의 분포지와 그들이 건립한 정권의 판도를 포함시켜야 한다.¹⁰ (방점은 필자가 표시)

탄치시앙은 또한 이 지도집의 「총편례(總編例)」에서 ‘중국의 공간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1981년의 자신의 강연 내용을 재차 옮겨 적는다.

1750년대 청조가 통일을 완성한 이후부터 1840년대 제국주의 침입 이전까지의

히고 있다. 그의 설명은, 현대의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개념이 형성되기 전 세계 대부분의 열강 국가도 중국과 같은 침략 확장의 과정으로 생존과 발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에서 벌어진 여러 왕조(진·한·당·원·청 등)의 침략으로 인해 확장된 국토 역시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통일 확장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다. 葛劍雄, 2012, 「地圖上的中國與歷史上的中國疆域—讀《中國歷史地圖集·前言》,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感言」,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8쪽.

9 『중국역사지도집』의 공식 간행본은 1982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했으나, 내부 검토본은 이미 1974년부터 출판되었다. 내부 검토본은 중국 내 유관기관 및 학술단체의 검토 과정을 거쳐 1980년 중국사회과학원의 주도 아래 수정과 보충 작업을 수행하였고, 1982년에 비로소 공식 출간되었다. 譚其驥 主編, 1982, 「前言」, 『中國歷史地圖集』.

10 譚其驥 主編, 1982, 「前言」, 『中國歷史地圖集』.

중국 판도는 몇 천 년의 역사 발전이 형성한 ‘중국의 범위’이다. 역사 시기에 이 범위 안에서 활동했던 민족들은 모두 중국사상(中國史上)의 민족이며, 이들이 건립한 정권은 모두 ‘역사상(歷史上)의 중국’의 일부분이다. 이 지도집은 이 범위 내의 역사상 각 민족, 각 정권의 강역과 행정구획을 모두 확실하게 그렸다.¹¹

위의 두 글에서 탄치시앙은 ‘중국의 역사는 대륙의 통일을 향한 몇 천 년의 여정이었다’는 입장에서 ‘청 시기의 강역을 몇 천 년의 역사 발전이 형성한 완성된 중국의 범위’라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출몰했던 모든 민족들과 그들이 세운 정권이 모두 중국사상의 민족이며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라 주장한다. 이와 같이 『중국역사지도집』은 탄치시앙이 구상한 ‘역사상의 중국’과 ‘중국사상의 민족’ 개념의 재현에 다름없다.

2. 현대 역사지도집의 제작 배경과 과정

탄치시앙이 집필한 『중국역사지도집』, 「전언」에 의하면, 이 역사지도집은 1930년대 구계강(顧頌剛, 1893~1980)이 우공학회(禹貢學會)라는 중국역사지리학회를 창립하고 역사지도집을 학회 중점사업의 하나로 정한 데에서 시작된 것이다. 역사지도집을 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기본도(바탕도)로 삼을 현대 지도를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경비와 인력의 한계, 그리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중단되어 결국 해방 후 현대 중국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역사지도집을 현대 중국에 이르러서야 발간할 수밖에 없었던 학술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탄치시앙은, 상세하고 정밀한 현대 지도는 역사지도의 선결 조건인데 해방 전의 중국 정부는 기술적·재정적으로 그러한 여건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든다. 또 역대 강역과 행정구역·성읍·수계 등의 지리적 요소의 변천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문헌마다 기록에 차이가 있기 때문

11 譚其驥 主編, 1982, 「總編例」, 『中國歷史地圖集』.

에 정확한 고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도 위에 위치와 지점과 선을 확정하는 것은 업무량이 번잡하고 거대하여 다수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구되는데, 해방 전의 중국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¹²

20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에서는 청 시기의 양서우징이 당대 문인들의 협력 아래 편찬한 『역대여지도(歷代輿地圖)』(총34책)를 전통 ‘여지학(輿地學)’, 말하자면 중국 국토학의 집대성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현대 중국에서 역사지도집을 편찬하기로 한 계기 역시 『역대여지도』의 개정본을 만든다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1954년 개정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듬해인 1955년에는 베이징에서 작업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편찬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원회는 『역대여지도』를 개정하여 편찬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지도집의 편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된다.

첫째, 양서우징의 『역대여지도』는 중원 왕조의 직할 지역만 그렸을 뿐이고 그조차 완전하게 담지 못했으므로 중원 왕조 외에도 그에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변방 민족과 그들의 강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역대여지도』는 1863년에 간행된 『대청일통여도(大清一統輿圖)』를 저본으로 제작된 것인데, 『대청일통여도』와 현대의 지도 투영법은 차이가 매우 커서 현대 지도에 옮겨 그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현대 지도를 바탕으로 그 위에 위치와 선을 재확정하고 다시 표시해야 한다. 셋째, 『역대여지도』는 누락된 것과 오류를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자료를 찾아서 일일이 고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바로잡고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역사지도집 발간을 위한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편찬위원회와 그 산하 조직은 확대되었고, 당초 베이징에서 시작했던 편찬 작업은 1957년 상하이의 푸단대학(復旦大學)으로 옮겨 지속하게 된다. 편찬 작업은 편찬위원을

12 譚其驥 主編, 1982, 「前言」, 『中國歷史地圖集』.

5인 1조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는데, 참여 인력은 적게는 20~30인부터 많게는 70~80인이었다. 편찬위원회에서는 전체 원고를 1967년에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문화혁명(文化革命)으로 인해 지체되다가 1973년에 이르러 편집본이 완성되었다. 1974년에는 내부 검토본이 출판되어 중국 내의 유관기관과 학계의 평가를 받았고, 1980년부터는 중국사회과학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내부 검토본에 대한 수정과 보충 작업을 거쳐 1982년에 비로소 『중국역사지도집』 총8책이 공식 출판되었다.

『중국역사지도집』은 국가 지도자가 계기를 제공하여 발간한 것이기는 하지만,¹³ 기본적으로 민간 학술단체가 주도하고 국가 기관(중국사회과학원)이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편찬된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1956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직접 제정한 ‘국가과학발전 12년 계획’에 따라 국가 중점과학연구사업의 하나인 ‘국가지도집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58년부터 국가지도집 편찬이 시작되었는데, 보통지도·자연지도·역사지도·경제지도 등 네 종류의 지도집을 차례로 발간하기로 계획되었다. 그 결과 1965년 『중화인민공화국자연지도집(中華人民共和國自然地圖集)』이 출간되었고, 그 후로는 문화혁명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면서 보통지도집은 성(省) 부분만 완성된 채 1969년 『중화인민공화국분성지도(中華人民共和國分省地圖)』

13 1954년 가을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 중이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우한(吳哈)과의 대화에서 ‘역사책을 읽을 때 역사지도집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였다. 우한은 청말(清末) 양서우징의 『역대여지도』가 내용이 상세하고 정사(正史) 지리지(地理志)의 주현(州縣)을 모두 그려 넣어 도움이 되는 지도집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이에 우한은 『역대여지도』의 개정 작업을 건의하였고, 마오쩌둥이 이에 찬성하면서 우한을 책임자로 정했다. 우한은 동료들과 의논한 후, 상하이 푸단 대학에 있던 탄치시양에게 베이징으로 와서 지도집을 편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중국 최초의 현대 역사지리학회인 우공학회(禹貢學會)를 이끌고 있었던 탄치시양은 1957년 1월 13일부터 2년여 동안 베이징에 머물게 된다. 최은진·류현정, 2016, 「譚其驥의 『中國歷史地圖集』 編纂과 中國現代歷史地理學의 誕生」, 『중국사연구』 103, 208~209쪽. 이를 계기로 시작된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 편찬 사업은, 뒷날 『역대여지도』 개정 작업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중국역사지도집』의 편찬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겨우 발행되었다.

편찬위원회가 집필한 『중국국가역사지도집』, 「총서(總序)」에 의하면, 문화 혁명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 10여 년 뒤인 1980년의 제5차 정협당무위원회(政協當務委員會)에서 ‘국가지도집이 국가계획 아래 편찬되어 공개 출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개진 및 수용되었고, 1981년 국무원(國務院)은 국가과학위원회·국가측회총국·중국과학원·중국사회과학원이 제출한 ‘국가지도집의 지속적인 편찬 출판 지시 보고’를 비준하였다. 이 때 국가역사지도집 외에 국가보통지도집·국가자연지도집·국가농업지도집·국가경제지도집이라는 다섯 종류의 국가지도집 편찬 사업이 입안되었다.

3. 전체 내용 체계와 편찬 지침, 그리고 도조(圖組) 구성

전체 내용 체계의 면에서 탄치시양 주편의 『중국역사지도집』을 시기별 역사지도집이라 한다면 국가지도집편찬위원회의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주제별 역사지도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일련의 역사지도를 통상적 역사 시기별로 엮은 것에 비해, 후자는 민족·인구·도시분포·성시(城市)유적·기후·자연재해 등 주제별로 엮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두 지도집의 내용 체계와 분량, 구성 방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공통적으로 「총편례」를 두어 역사지도집의 편찬 원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내용 체계와 편찬 지침상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춘추전국 시기 이전의 국경은 상고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표시하지 않았고, 그 대신 시기별 주요 유적 분포도를 중심으로 해당 시기의 지리적 상황을 보여주었다. 국경 표시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로 알려진 진(秦) 시기의 역사 지도에 처음 등장한다. 진(秦) 이후의 국경 표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첫째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안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 상세하고 확실한 문헌 근거가 있을 것, 셋째 앞의 두

표 1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의 내용 체계와 구성 방식

구분	내용 체계		구성 방식
	목차	비고	
『중국 역사 지도집』 (총8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책(63쪽): 원사사회 시기, 하(夏) 시기, 상(商) 시기, 서주(西周) 시기, 춘추(春秋) 시기, 전국(戰國) 시기 -2책(88쪽): 진(秦) 시기, 서한(西漢) 시기, 동한(東漢) 시기 -3책(79쪽): 삼국(三國) 시기, 서진(西晉) 시기 -4책(97쪽): 동진십육국(東晉十六國) 시기, 남북조(南北朝) 시기 -5책(132쪽): 수(隨) 시기, 당(唐) 시기, 오대십국(五代十國) 시기 -6책(115쪽): 요(遼)·북송(北宋) 시기, 금(金)·남송(南宋) 시기 -7책(144쪽): 원(元) 시기, 명(明) 시기 -8책(120쪽): 청(淸)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책에 「전언(前言)」(머리말)과 「총편례(總編例)」(편찬 원칙)를 제시(한문과 영문 병기) -각 책마다 역사지도를 제시하기에 앞서 「도례(圖例)」(법례)와 각 시기별 「도조편례(圖組編例)」 일괄 제시(한문과 영문 병기) -부록: 지명 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 시기별 전개 -각 시기 안에 서전도(全圖)와 지역도(地域圖)로 구성(주제도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중국국가역사지도집』 (제1책, 31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도례(總圖例, 전체 법례) -서도(序圖) -민족(民族) -인구(人口) -도시 분포(都市分布) -성시유지역시국(城市遺址與市局) -기후(氣候) -자연재해(自然災害) -색인(索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대 주요 도시의 유적과 공간구조를 의미함. -자연재해는 수한재(水旱災), 황재(蝗災), 지진으로 구성됨. -색인은 ‘지명색인’을 지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별 구성 -각 주제 안에 서는 역사 시기별 전개 방식을 취함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후기의 특정 연대로 선택할 것, 넷째 동시대에 중국이 분열되어 여러 정권이 공존할 때에는 가능한 한 동일 연대를 선택하되, 불가능한 경우 다수의 왕조들에 공통된 연대를 선택할 것 등이 그것이다.¹⁴

탄치시앙은 1750년대 청 왕조가 통일을 완성한 후 1840년대 제국주의 침입 이전의 중국 강역을 몇 천 년 동안의 역사 발전이 형성한 중국의 범위로 보았기

14 譚其驥, 1982, 「總編例」, 『中國歷史地圖集』.

때문에, 이 공간 범위 안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들이 건립한 정권 역시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들 정권의 정치 중심이 중국의 범위 안에 존재하는 한 모두 중국의 정권으로, 이 범위 밖에 있을 때에는 인접 국가의 정권으로 처리하였다. 그래서 가령 고구려의 경우 도읍이 압록강 이북에 위치했을 때에는 중국에 속한 정권으로, 압록강 이남의 평양에 위치했을 때에는 한반도에 속한 정권으로 표시하였다.¹⁵

지명 및 행정구역의 경우, 진(秦) 시기 이후로 현(縣)급 이상의 치소(治所)를 모두 표시하고, 군(郡)급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경계까지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때 모든 치소는 문헌 기록과 발굴된 유적을 통해 고증하여 위치를 확정하였고, 행정구역 경계의 경우 지리지에 기록된 고지도를 참고하되 변경 지역처럼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경우 전후(前後) 시기의 확인된 경계 혹은 현재의 행정구역 경계를 대신 적용하여 그려 넣었다. 모든 지명은 기본도 위에 당대의 지명을 기입하였고, 설령 후대의 기록에 등장하더라도 당대의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은 지명은 기입하지 않았다.

하천과 호수의 경우 당대의 기록에 근거해 선택적으로 나타냈고, 당대의 기록에 없는 것은 전대나 후대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려냈다. 해안선은 현대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표시하였으며, 기타 당대의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산천은 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록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전대나 후대의 지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표기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요 내용 요소의 표기 및 편찬 원칙은 『중국국가역사지도집』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편, 역사 시기를 기준으로 했던 주제를 기준으로 했던 간에 관련 지도들을 묶어 소위 ‘도조(圖組, map-group)’라는 기본 단위로 역사지도집을 구성한 점

15 『중국역사지도집』에 제시된 이러한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의 경우 당(唐) 시기 소수민족 분포도에서 도읍이 평양에 있었던 시기의 고구려 강역을 중국에 속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27쪽). 그 사이에 원칙에 변화가 있었거나, 시기에 따라 혹은 편찬 주제에 따라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거나, 혹은 원칙보다는 국가적 이익이 우선하면서 고의로 왜곡 표시된 사례일 수 있을 것이다.

唐 时 期	
32-33	唐时期全图(一).....二千一百万分之一
34-35	唐时期全图(二).....二千一百万分之一
36-37	唐时期全图(三).....二千一百万分之一
38-39	元和方镇图.....八百四十分之一
40-41	京畿道 关内道.....三百五十分之一 长安附近.....二百五十五万分之一
42-43	关内道北部(安北、单于都护府).....九百八十分之一
44-45	都畿道 河南道.....三百五十分之一 洛阳附近.....二百一十万分之一
46-47	河东道.....二百四十五万分之一
48-49	河北道南部.....二百四十五万分之一
50-51	河北道北部.....九百八十分之一
52-53	山南东道 山南西道.....二百八十分之一

都 市 分 布	
96-97	前言 编例
98	春秋至东汉主要都市 1 : 9 000 000
99	魏晋南北朝主要都市 1 : 8 500 000
100	唐中期都市 1 : 10 000 000 成都附近 1 : 2 500 000
101	唐中期黄河中下游都市 1 : 4 000 000 唐中期长江下游都市 1 : 4 000 000
102	辽主要商业城镇 1 : 6 000 000 北宋江南东路、两浙路商业城镇 1 : 2 500 000
103	北宋主要商业城镇 1 : 7 000 000 成都府附近 1 : 1 500 000
104	金主要城镇 1 : 7 000 000

그림 2 『중국역사지도집』(상)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하)의 도조 구성

위 그림은 『중국역사지도집』 제5책의 목차에 제시된 당 시기 도조 구성의 일부이고, 아래는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의 목차에 제시된 도시분포의 도조 구성을 보여준다. 전자는 역사 시기별 전도와 지역도로 이루어진 도조를, 후자는 하나의 주제 아래에서 시기별 역사지도들로 이루어진 도조를 구성하고 있다. 목차의 오른쪽 끝에는 해당 역사지도의 축척을 제시하고 있다.

은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의 공통점이다. 전자는 각 역사 시기 안에서 먼저 전도(全圖)를 제시한 후 뒤이어 세부지역도를 열거하는 식으로 전도와 지역도를 하나의 도조로 묶어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각각의 개별 주제 아래에 시간의 전개에 따른 일련의 역사지도를 도조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그림 2).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내용 체계나 구성 방식 등의 형식 측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일련의 역사지도를 도조 단위로 엮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특히 『중국역사지도집』에 수록된 역사지도의 기본도 및 주요 내용에 준하여 편찬하였다는 점에서는 상호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지도집의 「총편례」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요소의 선별과 기입 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세세한 원칙들을 고민하고 동원해야 했을 만큼 역사지도집의 편찬이 복잡한 과정이었으며, 정해진 원칙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편찬 주체의 주관적 판단이나 국가적 이익 문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지도학적 표현상의 특징과 주요 기법

1. 기본도(base map)의 주요 특징

역사지도 제작 과정에서 가장 처음에 판단해야 할 중요한 일의 하나는 기본도를 설정하는 것이다(김종혁, 2013, 82). “시간에 따른 지리적 변화나 과거지리를 ‘어떠한 바탕지도 위에’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다. 기본도란 절대적·상대적 위치 정보를 비롯해 주요 산과 하천, 해안선, 국경선, 행정구역 등의 기본적 지리 정보가 표시된 바탕지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도상에 표현된 각종 지리적 사상(事象)들의 위치와 공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만약 기본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면 지리적 변화를 분석하거나 과거지리를 복원하는 일이 매우 곤란해진다(Tao-Chang Chiang, 2005, 159).

특히 역사지도집을 국가가 주도하여 제작하는 경우라면, 이때의 기본도는 기초적 지리 정보를 담은 객관적 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공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국토로 상정하고 있는가’ 혹은 ‘국토로 주장하고자 하는가’ 하는, 말하자면 국가 차원의 영토의식과 역사인식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서 현대 중국의 주요 역사지도집에서 채택한 기본도가 어떤 지리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무엇이고, 이면에 함축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 및 해석할 가치가 있다.



그림 3 『중국어사지도집』의 기본도(『중국어사지도집』 제1책, 1~2쪽)

이 기본도는 역사지도집의 발간 주체가 어떤 지리 정보를 기초적인 것으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지도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기본도에 불과하다.

『중국어사지도집』은 매 책마다 1~2쪽에 ‘중화인민공화국전도’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3). 이 지도는 절대적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경위선 망을 비롯해 기초적인 지리 정보들이 표시된, 이 지도집의 기본도로 여겨진다. 『중국어사지도집』에 수록된 모든 역사지도들은 원칙적으로 이 지도를 바탕지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본도에 기입된 내용 요소들을 보면, 현대 중국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안쪽으로 분홍색(원본은 분홍색, 이 책에서는 회색) 음영 위에 성(省) 단위의 행정구역 경계, 주요 도시와 간선 철도, 대하천과 호수, 해안선을 표시하였고, 밖으로는 이웃나라의 주요 도시와 간선 철도, 그리고 이상의 내용 요소들과 관련된 주요 지명을 기입하였다. 이들 내용 요소는 이 역사지도집의 발간 주체가 어떤 지리 정보를 기초적 정보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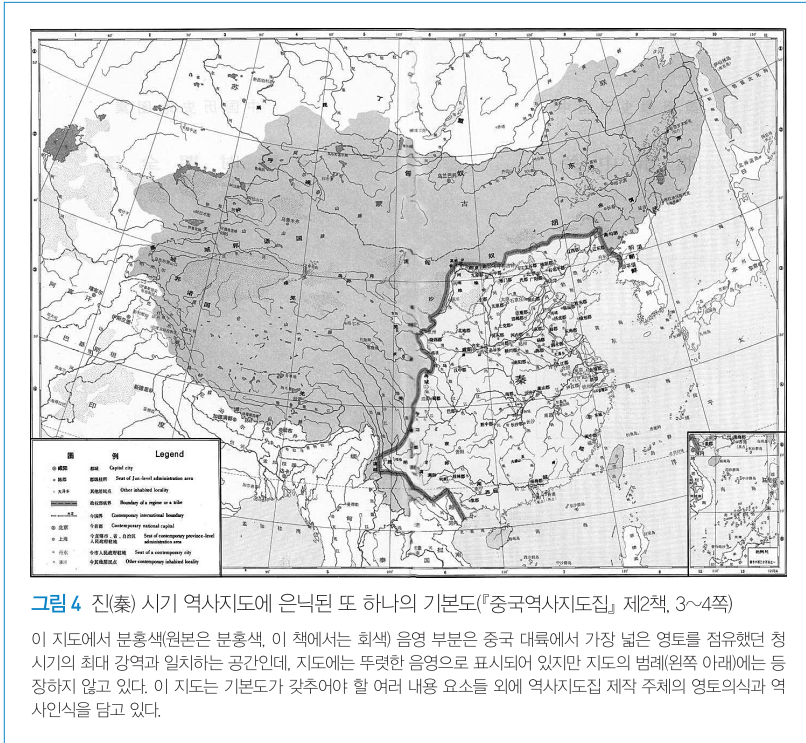


그림 4 진(秦) 시기 역사지도에 은닉된 또 하나의 기본도(『중국역사지도집』 제2책, 3~4쪽)

이 지도에서 분홍색(원본은 분홍색, 이 책에서는 회색) 음영 부분은 중국 대륙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점유했던 청 시기의 최대 강역과 일치하는 공간인데, 지도에는 뚜렷한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지도의 발레(왼쪽 아래)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 지도는 기본도가 갖추어야 할 여러 내용 요소들 외에 역사지도집 제작 주체의 영토의식과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매 책마다 첫 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이 지도는 단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기본도에 불과하다. 『중국역사지도집』에는 국가 차원의 영토의식이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본도가 은닉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로 알려진 진(秦) 시기의 역사지도(제2책, 3~4쪽)에서 발견할 수 있다(그림 4).

진(秦) 시기의 역사지도에는 노랑색(원본은 노랑색, 이 책에서는 굵은 선 안쪽 옅은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진(秦)의 강역 외에 분홍색(원본은 분홍색, 이 책에서는 회색) 음영이 표시된 부분이 확인된다. 이 음영 부분은 중국 대륙에서 최대 영토를 점유했던 청 시기의 강역을 나타낸 것인데, 지도상에 분명한 가시적 요소

로 등장하면서도 지도의 범례(왼쪽 아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제시되는 모든 중국역사지도에서 ‘어느 공간 범위까지’, ‘어떤 왕조까지’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켜 다룰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닉된 기본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이 지도는 소위 ‘역사상의 중국’을 구현한 것으로 역대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청 시기의 최대 강역을 ‘중국 영토의 공간범위’로 인식하겠다는 영토의식과, 이 공간 범위 안에서 출몰했던 역대 모든 왕조들을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키겠다는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지도는 『중국역사지도집』 매 책의 첫 페이지에 제시된 피상적 기본도와는 다른, 중국의 영토의식과 역사인식을 담고 있는 또 한 장의 실질적 기본도이다. 더욱이 청 시기의 강역을 표시한 분홍색 음영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로 알려진 진(秦) 시기의 역사지도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한다는 점은, 숨은 의도와 함께 ‘통일 국가를 향한 노정의 시작’이라는 특별한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지도의 기본 요소별 표현상의 특징

지도의 기본 요소란 가령 제목, 범례, 방위, 축척, 자료 출처 표시 등 전체 지도를 구성해내는 각 부분을 지칭한다. 제목은 ‘도엽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지도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어느 지역의 무엇(자료)을 나타낸 것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범례(legend)는 지도 안에 제시된 다양한 기호와 상징, 범주(단계)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안내하는 요소로, 지도 제작 및 읽기를 위한 열쇠가 된다.

『중국역사지도집』의 경우, 수록된 각 역사지도의 제목은 원시사회 시기, 하 시기, 상 시기, 서주 시기 등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 구분하는 통상적 시기 구분을 반영해 명명하였고, 범례는 역사지도집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과거와 현대 내용을 병치시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5). 범례는 각 책마다 공통 범례를 첫

图 例

古 内 容		今 内 容	
符号及注记	名 称	符号及注记	名 称
居 民 点			
 长安	都城	 北京市	首都
		 上海市	直辖市、省、自治区人民政府驻地
○ 河东郡	郡级驻所	○ 临江市	市人民政府驻地
○ 陈县	县级驻所	○ 丹凤	县级人民政府驻地
○ 大泽乡	聚邑	○ 东兴	村镇
—	刺史部驻所(东汉)		
■ 都尉	都尉驻所		

그림 5 『중국역사지도집』에 제시된 범례

역사지도집이라는 지도집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범례를 '과거 내용'과 '현재 내용'으로 구분해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한자로 표기된 이 범례의 뒷장에는 동일한 내용의 영어로 표기된 범례가 이어진다.

머리에 제시한 다음, 뒤에 나오는 각각의 역사지도에 대해서는 개별 범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공통 범례이건 개별 범례이건 간에, 과거 내용은 주로 청색이나 검정색 계열, 현재 내용은 갈색 계열로 크게 구분해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익숙한 현대 지도를 기준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지리적 사상(事象)들의 위치와 공간 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명을 비롯한 내용 요소들은 한자 단일 표기를 하고 있으나, 수록된 모든 역사지도의 범례만큼은 한자와 영문을 병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뒤에 편찬된 『중국국가역사지도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방위는 지도상의 방위 관계를 화살표나 나침반 장미(compass rose)를 이용해 표시한 부분으로 아무런 방위 표시가 없는 지도라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용된다. 지구상의 북쪽은 자축의 북쪽을 뜻하는 진북과 자침의 북쪽을 가리키는 자북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대축척지도들은 지도 읽

기 및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진북과 자북을 모두 표시하는 편이다. 축척은 지표상의 실제 길이가 지도상에 얼마나 줄어서 표현되었는지를 비율이나 분수, 혹은 그래픽이나 문자 등을 이용해 표시한 부분을 말한다.

제목 및 범례와 달리 방위와 축척 표시는 축척의 정도나 도법의 종류에 따라 지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 가령 국가 이상의 공간 규모를 한 장의 지도로 나타낸 소축척지도, 또는 지도상의 모든 지점에서 위쪽이 반드시 북쪽은 아닌 도법이 적용된 지도의 경우, 축척이나 방위 표시는 나타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또한 방위 표시가 요구되는 대축척지도라 할지라도 도로망의 방향이나 시각적 아름다움을 고려해 지도의 위쪽을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중국역사지도집』의 경우 방위는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수록된 지도들이 모두 소축척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신 경위도 망을 나타내 줌으로써 방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축척 표시는 숫자(분수)와 도형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도형은 비례척으로서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에도 축척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

자료 출처(citation)는 지도 제작을 위해 동원한 각종 자료의 발행 기관이나 발행 시기, 자료의 가공 과정, 최근의 통계적 경향 등 자료와 관련된 참조 사항을 비롯해, 도법(projection), 지도에 대한 저작권 등을 표시한 부분이다. 이 외에, 지도에 나타내려는 자료의 정보가 매우 많아서 한 장의 지도로 보여주기엔 무리가 따르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 전체 지도를 찾아보기 쉽게 색인화하여 나타낸 색인도(index map), 낫선 지역을 표현한 지도의 경우 독자에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해 보다 익숙한 소축척지도를 이용해 해당 위치나 범위를 표시한 위치도(locator map), 특정 부분을 크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확대하여 나타낸 삽도(inset map) 등도 지도의 기본 요소들이다(그림 6).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중국역사지도집』의 각 시기별 역사지도는 맨 앞에



전도를 제시한 후 뒤이어 세부 지역도를 보여주는 식으로 전도와 지역도를 하나의 단위로 묶은 후 이를 도조라고 칭하고 있는데, 매 책마다 시기별 역사지도를 보여주기 위해 앞서 도조편례, 즉 도조 단위의 편찬원칙(compiling principles)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조편례에서는 각 도조를 이루는 주제도 구성과 해당 역사 시기에 대한 개관, 역사지도에 표현된 지리적 사상의 주요 종류 및 분포 특징, 역사지도 제작을 위해 활용한 문헌자료들, 기타 지도 표현상의 한계점 등을 서술하였다.

각 도조별로 맨 앞부분에 제시되는 전도에는 반드시 범례를 두고 있고, 종종 삽도를 활용해 가령 원(元) 시기의 강역인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지역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원격지를 별도로 보여주고 있다. 전도에 이어서 구성된 개별 지역도의 경우 먼저 위치도를 제시하여 각 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도의 경우와 달리 범례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역사상의 주요 도시나 도읍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확대한 삽도가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 지도의 좌우 폭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종종 펼침지도(예를 들면, 제7책, 15~16쪽)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도 보인다.

3. 주요 내용 요소별 표현 기법

역사지도에 기입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요소를 거론하라고 한다면 당대의 지명, 곧 역사지명일 것이다. 중국에서는 1934년 2월 탄치시앙과 그의 스승 구계강의 발의로 중국 최초의 현대 역사지리학회인 우공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 학회의 정기간행물인 『우공(禹貢)』 창간사에는 학회가 수행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최신의 제작 방법을 이용해 ‘지리연혁도’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역사상의 모든 지명을 망라하고 고증한 ‘중국역사지명사전’을 만드는 것이었다.¹⁶ 이처럼 역사지도집과 역사지명사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졌는데, 전자는 탄치시앙 주편의 『중국역사지도집』으로, 후자는 탄치시앙을 고문으로 하고 스웨이러(史爲樂)가 주편으로 편찬한 『중국역사지명대사전』으로 실현되었다.

역사지명을 역사지도에 기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크게 당대의 지도를 복원하여 그 위에 기입하는 방법과 현대의 지도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양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지명만 기입하는 방법과 현대지명과 함께 병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독자 입장에서 가장 편

16 史爲樂, 2005, 「前言」, 『中國歷史地名大辭典』.

리한 방법을 추출하려 한다면 그 결론은 어떤 것일까?

『중국역사지도집』에서는 현대 지도에 역사지명을 표시하되, 현대지명과 역사지명을 병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지명 기입 방식에 대해 『중국 국가역사지도집』의 「총편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현급 이상의 취락을 모두 표시하되 ①고급의 지명이 동일할 경우 고지명을 표기하고 현재의 지명을 표기하지 않았고[수도와 성회(省會)는 제외], ②고급의 지명이 다를 경우는 병기하였으며, ③고급의 지명이 동일하지만 구체적 지점이 다를 경우는 각 지점에 지명을 각각 표기하였고, ④어떤 지역에 고지명만 있을 경우는 부근의 현재 지명을 병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과거지명과 현대지명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지도상의 지명을 기입하다 보면 역사지도가 여러 지명과 다양한 지리 정보들로 뒤섞여 복잡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자칫 가독성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역사지도집』은 색깔의 차이를 보조 장치로 이용하고 있다(그림 7). 즉 현대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는 갈색 계열의 색깔로 통일하여 나타내고, 과거의 역사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는 갈색 이외의 색깔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역사 시기의 내용 요소를 표현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검정색·청색·분홍색 세 가지 색깔을 적절히 구분해 활용하고 있다. 역사지명은 검정색, 과거 하천의 유로나 해안선은 청색, 과거의 국경선 및 행정구역 경계는 분홍색을 사용하고 있다.

한 폭의 역사지도 안에 서로 다른 색으로 현재와 과거를 표현하는 것은 중국 역사지도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이다.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구당서(舊唐書)』, 「가담전(賈耽傳)」에 가담이 『고금군국현도사이술(古今郡國縣道四夷述)』을 펴낼 때 ‘옛 군과 국은 검정색으로, 지금의 주와 현은 붉은색으로’ 표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학계는 이것을 역사지도에 서로 다른 색을 이용해 다른 시대를 표현한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 양서우징의 『역대여지도』 역시 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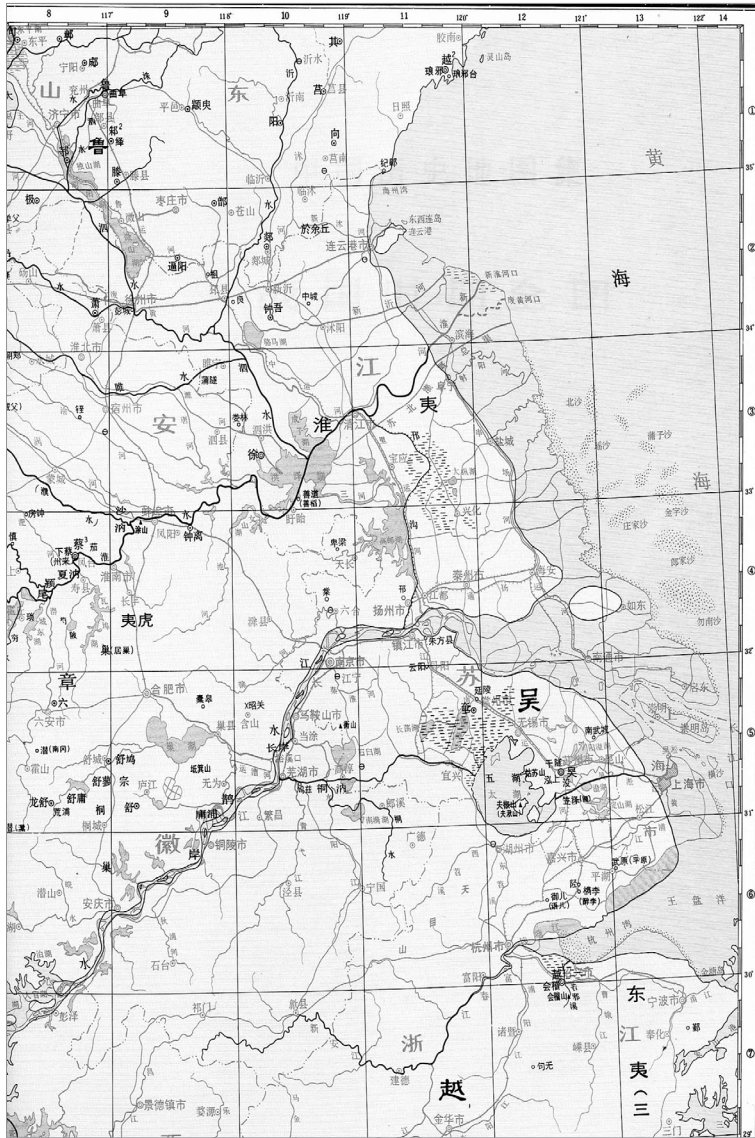


그림 7 춘추 시기 초(楚)·오(吳)·월(越) 지역도 일부(자료: 『중국역사지도집』 제1책, 30쪽)

현대 시기의 내용 요소들은 갈색 계열의 색깔로 통일하여 나타낸 가운데, 역사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검정색, 청색, 분홍색의 세 가지 색깔을 내용 요소에 따라 적절히 구분해 표현하였다. 원본 지도는 컬러이나, 이 책에서는 흑백으로 처리됨.

같은 방법으로 고대와 현대의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역사지도집』은 중국 역사지도 표현 방법의 전통을 따르면서 좀 더 현대화를 시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을 『중국역사지도집』을 사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림 7>은 현대의 화이허강(淮河) 및 창장강(長江) 유역 일대를 대상으로 옛 춘추 시기의 지리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현대의 주요 지명, 하천 유로, 해안선 등은 갈색으로 통일하여 표현하고 있고, 초(楚)·오(吳)·월(越)과 같은 당대의 왕조 이름과 주요 역사지명은 김정색, 과거의 하천 유로와 하천명, 당대의 해안선은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가령, 창장강을 사례로 든다면 현대의 이름인 ‘長江’은 갈색으로, 춘추 시기의 이름인 ‘江水’는 청색으로 기입하였고, 하천의 유로에 있어서도 현대의 창장강 유로는 갈색, 당대의 창장강 지류 중 문헌 기록으로 전하는 지류는 청색으로 각각 표현하고 있다.

해안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춘추 시대의 해안선은 청색으로, 현대의 해안선은 갈색으로 표시함으로써, 창장강 하구 연안이 당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퇴적 혹은 간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문헌 기록으로 전하는 당대의 주요 지리적 사상을 나타냄으로써 독자가 시간에 따른 지리적 변화나 과거지리의 구체적 위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현대와 과거의 색깔을 적절히 구별하여 적용함으로써 과거와 현대의 식별은 물론이고 주요 내용 요소별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표현 방식이 완벽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과거 창장강의 지류 중 당대에 실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색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문헌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갈색으로 표시된 사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안선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역사지리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나타낼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해안선의 변화와 관련한 지리 정보에 있어서 독자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기호 표현의 모호함 또는 역사적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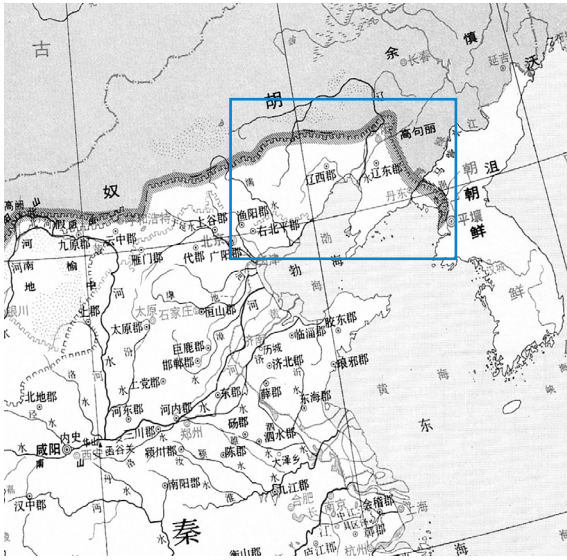


그림 8 진(秦) 시기 전도(全圖)에 표현된 두 가지 '장성(長城)' 기호(『중국역사지도집』 제2책, 4쪽)

진(秦) 시기의 장성 표현은 자세히 보면 '실선으로 된 꺾은선'(지도의 중앙 왼쪽 부분)과 '파선으로 된 꺾은선'(고구려와 한반도 부분)의 두 가지 기호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기록이나 문헌을 통한 고증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후자는 단지 추정 노선을 표시한 것이다.

받기에 충분한 사례도 있다. 진(秦) 시기의 장성 표현이 그것이다(그림 8). 진(秦) 시기의 전도를 자세히 보면 장성을 표현한 기호로서 ‘실선으로 된 꺾은선’(지도의 중앙 왼쪽 부분)과 ‘파선으로 된 꺾은선’(고구려와 한반도 부분)의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기록이나 문헌을 통한 고증이 이루어진 구간을 표시한 것이고, 후자는 추정되는 노선을 표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추정되는 노선은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도 다르고 요동 및 북한 지역의 발굴 성과와도 어긋나며 심지어 이 역사지도집의 주찬자인 탄치시양의 논문과도 모순된다(우성민, 2014; 공석구,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로 제시된 소축척 지도(〈그림 8〉의 상단 지도) 수준에서는 장성이 일결한 가지 기호로 표현된 것과 같은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정확한 2차 지도가 중국 내 여러 국가기관의 공식 지도나 교육용 지도, 해외의 중국 연구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IV. 역사지도집에 대한 중국 내부의 평가와 연구 동향

『중국역사지도집』이 출판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의 역사지리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평가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 연구는 이 지도집이 출판된 직후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주로 나왔으며, 2000년대에는 중국의 역사지리학 발전을 논하면서 그것의 한 부분으로 회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중국역사지도집』에 대한 중국 내부의 평가는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지리학 학과 역사지도 제작의 전통을 이어받은, 20세기 중국 역사지리학의 성과를 총망라한 대표작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¹⁷ 다만 그 이후 새로 축적된 연구 성

17 蔡美彪, 1984, 「歷史地理學的巨大成果—『中國歷史地圖集』評介」, 『歷史研究』第6期, 25~30쪽; 陳橋驛, 1985, 「評『中國歷史地圖集』」, 『中國社會科學』

과를 반영하며 『중국역사지도집』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논의도 한 갈래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석구의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 長城 고찰』(2014), 그의 또 다른 논문인 『『中國歷史地圖集』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에 대한 검토』(2015), 우성민의 『『중국역사지도집』의 고구려 박작성에 대한 검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중국 측 입장에 치우친 『중국역사지도집』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내고 있다.

『중국국가역사지도집』에 대한 중국 내 학자들과 언론의 평가는 매우 후한 편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도집의 광범위한 내용과 풍부함, 완전성, 전면적인 것, 내용 구성과 체계에서 현재 역사지리학의 모든 분과를 망라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역사 문헌에서 발굴한 각종 지리적 요소를 평면 지도의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들어 지도학적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⁸

第4期, 129~137쪽; 葛劍雄, 1990, 「中國歷史疆域的再現—評『中國歷史地圖集』」, 『讀書』 第5期, 3~10쪽; 王文楚, 1995, 「譚其驤與『中國歷史地圖集』」, 『文史知識』 第9期, 3~8쪽; 劉子剛, 2001, 「二十世紀下半葉歷史地圖編制出版述略」, 『中國測繪』 第1期, 16~22쪽; 葛劍雄, 2004, 「譚其驤與『中國歷史地圖集』」, 『中國測繪』 第4期, 36~39쪽; 潘晟, 2011, 「十年來中國的曆史地圖研究」, 『中國歷史地理論叢』 第3期, 33~37쪽.

- 18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정식 출판 전후 신문과 온라인 매체에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中國國家歷史地圖集出版：從地理角度了解歷史進程」, 『中國網』, 2013年 12月 27日, http://www.china.com.cn/guoqing/2013-12/27/content_31021219.htm; 「『中華人民共和國國家歷史地圖集』在京發布」, 『中國新聞網』, 2013年 12月 18日, <http://news.sohu.com/20131228/n392560233.shtml>; 「專家談“國家歷史地圖集”：曾爲一幅圖考察3個月」, 『北京日報』, 2014年 2月 8日, http://reader.gmw.cn/2014-02/08/content_10307023.htm; 李孝聰, 「記錄中華民族的歷史現景—『中華人民共和國國家歷史地圖集』出版的意義」, 『人民日報』, 2014年 2月 11日, http://www.360doc.com/content/14/0211/06/7499155_351516147.shtml; 「『中華人民共和國國家歷史地圖集』背後的30年堅守」, 『中國新聞出版網報』, 2014年 2月 24日, http://www.chinaxwcb.com/2014-02/24/content_286839.htm 등. 많은 매체에서 새로운 역사지도집의 출판 소식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어서 중국 사회의 새로운 역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의 경우 『중국역사지도집』에 반영된 역대 강역과 행정구역을 기초로 중국의 인문역사지리와 자연역사지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역사지도집들이 대부분 왕조 교체나 강역 변동 등만을 다루었던 것과 비교해,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민족 분포, 인구 이동, 주요 도시 유적과 그 구조, 기후, 자연재해 등 기존에 흔히 볼 수 없었던 사료들을 다루었는데, 이런 자료들은 발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도화 작업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16개의 새로운 연구 성과 중에도 포함되고 2014년 제 3회 중국정부도서장(中國政府圖書獎)을 받는 등 매우 창조적이면서도 귀중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¹⁹

한편 『중국국가역사지도집』 편찬위원회의 편집실 주임으로 참여했던 거젠승은 『중국역사지도집』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중국역사지도집』의 몇 가지 한계를 알려주고 있다.²⁰ 그에 의하면, 역대의 강역과 행정구역, 그리고 민족 분포는 언제나 변화 속에 있는 것인데, 특정 연대나 시기의 상황만을 지도화하다보니 변화의 전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즉 과거지리의 복원이 주된 작업이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에 따른 지리적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지도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어떤 변강 지역의 경계는 반드시 확실한 사료 근거를 갖고 그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과, 소수민족에 따라서는 중원 지역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중원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한계라고 하였다.

사지도집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역사지도집 편찬을 주도한 중국 정부가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이를 알리고 싶어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19 「中華人民共和國國家歷史地圖集」受好評, 『新京報』, 2014年 1月 18日 星期六, http://epaper.bjnews.com.cn/html/2014-01/18/content_490845.htm?div=-1

20 葛劍雄, 1990, 앞의 글, 3~10쪽.

소위 ‘표준 연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표준 연대란 각 시기 안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대체로 해당 시기에 활약했던 왕조나 민족들의 최대 번영기 내지 강역의 최대 확장기일수록 문헌 기록을 많이 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표준 연대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의한 역사지도집이 근대 이전의 역사지도집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강역이나 행정구역의 중대한 변화가 표준 연대를 벗어난 때에 있었던 경우 지도에 반영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지도집은 내용이 정태적이어서 강역 및 행정구역의 동태와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거젠승은 『중국역사지도집』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역사지도집』과 같이 표준 연대를 기준으로 설정하더라도 내용의 정태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우선 시기를 더 많이 나누어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때 각 시기마다 전체 강역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변동이 가장 큰 지역만 부분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삽도나 부분도를 수시로 활용하는 방법 역시 유용할 것이라 하였다. 그 밖에 행정구역의 통폐합, 치소의 이동, 지명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해당 지도의 설명문에서 보다 확충하여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지도에 기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대에 분명히 있었던 지명에 대해서는 색인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²¹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 편찬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 타이완 국립사범대학의 역사학자 뤼춘성(呂春盛)의 견해가 그것이다. 그는 1981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와 중국민족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민족관계사연구학술좌담회’에서 「중국 대륙 학계의 ‘역사상의 중국’ 개념에 대한 토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무엇이 ‘역사상의 중국’인가?”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의 의견을 포함해 여타 저술들의 관점을 네 가지로

21 葛劍雄, 1990, 앞의 글.

정리한 다음,²² “현대의 중국의 강역을 기준으로 역사상의 중국을 정의하려는 관점은 중국의 대다수 학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사의 연구 대상 공간 범위의 문제’와 ‘역사상의 중국의 강역 범위 문제’를 혼재해서 말하고 있는 점이라 지적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현대 중화인민공화국 강역 내의 모든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역사상 당대에 서로 적대적이었던, 달랐던, 독립된 민족국가였던, 혹은 거리가 요원했던 상관없이, 심지어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서로 다른 독립된 민족 국가들까지도 동일한 민족 대가정의 구성원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대로,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역사상 당대에 예속 관계에 있었거나 심지어 중앙과 군현 관계였던 지방까지 상관없이 모두 외족(外族) 혹은 외국(外國)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중국’을 통해 ‘역사상의 중국’을 판단하는 관점은 개념상의 혼돈을 야기하고야 만다는 지적이자 비판인 것이다. 토론문의 말미에서 그는, “완벽한 의미의 ‘역사상의 중국’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는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중국 대륙 학계는 역사를 곡해하는 방식으로 현대 정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나중에 학술적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22 그가 말한 네 가지 관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점은 현재의 중국 강역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상 이 강역 안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과 그들이 세운 정권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의 강역이라는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역대 한족(漢族)이 건설한 왕조를 역사상의 중국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세 번째 관점은 통일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이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관점이다. 여기에는 통일과 분열의 상황을 딛고 통일을 이룬 시기의 다민족국가 중국뿐 아니라, 분열된 시기가 있었다면 그 이전의 통일 다민족국가 중국이 관할했던 민족이나 지역 정권이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네 번째 관점은 화하족(華夏族) 및 그 후예인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뗄 수 없는 다민족이 결합한 실체가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주장이다. 呂春盛, 1990, 「關於中國大陸學界「歷史上的中國」概念之討論」, 『台灣歷史學會通訊』第2期.

V. 맺음말

『중국역사지도집』은 국가가 계기를 마련하여 시작된 사업이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탄치시앙을 비롯해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이 구상한 ‘역사상의 중국’과 ‘중국사상의 민족’의 재현이었다. 하지만 2012년 거젠승이 발표한 글²³을 보면 탄치시앙을 포함해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도 정부의 압박을 많이 받았으며 ‘역사적 사실’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 고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거젠승은 지도집이 정식 출판된 지 30여 년이 지난 후에 지도집이 따르는 원칙과 관념, 처리 방법은 반드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해야 했고, 역사학자와 역사지리학자로서 탄치시앙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부가 확정한 공간 내에 최대한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여 정책화된 원칙이 합당한 사료 근거를 찾아 합리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나 고민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실제로도 탄치시앙은 자신이 확신하고 주관 부서가 비준한 원칙조차 완전히 준수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²⁴ 심지어 지도집의 선, 점의 확정, 이동, 증가와 삭제를 좌우하기도 했고, 당시 “엄격하게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는 것의 실체는, 되도록 ‘정치상’ 유리한 사료를 찾거나 혹은 사료를 자신들(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으며, 중대한 ‘정치적 원칙’엔 정해진 범위를 한 발자국도 넘을 수 없었다고 했다.²⁵

물론 이것이 『중국역사지도집』이 민감한 역사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의견만을 표현했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혁명 기간이 끝나고 계속된 편찬 과정과 내부분이 나온 후의 수정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고쳐져 현재의 역사지도집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탄치시앙의 주장이 많이 관철되기도 하였다. 이런 증언은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 편찬에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내용상

23 葛劍雄, 1990, 앞의 글.

24 葛劍雄, 1990, 위의 글, 1쪽.

25 葛劍雄, 1990, 위의 글, 2쪽.

의 간섭이 생각보다 컸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탄치시양이나 편찬 위원들의 주장이 중국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완전히 객관적이거나 역사적 사실에 완벽히 부합했다는 뜻도 아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역사지도집』은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은 면도 있지만, 편찬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역사지도집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역사상의 중국과 중국 강역’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원칙은 당시 정부의 의견과 탄치시양의 학술적 견해가 절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 편찬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지도와 역사지도집은 과거의 지리적 상황을 지도로 표현한 결과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현재와 과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중국역사지도집』과 『중국국가역사지도집』을 밑바탕에서 떠받치고 있는 탄치시양의 ‘역사상의 중국’ 개념에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역사는 점차 발전해 왔다’, ‘청조의 통일은 가장 완성되고 진전된 통일로서 17~18세기의 시대적 요청이었다’, 그리고 ‘분열과 통일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원과 변강의 관계는 점차 친밀해지는 과정이었다’는 인식이 그 기저에 자리한다. 그러나 ‘몽골족이 현재 몽골인민공화국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사에 속한 민족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몽골인민공화국이 그들의 역사를 쓸 때 원(元) 왕조를 세운 민족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기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²⁶는 탄치시양의 글 속에도 ‘역사상의 중국’ 개념은 이미 시작부터 모순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이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절차로 편찬되었고, 내용 체계와 구성의 면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지도 표현에 있어서 지도학적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중국 내부에서는 현대 중국의 주요 역사지도집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뤼춘성이 잘 포착한 대로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역사지도

26 譚其驥, 1991, 앞의 글, 1~9쪽.

집의 내용 자체보다도 그것의 배후에 자리한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개념과 ‘정치적 목적’이 학술적으로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된다.²⁷ 중국의 역사지도에서 몽골뿐 아니라 고구려나 발해, 심지어 옥저조차 중국사에 편입시켜 표현하는 행태나 동북공정과 같은 정치적 행위는 단지 ‘심해상(深海上)의 파랑(波浪)’, 즉 표피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역사상의 중국’, ‘중국사상의 민족’과 같은 토대 개념이 자리한다. 따라서 이들 개념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지 않고서는 중국 역사지도집의 내용상 오류나 왜곡, 혹은 동북공정과 같은 행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고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한편, 역사지도집은 편찬 주체의 강역의식과 역사인식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학자 및 대중의 강역의식과 역사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주요 매개로 기능한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했듯이, 진(秦) 시기 장성 표현의 모호함은 원본 역사지도의 왜곡된 인용은 물론이고 그러한 왜곡의 확대 재생산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우려가 있다. 더구나 종이지도로 생산되던 역사지도집은 이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결합되어 파일의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파급력이 예상하기조차 힘들만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할 때, 장차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역사지도집을 편찬할 수 있을까? 성공적이고도 바람직한 역사지도집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역사지도집의 편찬에 필요한 전 과정을 조망하고 관련 분야들의 학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역사지도집편찬위원회’와 같은 명의의 편찬 전담 기구의 설치가 요청된다. 편찬 전담 기구에서는 인접 국가나 세계 주요 국가의 역사지도집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주변 국가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한편, 사회적으로 보다 의미 있고 역사·지리적으로 타당한 역사지

27 이에 대해서는 『중국역사지도집』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 중심으로 중국 대륙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도집의 내용에 큰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도집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편찬 전담 기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의 하나는 학제적 분업과 협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역사지도집은 역사지리학·역사학·지리학·고고학·민족학 등의 관련 분야들이 제각기 축적해 온 성과를 공동의 장 안에서 함께 토론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사전에 필요로 한다. 관련 분야들의 기존 성과를 일반화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설령 역사지도집이 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성공적 역사지도집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시간 지체와 학술적·사회적 논란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이것의 일반화를 바탕으로, 지도학 분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역사지도의 표현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로의 변환 작업을 맡게 된다. 그러나 지도학 분야의 노력이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만으로는 역사지리정보의 지도 표현 작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역사지도집의 내용 체계와 편찬 방향은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에 있고, 역사지도집 편찬을 위한 우리의 토대 개념 및 기본도는 어떠한가 하고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역사지리적으로 어떤 내용 요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지도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호나 상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역사지리적 의미는 있지만 지도 표현이 불가능한 내용 요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부분에서 보강해야 하는가, 역사지명을 비롯한 과거 지리의 정보들 중 어떤 것까지를 역사지도집에 수록할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역사지리학 분야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요 분야별 역할과 학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와 조직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구축하는 일은 역사지도집 편찬 전담 기구의 핵심 업무가 될 것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역사지도집 편찬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분야들 간의 학제적 협력과 성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역사지리정보의 지도 표현을 가능케 하는 지도 제작 및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역사지도집의 편찬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나 정부기관이 생산하고 배포하는 종이지도 및 일방적 디지털지도의 형식을 넘어 제작 주체와 소비자 사이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자료의 공유 및 보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종이지도로 된 국가역사지도집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도 제작 및 디지털 기술은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발달해 있으나 역사지도집의 편찬을 위한 역사지리정보의 체계화와 일반화 및 전체 편찬 시스템(구조)의 구축 실태가 크게 미흡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담 기구와 편찬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역사지도집의 편찬 과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일 뿐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가장 힘써 고민할 일은 개념적 측면, 다시 말해 역사지도집의 편찬 목적과 방향을 이끄는 토대 개념, 곧 ‘우리 역사에 속한 국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적 논의와 합의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 및 합의를 통해 도출된 토대 개념은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지도집의 내용적 타당성과 성공을 뒷받침해 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역사지도집의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로도 기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 長城 고찰」, 『백산학보』 99.
- 공석구, 2015, 「『中國歷史地圖集』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에 대한 검토」, 『선사와 고대』 43.
- 김종근, 2015, 「한국 역사지리학의 경향과 과제」, 『역사와 현실』 95.
- 김종혁, 2013, 「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역사지리환경의 복원」, 『한국지도학회지』 13(2).
- 류제현, 2002, 「문화·역사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 양보경, 2002, 「전통지리학: 연구와 전망」,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대한민국 학술원.
- 우성민, 2014, 「『중국역사지도집』의 고구려 박작성에 대한 검토」, 『중국사연구』 93.
- 이명희, 2012, 「12~13세기 중국고지도에 표현된 한반도」, 『한국고지도연구』 4(1).
- 전중환, 2002, 「역사지리학 연구의 古典의 傳統과 새로운 노경 -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 전중환·류제현, 1999, 「英美 歷史地理學의 최근 동향과 社會歷史地理學」, 『문화역사 지리』 11.
- 최은진·류현정, 2016, 「譚其驥의 『中國歷史地圖集』 編纂과 中國現代歷史地理學의 誕生」, 『중국사연구』 103.
- 葛劍雄, 1990, 「中國歷史疆域的再現—評『中國歷史地圖集』」, 『讀書』 第5期.
- 葛劍雄, 2004, 「譚其驥與『中國歷史地圖集』」, 『中國測繪』 第4期.
- 葛劍雄, 2012, 「地圖上的中國與歷史上的中國疆域—讀《中國歷史地圖集·前言》」,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感言,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 國家地圖集編纂委員會, 2012~2016, 『中華人民共和國國家歷史地圖集』(총3책),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譚其驥, 1991,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 第1期.
- 譚其驥 主編, 1982~1987, 『中國歷史地圖集』(총8책), 中國地圖出版社.
- 劉子剛, 2001, 「二十世紀下半葉歷史地圖編制出版述略」, 『中國測繪』 第1期.
- 潘晟, 2011, 「十年來中國的歷史地圖研究」, 『中國歷史地理論叢』 第3期.

- 史爲樂 主編, 2005, 『中國歷史地名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呂春盛, 1990, 「關於中國大陸學界「歷史上的中國」概念之討論」, 『台灣歷史學會通訊』第2期.
- 王文楚, 1995, 「譚其驥與『中國歷史地圖集』」, 『文史知識』第9期.
- 陳橋驛, 1985, 「評『中國歷史地圖集』」, 『中國社會科學』第4期.
- 蔡美彪, 1984, 「歷史地理學的巨大成果—『中國歷史地圖集』評介」, 『歷史研究』第6期.
- J. A. Millward, 1999, ““Coming onto the Map”: “Western Regions” Geography and Cartographic Nomenclature in the Making of Chinese Empire in Xinjiang,” *Late Imperial China* 20(2).
- J. E. Morris, 1932, “What is Historical Geography?,” *Geography* 95.
- R. A. Butlin, 1993, *Historical Geography – through the gates of space and time*, Edward Arnold.
- Tao-Chang Chiang, 2005, “Historical Geography in China,”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2).
- Weimin Que, 1995, “Historical Geography in China,”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1(4).

중국의 역사지도 편찬에 관한 기초연구 - 역사지리학의 관점

전종한 · 이명희

역사지도란 역사지리학의 고전적 전통인 ‘시간에 따른 지리적 변화(geographical changes through time)’와 ‘과거지리(past geographies)’를 지도학적 방법으로 표현 및 복원해 놓은 지도를 말한다. 20세기 이후의 현대 중국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거나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1982~1987)과 『중화인민공화국국가역사지도집(中華人民共和國國家歷史地圖集)』(2012~)을 잇따라 발간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에서 역사지도집의 연구와 제작, 그리고 편찬 작업은 중국 역사지리학의 가장 특징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 최대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지리학의 관점에서 현대 중국의 대표적 역사지도집인 『중국역사지도집』과 『중화인민공화국국가역사지도집』을 대상으로 역사지도집의 전체적 편찬 방향과 편집 지침, 내용 체계와 구성, 기본도, 지도학적 표현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역사지도집의 전체 편찬 과정에서 작동한 제작 주체의 강역의식 및 역사인식과 같은 토대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은 중국 정부가 계기를 마련하여 시작된 사업이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온전히 탄치시앙을 비롯한 제작 주체들이

구상한 토대 개념, 즉 ‘역사상(歷史上)의 중국’과 ‘중국사상(中國史上)의 민족’의 재현이었다. 이들 역사지도집은 중국의 오랜 역사지도 전통을 계승한 것이면서도 실재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실’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였다. 따라서 현대 중국의 역사지도집은 역사적 사실과 국가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역사지도집 편찬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역사지도집 편찬 시스템을 갖추고 토대 개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학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주제어: 역사지도, 역사지리학, 시간에 따른 지리적 변화, 과거지리, 역사상의 중국

ABSTRACT

A Foundational Study on the Compilation of Historical Atlas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Geography

Jeon Jonghan & Lee Myeonghee

Historical atlas consists of a series of maps that express and reconstruct 'geographical changes through time' and 'past geographies' which are classics of historical geography. Since the 20th century, modern China has published two historical atlas by supporting and leading by the state. One is 『Chinese Historical Atlas』(1982~1987, 中國歷史地圖集), and the other is 『Chinese National Historical Atlas』(2012~, 中華人民共和國國家歷史地圖集). As a result, today, the study, production and compilation of historical atlases in China is not only recognized as the most characteristic area of Chinese historical geography but also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in this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comprehensive guide to Chinese historical atlas, general compiling principles, contents, base map, mapping processes and cart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interpret the base concept or idea such as the consciousness and the historical

recognition of the producer(subject) who worked in the whole compilation process of the historical atlases. In conclusion, although the Chinese historical atlases are product of a business star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contents contained in it are a representation of the base concept or idea that the producers envision on 'historical china(歷史上的中國)' and 'historical Chinese ethnicity(中國史上的民族)'. These historical atlases are inherited from China's long history of historical atlases, but in reality they are the result of concerns about 'historical facts' and 'national interests'. In short, modern Chinese historical atlases are a mixture of historical fact, national interest, and political purpose. In order to cope with this situation, it is urgent for Korea to establish the national institute for historical atlas, to have a historical atlas compilation system, to discuss base concepts for national historical atlas, and to draw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Keywords: historical atlas, historical geography, geographical changes through time, past geographies, historical china(歷史上的中國)

唐前·後期 羅唐戰爭 서술과

인식 - 『唐會要』와 『通典』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열 | 한밭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 II. 『唐會要』의 羅唐戰爭 서술 방식과 역사인식
- III. 『通典』의 羅唐戰爭 기록 누락
- IV. 맺음말

I. 머리말

나당전쟁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나당전쟁 전만, ¹ 전쟁의 성격, ² 외교나 국제정세, ³ 전쟁의 원인, ⁴ 종전 배경, ⁵ 전쟁 결과인 '삼국 통일'의 한계 ⁶ 등 방대한 연구성과가 나와 있다. 그뿐만

-
- * 투고: 2017년 2월 13일, 심사 완료: 2017년 5월 15일, 게재 확정: 2017년 5월 19일
- 1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상훈, 2012,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 2 변인석, 1995, 「唐에서 바라 본 新羅의 三國統一」, 『사학연구』 50, 41~60쪽; 拜根興, 2005, 「論羅唐戰爭의 性質及其雙方的交往」, 『中國邊疆史地研究』 15-1, 43~50쪽; 노태돈, 2011,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 154, 329~334쪽.
 - 3 申滢植, 1985. 12, 「三國統一前後 新羅의 對外關係」, 『신라문화』 2, 7~18쪽; 가네코 슈이치, 2001, 「中國의 입장에서 본 三國統一」, 『한국고대사연구』 23, 5~24쪽; 徐榮教, 2002. 7, 「羅唐戰爭과 吐蕃」, 『동양사학연구』 79, 1~30쪽; 박현숙, 2002,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235~245쪽; 徐榮教, 2002, 「羅唐戰爭의 開始와 그 背景: 國際情勢 변화와 관련하여」, 『역사학보』 173, 1~27쪽; 서영교, 2006, 『羅唐戰爭史研究 -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金錦子, 2008, 「論七世紀中後期唐朝與新羅關係演變及對東北亞政局的影響」,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41-3, 136원쪽~139오른쪽; 王霞, 2008. 5, 「八世紀前半葉的羅唐關係 - 以雙方的政治交涉爲中心 -」,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菅沼愛語, 2013, 「7世紀後半のユーラシア諸國の自立への動き - 「唐・吐蕃戰爭」と新羅の朝鮮半島統一・突厥の復興・契丹の反亂・渤海の建國との關連性 -」,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 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 溪水社(原載 菅沼愛語・菅沼秀夫, 2009. 2, 「七世紀後半の「唐・吐蕃戰爭」と東部ユーラシア諸國の自立への動き - 新羅の朝鮮半島統一・突厥の復興・契丹の反亂・渤海の建國との關連性」, 『史窓』 66, 1~22쪽).
 - 4 李相勳, 2011, 「羅唐戰爭의 軍事的 原因과 新羅의 戰爭準備」, 『역사와경계』 79, 1~33쪽.
 - 5 이상훈, 2011, 「羅唐戰爭의 종전배경과 新羅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32, 333~373쪽.
 - 6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로는 김영하, 2009, 「7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 - 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국통일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아니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전,⁷ 전술⁸이나 매소성 전투,⁹ 백촌강 전투,¹⁰ 석문 전투¹¹ 등 개별 전투와 이근행¹²과 김유신¹³ 등 전쟁에 참여한 武將 등 전쟁사, 나당전쟁 당시 문무왕의 정적 숙청,¹⁴ 고구려 부흥운동,¹⁵ 전염병,¹⁶ 신라

구』 146; 김영하, 2007, 「新羅의 백제 통합과 체제 변화」, 『新羅中代社會研究』, 一志社; 김영하, 2010,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김영하, 2011, 「신라통일론의 궤적과 함의」, 『한국사연구』 153; 김영하, 2012,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영하, 2014, 「신라의 ‘통일’ 영역 문제 - 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 『한국사학보』 56.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은 이영호, 2008, 「서평: ‘신라삼국통일론’에서 ‘남북국론’으로 - 김영하,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2007」, 『한국고대사연구』 52; 김수태, 2013,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된 한국고대사의 흐름 - 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한국고대사연구』 70 등 참조.

- 7 강봉룡, 2007, 「해전을 통해서 본 신라의 삼국통일과 그 해양사적 의의」, 『대의문물교류연구』 4; 이상훈, 2011, 2, 「羅唐戰爭期 文豆婁 秘法과 海戰」, 『신라문화』 37, 23~49쪽.
- 8 서영교, 1998, 「신라 장창당에 대한 신고찰」, 『경주사학』 17; 서영교, 2002, 「羅唐戰爭期 唐兵法의 導入과 그 意義」, 『한국사연구』 116, 39~64쪽.
- 9 민덕식, 1989, 「나·당전쟁에 관한 고찰 - 매소성전투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40; 李相勳, 2007, 2,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貫肖城 戰鬥」, 『신라문화』 29, 89~123쪽; 김병희, 2014,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군사』 91, 195~228쪽.
- 10 송완범, 2007, 「‘백촌강’ 싸움과 왜 - 동아시아 세계의 재편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5.
- 11 서영교, 2002,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동국사학회.
- 12 서영교, 2006, 「나당전쟁기 당변방군의 내습과 이근행」, 『동국사학』 42, 동국사학회.
- 13 이기동, 2002, 「김유신 - “지성”으로 이룩한 삼국통일의 위업 -」, 『한국사시민강좌』 30, 일조각.
- 14 孫煒冉, 「新羅文武王對“親唐派”將領肅清及其發動“羅唐戰爭”的關係」, 『朝鮮·韓國歷史研究』 16, 49~64쪽.
- 15 양병룡, 1997, 「나당전쟁의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전쟁」, 『사충』 46; 임기환, 2003, 「보덕국고」, 『강좌한국고대사』 10.
- 16 이현숙, 2003, 「7세기 신라 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현실』 47, 117~147쪽.

의 영토 인식,¹⁷ 역사교과서의 서술¹⁸ 등이 있다. 이밖에 나당전쟁과 관련된 사료를 비판한 연구로 John Charles Jamieson¹⁹과 池内宏의 연구²⁰와 나당전쟁 관련 금석문²¹에 관한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나당전쟁의 과정이나 성격, 배경, 개별 전쟁을 충분히 다루었다. 반면 재미슨과 池内宏의 연구를 제외하고 나당전쟁의 사료 비판이나 사료에 대한 검증 혹은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 글에서는 唐前期 원사료나 이를 토대로 편찬된 자료인 『唐會要』와 『通典』, 나당전쟁과 관련된 墓誌銘을 분석하여 唐代 조정이나 중국인의 나당전쟁 기술의 태도와 인식을 검토하려고 한다.

Ⅱ장 1절에서는 나당전쟁 당시의 원사료를 모아 당 후기에 편찬된 『당회요』와 『삼국사기』의 나당전쟁 기록을 분석하여 전쟁 당시 唐 조정의 전쟁 기술 방식과 전쟁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당회요』와 서술 방식이 유사한 『신당서』, 「신라전」의 서술 방식을 비교하여 양자의 계승 여부를 검토한다. Ⅲ장 1절에서는 당 후기에 편찬된 『通典·邊防典』, 「新羅傳」 기술 방식을 토대로 唐 後期 중국인의 나당전쟁 인식을 분석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통전·변

-
- 17 沈正輔, 2005, 「羅唐戰爭期 新羅의 北境意識」, 『신라사학보』 4, 55~88쪽.
 - 18 이상훈, 2011,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나당전쟁 서술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 120.
 - 19 존씨 재미슨, 1969, 「羅唐同盟의 瓦解: 韓中記事 取捨의 比較」, 『歷史學報』 44, 1~10쪽.
 - 20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지음, 정병준 역, 2014, 「고구려 멸망 후 유민의 반란 및 당과 신라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8, 253~295쪽(原載 池内宏, 1929,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1; 池内宏, 1960, 『滿鮮史研究』 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한편 이 논문은 중국어로도 번역되었다(池内宏, 馮立君 譯, 2015, 「高句麗滅亡後遺民의叛亂及唐與新羅關係」, 『中國邊疆民族研究』, 225~253쪽).
 - 21 권덕영, 2008. 9,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연구』 142, 33~67쪽; 拜根興, 2009, 「石刻碑志與唐新羅關係」, 『唐朝與新羅關係史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방전』과 서술 방식이 유사한 『舊唐書』, 『新羅傳』의 나당전쟁 서술을 비교하여 양자의 계승 여부를 검토한다.

본 논문은 『舊唐書』와 『新唐書』, 『資治通鑑』에 치우친 나당전쟁 연구의 한계를 지양하고, 唐代 원사료를 수록한 『唐會要』·『通典』·『冊府元龜』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唐代 대외관계와 한국고대사 연구의 기본 사료로 활용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II. 『唐會要』의 羅唐戰爭 서술 방식과 역사인식

1. 『唐會要』와 『三國史記』의 나당전쟁 기사 비교

唐 後期 蘇冕이 高祖부터 德宗까지 9朝의 사료를 정리한 『會要』와 崔鉉이 德宗부터 武宗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續會要』가 편찬하였다. 北宋 初 王溥가 宣宗부터 당 말까지의 원사료를 정리하여 소문의 『회요』 및 최현의 『속회요』와 합쳐 政書類 史書인 『당회요』를 편찬하였다.²² 『당회요』는 唐代 制度의 연혁을 고증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다.²³ 『당회요』에 인용된 문헌을 분석한 연구

22 『宋史』 卷249, 「王溥傳」, 8,801쪽. “溥好學, 手不釋卷, 嘗集蘇冕會要及崔鉉續會要, 補其闕漏, 爲百卷, 曰唐會要”. 이하 중국의 正史類는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따른다.

23 『四庫全書總目提要』(永瑤·紀昀 主編, 四庫全書總目提要編纂委 整理, 1999, 海南出版社), 「史部」 37, 政書類 1 唐會要條, 428원쪽, “初, 唐蘇冕嘗次高祖至德宗九朝之事爲『會要』四十卷. 宣宗大中七年, 又詔楊紹復等次德宗以來事爲『續會要』四十卷, 以崔鉉監修. 段公路『北戶錄』所稱『會要』, 卽冕等之書也. 惟宣宗以後記載尙缺, 溥因復採宣宗至唐末事續之, 爲『新編唐會要』一百卷. 建隆二年正月奏御, 詔藏史館. 書凡分目五百十有四, 於唐代沿革損益之制, 極其詳核. 官號內有『識量』·『忠諫』·『舉賢』·『委任』·『崇獎』諸條, 亦頗載事蹟, 其細瑣典故, 不能概以定目者, 則別爲雜錄, 附於各條之後, 又間載蘇冕『駁議』, 義例該備, 有裨考証. 今僅傳抄本, 脫誤頗多. 八卷題曰『郊儀』, 而所載乃南唐事, 九卷題曰『雜郊儀』, 而所載乃唐初奏疏, 皆與目錄不相應. 七卷·十

에 따르면, 唐實錄과 國史·起居注·律令格式과 『唐六典』·『貞觀禮』·『大唐開元禮』·『儀注』·官文書(官府檔案)·『通典』·『政典』·『鄴都故事』·『御史臺雜注』·『兩京記』·『四夷述』·『刊誤』 등 官方史料와 개인의 저작을 다수 인용하였고, 원사료를 보존하였다.²⁴ 官文書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전장제도의 자료를 배열한 역사의 體例인 會要類史書, 특히 『당회요』는 원사료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⁵

『당회요』는 세 차례에 걸쳐 편찬 혹은 보충되었기 때문에 蘇冕이 고조부터 덕종 때까지 다른 『회요』의 내용이 그대로 『당회요』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소문이 貞元 21년(805) 죽었기 때문에²⁶ 당 후기 역사관에 따라 사료를 취사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회요』가 원사료를 모아 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회요』의 나당전쟁 기사는 전쟁 당시 唐朝의 역사서술 태도와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²⁷

이 점에 착안하여 『당회요』의 나당전쟁과 『삼국사기』의 관련 기록을 비교하여 <표 1>로 만들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당회요』에서는 674년과 675년 두 차례 나당전쟁 기사를 실고 있다. 674년 기사를 살펴보자.

卷亦多錯入他文. 蓋原書殘缺, 而後人妄摭竄入, 以盈卷帙, 又一別本所闕四卷亦同. 而有補亡四卷, 採摭諸書所載唐事, 依原目編類. 雖未必合溥之舊本, 而宏綱細目, 約略粗具, 猶可以見其大凡. 今據以錄入, 仍各註“補”字於標目之下, 以示區別焉”.

- 24 董興艷, 2008, 『《唐會要》研究』, 廈門大學博士學位論文, 98~114쪽.
- 25 金毓黻, 『中國史學史』, 170~173쪽; 高國抗 지음, 오상훈·이개석·조병한 옮김, 『중국사학사』, 48~50쪽.
- 26 『舊唐書』卷189下, 「儒學下·蘇弁傳附冕傳」, 4,977쪽. “冕繼國朝政事, 撰會要四十卷, 行於時. 弁聚書至二萬卷, 皆手自刊校, 至今言蘇氏書, 次於集賢祕閣焉, 貞元二十一年, 卒于家”.
- 27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나당전쟁 당시 신라왕 김법민(문무왕)의 사죄와 사신 파견이 중복되어 기술된 점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사료를 배열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과 문서의 사료를 기계적으로 베껴옴을 보여준다.

(가) 上元元年 二月, 新羅王 金法敏[문무왕]은 이미 高句麗 叛亡의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百濟 故地를 자신의 땅으로 삼고 군대를 보내 지키게 하였다. 帝 [唐高宗]는 大怒하여 法敏의 官爵을 삭탈하고 宰臣 劉仁軌를 보내 토벌하게 하였다. 그리고 [김]법민의 아우 右驍衛員外大將軍 臨海郡公 金仁問을 신라왕으로 삼았다. 이때 [김]인문은 京師에 있었는데, 詔書를 내려 歸國하여 형을 대신하여 신라를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다. 인문이 中路에 이르렀을 때, 신라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인문은 이에 [京師로] 돌아갔다.²⁸

(나) 王은 高句麗의 叛衆을 받아들였다. 또 百濟의 故地를 점령하고 사람을 보내 지키도록 하였다. 唐 高宗은 大怒하여 王의 官爵을 삭탈하는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왕의 아우 右驍衛員外大將軍 臨海郡公 [김]인문이 京師에 있었는데, 그를 신라왕으로 삼고 歸國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 劉仁軌를 雞林道大總管로 임명하고, 衛尉卿 李弼과 右領軍大將軍 李謹行을 副將으로 삼아 군대를 징발하여 와서 토벌하였다.²⁹

인용문 (가)에서는 신라가 高句麗 부흥운동 세력을 받아들이고 百濟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구당서』, 「신라전」

28 『唐會要』 卷95, 「新羅傳」, 2,027쪽. “上元元年二月, 新羅王金法敏既納高句麗叛亡之眾, 又封百濟故地, 遣兵守之. 帝大怒, 詔削法敏官爵, 遣宰臣劉仁軌討之, 仍以法敏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金仁問爲新羅王. 時仁問在京師, 詔令歸國以代其兄, 仁問行至中路, 聞新羅降, 仁問乃還”.

29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下·文武王十四年條, “王納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 唐高宗大怒, 詔削王官爵, 王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在京師, 立以爲新羅王, 使歸國, 以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來討”.

〈표 1〉 『唐會要』와 『三國史記』 羅唐戰爭 기사 비교

	『唐會要』	『三國史記』
高句麗 舊地 공격(670)		十年春正月, 高宗許欽純還國, 留囚良圖, 終死于圖獄. 以王擅取百濟土地遣民, 皇帝責怒, 再留使者. 三月, 沙浪薛烏儒與高句麗太兄高延武, 各率精兵一, 度鴨綠江, 至屋骨, □□□靺鞨兵, 先至皆敦壤, 待之. 夏四月四日, 對戰, 我兵大克之, 斬獲不可勝計. 唐兵繼至, 我兵退保白城. ³⁰
百濟 舊地 공격(670)		秋七月, 王疑百濟殘衆反覆, 遣大阿浪儒敦於熊津都督府請和, 不從, 乃遣司馬彌軍窺覘. 王知謀我, 止彌軍不送, 舉兵討百濟. 品日·文忠·衆臣·義官·天官等, 攻取城六十三, 徙其人於內地. 天存·竹旨等取城七, 斬首二千. 軍官·文穎取城十二, 擊狄兵, 斬首七千級, 獲戰馬兵械甚多. ³¹
熊津, 石城 등의 전투 (671)		十一年春正月, 拜伊浪禮元爲中侍. 發兵侵百濟, 戰熊津南, 幢主夫果死之. 靺鞨兵來圍舌口城, 不克將退, 出兵擊之, 斬殺三百餘人. …… 六月, 遣將軍竹旨等, 領兵踐百濟加林城禾, 遂與唐兵戰於石城, 斬首五千三百級, 獲百濟將軍二人·唐果毅六人. ³²
唐의 平壤, 帶方 공격(671)		九月, 唐將軍高侃等, 率蕃兵四萬到平壤, 深溝高壘, 侵帶方. ³³
新羅의 唐水軍 공격(671)		冬十月六日, 擊唐漕船七十餘艘, 捉郎將鉗耳大侯·士卒百餘人. 其淪沒死者, 不可勝數. 級浪當千功第一, 授位沙浪. ³⁴

30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上·文武王十年條.

31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上·文武王十年條.

32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下·文武王十一年春正月條.

33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下·文武王十一年九月條.

3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下·文武王十一年冬十月六日條.

<p>新羅의 百濟舊地 공격, 唐將 高侃의 新羅 공격 (672)</p>		<p>十二年春正月, 王遣將攻百濟古省城, 克之. 二月, 攻百濟加林城, 不克. 秋七月, 唐將高侃率兵一萬, 李謹行率兵三萬, 一時至平壤, 作八營留屯. 八月, 攻韓始城·馬邑城, 克之, 進兵, 距白水城五百許步作營, 我兵與高句麗兵逆戰, 斬首數千級. 高侃等退, 追至石門戰之, 我兵敗績, 大阿浪曉川·沙浪義文·山世·阿浪能申·豆善·一吉浪安那含·良臣等死之.³⁵</p>
<p>唐의 高句麗舊地와 신라北邊 공격(673)</p>		<p>[九月] 王遣大阿浪徹川等, 領兵船一百艘, 鎮西海. 唐兵與靺鞨契丹兵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盧·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冬, 唐兵攻高句麗牛岑城, 降之. 契丹·靺鞨兵攻大楊城·童子城, 滅之.³⁶</p>
<p>唐의 新羅 공격 계획 (674)</p>	<p>上元元年二月, 新羅王金法敏既納高句麗叛亡之眾, 又封百濟故地, 遣兵守之. 帝大怒, 詔削法敏官爵, 遣宰臣劉仁軌討之, 仍以法敏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金仁問爲新羅王. 時仁問在京師, 詔令歸國以代其兄. 仁問行至中路, 聞新羅降, 仁問乃還.³⁷</p>	<p>[春正月] 王納高句麗叛眾,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 唐高宗大怒, 詔削王官爵, 王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在京師, 立以爲新羅王, 使歸國, 以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來討.³⁸</p>
<p>七重城 전투 (675)</p>	<p>二年二月, 雞林道行軍大總管劉仁軌大破新羅之眾于七重城而還, 新羅于是遣使入朝伏罪, 並獻方物, 前後相屬, 帝復金法敏官爵.³⁹</p>	<p>二月, 劉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 以經略之. 王乃遣使入貢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 金仁問中路而還, 改封臨海郡公.⁴⁰</p>
<p>新羅의 舊 百濟·高句麗 남부 점령 (675)</p>	<p>既盡有百濟之地, 及高句麗南境, 東西約九百里, 南北約一千八百里, 於界內置上·良·康·熊·金·武·漢·朔·溟等州. 所輸物產, 爲諸蕃之最.⁴¹</p>	<p>然多取百濟地,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⁴²</p>

35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文武王十二年春正月條.

36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文武王十三年九月條.

37 『唐會要』卷95, 「新羅傳」, 2,027쪽.

38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文武王十四年條.

39 『唐會要』卷95, 「新羅傳」, 2,027쪽.

40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文武王十五年二月條.

41 『唐會要』卷95, 「新羅傳」, 2,027쪽.

42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文武王十五年條.

<p>買肖城 · 七重城 전투 (675)</p>		<p>聞唐兵與契丹·靺鞨兵來侵，出九軍，待之。秋九月，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引風訓爲鄉導，來攻泉城，我將軍文訓等，逆戰勝之，斬首一千四百級，取兵船四十艘。仁貴解圍退走，得戰馬一千匹。二十九日，李謹行率兵二十萬，屯買肖城，我軍擊走之，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其餘兵仗稱足，遣使入唐貢方物。緣安北河設關·城，又築鐵關城，靺鞨入阿達城劫掠，城主素那逆戰死之。唐兵與契丹·靺鞨兵來，圍七重城，不克，小守儒冬死之，靺鞨又圍赤木城滅之，縣令脫起率百姓，拒之，力竭俱死。唐兵又圍石峴城，拔之，縣令仙伯·悉毛等，力戰死之，又我兵與唐兵大小十八戰，皆勝之，斬首六千四十七級，得戰馬二百匹。⁴³</p>
<p>道臨城 · 기벌포 전투 (676)</p>		<p>[十六年秋七月] 唐兵來攻道臨城拔之，縣令居尸知死之，作壤宮。冬十一月，沙浪施得領船兵，與薛仁貴戰於所夫里州伎伐浦，敗績，又進大小二十二戰，克之，斬首四千餘級。⁴⁴</p>
<p>九州 설치 (685, 757)</p>	<p>(於界內置上·良·康·熊·金·武·漢·朔·溟等州.)</p>	<p>[神文王] 五年春，復置完山州，以龍元爲總管，挺居列州，以置菁州，始備九州，以大阿浪福世爲總管。⁴⁵ [景德王十六年] 冬十二月，改沙伐州爲尙州，領州一，郡十，縣三十；歛良州爲良州，領州一，小京一，郡十二，縣三十四；菁州爲康州，領州一，郡十一，縣二十七；漢山州爲漢州，領州一，小京一，郡二十七，縣四十六；首若州爲朔州，領州一，小京一，郡十一，縣二十七；熊川州爲熊州，領州一，小京一，郡十三，縣二十九；河西州爲溟州，領州一，郡九，縣二十五；完山州爲全州，領州一，小京一，郡十，縣三十一；武珍州爲武州，領州一，小京一，郡十四，縣四十四。⁴⁶</p>

43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文武王十五年條,

44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文武王十六年條,

45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五年春條,

46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景德王十六年冬十二月條,

에는 나당전쟁 기록이 없다.⁴⁷ 반면 『신당서』, 「신라전」에는 신라의 항복 기사를 제외하고 『당회요』의 기록과 거의 비슷하며, 劉仁軌의 副將으로 衛尉卿과 右領軍大將軍 李謹行이 언급된 점만 다르다.⁴⁸ 인용문(나)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자치통감』의 기록⁴⁹과 비슷하다.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 31, 征討·高宗咸亨五年二月條의 기록⁵⁰은 대체로 (가)와 비슷하지만, 官爵 표기와 副將 임명 기사는 (나)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675년 七重城 전투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자.

(다) [上元] 2년 二月, 雞林道行軍大總管 劉仁軌는 신라의 무리를 七重城에서 大破하고 돌아왔다. 신라는 이때 사신을 보내 입조하여 앞드려 처벌을 기다

- 47 『舊唐書』 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6쪽. “三年, 真德卒, 爲舉哀, 詔以春秋嗣, 立爲新羅王·加授開府儀同三司·封樂浪郡王. 六年, 百濟與高麗·靺鞨率兵侵其北界, 攻陷三十餘城, 春秋遣使上表求救, 顯慶五年, 命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熊津道大總管, 統水陸十萬, 仍令春秋爲靺夷道行軍總管, 與定方討平百濟, 俘其王扶餘義慈, 獻于闕下. 自是新羅漸有高麗·百濟之地, 其界益大, 西至于海. 龍朔元年, 春秋卒, 詔其子太府卿法敏嗣位, 爲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新羅王. 三年, 詔以其國爲雞林州都督府, 授法敏爲雞林州都督, 法敏以開耀元年卒, 其子政明嗣位”.
- 48 『新唐書』 卷220, 「東夷·新羅傳」, 6,204쪽. “咸亨五年, 納高麗叛眾, 略百濟地守之, 帝怒, 詔削官爵, 以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爲新羅王, 自京師歸國, 詔劉仁軌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窮討”.
- 49 『資治通鑑』 卷202, 「唐紀」 18, 高宗上元元年條, 6,372쪽. “春, 正月, 壬午, 以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討新羅. 時新羅王法敏既納高麗叛眾,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 上大怒, 詔削法敏官爵; 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在京師, 立以爲新羅王, 使歸國”.
- 50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 31, 征討·高宗咸亨五年二月條, 11,413쪽. “五年二月, 遣太子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爲副, 發兵以討新羅. 時新羅王金法敏既納高麗叛亡之眾, 又封百濟故地, 漸使人守之, 帝大怒, 下詔削法敏官爵, 仍以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金仁問爲新羅王. 時仁問在京師, 詔令歸國, 以代其兄, 仁問行至中路, 聞新羅降, 仁問乃還”.

렸으며 아울러 方物을 바쳤으니 사신의 행렬이 서로 이어졌다. 이에 帝[唐高宗]는 다시 김법민[문무왕]의 官爵을 회복시켰다.⁵¹

(라)[上元 2년] 二月, 劉仁軌는 신라 병사를 七重城에서 격파하였다. [劉]仁軌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고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로 임명하여 신라를 경략하게 하였다. 王은 이에 사신을 보내 입조하여 조공하였으며 아울러 謝罪하였다. 帝[唐高宗]는 사면하고 왕[문무왕]의 官爵을 회복시켰다. 김인문은 중도에 돌아갔으며 臨海郡公으로 改封되었다.⁵²

『당회요』의 기록인 (다)와 『삼국사기』의 (라)는 대략 비슷하다. (다)와 (라)에 따르면, 唐의 유인계가 칠중성에서 唐의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갔으며, 신라는 사신을 보내 사죄했다. 이에 唐은 신라왕 김법민에게 원래의 官爵을 회복시켜 주었다. 池內宏은 (다)와 유사한 『자치통감』과 『삼국사기』의 기록을 비교하여 (다)에 보이는 唐의 일방적인 승리와 신라의 사죄 기사는 허구라고 보았다. 즉 唐이 패배했지만 (다)를 비롯한 上元 1~2년의 나당전쟁 기록에서는 이를 승전과 신라의 사죄로 체면을 세우고 철군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池內宏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도 신라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 위조되었음도 지적하였다.⁵³ 서영교는 唐이 吐蕃과의 전쟁에 전념하면서 나당전쟁에 종군하

51 『唐會要』卷95, 「新羅傳」, 2,027쪽. “二年二月, 雞林道行軍大總管劉仁軌大破新羅之眾于七重城而還, 新羅于是遣使入朝伏罪, 並獻方物, 前後相屬, 帝復金法敏官爵”.

52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文武王十五年二月條, “二月, 劉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以經略之. 王乃遣使, 入貢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 金仁問中路而還, 改封臨海郡公”.

53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지음, 정병준 역, 2014, 「고구려 멸망 후 유민의 반란 및 당과 신라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8, 253~295쪽(原載 池內宏, 1929,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1; 池內宏, 1960, 『滿鮮史研究』 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281~293쪽.

던 이근행을 吐蕃과의 전투에 투입하면서 나당전쟁을 서둘러 종결지었다고 보았다.⁵⁴

『당회요』에서 (다) 다음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마) 이미 百濟의 땅을 소유하였으며 高句麗의 南境에 이르렀으니,⁵⁵ 東西로 약 九百里, 南北으로 약 1,800里였고, 界內에 上·良·康·熊·金·武·漢·朔·溟 等 州를 설치하였다. 바치는 物產은 諸蕃 가운데 최고였다.⁵⁶ (밑줄은 저자)

(마)에서 上州는 尙州, 金州는 全州의 誤記이다. 전자는 『唐會要』의 편찬자가 同音異字로 잘못 표기하였고, 후자는 비슷한 글자를 잘못 베껴서 생긴 誤記로 생각된다.

『당회요』의 기록을 보면 (가)에서 上元元年(674) 유인궤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도록 하였고, 신라가 항복하자 신라왕으로 책봉한 김인문을 돌아오도록 하었다고 기록하였다. (다)에서는 劉仁軌가 칠중성에서 신라의 군대를 격파하니 신라왕 김법민이 항복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같은 『당회요』의 기록이지만, (가)

54 서영교, 「羅唐戰爭과 吐蕃」, 12~22쪽. 이 논문의 결론은 『당회요』를 비롯하여 당이 서둘러 나당전쟁을 종결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만, 논증 과정에 비약이 많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55 “及高句麗南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신라의 국경선이 고구려의 남쪽 국경과 일치한다, 즉 신라와 고구려 국경의 변동이 없다고 해석된다. 이 경우 고구려의 땅을 전혀 점령하지 못했다고 이해된다. 둘째, 신라가 고구려 남쪽 변경 지역을 점령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신라의 영토가 고구려의 남쪽 지역까지 확장되었다고 해석된다. 한국 학계에서는 후자가 통설이다. 그러나 경덕왕 시기까지 대동강 이남의 옛 고구려 영토에 군현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전자의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마)에서는 직역하였다.

56 『唐會要』 卷95, 「新羅傳」, 2,027쪽. “既盡有百濟之地, 及高句麗南境, 東西約九百里, 南北約一千八百里, 於界內置上·良·康·熊·金·武·漢·朔·溟等州, 所輸物產, 爲諸蕃之最”.

에 기록된 신라왕의 항복은 (다)와 중복된다. (가)와 (다)는 일부 기록이 중복되
는 점에서 서로 다른 문서이나 실록의 기록을 발췌하여 수록했던 것으로 보인
다. 즉 『당회요』가 논리에 따라 사료를 침삭한 것이 아니라 원사료를 주제(「신
라전」)에 따라 시간의 순서로 배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용문 (마)는
(가), (다)의 기록과 다르다. (가)와 (다)에서 신라가 항복했다고 기록하였지만,
(마)에서는 신라가 百濟의 옛 땅을 모두 점령하였고 高句麗의 남쪽 변경 지역도
점령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어서 신라는 이러한 영토 확장으로 上·良·康·
熊·金·武·漢·朔·溟 9州를 설치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가)·(다)와 (마)의 기
록은 논리의 전개상 어색하다.⁵⁷ (가)·(다)·(마)의 논리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당회요』의 (가)·(다)·(마)는 서로 다른 출전의 문서나 기사를 모
았을 것이다.

반면 『삼국사기』 卷7, 「신라본기」 7, 文武王下·文武王十五年條에서는
“그러나 百濟의 땅을 많이 취하였고 드디어 高句麗의 南境까지 州郡으로 삼았
다”⁵⁸라고 하여 (마)의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이후 買肖城, 칠중성,⁵⁹ 기벌포 전투⁶⁰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九州
를 완비한 것은 신문왕 5년(685) 完山州와 菁州를 설치할 때였다.⁶¹ 이어서 경
덕왕 16년(757) 沙伐州·敵良州·菁州·漢山州·首若州·熊川州·河西州·完

57 논리의 전개가 어색하다는 표현은, ‘신라가 당에 항복과 사죄를 하였다’는 기록과 ‘신라가 백제 고지(故地)를 점령하였다’는 기록에서 두 사실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양자가 모두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면, 당은 나당전쟁에서 패배한 후 웅진도독부가 설치된 백제 고지를 신라에 빼앗기고 신라의 항복과 사죄를 받아들여 체면을 세운 후, 기록을 자국 위주로 변형시켰을 것이다.

58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下·文武王十五年條, “然多取百濟地,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

59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下·文武王十五年條.

60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下·文武王十六年條.

61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8, 神文王五年春條, “五年春, 復置完山州, 以龍元爲總管, 挺居列州, 以置菁州, 始備九州, 以大阿飡福世爲總管”.

山州·武珍州를 각각 尙州·良州·康州·漢州·朔州·熊州·溟州·全州·武州로 이름을 바꾸었다.⁶² 즉 (마)의 기록은 685년까지 9주의 설치와 757년 9주의 명칭 변경까지의 기록을 압축하여 기록하였다. (마) 다음에는 開耀元年(681) 김법민의 죽음과 金政明(神文王)의 즉위를 기록하였다.⁶³ 이러한 『唐會要』의 서술을 종합하면, 唐은 ① 劉仁軌가 675년 七重城에서 신라의 군대를 격파한 후 ② 김법민의 항복을 받고 ③ 백제의 옛 땅 전부와 高句麗의 남쪽 영토를 신라가 차지하도록 용인하며 신라가 그 땅에 9주를 설치하게 하였다는 논리로 나당전쟁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685년 9주의 완비와 757년 9주의 명칭 변경 및 정비라는 신라의 기록(『삼국사기』)과 달리 마치 675년에 9주를 설치한 것처럼 기록하였다.

반면 『삼국사기』의 신라 측 기록은 이와 다르다. 신라군은 675년 秋七月 唐의 무장 이근행의 20만 명의 군대를 買肖城에서 격파하고 唐의 칠중성 포위를 막아냈다. 唐은 阿達城과 赤木城, 石峴城에서 승리하거나 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신라군은 唐兵과 18회 싸워서 승리하고 수급 6,047급과 戰馬 200匹을 노획하였다.⁶⁴ 그러나 칠중성과 적목성, 석현성의 패배와 武將들의 죽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8차례 싸운 구체적인 전투 현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서술 태도는 석연찮다. 게다가 18회 전투 전과를 총계만 기록하였다. 신라의 사서를 참조했을 『삼국사기』에 신라에 불리한 패전 기록은 자세히 기록했지만, ‘삼국 통일’에 기여한 18회 전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점은 이상하다.⁶⁵ 이러한 서술은 676년 전투에서도 보인다. 676년 唐의 군대가

62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景德王十六年冬十二月條.

63 『唐會要』 卷95, 「新羅傳」, 2,028쪽. “開耀元年, 法敏卒, 遣使冊立其子政明爲王, 仍襲父官爵.”

6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下·文武王十五年條.

65 池內宏은 『자치통감』과 『삼국사기』에 기록된 上元 1~2년의 전쟁을 비교하면서 『자치통감』에서 당이 세 차례 모두 승리했다는 기록도 왜곡이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신라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 사건의 순서를 바꾸는 등 왜곡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지음, 정병준 역, 2014, 「고구려 멸망

道臨城을 공격하였을 때 縣令 居尸知가 전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어서 沙浪 施得이 薛仁貴의 군대를 伎伐浦에서 격파하고 이어서 22회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唐兵 4,000여 급을 참하였다.⁶⁶ 그러나 전년의 전투처럼 구체적인 전투 위치의 개별 전투성적을 기록하지 않았다. 675년과 676년 『삼국사기』의 두루 뭉술한 신라 승전기록을 보면, 唐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고도 신라의 사죄를 받고 백제 故地를 버리고 후퇴했다는 사실은 과장 혹은 왜곡이지만,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는 기록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다.⁶⁷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上元 2년(675) 二月 劉仁軌가 七重城에서 승리를 거둔 기사 이후에 이근행이 買肖城에서 신라군과 세 차례 싸워 이겼다고 기록하였다. 이후 신라왕 김법민이 항복하자 官爵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기록하였다.⁶⁸ 여기까지는 (다)와 비슷하며, 이후 신라가 백제와 高句麗의 땅을 점령하

후 유민의 반란 및 당과 신라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8, 287~293쪽.

- 66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下·文武王十六年條, “[秋七月] 唐兵來攻道臨城拔之, 縣令居尸知死之, 作壤宮, 冬十一月, 沙浪施得領船兵, 與薛仁貴戰於所夫里州伎伐浦, 敗績,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 斬首四千餘級”.
- 67 675년 18회의 싸움에서 적의 수급 6,047급과 戰馬 200필을 노획하였는데, 이는 1회 평균 약 336명과 11필이므로 큰 전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균적으로 죽인 336명은 당시 당 절충부(折衝府)가 800~1,200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唐六典』 (李林甫等撰, 陳仲夫點校, 1992, 中華書局; 2005년 重印) 卷25, 諸衛府·左右果毅都尉條細注, 645쪽, “垂拱中, 以千二百人爲上府, 千人爲中府, 八百人爲下府, 赤縣爲赤府, 畿縣爲畿府”; 『新唐書』 卷50, 「兵志」, 府兵之制條, 1325쪽, “太宗貞觀十年, 更號統軍爲折衝都尉, 別將爲果毅都尉, 諸府總曰折衝府, 凡天下十道, 置府六百三十四, 皆有名號, 而關內二百六十有一, 皆以隸諸衛, 凡府三等: 兵千二百人爲上, 千人爲中, 八百人爲下”, 한 개 절충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부대 편성에서도 2개 중대 병력에 불과하다. 676년 22회의 전투에서 4,000여 급의 목을 벤 것도 1회 평균 약 182명의 목을 벤 것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1개 중대 병력에 해당한다. 당군(唐軍)의 수가 기록되지 않아서 당군의 전쟁 1회당 전사자 비율은 알 수 없지만, 675년과 676년 죽인 당군의 수와 1회 평균 죽인 수는 신라가 당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
- 68 『新唐書』 卷220, 「東夷·新羅傳」, 6, 204쪽, “咸亨五年, 納高麗叛奴, 略百濟地守之, 帝怒, 詔削官爵, 以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爲新羅王, 自

여 9州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은 (마)와 비슷하다.

이상으로 唐代의 기록을 정리한 『당회요』 기록과 『삼국사기』 기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당회요』에서는 나당전쟁을 일방적인 唐의 승리로 粉飾하였다. 반면 『삼국사기』는 唐의 기록과 유사하지만, 신라의 승리 기록도 추가하였다. 양자를 비교하면, 당은 나당전쟁의 패배를 숨기기 위해 당의 군사가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한 기록과 김법민의 항복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서술 태도와 역사 의식은 당 전기 혹은 『회요』를 편찬한 당 후기 중국인의 역사관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당회요』의 논리처럼 唐이 순순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 『당회요』에 수록되지 않은 사료를 인용한 『책부원귀』·『구당서』·『신당서』·『자치통감』에는 그 이후 당 고종이 다시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음을 기록하였다. 다음 인용문은 『책부원귀』의 기록이다.

高宗이 장차 군대를 징발하여 신라를 토벌하려고 하였다. 이때 [張]文瓘은 疾病으로 집에 있었는데 병든 몸으로 수레를 타고 入見하여 다음과 같이 諫하였다. “지주 吐蕃이 변경을 침범하니 兵이 토번이 침입하는 변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비록 唐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군대는 당을 內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東西에서 모두 征伐에 종사하게 된다면, 臣은 백성들이 그 弊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전쟁을 그치고 德을 쌓아서 百姓을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帝는 그의 간언을 따랐다.⁶⁹

京師歸國，詔劉仁軌爲鷄林道大總管，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發兵窮討。上元二年二月，仁軌破其眾於七重城，以靺鞨兵浮海略南境，斬獲甚眾，詔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屯買肖城，三戰，虜皆北。法敏遣使入朝謝罪，貢饗相望，仁問乃還，辭王，詔復法敏官爵”。

69 『冊府元龜』 卷327, 『宰輔部』 20, 諫諍3·張文瓘條, 3,699쪽. “高宗將發兵以討新羅，文瓘疾病在家，與疾入見，諫曰：‘比爲吐蕃犯邊，兵屯寇境，新羅雖未即順，師不內侵，若東西俱事征伐，臣恐百姓不堪其弊。且偃兵修德，以安百姓。’帝從之”。

이 인용문은 『舊唐書』, 「張文瓘傳」⁷⁰과 『新唐書』, 「張文瓘傳」⁷¹에도 보 이는데, 『자치통감』은 儀鳳 3년(678)에 발생한 일로 기록하였다.⁷² 678년은 신 라가 676년 薛仁貴의 唐軍을 기벌포에서 격파한 후 2년 후이다. 일반적으로 唐은 기벌포 패전 이후 신라와의 전쟁을 포기했다고 알려졌었다. 이 인용문에서 당 고종이 다시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회요』, 「신라 전」에서 唐이 칠중성의 전쟁 이후 신라왕 김법민의 항복을 받고 흔쾌히 한반도 에서 물러났다는 기록과도 모순된다. 즉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高句麗와 百濟의 故地에서 쫓겨난 唐은 다시 신라를 공격하여 최소한 高句麗와 百濟의 故地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儀鳳元年(676) 熊津都督府를 建安故城으로 옮기고 唐의 徐州와 兗州로 옮긴 百濟遺民을 建安城으로 다시 이주시켰으며,⁷³ 儀鳳 2년(677) 扶餘隆과 百濟遺民을 新城으로 옮긴⁷⁴ 조

70 『舊唐書』卷85, 「張文瓘傳」, 2,815~2,816쪽. “文瓘性嚴正, 諸司奏議, 多所糾駁, 高宗甚委之. 或時臥疾在家, 朝廷每有大事, 上必問諸宰臣曰: ‘與文瓘議未?’ 奏云未者, 則遣共籌之; 奏云已議者, 皆報可從之. 其後新羅外叛, 高宗將發兵討除, 時文瓘疾病在家, 乃與疾請見, 奏曰: ‘比爲吐蕃犯邊, 兵屯寇境, 新羅雖未即順, 師不內侵, 若東西俱事征討, 臣恐百姓不堪其弊. 請息兵修德以安百姓.’ 高宗從之”.

71 『新唐書』卷113, 「張文瓘傳」, 4,187쪽. “新羅叛, 帝將出兵討之. 時文瓘病臥家, 自力請見, 曰: ‘吐蕃盜邊, 兵屯境未解, 新羅復叛, 議者欲出師, 二虜俱事, 臣恐人不堪弊, 請息兵修德, 以懷異俗.’ 詔可”.

72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儀鳳三年條, 6,385쪽. “上將發兵討新羅, 侍中張文瓘臥疾在家, 自輿入見, 諫曰: ‘今吐蕃爲寇, 方發兵西討; 新羅雖云不順, 未嘗犯邊, 若又東征, 臣恐公私不勝其弊.’ 上乃止. 癸亥, 文瓘薨”.

73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儀鳳元年條, 6,378~6,379쪽. “二月, 甲戌, 徙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先是有華人任東官者, 悉罷之. 徙熊津都督府於建安故城; 其百濟戶口先徙於徐·兗等州者, 皆置於建安”.

74 『舊唐書』卷5, 「高宗紀」下, 儀鳳二年二月丁巳條, 102쪽. “二月丁巳, 工部尚書高藏授遼東都督, 封朝鮮郡王, 遣歸安東府, 安輯高麗餘眾; 司農卿扶餘隆熊津州都督, 封帶方郡王, 令往安輯百濟餘眾,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儀鳳二年條, 6,382~6,383쪽. “初, 劉仁軌引兵自熊津還, 扶餘隆畏新羅之逼, 不敢留, 尋亦還朝. 二月, 丁巳, 以工部尚書高藏爲遼東州都督, 封朝鮮王, 遣歸遼東, 安輯高麗餘眾; 高麗先在諸州者,

치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이용한 신라 공격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唐은 676년 기벌포의 패배 이후 다시 신라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吐蕃과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와도 싸우면 두 곳에서 싸워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신라와의 전쟁을 포기하였다. 『당회요』와 『신당서』, 「신라전」은 이를 숨기고 675년 칠중성 전투 승리 이후 신라에 관용을 베푼 것처럼 기록한 것이다.

앞에서 당 전기 기록을 수록한 『당회요』에서는 唐이 나당전쟁 패배를 숨겼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런 추론이 억측이 아님은 당 전기 墓誌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나당전쟁에 참여한 唐의 武將은 유인궤·이근행·高侃 등이지만, 묘지명과 각종 사서에서 동시에 보이는 인물은 이근행이다. 이근행은 粟末靺鞨의 酋長 突地稽의 아들이다. 李謹行의 墓誌銘에는 그의 관력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氣가 外域에 능가하고 명성은 中朝에 떨쳤다. 첫 벼슬은 右武衛翊衛校尉인데 遊擊將軍 上柱國이 [散官과 勳官으로] 덧붙였으며, 五原縣男에 봉해졌다. 이어서 右武衛懷口府口果毅都尉로 승진하였고, 左屯衛龍泉府左果毅[都尉]와 右武候肅慎府折衝[都尉]에 임명된 후 左屯·右驍二衛翊府左郎將을 거쳤으며, 五原郡開國公으로 進封되었고 明威將軍 行左屯衛翊府左郎將 左驍衛翊衛中郎將이 덧붙여졌다. 右驍衛將軍·左監門衛將軍·右衛將軍을 거쳐 右領軍員外大將軍 檢校廊州刺史 積石道經略大使, 檢校右羽林軍 右衛大將軍을 역임하였다.⁷⁵

皆遣與藏俱歸，又以司農卿扶餘隆爲熊津都督，封帶方王，亦遣歸安輯百濟餘眾，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時百濟荒殘，命隆寓居高麗之境，藏至遼東，謀叛，潛與靺鞨通；召還，徙邕州而死，散徙其人於河南·隴右諸州，貧者留安東城傍，高麗舊城沒於新羅，餘眾散入靺鞨及突厥，隆亦竟不敢還故地，高氏·扶餘氏遂亡”。

75 「大唐故右衛員外大將軍燕公墓誌銘」,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 主編, 2001, 上海古籍出版社) 垂拱6, 282~283쪽. “故能氣凌外域, 聲振中朝, 解

이 인용문에서는 이근행이 평생 역임한 벼슬을 나열한 것이다. 그런데 『책부원귀』에 따르면 이근행은 上元 2년(675) 安東鎮撫大使에 임명되어 신라의 買肖城에 주둔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신라군을 격파하였다. 이 때문에 신라는 唐에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方物을 바쳐 용서를 빌었다.⁷⁶ 즉 이근행이 675년에 買肖城에서 거둔 세 차례의 승리는 신라가 唐에 항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묘지명에는 積石道經略大使라는 使職은 보이지만, 安東鎮撫大使라는 직책은 보이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이근행은 『당회요』와 『책부원귀』, 『신당서』에서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묘지명에는 나당전쟁과 관련된 기록이 없다. 이는 이근행의 묘지명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이근행 관련 기록에서도 나당전쟁 기록이 없다.⁷⁷

이근행의 묘지명에는 “이전에 遼左를 공격하니 鳥俗이 이에 나쁜 소리를 바꾸었고, 河西[를 정벌하니], 犬戎은 그로 말미암아 도망쳤다”⁷⁸라는 구절이 있다. 권덕영은 이 구절을 唐의 신라 공격으로 해석하였다.⁷⁹ 이는 이근행이 買肖城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 때문이다. 그러나 ‘遼左’는 遼東, 즉 高句麗를 지칭하므로 이근행의 遼左 공격은 高句麗 공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舊

褐右武衛翊衛校尉, 加遊擊將軍·上柱國, 封五原縣男, 轉右武衛懷□府□果毅都尉, 曆左屯衛龍泉府左果毅·右武候肅慎府折衝, 轉左屯·右驍二衛翊府左郎將, 進封五原郡開國公, 加明威將軍·行左屯衛翊府左郎將·左驍衛翊衛中郎將, 累遷右驍衛·左監門衛·右衛·右領軍員外大將軍·檢校廊州刺史·積石道經略大使·檢校右羽林軍·右衛大將軍”.

- 76 『冊府元龜』卷986, 「外臣部」31, 征討·高宗上元二年二月條, 11,413쪽, “上元二年二月, 劉仁軌大破新羅之眾於七重城, 又以闔幢浮海而南略新羅之南境, 斬獲甚眾, 仁軌勒兵而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屯兵於新羅之買肖城, 以經略之, 前後三戰, 新羅皆敗, 新羅於是遣使入朝伏罪, 並獻方物, 前後相屬, 帝竟許之, 復其王金法敏官爵”.
- 77 존씨 재미슨, 「羅唐同盟의 瓦解: 韓中記事 取捨의 比較」, 8~9쪽.
- 78 「大唐故右衛員外大將軍燕公墓誌銘」,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 主編, 2001, 上海古籍出版社) 垂拱6, 283쪽. “往征遼左, 鳥俗於是革音; □□河西, 犬戎由其遁跡”.
- 79 권덕영,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55쪽.

唐書』卷3, 「高宗紀」, 乾封元年六月壬寅條에 따르면, 泉男生이 唐에 내부하자 唐은 契必何力을 遼東安撫大使로 임명하고 龐同善과 高侃을 遼東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하였으며 薛仁貴와 이근행을 後援으로 삼았다.⁸⁰ 이 기사에서 이근행이 천남생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작전에 참전했음을 보여준다. 또 이근행은 咸亨元年(670) 燕山道行軍總管에 임명되어 鉗牟岑의 반란 토벌에 참여하였다.⁸¹ 그는 또 咸亨 4년(673)에 瓠盧河의 서쪽에서 高句麗의 부흥세력을 격파하였다.⁸²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이근행은 천남생의 항복과 高句麗의 부흥운동 격파 전쟁에 참전하였다. 따라서 이근행 모지명의 '遼左' 공격은 신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高句麗의 降將 및 부흥운동 세력과 싸우는 전쟁에 참전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⁸³

요컨대 이근행의 모지명과 『구당서』·『신당서』의 열전에서는 이근행의 나당전쟁 기록을 누락하였다. 반면 『책부원귀』와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이근행이 唐將 유인귀의 副將이 되어 참전했다고 기록하였고,⁸⁴ 『冊府元龜』卷

80 『舊唐書』卷3, 「高宗紀」, 乾封元年六月壬寅條, 65쪽, “六月壬寅, 高麗泉男生請內附, 右驍衛大將軍契必何力爲遼東安撫大使, 率兵援之, 左金吾衛將軍龐同善·營州都督高侃爲遼東道行軍總管, 左武衛將軍薛仁貴·左監門衛將軍李謹行爲後援”.

81 『舊唐書』卷3, 「高宗紀」, 咸亨元年四月庚午條, 65쪽, “高麗酋長鉗牟岑叛, 寇邊, 左監門衛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右領軍衛大將軍李謹行爲燕山道行軍總管, 以伐之”.

82 『新唐書』卷5, 「高宗紀」下, 咸亨四年條, 98쪽, “閏五月丁卯, 燕山道總管李謹行破高麗叛黨於瓠盧河之西, 高麗平壤餘眾遁入新羅”.

83 고구려 부흥운동 공격을 나당전쟁의 일부로 포함한다면, 고구려 부흥 운동군과 싸운 이근행은 나당전쟁에 참전한 셈이다. 이 경우에도 이근행의 당군이 신라군과 직접 싸운 것은 아니다.

84 『冊府元龜』卷986, 「外臣部」31, 征討·高宗咸亨五年二月條, 11,413쪽, “五年二月, 遣太子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爲副, 發兵以討新羅. 時新羅王金法敏既納高麗叛亡之眾, 又封百濟故地, 漸使人守之, 帝大怒, 下詔削奪法敏官爵, 仍以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金仁問爲新羅王, 時仁問在京師, 詔令歸國, 以代其兄, 仁問行至中路, 聞新羅降, 仁問乃還”; 『新唐書』卷220, 「東夷·新羅傳」, 6,204쪽,

986, 「外臣部」 31, 征討·高宗上元二年二月條에서도 安東鎮撫大使에 임명하여 신라와 買肖城에서 싸워 승리했다고 기록하였다.⁸⁵ 『책부원귀』와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이근행이 나당전쟁에 참전했고 승리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근행의 묘지명에 나당전쟁의 참전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근행은 나당전쟁에서 『책부원귀』나 『신당서』, 「신라전」의 기록과 달리 큰 戰功을 세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⁸⁶ 앞으로 나당전쟁에 참전한 인물들의 묘지명이 많이 발굴된다면, 당 전기 중국인들이 나당전쟁 패배의 은닉 여부를 보다 상세히 고증할 수 있을 것이다.

2. 『唐會要』와 『新唐書』, 「新羅傳」의 나당전쟁 서술 비교

II장 1절에서 『신당서』, 「신라전」에 나당전쟁의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당회요』의 서술 방식과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본 절에서는 『당회요』와 『신당서』의 나당전쟁을 비교하여 나당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당회요』와 『신당서』, 「신라전」의 나당전쟁 기록을 비교하여 <표 2>로 정리하였다.

“咸亨五年, 納高麗叛眾, 略百濟地守之, 帝怒, 詔削官爵, 以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爲新羅王, 自京師歸國. 詔劉仁軌爲鷄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窮討”.

85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 31, 征討·高宗上元二年二月條, 11,413쪽, “上元二年二月, 劉仁軌大破新羅之眾於七重城, 又以闡幢浮海而南略新羅之南境, 斬獲甚眾, 仁軌勒兵而還, 詔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 屯兵於新羅之買肖城, 以經略之. 前後三戰, 新羅皆敗, 新羅於是遣使入朝伏罪, 並獻方物, 前後相屬, 帝竟許之, 複其王金法敏官爵”.

86 존씨 재미슨도 필자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존씨 재미슨, 「羅唐同盟의 瓦解: 韓中記事 取捨의 比較」, 8~9쪽.

〈표 2〉 『唐會要』와 『新唐書』, 『新羅傳』 기사 비교 87

	『唐會要』	『新唐書』, 『新羅傳』
唐의 新羅 공격 계획 (674)	上元元年二月, 新羅王金法敏既納高句麗叛亡之眾, 又封百濟故地, 遣兵守之. 帝大怒, 詔削法敏官爵, 遣宰臣劉仁軌討之, 仍以法敏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金仁問爲新羅王. 時仁問在京師, 詔令歸國以代其兄. 仁問行至中路, 聞新羅降, 仁問乃還.	咸亨五年, 納高麗叛眾, 略百濟地守之, 帝怒, 詔削官爵, 以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爲新羅王, 自京師歸國. 詔劉仁軌爲鷄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窮討. ⁸⁸
七重城 전투(675)	二年二月, 雞林道行軍大總管劉仁軌大破新羅之眾于七重城而還, 新羅于是遣使入朝伏罪, 並獻方物, 前後相屬, 帝復金法敏官爵.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眾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眾, 詔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 屯買肖城, 三戰, 虜皆北. 法敏遣使入朝謝罪, 貢篚相望, 仁問乃還, 辭王, 詔復法敏官爵. ⁸⁹
新羅의 舊百濟·高句麗 남부 점령(675)	既盡有百濟之地, 及高句麗南境, 東西約九百里, 南北約一千八百里, 於界內置上·良·康·熊·金·武·漢·朔·溟等州, 所輸物產, 爲諸蕃之最.	然多取百濟地, 遂抵高麗南境矣. 置尚·良·康·熊·全·武·漢·朔·溟九州, 州有都督, 統郡十或二十, 郡有大守, 縣有小守. ⁹⁰

〈표 2〉에서 674년 唐의 신라 공격 계획 기사 가운데 『당회요』에서는 ‘上元元年’,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咸亨元年’이라고 표기하여 연호가 다르다. 그해 8월에 咸亨 5년을 上元元年으로 바꾸었다.⁹¹ 그해 2월은 연호가 바뀌기

87 『당회요』 원문의 서지사항은 〈표 1〉 참조.

88 『新唐書』 卷220, 「東夷·新羅傳」, 6,204쪽.

89 『新唐書』 卷220, 「東夷·新羅傳」, 6,204쪽.

90 『新唐書』 卷220, 「東夷·新羅傳」, 6,204쪽.

91 『舊唐書』 卷5, 「高宗紀」 下, 上元元年條, 99쪽. “秋八月壬辰, 追尊宣簡公爲宣皇帝, 懿王爲光皇帝, 太祖武皇帝爲高祖神堯皇帝, 太宗文皇帝爲文武聖皇帝, 太穆皇后爲太穆神皇后, 文德皇后爲文德聖皇后, 皇帝稱天皇, 皇后稱天后, 改咸亨五年爲上元元年, 大赦”.

전이므로 함형 5년이라고 적어야 한다. 따라서 ‘上元元年’으로 표기한 『당회요』의 기사는 그해 쓰여진 원사료가 아니라 그해보다 뒤에 씌여진 기록을 옮겼을 것이며, 이 경우 실록 등 674년 이후의 기록을 채록했을 것이다. 반면 ‘함형 5년’으로 표기한 『신당서』, 『신라전』의 기사는 당시 원사료일 가능성도 있지만, 『신당서』 卷3, 「고종기」, 상원원년이월임오조에서는 “上元元年 二月壬午, 유인궤는 雞林道行軍大總管이 되어 신라를 정벌하였다”⁹²라고 기록하여 ‘上元元年’이라고 기록하였다. 즉 같은 『신당서』 안에서도 동일 사건(나당전쟁)에 대해 본기의 「신라전」 연도 표기가 다르다. 이처럼 동일한 『신당서』에서 나당전쟁의 연호 표기가 다른 이유는 『신당서』 권3, 「고종기」, 상원원년이월임오조와 『신당서』, 「신라전」이 별개의 사료를 수록하였고, 전자는 연호가 바뀐 후세 기록을, 후자는 바뀌기 전의 연호를 적은 674년 당시 기록을 베껴기 때문일 것이다.

〈표 2〉를 바탕으로 『당회요』와 『신당서』, 「신라전」의 기록 차이를 비교해 보자. 먼저 674년 唐의 신라 공격 계획 기사를 분석하면, 대략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당회요』에서는 신라를 공격한 장군으로 유인궤 한 사람을 거론하였지만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유인궤 이외에도 李弼과 이근행을 열거하였다. 반면 『신당서』 권3, 「고종기」, 상원원년조에서는 “上元元年 二月壬午, 유인궤는 雞林道行軍大總管이 되어 신라를 정벌하였다”⁹³라고 하여 신라 공격의 武將으로 유인궤만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사료는 다르지만 『당회요』와 『신당서』, 「고종기」의 서술 방식이 비슷하고, 『신당서』, 「신라전」 기사와 다르다.

다음으로 675년 칠중성 전투이다. 『당회요』에서는 雞林道行軍大總管 劉仁軌가 신라군을 칠중성에서 격파하고 돌아왔으며 신라가 사자를 보내 사죄하였고 이에 김법민의 관작을 회복시켰다고 하였다.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칠중성 전투와 신라의 사죄 기사 사이에 이근행이 買肖城에 주둔하며 세 차

92 『新唐書』 卷3, 「高宗紀」, 上元元年二月壬午條, 71쪽, “上元元年二月壬午, 劉仁軌爲雞林道行軍大總管, 以伐新羅”.

93 『新唐書』 卷3, 「高宗紀」, 上元元年條, 71쪽, “上元元年二月壬午, 劉仁軌爲雞林道行軍大總管, 以伐新羅”.

레 모두 이겼다는 기록을 삼입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사죄와 唐의 김법민 官爵 회복 기사 사이에 김인문의 귀환 사실을 기록하였다.⁹⁴ 『당회요』에서는 김인문의 귀환 시점을 1년 전인 674년으로 기술하였다.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咸亨五年條에서는 사건의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지만, 『신당서』, 「신라전」의 기사와 유사하다.⁹⁵ 전체적으로 『당회요』의 기사보다 『신당서』, 「신라전」의 전투 기사가 상세하다. 반면 신라의 사죄 파견 기사는 『당회요』의 기록이 상세하고 글자 수가 많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舊百濟 영토 전부와 高句麗 일부 영토 점령 기록이다. 이 부분은 『당회요』가 자수로는 더 많다. 『당회요』에서는 신라 강역을 동서 약 900里, 남북 약 1,800里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9州 설치를 기록하였는데, 尙州와 全州를 上州와 金州로 잘못 표기하였다. 上州는 같은 음의 다른 글자로, 金州는 轉寫 과정에서 ‘全’字를 ‘金’字로 잘못 베껴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신라에서 생산되는 物産이 諸蕃(당의 주변국) 가운데 최고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신당서』, 「신라전」은 신라의 강역 너비와 신라 물산을 제외하면 『당회요』의 기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9주를 나열한 후 신라의 州·郡·縣 지방관을 언급하였다. 즉 州에는 都督을 두고 10~12개의 郡을 통할하였으며, 郡에는 大守, 縣에는 小守를 두었다고 기록하였다.⁹⁶ 그리고 이 기사 뒤에 김법민의 죽음과 김정명(신문왕)·김이흥(효소왕)·김흥광(성덕왕)의 즉위와 죽음을 기록하였다.⁹⁷

94 『新唐書』卷220, 「東夷·新羅傳」, 6,204쪽.

95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咸亨五年條, 6,375쪽. “二月, 劉仁軌大破新羅之眾於七重城; 又使靺鞨浮海, 略新羅之南境, 斬獲甚眾.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 屯新羅之買肖城以經略之, 三戰皆捷, 新羅乃遣使入貢, 且謝罪, 上赦之, 復新羅王法敏官爵. 金仁問中道而還, 改封臨海郡公”.

96 『新唐書』卷220, 「東夷·新羅傳」, 6,204쪽.

97 『新唐書』卷220, 「東夷·新羅傳」, 6,204쪽. “置尙·良·康·熊·全·武·漢·朔·溟九州, 州有都督, 統郡十或二十, 郡有大守, 縣有小守. 開耀元年, 死, 子政明襲王. 遣使者朝, 丐唐禮及它文辭, 武后賜吉凶禮并文詞五十篇. 死, 子理

9주 설치와 都督·大守·小守 설치를 『삼국사기』와 비교해 보자.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문맥상 신라가 도독·대수·소수를 문무왕 시기에 설치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志下·外官條에는 都督·大守·小守 설치 기사가 보인다.⁹⁸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神文王五年春條에서는 “五年(685) 春, 다시 完山州을 설치하고 龍元을 總管으로 임명하였다. 居列州를 나누어 菁州를 설치하니, 비로소 九州가 갖추어졌으며, 大阿滄 福世를 總管으로 임명하였다”⁹⁹라고 하여 685년에 처음으로 9주가完備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州의 장관은 總管이었다. 都督은 문무왕 4년(664) 漢山州都督(軍官)¹⁰⁰이 보이지만 문무왕 원년(661) 上州總管(品日),¹⁰¹ 신문왕 5년(685) 完山州總管(龍元),¹⁰² 신문왕 7년(687) 沙伐州總管(官長),¹⁰³

洪襲王. 死, 弟興光襲王”.

- 98 『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志下·外官條. “都督九人, 智證王六年, 以異斯夫爲悉直州軍主, 文武王元年, 改爲總管, 元聖王元年, 稱都督, 位自級滄至伊滄爲之, 仕臣五人, 眞興王二十五年始置, 位自級滄至波珍滄爲之, 州助九人, 位自奈麻至重阿滄爲之, 郡大守百十五人, 位自舍知至重阿滄爲之, 長史九人, 位自舍知至大奈麻爲之, 仕大舍五人, 位自舍知至大奈麻爲之, 外司正百三十三人, 文武王十三年置, 位未詳, 少守八十五人, 位自幢至大奈麻爲之, 縣令二百一人, 位自先沮知至沙滄爲之”.
- 99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神文王五年春條. “五年春, 復置完山州, 以龍元爲總管, 挺居列州, 以置菁州, 始備九州, 以大阿滄福世爲總管”.
- 100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四年春正月條. “以阿滄軍官爲漢山州都督”.
- 101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元年九月條. “九月十九日, 大王進次熊峴亭, 集諸總管大監, 親臨誓之. 二十五日, 進軍圍龜山城, 至二十七日, 先燒大柵, 斬殺數千人, 遂降之. 論功, 賜角干·伊滄爲總管者劍; 連滄·波珍滄·大阿滄爲總管者戟, 已下各一品位, 築熊峴城, 上州總管品日, 與一牟山郡太守大幢·沙尸山郡太守哲川等, 率兵攻雨述城, 斬首一千級”.
- 102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神文王五年春條. “五年春, 復置完山州, 以龍元爲總管”.
- 103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神文王七年三月條. “三月, 罷一善州, 復置沙伐州, 以波珍滄官長爲總管”.

효소왕 7년(698) 牛頭州摠管(體元)¹⁰⁴ 등 摠管 임명이 보인다. 그리고 원성왕 원년(785)에야 摠管을 都督으로 바꾸었다.¹⁰⁵ 따라서 문무왕 때 9주와 도독이 동시에 설치된 것처럼 기록한 『신당서』, 『신라전』의 기록은 『삼국사기』와 다르다.

다음으로 大守와 小守 설치를 살펴보자.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元年九月條에서 雨述城 공격 당시 一牟山郡太守 大幢, 沙尸山郡太守 哲川等, 率古陁耶郡太守 助服이 보인다.¹⁰⁶ 여기에서 太守와 大守가 并用되었는데, 大守의 ‘大’ 字를 ‘太’ 字의 誤記로 본다면 郡에 大守가 설치되었다는 『신당서』, 『신라전』의 기사는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小守를 현의 장관으로 단정할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三國史記』 卷40, 『雜志』 9, 職官志下·外官條에서 “少守는 85人이며, 位는 幢부터 大奈麻까지 임명하였다. 縣令은 201人이며, 位는 先沮知부터 沙浪까지 임명하였다”¹⁰⁷라고 하여 少守(小守)와 縣令을 별도의 관직으로 기록하였다.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十五年秋九月二十九日條에 따르면, 신라와 唐의 전쟁 기록 가운데 阿達城 城主 素那, 七重城 小守 儒冬, 赤木城 縣令 脫起, 石峴城 縣令 仙伯·悉毛이 보인다.¹⁰⁸ 여기에서 小守의 직함이 보이지

10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孝昭王七年春正月條, “七年, 春正月, 以伊滄體元爲牛頭州摠管”.

10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元年三月條, “改摠管爲都督”.

106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元年九月條, “九月十九日, 大王進次熊峴停, 集諸摠管大監, 親臨誓之. 二十五日, 進軍圍甕山城. 至二十七日, 先燒大柵, 斬殺數千人, 遂降之. 論功, 賜角干·伊滄爲摠管者劍; 逆滄·波珍滄·大阿滄爲摠管者戟, 已下各一品位. 築熊峴城. 上州摠管品日, 與一牟山郡太守大幢·沙尸山郡太守哲川等, 率兵攻雨述城, 斬首一千級. 百濟達率助服·恩率波伽與衆謀降. 賜位助服級滄, 仍授古陁耶郡太守, 波伽級滄, 兼賜田宅衣物”.

107 『三國史記』 卷40, 『雜志』 9, 職官志下·外官條, “少守八十五人, 位自幢至大奈麻爲之. 縣令二百一人, 位自先沮知至沙浪爲之”.

108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十五年秋九月二十九日條,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 稱是. 遣使入唐貢方物. 緣安北河設關·城, 又築鐵關城. 靺鞨入阿達城

만, 아달성의 城主와 직목성의 縣令과 并列된 것으로 보아 小守가 縣의 장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¹⁰⁹ 이밖에 문무왕 16년(676) 道臨城 縣令 居尸知¹¹⁰와 원성왕 2년(786) 屈埤縣令 武烏¹¹¹가 보인다. 이상의 예에서 신라의 현 장관이 縣令이었음은 분명하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면, 小守가 현의 장관이라는 『신당서』, 「신라전」의 기록은 오류로 보인다. 요컨대 문무왕 시기에 9주와 州郡縣에 都督·大守·小守의 설치를 기록한 『신당서』, 「신라전」 기사는 685년 9주 완비와 785년 摠管의 都督 改稱 등 점진적인 지방제도 변화를 오인했거나 요약하여 동시에 발생한 현상으로 기록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당회요』와 『신당서』, 「신라전」의 나당전쟁 기사를 비교하면, 『당회요』보다 『신당서』, 「신라전」의 기록이 상세하다. 『당회요』는 나당전쟁 개시 이

劫掠, 城主素那逆戰死之, 唐兵與契丹·靺鞨兵來, 圍七重城, 不克. 小守儒冬死之. 靺鞨又圍赤木城滅之, 縣令脫起率百姓, 拒之, 力竭俱死. 唐兵又圍石峴城, 拔之, 縣令仙伯·悉毛等, 力戰死之. 又我兵與唐兵大小十八戰, 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109 한 심사위원은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300개의 현이 있었고, 외관조에는 少守 85인, 縣令 201인으로 전한다. 현의 숫자와 현령, 소수의 숫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통일신라시대에 모든 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이해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수를 현의 지방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외관조에 기록된 시점과 현이 300개인 시점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14개의 착오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子玉爲楊根縣小守’, ‘梁悅豆盼(縣)小守’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참고하면, 현령과 더불어 소수 역시 현에 파견된 지방관이었던 사실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縣級 행정조직의 지방관 명칭이 少守(小守)와 縣令 두 가지가 존재하는 점이 이상하다. 秦漢時代와 三國時代 縣令과 縣長의 구분은 있었지만, 1縣의 인구 1萬戶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었다. 少守(小守)와 縣令이 현령·현장과 달리 명칭이 완전히 다르므로 양자가 縣의 지방관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少守(小守)가 縣에 두어진 관직이라고 하면, ‘守’字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縣令보다 높은 縣의 軍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少守(小守)가 지방관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110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十六年秋七月條. “唐兵來攻道臨城拔之, 縣令居尸知死之”.

11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二年冬十月條. “大舍武烏獻兵法十五卷·花鈴圖二卷, 授以屈埤縣令”.

후의 기록을 채록하여 咸亨 5년 2月の 기사를 개칭된 연호인 上元元年으로 기록하였다. 반면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당시의 연호인 함형 5년(674)이라고 그대로 기록하였다. 또 『신당서』, 「신라전」에는 『당회요』에 생략된 買冑城 전투를 수록하였고, 신라의 舊百濟 영토와 高句麗 南境 영토 점령 후 9주와 都督·大守·小守 설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신당서』, 「신라전」에서 신라 州郡縣에 설치되었다는 도독·대수·소수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설치되었고, 小守는 현의 장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당서』, 「신라전」의 나당전쟁 기록 전체가 반드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당회요』와 『신당서』, 「신라전」은 나당전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나당전쟁의 세부적인 사실 기록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Ⅲ. 『通典』의 羅唐戰爭 기록 누락

1. 『通典』의 나당전쟁 기록 누락과 그 배경

『通典』은 당 후기 宰相 杜佑가 801년(德宗 貞元 17)에 완성한 전장류 사서이다. 본래 開元 말 劉秩이 『周禮』 六官의 형식을 취하여 35卷의 『政典』을 편찬하였다. 두우는 이 책에 開元禮와 음악을 추가하여 200卷으로 확대하여 『통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¹¹² 『통전』은 先秦時代부터 唐代까지의 각종 제도를 통시적으로 정리한 사서이며, 十通의 하나로 중국의 제도와 주변국을 연구

112 『舊唐書』 卷147, 「杜佑傳」, 3,982~3,983쪽. “初開元末, 劉秩採經史百家之言, 取周禮六官所職, 撰分門書三十五卷, 號曰政典, 大爲時賢稱賞, 房瑄以爲才過劉更生, 佑得其書, 尋味厥旨, 以爲條目未盡, 因而廣之, 加以開元禮·樂, 書成二百卷, 號曰通典, 貞元十七年, 自淮南使人詣闕獻之, 曰: …… 優詔嘉之, 命藏書府. 其書大傳於時, 禮樂刑政之源, 千載如指諸掌, 大爲士君子所稱”.

하는데 기본적인 사료로 평가되었다. 특히 유가 경전·사서·지리지·漢魏六朝文集·奏疏·唐國史·實錄·檔案·詔誥文書·政令法規·大事記·『大唐開元禮』·개인 저술 등을 참조하여 사료적 가치도 높다. 『통전』에는 정사(25사)에 보이지 않는 자료도 수록하였고, 이 가운데 일부는 현존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원사료를 보존하고 있다.¹¹³

『통전』은 모두 200卷이며, 「食貨典」(12卷)·「選舉典」(6卷)·「職官典」(22卷)·「禮典」(100卷)·「樂典」(7卷)·「兵典」(15卷)·「刑典」(8卷)·「州郡典」(14卷)·「邊防典」(16卷) 등 모두 9개 門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변방전」은 유일하게 전장제도를 다루지 않고 唐代까지 중국 주변국들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여기에 신라사도 기록되어 있다.¹¹⁴ 다음은 『통전·변방전』, 「신라전」 全文이다.

新羅國은 [三國] 魏 시대의 新盧國이며, 그 조상은 본래 辰韓種이다. 辰韓은 처음에 6國이었으나, 점차 나뉘어 12國이 되었으며 新羅는 그 하나이다. 그 나라는 百濟의 東南 500餘里 떨어진 곳에 있고, 동쪽으로 大海에 접한다. 魏將 毋丘儉이 高麗[高句麗]를 공격하여 격파하자 [高句麗人들이] 沃沮로 달아났다. 그후 다시 故國으로 돌아왔는데 남아 있는 자들이 드디어 신라가 되었다. 따라서 신라 사람에는 華夏·高麗·百濟의 무리들이 있었고 아울러 沃沮·不耐·韓·濊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왕은 본래 百濟人이었으며, 바다로부터 도망가 신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군림하였다. 그 나라는 작고 스스로 사신을 보내 중국에 朝聘하러 올 수 없었다.¹¹⁵

-
- 113 張鳳英, 2000, 「略論杜佑的《通典》」, 『湘潭師範學院學報』 2000-1(總第21期); 韓昇, 2006, 「杜佑及其名著《通典》新論」, 『傳統中國研究集刊』 2006-1(總第2期); 趙楊, 2012, 4, 「《通典·邊防典》研究」, 安徽大學碩士學位論文, 63~64쪽.
- 114 최근 국내 학계에서 『통전』, 東夷傳의 서술 태도와 구조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송영대, 2016, 「『通典』, 「邊防門」, 東夷篇의 구조 및 찬술 목적」, 『史林』 57, 136~166쪽.
- 115 『通典』 卷185, 「邊防典」 1, 「新羅傳」, 4,992쪽. “新羅國, 魏時新盧國焉, 其

[16국 前秦] 苻堅 때 그 王 樓寒이 사신 衛頭를 보내 朝貢하였다. 苻堅은 “卿이 말하는 海東의 事와 옛날이 다른데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衛頭는 “역시 中國과 비슷합니다. 時代가 變革되면서 名號가 바뀌었지만 지금은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梁 武帝 普通 2년(528) 姓은 慕, 이름은 秦인 王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百濟 사신을 따라 와서 方物을 바쳤다. 그 사람들은 城을 ‘健牟羅’라고 불렀고, 그 邑은 안에 있으면 ‘喙評’, 밖에 있으면 ‘邑勒’이라고 불렀으니, 역시 中國에서 말하는 郡縣이다. 國에는 6喙評과 52邑勒이 있었다. 土地는 肥美하고 五穀을 심기에 적합하며 桑·麻·果·菜·鳥·獸가 많았고, 物產은 대략 華[중국]와 같았다.¹¹⁶

隋 文帝 시기에 이르러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 그 王의 姓은 金, 이름이 真平인데, 文帝가 樂浪郡公 新羅王에 拜授하였다. 신라는 예전에 百濟에 附屬하였으나 후에 百濟가 高麗를 공격할 때 사람들이 戎役을 감당하지 못하자 서로 신라에 귀부하게 되어 드디어 強盛하게 되었고, 加羅·任那 諸國을 공격하며 멸하였다. 그 西北界는 犬牙처럼 高麗·百濟 사이의 지역에 돌출하였다.¹¹⁷

官은 16等이며, 그 하나는 伊罰于이며 귀하기는 相과 같고, 다음으로 伊尺于, 迎于, 破彌于, 大河尺于, 河尺于, 乙吉于, 沙咄于, 及伏于, 大奈摩, 大舍, 小舍, 吉土, 大烏, 小烏, 達位가 있다. 지방에는 郡縣이 있다. 文字와 甲兵은

先本辰韓種也. 辰韓始有六國, 稍分爲十二, 新羅則其一也. 其國在百濟東南五百餘里, 東濱大海. 魏將 毋丘儉討高麗, 破之, 奔沃沮. 其後復歸故國, 留者遂爲新羅焉, 故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 兼有沃沮·不耐·韓·濊之地,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 其國小, 不能自通使聘”.

- 116 『通典』卷185, 「邊防典」1, 「新羅傳」, 4,992쪽, “苻堅時, 其王樓寒遣使衛頭朝貢. 堅曰: ‘卿言海東之事與古不同, 何也?’ 答曰: ‘亦猶中國, 時代變革, 名號改易, 今焉得同.’ 梁武帝普通二年, 王姓慕名秦, 始使人隨百濟獻方物. 其俗呼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喙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 國有六喙評·五十二邑勒. 土地肥美, 宜植五穀, 多桑麻果菜鳥獸, 物產略與華同”.
- 117 『通典』卷185, 「邊防典」1, 「新羅傳」, 4,993쪽, “至隋文帝時, 遣使來貢. 其王姓金名真平, 文帝拜爲樂浪郡公·新羅王. 其先附屬於百濟, 後因百濟征高麗, 人不堪戎役, 相率歸之, 遂致強盛, 因襲加羅·任那諸國, 滅之. 其西北界犬牙出高麗·百濟之間”.

中國과 같다. 壯健한 사람을 뽑아서 軍에 充원하였고, 烽·戍·邏는 모두 屯營과 部伍가 있었다. 風俗·刑政·衣服은 대략 高麗·百濟와 같다.¹¹⁸

大唐 貞觀 22년(648), 그 王 金春秋가 來朝하니, 特進에 임명하였다. 金春秋는 章服을 고치고 華制에 따를 것을 청하였다.¹¹⁹

이 인용문을 보면 『통전·변방전』, 「신라전」 기사는 648년에 끝난다. 신라가 고구려 동천왕 때 관구검의 공격에 패하여 피난한 高句麗人이 신라를 세웠고 백제인이 신라왕이 되었다는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과 완전히 다르다. 또 杜佑가 801년 『통전』을 편찬할 때 신라가 여전히 존재했음을 고려하면 망하지도 않은 나라의 역사를 153년 전인 648년 金춘추의 入朝에서 끝난 서술 방식이 이상하다. 그리고 『당회요』와 달리 나당전쟁과 신라의 百濟·高句麗 땅 점령 기사를 누락하였다. 『당회요』, 「신라전」 기사와 비교해도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기사 왜곡이 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전·변방전』의 전체적인 체계를 분석하고 전체의 맥락과 논리에서 이 기사를 분석해야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표 3>은 『통전·변방전』에 수록된 중국 주변국 서술의 下限 연대를 정리한 표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通典·邊防典』에는 唐 건국 이전에 망한 나라(朝鮮·濊·馬韓·辰韓·弁辰·夫餘·匈奴·烏桓·鮮卑·稽胡 등), 唐代에 망한 나라(突厥·薛延陀·高昌·高句麗), 唐代에 여전히 존재했던 나라의 역사(위구르·吐蕃·신라)를 기록하였다. 高句麗는 668년에 망했지만, 聖曆 2년(699) 安東都護府 철폐와 高句麗의 복귀를 주장하는 狄仁傑의 상소문이 실렸다. 「백제

118 『通典』 卷185, 「邊防典」 1, 「新羅傳」, 4,993쪽. “官有十六等, 其一曰伊罰于, 貴如相, 次伊尺于, 次迎于, 次破彌于, 次大河尺于, 次河尺于, 次乙吉于, 次沙咄于, 次及伏于, 次大奈摩, 次大舍, 次小舍, 次吉土, 次大烏, 次小烏, 次達位. 外有郡縣, 文字·甲兵同於中國. 選人壯健者悉入軍, 烽·戍·邏 俱有屯營部伍, 風俗·刑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

119 『通典』 卷185, 「邊防典」 1, 「新羅傳」, 4,993쪽. “大唐貞觀二十二年, 其王金春秋來朝, 拜爲特進, 請改章服以從華制”.

〈표 3〉 『通典·邊防典』 주변국 列傳의 서술 下限

구분	卷	수록 국가	서술 하한 연대	비고
東夷	185	朝鮮, 濊, 馬韓, 辰韓, 弁辰, 夫餘		唐 이전 멸망
		百濟	顯慶 5년(660) 혹은 上元 2년(675)	
		新羅	貞觀 22년(648)	
		倭	長安 2년(702)	
	186	蝦夷	顯慶 4년(659)	
		高句麗 東沃沮, 挹婁, 勿吉, 扶桑, 女國, 文身, 大漠, 流求, 閩越	聖曆 2년(699)	高句麗 멸망 이후 唐 이전 멸망 혹은 서술 중단
南蠻	187	槃瓠種, 虞君種, 板楯蠻, 南平蠻, 東謝, 西趙, 牂牁, 充州, 獠, 夜郎, 滇, 邛都, 笮都[笮才各反], 冉驪, 附國, 焦僊, 禪國		唐 이전 멸망 혹은 서술 중단
		哀牢	麟德元年(664)	
		西爨	武德 3년(620)	
		昆彌	貞觀 19년(645)	멸망
	188	尾濮, 木綿濮, 文面濮, 折腰濮, 赤口濮, 黑獒濮, 松外諸蠻		서술 연대 미상
		黃支, 哥羅, 頓遜, 毗騫, 干陀利, 狼牙 脣, 槃槃, 赤土, 貞臘, 羅刹, 丹丹, 邊斗, 杜薄, 薄刺, 敦婁, 火山, 無論, 烏篤, 陀 洹, 訶陵, 多篋, 多摩長, 哥羅舍分		唐 이전 멸망 혹은 서술 연대 미상
		林邑	貞觀 연간(627~649)	
		扶南	貞觀 연간(627~649)	
婆利		貞觀 연간(627~649)		
西戎	189	羌無弋, 湟中月氏胡, 氐, 蔥苾羌, 乙弗 敵, 宕昌, 鄧至, 白蘭, 章求拔		唐 이전 멸망 혹은 서술 중단
		吐谷渾	武周(武則天 시대)	
	190	党項	貞觀 3년(629)	
		吐蕃	天寶 14년(755)	
		大羊同	貞觀 15년(641)	
		悉立	貞觀 20년(646)	
泥婆羅	永徽 2년(651)			

西 戎	191	樓蘭, 且末, 杆彌		
		車師[高昌附]	貞觀 14년(640)	高昌 정복
		龜茲	德宗 시대?	龜茲 정복 [貞觀 23년(649)]
	192	焉耆	貞觀 6년(632)	
		于闐	貞觀 연간(627~649)	
		疏勒	貞觀 연간(627~649)	
		烏孫, 姑墨, 溫宿, 烏秣, 難兜, 大宛, 莎車, 烏弋山離, 條支, 安息, 大夏, 大月氏, 小月氏		唐 이전 멸망 혹은 서술 중단
	193	罽賓	貞觀 11년(637)	
		康居	貞觀 21년(647)	
		曹國, 奄蔡, 滑國, 嚙噠, 挹怛同, 車離, 節子, 高附, 大秦, 小人, 軒渠, 三童, 澤散, 驢分, 堅昆, 呼得, 丁令, 短人, 悅般, 伏盧尼, 渴槃陀, 粟弋, 阿鈎羌, 副貨, 疊伏羅, 賒彌, 女國, 陀羅伊羅, 越底延		唐 이전 멸망 혹은 서술 중단
		何國	貞觀 연간(627~649)	
		史國[並附見]	貞觀 연간(627~649)	
		天竺	貞觀 22년(648)	
		波斯	貞觀 21년(647)	
		朱俱波	武德 연간(618~626)	
		石國	貞觀 8년(634)	
		吐火羅	龍朔元年(661)	그해 州縣 설치
		劫國	武德 2년(619)	
	大食	永徽 연간(650~656)?		
北 狄	194	匈奴上		唐 이전 멸망
	195	匈奴下, 南匈奴		唐 이전 멸망
	196	烏桓, 鮮卑, 軻比能, 宇文莫槐, 徒河段 [務勿塵附], 慕容氏, 拓跋氏, 蠕蠕		唐 이전 멸망
	197	高車, 稽胡		唐 이전 멸망
		突厥上	貞觀 13년(639) 전후	
	198	突厥中	開元 13년(639)	
	199	突厥下(西突厥)	開元 27년(739)	
鐵勒, 多濫葛, 斛薛, 阿跋, 契苾羽, 鞠國, 俞拑, 大漠, 白靺			唐 이전 멸망 혹은 서술 연대 미상	

北 狄	199	薛延陀	太宗 시기(627~649)	
		僕骨	貞觀 연간(627~649)	
		同羅	貞觀 10년(636)	
		都波	貞觀 21년(647)	
		拔野古	貞觀 21년(647)	향북
	200	庫莫奚	開元 8년(720)	
		契丹	開元 10년(722)	
		室韋	唐代 ?	서술 연대 미상
		烏落侯	貞觀 6년(632)	
		靺	貞觀 연간(627~649)	
		地豆于, 驪度寐, 拔悉彌, 鬼國, 鹽渼念		唐 이전 멸망 혹은 서술 연대 미상
		流鬼	貞觀 14년(640)	
		迴紇	開元 15년(727)	
		骨利幹, 結骨	貞觀 21년(647)	
	駁馬	永徽 연간(650~656)		

진」은 顯慶 5년(660)이 마지막 기술 시기이지만, 夫餘崇(원래는 扶餘隆이지만, 玄宗의 이름 隆基를 避諱)이 백제의 옛 땅으로 가지 못하고 토지를 신라와 말갈에 빼앗겨 “夫餘氏의 君長이 드디어 끊어졌다”고 기록한 문장¹²⁰은 『자치통감』에서 高宗 上元 2년조에 수록되었다.¹²¹ 上元 2년은 서기 675년에 해당한

120 『通典』 卷185, 「邊防典」 1, 「百濟傳」, 4,992쪽, “其舊地沒於新羅, 城傍餘眾後漸寡弱, 散投突厥及靺鞨, 其主夫餘崇竟不敢還舊國, 土地盡沒於新羅·靺鞨, 夫餘氏君長遂絕”.

121 『資治通鑑』 卷202, 「唐紀」 18, 高宗上元二年條, 6,382쪽. “初, 劉仁軌引兵自熊津還(見上卷麟德二年), 扶餘隆畏新羅之逼, 不敢留, 尋亦還朝. 二月, 丁巳, 以工部尚書高藏爲遼東州都督, 封朝鮮王, 遣歸遼東, 安輯高麗餘眾; 高麗先在諸州者, 皆遣與藏俱歸. 又以司農卿扶餘隆爲熊津都督, 封帶方王, 亦遣歸安輯百濟餘眾,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去年春, 移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今又移於新城). 時百濟荒殘, 命隆寓居高麗之境, 藏至遼東, 謀叛, 潛與靺鞨通; 召還, 徙邳州而死, 散徙其人於河南·隴右諸州, 貧者留安東城傍.

다. 따라서 「백제전」도 멸망한 이후까지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唐代에 망하지 않은 倭(日本)는 정관 5년(631) 高仁表의 사신 파견 기록이 마지막처럼 보이지만,¹²² 倭의 국호를 일본이라고 기술하면서 長安 2년(702) 朝貢 기록을 다루고 있다.¹²³ 이는 신라 기사와 하한선이 貞觀 22년(648)에 그친 것과 비슷 한 경향을 보인다.

신라와 倭(일본)뿐만 아니라 唐代에 여전히 존속했던 吐蕃의 역사는 天寶 14년(755)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기사는 아래와 같다.

乞梨拔布는 神龍初에 죽고 그 아들이 즉위하였다. 乞梨弩悉籠은 당시 7세였기 때문에 祖母 祿沒氏가 攝位하였다. 中宗 神龍 3년(707) 四月 嗣雍王 守禮의 딸을 金城公主로 봉하여 吐蕃 贊普에 출가시켰다. [中宗은] 景龍 4년(710) 正月 始平縣으로 방문하여 金城公主를 환송하였고, 左驍衛大將軍 楊矩를 사신으로 삼아 파견하였다. 二月 始平縣을 金城縣으로 바꾸고 또 그 땅을 鳳臺鄉과 槍別里로 이름을 바꾸었다. 天寶 14년(755) 죽자 그 아들이 즉위하였는데, 乞梨 悉籠納贊이라 하였다.¹²⁴

이 기사를 보면, 왜 天寶 14년이 吐蕃傳의 마지막 기록인지 알기 어렵다.

高麗舊城沒於新羅，餘眾散入靺鞨及突厥，隆亦竟不敢還故地，高氏·扶餘氏遂亡”.

- 122 『通典』卷185, 「邊防典」1, 「倭傳」, 4,996쪽. “大唐貞觀五年，遣新州刺史高仁表持節撫之。浮海數月方至。仁表無綏遠之才，與其王爭禮，不宣朝命而還，由是遂絕”.
- 123 『通典』卷185, 「邊防典」1, 「倭傳」, 4,996쪽. “倭一名日本，自雲國在日邊，故以爲稱。武太后長安二年，遣其大臣朝臣真人貢方物”.
- 124 『通典』卷190, 「邊防典」6, 「吐蕃傳」, 5,177쪽. “乞梨拔布神龍初死，其子立。乞梨弩悉籠時年七歲，祖母祿沒氏攝位。至中宗神龍三年四月，以所養嗣雍王守禮女封金城公主，出降吐蕃贊普。景龍四年正月，幸始平縣，送金城公主，以左驍衛大將軍楊矩爲使。二月，改始平縣爲金城縣，又改其地爲鳳臺鄉·槍別里。天寶十四年死，其子立，號乞梨悉籠納贊”.

또 『통전·변방전』, 「토번전」의 기록을 보면 唐과 吐蕃의 전쟁 기록에서 勝敗 기록을 모두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토번의 전성기 기록을 삭제하였다. 『구당서』, 「토번전」에서는 토번이 安戎城을 점령한 후 토번의 강성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이때 吐蕃은 羊同·党項·諸羌의 땅을 모두 점령하였다. 동쪽으로는 涼·松·茂·禰等州와 서로 접하고 남쪽으로 娑羅門에 이르렀으며, 서쪽으로 龜茲·疏勒等四鎮을 攻陷하였고, 북쪽으로 突厥을 막았으니, 땅은 사방 萬餘里였다. 漢·魏 이래 西戎의 강성함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¹²⁵

위 인용문에 따르면 이때 토번은 四方 1만여 리에 달하는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강국이었다. 토번의 전성기는 앞의 문장으로 보아 儀鳳 3년(678) 전후였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통전』의 마지막 기사보다 앞선 시기였지만, 토번의 전성기 기록은 전혀 없다. 『신당서』, 「토번전」에서는 “幅圓餘萬里, 漢·魏諸戎所無也”¹²⁶라고 하여 영토가 萬리에 달했으며 漢魏시대 諸戎의 역사에 없던 일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자치통감』에서는 “地方萬餘里, 諸胡之盛, 莫與爲比”¹²⁷라고 하여 이 일이 永隆元年(680)의 기사이며, 토번의 영역이 諸胡 가운데

125 『舊唐書』卷196上, 「吐蕃傳」上, 5,223~5,224쪽. “時吐蕃盡收羊同·党項及諸羌之地, 東與涼·松·茂·禰等州相接, 南至娑羅門, 西又攻陷龜茲·疏勒等四鎮, 北抵突厥, 地方萬餘里, 自漢·魏已來, 西戎之盛, 未之有也”.

126 『新唐書』卷216上, 「吐蕃傳」上, 6,077~6,078쪽. “初, 劍南度茂州之西築安戎城, 以迓其鄙. 俄爲生羌導虜取之以守, 因并西洱河諸蠻, 盡臣羊同·党項諸羌. 其地東與松·茂·禰接, 南極娑羅門, 西取四鎮, 北抵突厥, 幅圓餘萬里, 漢·魏諸戎所無也”.

127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永隆元年條, 6,395쪽. “先是, 劍南募兵於茂州, 西南築安戎城, 以斷吐蕃通蠻之路. 吐蕃以生羌爲鄉導, 攻陷其城, 以兵據之, 由是西洱諸蠻皆降於吐蕃. 吐蕃盡據羊同·党項及諸羌之地, 東接涼·松·茂·禰等州, 南鄰天竺, 西陷龜茲·疏勒等四鎮, 北抵突厥, 地方萬餘里, 諸胡之盛, 莫與爲比”.

데 견줄 바 없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통전·변방전』, 「토번전」에서는 토번의 安戎城 및 安西四鎮 점령, 吐蕃의 광대한 영토를 기록하지 않았다. 또 토번은 『통전』이 완성되기 전인 廣德元年(763) 당의 수도 長安을 점령하였다. 이때 代宗은 陝州로 피난을 가야 했다.¹²⁸ 『통전』에는 吐蕃의 長安 점령 기사는 누락되었다.

그리고 安史의 난 때 唐을 도와 兩京(長安, 洛陽)을 수복하는 데 공을 세우고,¹²⁹

128 『舊唐書』卷11, 「代宗紀」, 廣德元年條, 273쪽. “是月,吐蕃大寇河·隴, 陷我秦·成·渭三州, 入大震關, 陷蘭·廓·河·鄯·洮·岷等州, 盜有隴右之地. …… [九月]己丑, 吐蕃寇涇州, 刺史高暉以城降, 因爲吐蕃鄉導. …… 冬十月庚午朔, 辛未, 高暉引吐蕃犯京畿, 寇奉天·武功·藍屋等縣, 蕃軍自司竹園渡渭, 循南山而東, 丙子, 駕幸陝州. 上出苑門, 射生將王獻忠率四百騎叛, 脅豐王已下十王歸京, 從官多由南山諸谷赴行在. 郭子儀收合散卒, 屯於商州. 丁丑, 次華州, 官吏藏竄, 無復儲糧. 會魚朝恩領神策軍自陝來迎駕, 乃幸朝恩軍. 戊寅, 吐蕃入京師, 立廣武王承宏爲帝, 仍逼前翰林學士于可封爲制封拜. 辛巳, 車駕至陝州. 子儀在商州, 會六軍使張知節·烏崇福·長孫全緒等率兵繼至, 軍威遂振, 舊將王甫誘聚京城惡少, 齊擊街鼓於朱雀街, 蕃軍震懼, 狼狽奔潰. 庚寅, 子儀收京城”.

129 『舊唐書』卷195, 「迴紇傳」, 5,198~5,199쪽. “及至德元載七月, 肅宗於靈武即位. 遣故邠王男承宗封爲燉煌王, 將軍石定番, 使于迴紇, 以修好徵兵. 及至其牙, 可汗以女嫁於承宗, 遣首領來朝, 請和親, 封迴紇公主爲毗伽公主. 肅宗在彭原, 遇之甚厚. 二載二月, 迴紇又使首領大將軍多覽等十五人入朝. 九月戊寅, 加承宗開府儀同三司, 拜宗正卿, 納迴紇公主爲妃. 迴紇遣其太子葉護領其將帝德等兵馬四千餘眾, 助國討逆, 肅宗宴賜甚厚. 又命元帥廣平王見葉護, 約爲兄弟, 接之頗有恩義. 葉護大喜, 謂王爲兄, 戊子, 迴紇大首領達干等一十三人先至扶風, 與朔方將士見僕射郭子儀, 留之, 宴設三日. 葉護太子曰: ‘國家有難, 遠來相助, 何暇食爲.’ 子儀固留之, 宴畢便發, 其軍每日給羊二百口·牛二十頭·米四十石. 及元帥廣平王率郭子儀等至香積寺東二十里, 西臨澧水, 賊埋精騎於大營東, 將襲我軍之背. 朔方左廂兵馬使僕固懷恩指迴紇馳救之, 四馬不歸, 因收西京. 十月, 廣平王·副元帥郭子儀領迴紇兵馬, 與賊戰於陝西, 初次于曲沃, 葉護使其將軍車鼻施吐撥裴羅等旁南山而東, 遇賊伏兵于谷中, 盡殲之. 子儀至新店, 遇賊戰, 軍卻數里. 迴紇望見, 踰山西嶺上曳白旗而趨擊之, 直出其後, 賊眾大敗, 軍而北坑, 逐北二十餘里, 人馬相枕藉, 蹂踐而死者不可勝數, 斬首十餘萬, 伏屍三十里. 賊黨嚴莊馳告安慶緒, 率其黨背東京北走渡河, 而葉護從廣平王·僕射郭子儀入東京”; 『新唐書』卷217上, 「回鶻傳」上, 6,115~6,116쪽. “肅宗即位, 使者來請助討祿山, 帝詔燉煌郡王

‘아시아의 경찰’ 역할을 맡았던¹³⁰ 위구르(迴紇)는 당 전기인 開元 15년(727)에 서 서술이 끝나고 있다.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자.

薛延陀가 패하자, 그 大酋 胡祿俟利發吐迷度이 그 部를 거느리고 궁궐을 방문하여 編戶와 같이 되기를 청하였다. 突厥이 衰滅된 후 그 나라는 점차 강성하였으며, 國主는 또 可汗이라 칭하였다. 開元 15년(727) 大臣 梅祿啜을 보내 來朝 하였으며 名馬를 바쳤다.¹³¹

이 인용문에서 위구르가 唐에 歸附한 후 궁궐을 방문하여 唐의 백성이 되겠다고 청한 장면을 기록하였다. 또 점차로 강해져서 군주가 카간(可汗)을 칭했다고 기록하였지만, 唐의 조공국에 불과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 玄宗 天寶 10載(751) 탈라스 전투에서 唐에게 패배를 안긴 大食國(이슬

承索與約，而令僕固懷恩送王，因召其兵。可汗喜，以可敦妹爲女，妻承索，遣渠領來請和親，帝欲固其心，即封虜女爲毗伽公主。……香積之戰，陣禮上，賊詭伏騎於王師左，將襲我，僕固懷恩麾回紇馳之，盡翦其伏，乃出賊背，與鎮西·北庭節度使李嗣業夾彆之，賊大敗，進收長安。懷恩率回紇·南蠻·大食衆繚都而南，壁滻東，進次陝西，戰新店。初，回紇至曲沃，葉護使將軍鼻施吐撥裴羅旁南山東出，搜賊伏谷中，殲之，營山陰。子儀等與賊戰，傾軍逐北，亂而卻，回紇望見，即躡西嶺，曳旗趨賊，出其後，賊反顧，遂大潰，追奔數十里，人馬相騰蹂，死者不可計，收仗械如丘。嚴莊挾安慶緒棄東京北度河，回紇大掠東都三日，姦人導之，府庫窮殫，廣平王欲止不可，而耆老以繒錦萬匹賂回紇，止不剽。葉護還京師，帝遣群臣勞之長樂，帝坐前殿，召葉護升階，席曾領於下，宴且勞之，人人賜錦繡綉器。葉護頓首言：「留兵沙苑，臣歸料馬，以收范陽，訖除殘盜。」帝曰：「爲朕竭義勇，成大事，卿等力也。」詔進司空，爵忠義王，歲給絹二萬匹，使至朔方軍受賜”。

130 杉山正明 지음, 이진복 옮김, 2003, 『유목민이 본 세계사』, 학민사, 239~250쪽.

131 『通典』卷200, 「邊防典」16, 「北狄·迴紇傳」, 5,491~5,492쪽. “及薛延陀之敗, 其大酋胡祿俟利發吐迷度率其部詣闕, 請同編戶. 自突厥衰滅, 其國漸盛, 國主亦號可汗. 開元十五年, 使大臣梅祿啜來朝, 獻名馬焉”.

람 제국)¹³²의 열전에는 탈라스 전투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¹³³ 게다가 698년에 독립한 渤海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 특히 靺鞨을 기록한 勿吉條 기록에서 발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 후기에 발해의 건국 주체가 말갈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¹³⁴

이처럼 『통전·변방전』의 하한선은 天寶 14년(755)이지만, 대부분 唐太宗과 高宗 시기에 주변국 서술이 끝나고 있다. 이는 「변방전」뿐만 아니라 다른 8門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통전』은 당 후기에 편찬되었지만, 唐의 역사와 제도는 주로 현종 때까지만을 기록하였다.¹³⁵ 따라서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기록이 정관 22년(648)에서 그친 이유는 唐代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정 史觀에 의해 편집된 사료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당 후기 강성한 吐蕃과 위구르, 大食(이슬람제국)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고, 서술의 시기적 하한선인 현종 재위 시기에 이미 존재했던 발해의 역사를 수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高句麗 멸망 이후 高句麗의 영토 176城과 69만 7,000戶를 “下”라고 기록하여¹³⁶ 마치 모든 高句麗를 점령한(下) 것처럼 기록하였다. 요컨대 『통전·변방전』은 大唐帝國의 강성함을 묘사하는 데 치중하였고 唐에 불리한 기록은 누락하였다. 『통전』의 역사관을 이해하면, 나당전쟁은 『통전·변방전』에서 묘사하려는 ‘대당제국’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
- 132 『新唐書』卷5, 「玄宗紀」, 天寶十載七月條, 148쪽. “七月, 高仙芝及大食戰于恆邏斯城, 敗績”.
- 133 『舊唐書』와 『新唐書』, 「大食傳」에도 탈라스 전쟁의 패배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주132에서 알 수 있듯이 『新唐書』, 「玄宗紀」, 天寶十載七月條에서만 간단히 기록되었다.
- 134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진열은 『발해 국호 연구』에서 ‘渤海’가 高句麗를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국호였음을 추론하였다. 최진열, 2015, 『발해 국호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 135 高國抗 著, 오상훈·이개석·조병한 譯, 『중국사학사』 下, 13쪽.
- 136 『通典』卷186, 「邊防典」2, 東夷·高句麗傳, 5,019쪽. “高宗總章元年, 遣司空李勣伐高麗, 破其都平壤城, 擒其王高藏並男建等, 平其國, 下城百七十六, 戶六十九萬七千”.

리한 이미지 구축에 충실한 『통전·변방전』에서는 아시아를 지배한 ‘대당제국’의 위대한 역사를 기술하는 데 방해가 된 나당전쟁과 신라의 백제·高句麗 영토 점령 기사를 완전히 생략한 것이다. 진덕여왕의 재상이었던 김춘추¹³⁷를 ‘왕’으로 표기한 것도 이러한 논리로 해석된다. 김춘추는 진덕여왕이 죽은 후에 즉위 하였지만, 정관 22년(648) 唐에 파견되었을 때 ‘왕’이 아니었고 伊滄의 벼슬에 있었던 진덕(여)왕의 신하였다.¹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전·변방전』, 「신라전」에서 김춘추를 ‘신라왕’으로 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황제가 사는 궁전에 주변국의 왕이 직접 入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중국에 복속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개 재상 김춘추를 신라왕으로 표기한 것은 ‘위대한 대당제국에 입조한 신라왕과 唐의 屬國 신라’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당전쟁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구

- 137 『冊府元龜』卷974, 「外臣部」19, 褒異·唐太宗貞觀二十二年條, 11,275쪽, “十二月, 新羅國遣其相伊贊子金春秋及其子文王來朝, 帝遣光祿卿柳亨持節郊勞之, 既至, 以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春秋仍請改其章服, 以從中國製, 於是, 內出珍服賜春秋等, 令府給其將從”;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5~5,336쪽, “二十一年, 善德卒, 贈光祿大夫, 餘官封並如故, 因立其妹真德爲王, 加授柱國, 封樂浪郡王, 二十二年, 真德遣其弟國相·伊贊于金春秋及其子文王來朝,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春秋請詣國學觀釋奠及講論, 太宗因賜以所制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 將歸國, 令三品以上宴餞之, 優禮甚稱”; 『新唐書』卷220, 「東夷·新羅傳」, 6,202쪽, “二十一年, 善德死, 贈光祿大夫, 而妹真德襲王, 明年, 遣子文王及弟伊贊子春秋來朝, 拜文王左武衛將軍, 春秋特進, 因請改章服, 從中國制, 內出珍服賜之, 又詣國學觀釋奠·講論, 帝賜所製晉書, 辭歸, 敕三品以上郊餞”.
- 138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眞德王二年條, “遣伊滄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太宗遣光祿卿柳亨郊勞之, 既至, 見春秋儀表英偉, 厚待之, 春秋請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 嘗召燕見, 賜以金帛尤厚, 問曰: ‘卿有所懷乎?’ 春秋跪奏曰: ‘臣之本國, 僻在海隅, 伏事天朝, 積有歲年, 而百濟強猾, 屢肆侵凌, 況往年大舉深入, 攻陷數十城, 以塞朝宗之路, 若陛下不借天兵, 翦除凶惡, 則敝邑人民, 盡爲所虜, 則梯航述職, 無復望矣.’ 太宗深然之, 許以出師,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還國詔令三品已上燕餞之, 優禮甚備”.

당서』, 「신라전」의 서술¹³⁹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당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통전·변방전』의 서술 태도와 논리를 볼 때 나당전쟁이 『통전』, 「신라전」에 누락된 것은 唐이 나당전쟁에서 두드러진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Ⅱ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의 기록에는 唐의 일방적인 승리처럼 기록되었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나당전쟁에서 唐과 신라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唐이 점령했다고 생각한 百濟의 땅을 신라에게 빼앗겼다. 이 사실이 ‘대당제국’의 위대한 역사 서술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통전·변방전』, 「신라전」에서 나당전쟁 자체 기록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2. 『通典』과 『舊唐書』, 「新羅傳」의 나당전쟁 서술 비교

『통전』과 『구당서』, 「신라전」을 비교하기에 앞서 『구당서』, 「신라전」 나당전쟁 전후의 기록을 살펴보자.

[永徽] 3년(652) 진덕이 죽자 그를 위해 舉哀하였다. 詔書を 내려 춘추에게 계승하게 하고 신라왕으로 세우고 授開府儀同三司를 加授하고 樂浪郡王에 봉하였다. [永徽] 3년(655) 百濟는 高麗·靺鞨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北界를 침공하여 30餘 城을 攻陷하니, 춘추(무열왕)은 사신을 보내 表를 바치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顯慶 5년(660) 左武衛大將軍 蘇定方을 熊津道大總管으로 임명하고, 水陸 10萬을 거느리게 하였다. 그리고 춘추를 嶧夷道行軍總管에 임명하여 定方과 함께 百濟를 討平하게 하니 百濟王 扶餘義慈을 사로잡아 闕下에 바쳤다. 이때부터 신라는 점차 高句麗와 百濟의 땅을 점령하여 그 界는 더욱 커졌으며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¹⁴⁰

139 『舊唐書』 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6쪽.

140 『舊唐書』 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6쪽. “三年, 真德卒, 爲舉哀. 詔

龍朔元年(661) 춘추가 죽자 詔書を 내려 그 아들 太府卿 法敏을 嗣位하도록 하고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樂浪郡王 新羅王으로 삼았다. 龍朔 3년(663) 조서를 내려 그 나라를 雞林州都督府로 삼고, 법민을 雞林州都督으로 임명하였다. 법민이 開耀元年(681) 죽자 그 아들 政明이 嗣位하였다. 垂拱 2년(686), 정명은 사신을 보내 來朝하고 表를 올려 唐禮 1부와 여러 文章을 청하니, 則天은 해당 관청에게 吉凶要禮를 베끼게 하고 文館詞林 가운데 規誡를 다룬 詞를 채록하여 50권을 완성하게 하여 하사하였다.¹⁴¹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구당서』, 「신라전」은 『통전』처럼 나당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김춘추(무열왕)가 죽기 전에 쓴 기록, 즉 “이때부터 신라는 점차 高句麗와 백제의 땅을 점령하여 그 국가는 더욱 커졌으며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라는 구절은 문무왕 시기 나당전쟁 이후의 결과이므로 김춘추 시기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구당서』, 「신라전」에 나당전쟁 기록이 없는 점은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서술 방식과 비슷하다. 이러한 공통점에 착안하여 『통전·변방전』, 「신라전」과 『구당서』, 「신라전」의 서술을 비교해보자.

〈표 4〉는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唐代 부분과 『구당서』, 「신라전」을 비교한 표이다.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唐代 신라 기록은 정관 22년(648) ‘신라왕’ 김춘추의 入朝 기록이 유일하다. 반면 『구당서』, 「신라전」은 당 말까

以春秋嗣，立爲新羅王·加授開府儀同三司·封樂浪郡王。六年，百濟與高麗·靺鞨率兵侵其北界，攻陷三十餘城，春秋遣使上表求救，顯慶五年，命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熊津道大總管，統水陸十萬，仍令春秋爲靺夷道行軍總管，與定方討平百濟，俘其王扶餘義慈，獻于闕下，自是新羅漸有高麗·百濟之地，其界益大，西至于海”。

- 141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6쪽. “龍朔元年, 春秋卒, 詔其子太府卿法敏嗣位, 爲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新羅王。三年, 詔以其國爲雞林州都督府, 授法敏爲雞林州都督, 法敏以開耀元年卒, 其子政明嗣位。垂拱二年, 政明遣使來朝, 因上表請唐禮一部并雜文章, 則天令所司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以賜之”。

지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冒頭에 신라의 지리·제도·습속 등을 다룬 부분과 현 경 5년(660) 백제의 멸망, 신라 영토의 확대, 唐의 발해 공격 요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唐과 신라의 교역, 唐의 신라왕과 왕비 책봉 기사가 대부분이다. 이는 『구당서』, 「신라전」의 원사료가 주로 두 나라의 외교 관계였음을 시사한다.¹⁴²

『통전·변방전』, 「신라전」 唐代 부분과 『구당서』, 「신라전」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기사는 唐과 신라의 외교관계, 특히 조공과 책봉 기사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나당전쟁 기사를 생략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구당서』, 「신라전」에서는 나당전쟁 기사를 생략했지만, “自是新羅漸有高麗·百濟之地, 其界益大, 西至于海”¹⁴³라고 하여 나당전쟁의 결과물인 신라의 영토 확장은 기록하였다. 따라서 『통전·변방전』, 「신라전」과 『구당서』, 「신라전」은 나당전쟁, 구체적으로 나당전쟁의 패배를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서술 내용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구당서』, 「신라전」이 『통전·변방전』, 「신라전」 기사를 직접 베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당서』, 「신라전」이 나당전쟁을 기록하지 않고 대부분 신라의 조공과 唐의 신라 책봉 기사를 나열했음을 보면 ‘대당제국의 영광’만을 기록하려고 한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서술 경향과 비슷함을 발견할 수 있다. 『구당서』, 「신라전」의 나당전쟁 기사가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그것을 계승했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나당전쟁 기사의 누락과 ‘대당제국의 粉飾’이라는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서술방식과 역사관을 이어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2 신라와 唐의 외교관계에 대한 사료 비판과 분석은 金鍾福, 2016,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의 오류 수정을 중심으로 -」, 『震檀學報』 126, 1~37쪽 참조.

143 『舊唐書』 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6쪽, “自是新羅漸有高麗·百濟之地, 其界益大, 西至于海”.

〈표 4〉 『通典·邊防典』과 『舊唐書』, 『新羅傳』 비교

시기 혹은 사건	『通典·邊防典』 『新羅傳』	『舊唐書』, 『新羅傳』
신라의 지리·제도·풍속, 唐 高祖 시기 외교 관계		新羅國, 本弁韓之苗裔也. 其國在漢時樂浪之地, 東及南方俱限大海, 西接百濟, 北鄰高麗. 東西千里, 南北二千里. 有城邑村落, 王之所居曰金城, 周七八里, 衛兵三千人, 設獅子隊. 文武官凡有十七等. 其王金真平, 隋文帝時授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 武德四年, 遣使朝貢. 高祖親勞問之, 遣通直散騎侍郎庾文素往使焉, 賜以璽書及畫屏風·錦綵三百段, 自此朝貢不絕. 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朝服尚白, 好祭山神. 其食器用柳栝, 亦以銅及瓦. 國人多金·朴兩姓, 異姓不爲婚, 重元日, 相慶賀燕饗, 每以其日拜日月神. 又重八月十五日, 設樂飲宴, 賚羣臣, 射其庭. 婦人髮繞頭, 以綵及珠爲飾, 髮甚長美. ¹⁴⁴
진평왕		高祖既聞海東三國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藩附, 務在和睦, 乃問其使爲怨所由, 對曰: '先是百濟伐伐高麗, 詣新羅請救, 新羅發兵大破百濟國, 因此爲怨, 每相攻伐, 新羅得百濟王, 殺之, 怨由此始.' 七年, 遣使冊拜金真平爲柱國, 封樂浪郡王·新羅王. ¹⁴⁵
선덕여왕		貞觀五年, 遣使獻女樂二人, 皆鬢髮美色. 太宗謂侍臣曰: '朕聞聲色之娛, 不如好德, 且山川阻遠, 懷土可知. 近日林邑獻白鸚鵡, 尚解思鄉, 訴請還國, 鳥猶如此, 況人情乎! 朕愍其遠來, 必思親戚, 宜付使者, 聽遣還家.' 是歲, 真平卒, 無子, 立其女善德爲王. 宗室大臣乙祭總知國政, 詔贈真平左光祿大夫, 賻物二百段. 九年, 遣使持節冊命善德柱國, 封樂浪郡王·新羅王. 十七年, 遣使上言: '高麗·百濟, 累相攻襲, 亡失數十城, 兩國連兵, 意在滅臣社稷, 謹遣陪臣, 歸命大國, 乞偏師救助.' 太宗遣相里玄獎齎璽書賜高麗曰: '新羅委命國家, 不闕朝獻. 爾與百濟, 宜即戡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擊爾國矣.' 太宗將親伐高麗, 詔新羅築集土馬, 應接大軍, 新羅遣大臣領兵五萬人, 入高麗南界, 攻水口城, 降之. ¹⁴⁶
선덕여왕	大唐貞觀二十二年, 其王金春秋來朝, 拜爲特進, 請改革服以從華制. ¹⁴⁷	二十一年, 善德卒, 贈光祿大夫, 餘官封並如故, 因立其妹真德爲王, 加授柱國, 封樂浪郡王. 二十二年, 真德遣其弟國相·伊贊千金春秋及其子文王來朝.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春秋請詣國學觀釋奠及講論, 太宗因賜以所制溫湯及晉祠碑并新撰管書, 將歸國, 令三品以上宴餞之, 優禮甚稱. ¹⁴⁸

144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9쪽.

145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8~5,339쪽

146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8쪽.

147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8쪽.

148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7~5,338쪽

무열왕		三年, 真德卒, 爲舉哀, 詔以春秋嗣, 立爲新羅王·加授開府儀同三司·封樂浪郡王. 六年, 百濟與高麗·靺鞨率兵侵其北界, 攻陷三十餘城, 春秋遣使上表求救, 顯慶五年, 命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熊津道大總管, 統水陸十萬, 仍令春秋爲靺夷道行軍總管, 與定方討平百濟, 俘其王扶餘義慈, 獻于闕下. 自是新羅漸有高麗·百濟之地, 其界益大, 西至于海. ¹⁴⁹
문무왕 ~ 신문왕		龍朔元年, 春秋卒, 詔其子太府卿法敏嗣位, 爲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新羅王. 三年, 詔以其國爲雞林州都督府, 授法敏爲雞林州都督, 法敏以開耀元年卒, 其子政明嗣位, 垂拱二年, 政明遣使來朝, 因上表請唐禮一部并雜文章, 則天令所司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以賜之. ¹⁵⁰
효소왕		天授三年, 政明卒, 則天爲之舉哀, 遣使弔祭, 冊立其子理洪爲新羅王, 仍令襲父輔國大將軍, 行豹韜衛大將軍·雞林州都督, 理洪以長安二年卒, 則天爲之舉哀, 輟朝二日, 遣立其弟興光爲新羅王, 仍襲兄將軍·都督之號. 興光本名與太宗同, 先天中則天改焉. ¹⁵¹
성덕왕		開元十六年, 遣使來獻方物, 又上表請令人就中國學問經教, 上許之, 二十一年, 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時興光族人金思蘭先因入朝留京師, 拜爲太僕員外卿, 至是遣歸國發兵以討靺鞨, 仍加授興光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二十五年, 興光卒, 詔贈太子太保, 仍遣左贊善大夫邢瑋攝鴻臚少卿, 往新羅弔祭, 并冊立其子承慶襲父開府儀同三司·新羅王. 瑋將進發, 上製詩序, 太子以下及百僚咸賦詩以送之. 上謂瑋曰: '新羅號爲君子之國, 頗知書記, 有類中華, 以卿學術, 善與講論, 故選使充此. 到彼宜闡揚經典, 使知大國儒教之盛.' 又聞其人多善奕碁, 因令善碁人率府兵曹楊季鷹爲瑋之副, 瑋等至彼, 大爲蕃人所敬, 其國碁者皆在季鷹之下, 於是厚賂瑋等金寶及藥物等. ¹⁵²
효성왕 ~ 효공왕		天寶二年, 承慶卒, 詔遣贊善大夫魏曜往弔祭之, 冊立其弟憲英爲新羅王, 并襲其兄官爵, 大曆二年, 憲英卒, 國人立其子乾運爲王, 仍遣其大臣金隱居奉表入朝, 貢方物, 請加冊命. 三年, 上遣倉部郎中·兼御史中丞·賜紫金魚袋歸崇敬持節齋冊書往弔冊之. 以乾運爲開府儀同三司·新羅王, 仍冊乾運母爲太妃. 七年, 遣使金標石來賀正, 授衛尉員外少卿, 放還. 八年, 遣使來朝, 并獻金·銀·牛黃·魚牙紬·朝霞紬等. 九年~十二年, 比歲遣使來朝, 或一歲再至. ¹⁵³

149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7쪽.

150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7쪽.

151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6쪽.

152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6쪽.

153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5~5,336쪽.

선덕왕 ~ 소성왕		<p>建中四年, 乾運卒, 無子, 國人立其上相金良相爲王. 貞元元年, 授良相檢校太尉·都督雞林州刺史·寧海軍使·新羅王. 仍令戶部郎中蓋瑱持節冊命. 其年, 良相卒, 立上相敬信爲王. 令襲其官爵. 敬信即從兄弟也. 十四年, 敬信卒, 其子先敬信亡, 國人立敬信嫡孫俊邕爲王. 十六年, 授俊邕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新羅王. 令司封郎中·兼御史中丞韋丹持節冊命. 丹至鄆州, 聞俊邕卒, 其子重興立, 詔丹還. 永貞元年, 詔遣兵部郎中元季方持節冊重興爲王.¹⁵⁴</p>
애장왕		<p>元和元年十一月, 放宿衛王子金獻忠歸本國, 仍加試秘書監. 三年, 遣使金力奇來朝. 其年七月, 力奇上言: '貞元十六年, 奉詔冊臣故主金俊邕爲新羅王. 母申氏爲太妃, 妻叔氏爲王妃. 冊使韋丹至中路, 知俊邕薨, 其冊却迴在中書省. 今臣還國, 伏請授臣以歸.' 敕: '金俊邕等冊, 宜令鴻臚寺於中書省受領, 至寺宣授與金力奇, 令奉歸國. 仍賜其叔彥昇門戟, 令本國準例給.' 四年, 遣使金陸珍等來朝貢. 五年, 王子金憲章來朝貢.¹⁵⁵</p>
헌덕왕		<p>七年, 重興卒, 立其相金彥昇爲王. 遣使金昌南等來告哀. 其年七月, 授彥昇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國王. 彥昇妻貞氏冊爲妃, 仍賜其宰相金崇斌等三人戟, 亦令本國準例給. 兼命職方員外郎·攝御史中丞崔廷持節弔祭冊立, 以其質子金士信副之. 十一年十一月, 其入朝王子金士信等遇惡風, 飄至楚州鹽城縣界, 淮南節度使李鄴以聞. 是歲, 新羅飢, 其眾一百七十人求食於浙東. 十五年十一月, 遣使朝貢.¹⁵⁶</p>
헌덕왕 ~ 흥덕왕		<p>長慶二年十二月, 遣使金柱弼朝貢. 寶曆元年, 其王子金昕來朝. 大和元年四月, 皆遣使朝貢. 五年, 金彥昇卒, 以嗣子金景徽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新羅王; 景徽母朴氏爲太妃, 妻朴氏爲妃. 命太子左諭德·兼御史中丞源寂持節弔祭冊立. 開成元年, 王子金義琮來謝恩, 兼宿衛. 二年四月, 放還藩, 賜物遣之. 五年四月, 鴻臚寺奏: 新羅國告哀, 質子及年滿合歸國學生等共一百五人, 並放還. 會昌元年七月, 敕: 歸國新羅官·前入新羅宣慰副使·前充兗州都督府司馬·賜緋魚袋金雲卿, 可淄州長史.¹⁵⁷</p>

154 『通典』卷185, 「邊防典」1, 「新羅傳」, 4,993쪽, “大唐貞觀二十二年, 其王金春秋來朝, 拜爲特進, 請改章服以從華制”.

155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5쪽.

156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5쪽.

157 『舊唐書』卷199上, 「東夷·新羅國傳」, 5,334쪽.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唐代 편찬되거나 작성된 기록을 중심으로 唐代 사람들의 나당전쟁 기술의 성격과 인식을 검토하였다.

II장 1절에서는 『唐會要』의 나당전쟁 기술과 그 성격, 『唐會要』와 『신당서』, 「신라전」의 비교를 다루었다. 『당회요』는 출처가 다른 사료를 발췌하여 수록했기 때문에 나당전쟁의 발단과 중단의 기록이 중복 서술되었다. 그리고 675년 七重城에서 승리하여 신라가 항복했다고 기록하였지만, 백제 옛 땅 전부와 高句麗 남쪽 변경까지 신라가 점령했다고 ‘솔직하게’ 기록하였다. 또 『신당서』, 「신라전」에 보이는 買肖城 전투도 누락하였다. 『당회요』의 編者는 나당전쟁의 패배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唐의 칠중성 승리만 기록하였다. 그리고 신라에 패했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백제와 高句麗의 땅이 신라 소유가 되었다고 기록하여 唐의 패배를 묵인했다. 이처럼 『당회요』를 최초로 편찬했던 唐 德宗 시기, 즉 당 후기에는 나당전쟁에서 唐이 이겼다는 인식 아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만을 나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장 2절에서는 『당회요』와 『신당서』, 「신라전」의 나당전쟁 기사를 비교하였다. 『당회요』와 『신당서』, 「신라전」은 나당전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나당전쟁의 세부적인 사실 기록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당회요』는 나당전쟁 개시 연도를 上元元年,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당시의 연호인 咸亨 5년으로 기록하였다. 또 『신당서』, 「신라전」에는 『당회요』에 생략된 買肖城 전투를 수록하였고, 신라의 舊百濟 영토와 高句麗 南境 영토 점령 후 9주와 都督·大守·小守 설치를 기록하였다.

III장에서는 당 후기에 편찬된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기록을 검토하고 『통전·변방전』, 「신라전」과 『신당서』, 「신라전」과 비교하였다. 『통전·변방전』, 「신라전」에서는 신라 기사 하한선이 정관 22년(648) 신라왕 김춘추의 조공 기록이었다. 『통전』이 덕종 貞元 17년(801)에 편찬되었음에도 멸망하지도 않은 신라의 역사를 150여 년 전까지의 기록만을 기록한 것은 이상한 역사

서술 태도이다. 이 글에서는 『통전·변방전』 전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통전·변방전』이 唐代까지의 주변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唐代 국가권력의 주변국 인식과 史觀이 결합하여 주변국의 역사를 교묘히 왜곡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통전·변방전』, 「신라전」에서 나당전쟁을 누락한 것도 나당전쟁의 패배와 百濟 故地 상실이 ‘대당제국’의 영광을 분식하는 데 장애가 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III장 1절). 『구당서』, 「신라전」도 나당전쟁 기사를 누락하고 다만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를 점령하였음만 언급하였다. 『구당서』, 「신라전」이 『통전·변방전』, 「신라전」의 기사와 서술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나당전쟁의 누락과 ‘대당제국의 粉飾’이라는 서술 태도와 기본적으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III장 2절).

이 글에서 주제에 부합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唐代의 각종 사료를 정리한 『책부원귀』¹⁵⁸의 나당전쟁 기록도 『당회요』보다 양은 많지만 서술방식과 인식은 『唐會要』와 비슷하다. 이는 『자치통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추후 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158 『冊府元龜』의 사료적 가치는 李德輝, 2008, 「漢唐文獻整理的成果－評點校本《冊府元龜》－」, 『古典文獻研究』 11, 597~598쪽; 胡養儒, 1994, 「論《冊府元龜》的史學價值」,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1-3, 44쪽 참조.

참고문헌

사료

- 歐陽修·宋祁 撰, 1975, 『新唐書』, 中華書局.
杜佑 撰, 王文錦 등 點校, 1988, 『通典』, 中華書局.
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1956, 『資治通鑑』, 中華書局.
王溥 撰, 2006, 『唐會要』, 上海古籍出版社.
劉昫 等修, 1975, 『舊唐書』, 中華書局.
李林甫 等撰, 陳仲夫 點校, 1992(2005년 重印), 『唐六典』, 中華書局.
周紹良·趙超 主編, 2001,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연구서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杉山正明 지음, 이진복 옮김, 2003, 『유목민이 본 세계사』, 학민사.
서영교, 2006, 『羅唐戰爭史研究 -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이상훈, 2016,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崔珍烈, 2015, 『발해 국호 연구 - 당조가 인정한 발해의 고구려 계승 목인과 부인 -』, 서강대학교출판부.

연구논문

국문

- 가네코 슈이치, 2001, 「中國의 입장에서 본 三國統一」, 『한국고대사연구』 23.
강봉룡, 2007, 「해전을 통해서 본 신라의 삼국통일과 그 해양사적 의의」, 『대외문물교류연구』 4.
권덕영, 2008,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연구』 142.
金鍾福,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의 오류 수정을 중심으로 -」, 『震檀學報』 126.
김병희, 2014,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군사』 91.

- 김수태, 2013,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된 한국고대사의 흐름 - 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한국고대사연구』 70.
- 김수태, 2014,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 김영하, 2007, 「新羅의 백제 통합과 체제 변화」, 『新羅中代社會研究』, 一志社.
- 김영하, 2009, 「7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 - 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국통일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146.
- 김영하, 2010,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 김영하, 2011, 「신라통일론의 궤적과 함의」, 『한국사연구』 153.
- 김영하, 2012,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영하, 2014, 「신라의 ‘통일’영역 문제 - 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 『한국사학보』 56.
- 노태돈, 2011,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 154.
- 민덕식, 1989, 「나, 당전쟁에 관한 고찰 - 매소성전투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40.
- 박현숙, 2002,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 변인석, 1995, 「唐에서 바라 본 新羅의 三國統一」, 『사학연구』 50.
- 서영교, 2001, 「나당전쟁사 연구 - 국제정세의 변화와 나당전쟁의 추이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徐榮教, 2002,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동국사학회.
- 徐榮教, 2002, 「나당전쟁의 개시와 그 배경 -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 『역사학보』 173.
- 徐榮教, 2002, 「羅唐戰爭의 開始와 그 背景: 國際情勢 변화와 관련하여」, 『역사학보』 173.
- 徐榮教, 2002, 「羅唐戰爭과 吐蕃」, 『동양사학연구』 79.
- 徐榮教, 2002, 「羅唐戰爭期 唐兵法의 導入과 그 意義」, 『한국사연구』 116.
- 徐榮教, 2006, 「나당전쟁기 당변방군의 내습과 이근행」, 『동국사학』 42, 동국사학회.
- 송완범, 2007, 「백촌강 싸움과 왜 - 동아시아 세계의 재편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5.
- 申滢植, 1985, 「三國統一前後 新羅의 對外關係」, 『신라문화』 2.
- 沈正輔, 2005, 「羅唐戰爭期 新羅의 北境意識」, 『신라사학보』 4.

- 양병룡, 1997, 「나당전쟁의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전쟁」, 『사충』 46.
- 이기동, 2002, 「김유신 - “지성”으로 이룩한 삼국통일의 위업 -」, 『한국사시민강좌』 30, 일조각.
- 이상훈, 2007,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신라문화』 29.
- 이상훈, 2008,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90, 대구사학회.
- 이상훈, 2011, 「나당전쟁기 문두루 비법과 해진」, 『신라문화』 37.
- 이상훈, 2011, 「나당전쟁의 종전배경과 신라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32.
- 이상훈, 2011, 「羅唐戰爭期 文豆婁 秘法과 海戰」, 『신라문화』 37.
- 이상훈, 2011, 「羅唐戰爭의 軍事的 原因과 新羅의 戰爭準備」, 『역사와 경제』 7.
- 이상훈, 2011, 「羅唐戰爭의 종전배경과 新羅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32.
- 이상훈, 2011,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나당전쟁 서술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 120.
- 이영호, 2008, 「서평: ‘신라삼국통일론’에서 ‘남북국론’으로 - 김영하,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2007」, 『한국고대사연구』 52.
-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지음, 정병준 역, 2014, 「고구려 멸망 후 유민의 반란 및 당과 신라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8(原載 池内宏, 1929,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1; 池内宏, 1960, 『滿鮮史研究』 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 이현숙, 2003, 「7세기 신라 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현실』 47.
- 임기환, 2003, 「보덕국고」, 『강좌한국고대사』 10.
- 존씨 재미슨, 1969, 「羅唐同盟의 瓦解: 韓中記事 取舍의 比較」, 『歷史學報』 44.

중문

- 金錦子, 2008, 「論七世紀中後期唐朝與新羅關係演變及對東北亞政局的影響」,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41-3.
- 拜根興, 2005, 「論羅唐戰爭的性質及其雙方的交往」, 『中國邊疆史地研究』 15-1.
- 拜根興, 2009, 「石刻碑志與唐新羅關係」, 『唐朝與新羅關係史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孫焯冉, 「新羅文武王對“親唐派”將領肅清及其發動“羅唐戰爭”的關係」, 『朝鮮·韓國歷史研究』 16.

- 王小甫, 2000, 「唐朝與新羅關係史論－兼論統一新羅在東亞世界中的地位－」, 榮新江 主編, 『唐研究』第六卷, 北京大學出版社.
- 王霞, 2008, 「八世紀前半葉的羅唐關係－以雙方的政治交涉為中心－」,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熊義民, 2003, 「圍繞着新羅統一朝鮮半島的唐日外交」,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 池內宏・馮立君 譯, 2015, 「高句麗滅亡後遺民的叛亂及唐與新羅關係」, 『中國邊疆民族研究』.
- 池田溫, 1999, 「論天寶後期唐朝・新羅與日本的關係」, 孫曉林等 譯, 『唐研究論文選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일문

- 菅沼愛語, 2013, 「7世紀後半のユーラシア諸國の自立への動き－「唐・吐蕃戰爭」と新羅の朝鮮半島統一・突厥の復興・契丹の反亂・渤海の建國との關連性－」,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溪水社(原載 菅沼愛語・菅沼秀夫, 2009, 「七世紀後半の「唐・吐蕃戰爭」と東部ユーラシア諸國の自立への動き－新羅の朝鮮半島統一・突厥の復興・契丹の反亂・渤海の建國との關連性」, 『史窓』66)

唐前·後期 羅唐戰爭 서술과 인식 - 『唐會要』와 『通典』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열

이 논문은 唐代 실록이나 관문서를 토대로 편찬한 『唐會要』와 『通典』 등 唐代 관찬 사료의 나당전쟁 기록을 『삼국사기』 등과 비교하여 사료적 가치를 논한 글이다.

II장에서 살펴본 『唐會要』는 출처가 다른 사료를 발췌하여 수록했기 때문에 나당전쟁의 발단과 중단의 기록이 중복되었다. 그리고 675년 七重城에서 승리하여 신라가 항복했다고 기록함과 동시에 百濟 옛 땅 전부와 高句麗 남쪽 변경까지 신라가 점령했음도 기록하였다. 이처럼 『唐會要』를 최초로 편찬했던 唐 德宗 시기, 즉 唐後期에는 나당전쟁에서 唐이 이겼다는 인식 아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만을 나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당전쟁을 모호하게 기록하거나 승전으로 바꾼 『唐會要』의 서술 방식은 『新唐書』, 『新羅傳』에 계승되었다.

III장에서는 唐後期에 편찬된 『通典·邊防典』, 『新羅傳』의 기록을 검토하였다. 『通典·邊防典』, 『新羅傳』에서는 新羅 기사의 하한선이 貞觀 22년(648) 新羅‘王’ 金春秋의 조공 기록이었다. 따라서 나당전쟁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처럼 『通典·邊防典』, 『新羅傳』에서 나당전쟁을 누락한 것도 나당전쟁

의 패배와 百濟 故地 상실이 ‘大唐帝國’의 영광을 분식하는 데 장애가 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나당전쟁 기사 자체를 빼버리는 『通典·邊防典』, 「新羅傳」의 서술 방식은 『舊唐書』, 「新羅傳」에 계승되었다.

주제어: 나당전쟁, 『당회요』, 『통전』, 당의 나당전쟁 서술 왜곡, 『삼국사기』의 나당전쟁 기록 축소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the Silla–Tang War in the Period of Tang Dynasty in the Search of Analysis of *Tanghuiyao* and *Tongdian*

Choi Jinyeoul

Tanghuiyao and *Tongdian* were historic books collecting many documents in Tang Dynasty. The former distorted the Silla–Tang War, hid Tang armies' defeat and Silla armies' win. Instead it recorded that Silla occupied the territory of Baekje, which acknowledged the Tang armies' defeat secretly. The latter omitted the the Silla–Tang War, concealing the Tang armies' defeat and Silla's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which were the feature of *Tongdian*, and thereby praising the glory of Tang Empire. Similarly, it left out Tibet's winning and ruling of Central Asia and South–eastern territory of Tang Dynasty, the history of the thriving and prosperous Uighurs Empire, the founding of Balhae, and others. *Tanghuiyao* and *Tongdian*'s description of the Silla–Tang War had an impact on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JiuTangshu* and *XinTangshu*, but the detail of

description in JiuTangshu and XinTangshu is different from *Tongdian* and *Tanghuiyao* respectively.

Keywords: the Silla–Tang War, *Tanghuiyao*, *Tongdian*, Tang Dynasty's Historic Distortion of the Silla–Tang War, The Samguksagi Silla chronicle's reduction of the Silla–Tang War

1930년대 만주국 공업화와 특수회사 연구

정안기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 I. 머리말
- II.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의 성립과 특징
- III. 특수회사의 출자구조와 금융원천
- IV. 특수회사의 경영 성과와 구조 개혁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만주국 특수회사에 대한 실증적 검토로부터 1930년대 만주국 공업화의 구조와 특질을 해명하는 것이다. 1933년 3월 만주국 정부는 만주국 경제건설의 대헌장(大憲章)으로 회자되는 「만주국경제건설요강」을 공포해서 국방 및 공익산업에서 특수회사 설립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1934년 6월 「일반 기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서 1업 1사주의 경제정책과 특수회사의 활동 영역 그리고 설립 유형(특수회사, 준특수회사)을 규정하였다. 또한 1937년 5월 만주국 정부는 ‘중요산업통제법’을 공포해서 20개 중요 산업을 지정하는 한편, 특수회사의 사업 범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40년 말 특수회사는 만주국 전체 주식회사 1,777사, 공칭 자본금 61억 6,835만 원, 납입 자본금 42억 5,292만 원에 대해 회사 수에서 4%(70사)에 불과했지만, 공칭 자본금 73%(45억 1,806만 원)와 납입 자본금 78%(33억 1,777만 원)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¹ 이들 특수회사에 대한 만주국의 투융자 원천은 일본 금융시장에서 대량의 일화공채 발행, 만철(주)과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주식발행, 사채 발행, 차입금 등 다양한 금융경로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었다. 또한, 1934년 7월 만주국 정부는 식민본국 일본에 선행하는 투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해서 특수회사에 대한 투융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결국 만주국 회사자본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자본계열을 형성했던 특수회사는 계획과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1930년대 만주국의 경제정책과 산업개발을 상징하였다.

한편, 1930년대 만주국에서는 경제체제의 계획화 혹은 통제경제가 급진전

* 투고: 2016년 11월 4일, 심사 완료: 2017년 5월 16일, 게재 확정: 2017년 5월 19일
1 山本安次郎, 1941, 「滿州に於ける特殊會社の再組織問題」, 『東亞經濟論叢』 제1권 제3호.

하였다. 그 외증에서 형성된 만주국 특유의 경제시스템은 식민본국 일본으로 역류하면서 전시기 일본 경제시스템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시기 일본 경제사 연구에서 회자되는 이른바 ‘1940년 체제론’의 만주국 원류론이다.² 또한, 1940년대 아시아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만주국 경제는 대일종속이 급진전하면서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도 현지조달주의 생산계획에서 대일예속주의와 물자통제로 바뀌는 계획과 통제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만주국 경제사 연구도 만주국 경제가 전시 일본 경제시스템의 실험장이었다는 연구사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1930~1940년대 만주국 경제의 형성, 이념, 구조, 변용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본 학계는 일찍부터 만주국 경제의 계획 단위였던 특수회사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특수회사 연구 동향은 전체적으로 만철(주)과 만주중공업개발(주) 등 몇몇 대기업에 한정되었다.³

그러나 최근 일본 학계에서는 『만주국 기업사 연구』⁴라는 백과사전(약 1,100쪽)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공동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⁵ 같은 연구는 20세기 만주사 연구의 또 다른 연구 방법으로 기업사 연구의 유효성에 착안한 것으로 청일전쟁 이전(1880년대)부터 패전(1945) 그리고 전후 처리까지 만주에서 활동했던 일본 기업의 투자활동을 포괄적으로 추계·분석하였다. 같은 연구는 만주국에서 대기업 체제의 형성 혹은 기업사회 성립의 해명이라는 연구사적 의의를 갖는다. 연구 방법은 만주에서 기업 활동을 규정하는 세제와 회사법제를 시작으로 자본계열의 유형화와 함께 산업별 기업활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본계열 분석과 관련해서는 남만주철도계, 동양척식계, 만주국정부

2 山本有造, 2003, 『「滿洲國」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66쪽. 이 책에 대한 소개와 서평은 정안기, 2005, 『滿洲研究』 제2호 참조.

3 山本裕, 2002, 「〈滿州〉日系企業研究史」, 『近代日中關係史再考』, 日本經濟評論社, 45~76쪽.

4 鈴木邦夫 編, 2007, 『滿洲企業史研究』, 日本經濟評論社.

5 이 책에 대한 서평은 秋山淳子, 2008, 「滿洲企業史研究の成果と課題」, 『日本植民地研究』 제20호; 山本裕, 2008, 「書評」, 『日本植民地研究』 제20호.

계(특수회사), 만주중공업개발계, 일본재벌계, 만주토착계 6대 자본계열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의 회사자본 총액에서 약 80%에 육박하는 만주국정부계(특수회사)의 돌출적인 자본지배력을 고려하면, 과연 여타 자본계열과 동일한 차원에서 병렬적 혹은 나열적인 파악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혹은 만주국 정부의 만철(주)과 만주중공업개발(주)에 대한 50%에 달하는 높은 지분율을 고려하면, 과연 만주국정부계(특수회사)와 여타 자본계열과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⁶

이 연구는 1930년대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에 주목해서 만주국 공업화의 구조와 특질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⁷ 연구 방법은 1930년대 만주국에서 특수회사 제도의 성립과 이념, 투자 주체와 금융원천, 경영구조와 퍼포먼스에 주목하는 전통적인 경제사 연구 방법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의 지배·집중 혹은 지배·종속을 경시하는 자본의 병렬화 논리가 아니라 자본의 경제 지배력에 주목하는 자본의 서열화 논리이다. 연구 자료는 1941년 11월 만주흥업은행(주)의 내부자료 「特殊會社並及準特殊會社調」⁸ 혹은 1943년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산하 통계처가 생산한 「滿洲經濟參考資料」⁹ 등을 새롭게 발굴·활용한다. 연구 구성은 II장에서 만주국에서 특수회사 제도의 성립과 이념, 설립 추이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특수회사의 정부 출자에 대응하는 금융원천과 운용 실태를 검토한다. IV장에서는 특수회사의 경영구조와 경영

6 山本裕, 2008, 「滿洲」, 『日本植民地研究の現況と課題』, 日本經濟評論社.
 7 1941년 당시 야마모토 야스지로(山本安次郎)는 만주국의 특수회사 제도와 관련해 “만주 경제의 산업개발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수회사를 알지 않으면 안 되고, 특수회사 활동을 보지 않고서는 만주 경제 동향을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였다. 山本安次郎, 1941. 9, 「滿洲に於ける特殊會社の再組織問題」, 『東亞經濟論叢』 제1권 제3호.
 8 滿洲興業銀行普通金融第一課信用調査係調, 1941. 11. 30, 「特殊會社並及準特殊會社調」.
 9 같은 자료는 解學詩 編, 2000, 「第7卷 滿洲國經濟一般狀況」, 『滿洲國機密資料』, 本の友社에 수록되어 있다.

성과 그리고 정부실패에 대응하는 제도 개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1930년대 만주국 경제사 혹은 식민지 경제사 연구 축적에 기여하고자 한다.¹⁰

II.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의 성립과 특징

만주국 정부는 1933년 3월 「만주국경제건설요강」, 1934년 6월 「일반 기업에 대한 성명서」, 1937년 5월 「중요산업통제법」을 공포해서 국방과 공익산업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하에서는 1930년대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의 성립과 이념, 설립 추이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제도 성립과 이념

1933년 3월 만주국 정부는 만주국 경제건설의 대헌장으로 회자되는 「만주국경제건설요강」을 공포하였다. 같은 요강에서 만주국 정부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국가통제에 기초한 자본 효과를 활용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¹¹는 취지에 따라 국민공영, 국가통제, 일만경제블럭, 문호개방의 4대 원칙을 공포하였다.¹²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국방 혹은 공익적 성격의

10 이하에서 특수·준특수회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부 특수회사로 일괄한다.

11 橫濱正金銀行調査部, 1942, 『滿洲國特殊會社制度に就て』, 17~18쪽.

12 그 내용은 (1)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조로 해서 이원(利源)의 개척(開拓)과 실업진흥(實業振興)의 이익이 일부 계급에 농단(壟斷)되는 것을 제거하고 만민공영(萬民共榮)을 꾀한다. (2)국내 모든 부존자원을 유효하게 개발하고 각 부문의 종합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중요 경제 부문에 대한 국가통제를 실시하고 합리화 정책을 강구한다. (3)이원(利源)의 개척(開拓)과 실업의 장려와 관련해서 문호개방과 기회균등 정신에 따라 널리 세계에서 자원을 구한다. 특히, 선진제국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기타 모든 문명의 핵심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한다. (4)동아경제의 융합과 합리화를 목

중요 사업은 공영 또는 특수회사가 경영하고, 그 외 산업 및 자원개발 등 경제사항은 민간의 자유 경영에 맡긴다”¹³는 취지에 따라 특수회사와 자유기업의 활동 영역을 구분하였다. 나아가 1933년 9월 관동군 특무부장은 통제경제의 정도에 따라 (1) 국영 또는 특수회사 사업, (2) 허인가 사업, (3) 자유기업 사업으로 구분할 것을 공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의 입안을 담당한 것은 관동군과 만철경제조사회였다

그러나 특수회사와 자유기업의 사업 영역과 기업활동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한 것이었고, 특수회사 설립도 지지부진하였다. 실제로 1933년 3월 「만주국경제건설요강」 발표 이전 설립된 만주중앙은행(주)과 만주항공공업(주)을 예외로 하면, 1933년 자본금 5,000만 원의 만주전신전화(주)를 포함한 5개사와 1934년 5개사의 설립에 그치는 것이었다. 특수회사의 설립 부진은 일본 재계가 만주국의 치안 불안, 노동력 부족, 인프라 미정비로 만주국 투자를 주저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만철은 국유선 경영과 신규 철도 부설에 치중하면서 출자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1933년 3월 만주국이 공포한 「만주국경제건설요강」은 당시 일본 국내에서 정당과 자본가를 배제하는 국가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¹⁴

1934년 6월 만주국은 민간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일반 기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산업’¹⁵으로 8개 산업을 규정하였다. 그 가운데 (1) 공영 혹은 특수회사 업종은 항공기·전신전화·철강 등 국방·공익·기간 산업 중심의 22개 업종, (2) 정부 허인가 업종으로 해운업·비료·석유정제 등 24개 업종, (3) 자유기업 업종으로 제재·유지·면방적

적으로 선린우호와 함께 일본과의 상호 의존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서 일본과의 협조를 중심으로 상호 부조의 목표를 점차 긴밀하게 한다. 滿洲商工公會中央會, 1944, 『滿洲産業經濟關係要綱集』 第1輯, 25~26쪽.

13 橫濱正金銀行調査部, 1942, 『滿洲國特殊會社制度に就て』, 1~2쪽.

14 滿鐵會編, 2007, 『滿鐵四十年史』, 吉川弘文館, 164~165쪽.

15 菊地主計, 1939, 『滿洲重要産業の構成』, 東洋經濟出版部, 15~18쪽.

등 17개 업종을 지정해서 일본 민간자본의 만주국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내용이였다. 나아가 만주국은 특수회사의 설립 유형을 특수회사와 준특수회사로 구분하였다. 특수회사는 특별법과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된 회사, 준특수회사는 (1) 정부 출자 회사, (2) 정부 부예명령으로 설립된 회사, (3) 회사정관에서 정부 개입을 규정한 회사, (4) 산업 법규와 시행세칙 등 정부 명령과 감독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구분하였다. 같은 성명서에서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 중심의 1업 1사주의 경제정책을 공식화하였다. 그래서 1935년 2개사에 불과했던 특수회사 설립은 1936년과 1937년 각각 12개사로 급증하였다.¹⁶ 또한, 특수회사는 만주국이 지향하는 국방국가 건설과 자본축적 저위성으로부터 연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를 채택하였다.¹⁷ 당시 만주국이 추진하는 특수회사 제도의 구상과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¹⁸

당초부터 특수회사는 일정한 원칙에 입각해서 기획과 목표 그리고 국민경제의 전체적이고 통일적 구상에 따라 새로운 하나의 기업체로 출발하였다. 또한, 국가 직접 경영으로 발생하는 능률 저하의 결함을 불식하고자 국가 직영에 대신하는 사업체로 한다는 것이었다. 특수회사는 영리사업의 주식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영리성과 공익성의 양면성을 갖는 것이었다.

1932년 건국 이래 만주국은 회사 설립 허가제를 채용하였다. 이는 해당 산업의 발달 정도와 국가적 요구 정도 그리고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한 편의적 행정

16 滿鐵會 編, 2007, 『滿鐵四十年史』, 吉川弘文館, 165쪽.

17 1936년 말 관동군과 만주국 정부는 산업개발5개년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日本電工(주)의 모리 노부테루(森蘆利), 鐘淵紡績(주)의 쓰다 신고(津田信吾), 日本産業(주)의 아유키와 요시스케(鮎川義介), 일본질소(주)의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 등 신흥재벌로 회자되는 산업자본가를 만주시찰 명목으로 초청해서 자본유치를 중용하기도 하였다. 滿鐵會 編, 2007, 『滿鐵四十年史』, 吉川弘文館, 165~166쪽.

18 橫濱正金銀行調査部, 1942, 『滿洲國特殊會社制度に就て』, 55쪽.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산업통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결여한 것이었다. 그래서 1937년 5월 만주국 정부는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중요산업통제법’을 공포하였다.¹⁹ 중요산업통제법은 “국방상 긴급한 산업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기간산업에 대해서 기존 1산업 1기업 또는 적어도 소수의 강력한 기업을 육성한다”²⁰는 취지였다. 중요산업통제법은 20개 업종을 중요 산업, 나머지 업종을 자유업종으로 지정해서 특수회사의 사업과 활동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²¹ 만주국에서 중요산업통제법은 1930년대 전반 일본 국내에서 공황대책과 자치통제와 구별되는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을 의도한 것이었다.

중요산업통제법은 기업법제와 관련해서 (1) 특별법에 따른 특수회사, (2) 중요산업통제법에 따른 통제회사, (3) 회사법에 따른 자유기업으로 구분하였다. 특수회사 활동 영역은 국방산업, 공익사업, 기초산업으로 구분되었다. 만주국 정부의 지도·감독을 규정한 특수회사 제도는 지정 산업에서 해당 특수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동일 산업에 속하는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중요산업통제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특수회사를 정점으로 통제, 보통, 토착 기업층으로 경제구조의 저변을 형성하는 피라미드형 산업구조 구축을 의도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중요산업통제법은 기업활동의 대외 관계에 한정하였고, 특수회사는 특별법에 따라 기업 내부의 경영 지도·감독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19 1937년 만주국 정부는 (1) 산업개발5개년계획(産業開發5個年計劃), (2) 개척민정책(開拓民政策), (3) 북변진흥정책(北邊振興政策)이라는 3대 국책을 추진하였다.

20 橫濱正金銀行調査部, 1942, 『滿洲國特殊會社制度に就て』, 63쪽.

21 중요산업통제법의 지정 업종은 (1) 병기 제조업, (2) 항공기 제조업, (3) 자동차 제조업, (4) 액체 연료업(광유/무수알콜), (5) 철강과 경금속 정련업, (6) 탄광업(연산 1만톤 이상), (7) 모직물 제조업, (8) 면사 방직업, (9) 면직물 제조업, (10) 마제면업(연산 50톤 이상), (11) 마방업, (12) 맥주 제조업, (13) 제당업, (14) 연초 제조업(연산 1,000만개비 이상), (15) 소다 제조업(천연소다 제외), (16) 비료 제조업, (17) 펄프 제조업, (18) 식물유(植物油) 제조업, (19) 시멘트 제조업, (20) 성냥 제조업이었다. 滿洲興業銀行普通金融第一課信用調査係調, 1941. 11. 30, 「特殊會社並二準特殊會社調(行內用)」.

1937년 12월 만주국 정부는 ‘만철개조’와 함께 자본금 4억 5,000만 원의 만주 중공업개발(주)을 설립하였다.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설립은 종래 1업 1사주의 특수회사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과 함께 종합 경영주의라는 경제개발 방식의 일대 전환이었다.

다음은 특수회사 제도의 경제이념이다. 1931년 12월 관동군 참모부는 ‘만몽 개발방책’에서 만몽의 식민지화를 위해 만주국에서 군수기지 건설과 함께 일본 제국 차원에서의 통제경제 실시를 선언하였다.²² 당시 관동군은 “기성 자본가와 정당 정치가는 국가를 맡아먹는 자들에 불과하며, 이러한 구질서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대동아공영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²³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앞세워 만주국에서 대동아공영권의 이상(日滿一德一心, 民族協和, 王道樂土, 道義世界)을 실천하고자 하였다.²⁴ 또한 그래서 1934년 6월 만주국 정부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통제경제의 완화를 선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만주국 정부 방침은 일본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경제개발이라는 당초 의도와 달리 “일본 자본가의 입장에서 조선 등 공식 식민지에 대한 투자를 선호했기”²⁵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만주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원천을 둘러싸고 식민지 조선과의 민간자본 유치 경쟁에서 밀리면서 일정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만주국은 국영회사의 장점(국책성)과 주식회사의 장점(영리성)을 병용해서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특수회사 제도를 구상하였다. 결국 특수회사 제도는 경제제도의 또 다른 형식으로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를 표상하였다.²⁶

22 당시 관동군은 “이른바 자본가에게 이익을 농단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山本有造, 2003, 『「滿洲國」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28쪽.

23 永塚利一, 1966, 『久保田豊』, 電氣情報社, 188~189쪽.

24 平岡定之助, 1937. 3, 「滿洲國に於ける特殊會社の趨勢」, 『朝鮮及滿州』 제 353호.

25 山本有造, 2003, 『「滿洲國」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31쪽.

26 1943년 당시 조선총독부 식산국 전기과장 가쿠 에이세이(角永清)에 따르면, “종래

2. 설립 추이와 실태

다음은 특수회사의 설립 추이와 함께 만주국 회사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만주국 최초의 특수회사는 1932년 6월 만주국화폐법과 만주중앙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만주중앙은행(주)이었다. 설립 당시 만주중앙은행(주)은 관리통화제 구축을 위해 자본금 3,000만 원, 납입 자본금 1,500만 원, 전액 만주국 정부 출자로 설립된 특수법인이었다.²⁷ 제2호 특수회사 만주전신전화(주)는 1933년 8월 ‘만주에서 일만합병통신회사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본금 5,000만 원, 만주국 정부 600만 원의 현물 출자로 설립되었다. 만주전신전화(주)에 대한 만주국의 현물 출자는 장쉐량(張學良) 정권의 ‘적산’을 계승한 전기통신 설비였다. 제3호 특수회사는 1934년 2월 만주석유주식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금 500만 원의 만주석유(주)였다.

한편, 준특수회사 제1호는 1932년 9월 일만협정으로 설립된 자본금 385만 원의 만주항공(주)이다. 만주항공(주)의 사업 목적은 항공운송과 항공기 제조 사업이었다. 항공기 제조사업 또한 장쉐량 정권의 ‘적산’을 계승한 것이었다. 1938년 6월 만주비행기제조(주)가 설립되면서 만주항공(주)의 항공기 제조사업을 분리하였고, 1941년 7월 만주항공기주식회사법 공포와 함께 특수회사로 전환하였다. 제2호 준특수회사는 1932년 10월 장쉐량 정권의 봉천조병소를 계승해서 설립한 자본금 200만 원의 봉천조병소(주)였다. 회사자본은 三井物産(주)과 大倉組(합)가 각각 절반씩을 출자하였다. 1936년 7월 봉천조병소(주)는 특수회사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자본금 1,200만 원으로 증자하였다. 준특수회사 제

특수회사의 관념은 주식회사의 영리만능주의 경영행동의 폐해가 컸기 때문에 소유자 또는 경영자로부터 사업을 매수해서 능률은 20~30% 하락하지만, 정부 관료를 비롯해서 기타 각 방면의 유능자를 영입해서 국가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한다는 것”이었다는 지적하였다. 角永清, 1943. 5, 「第二次電力統制に就て」, 『朝鮮』 제336호.

27 滿洲事情案内所, 1939, 『滿洲國策會社綜合總覽』, 96쪽.

〈표 1〉 1930년대 만주국 특수회사의 설립 추이

(단위: 천 원)

연도	특수회사					준특수회사				
	회사 수	공칭 자본금		납입 자본금		회사 수	공칭 자본금		납입 자본금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1932	1	30,000	30,000	7,500	7,500	1	3,855	3,850	3,850	3,850
1933	2	80,000	40,000	44,375	22,187	3	5,770	1,923	5,645	1,881
1934	7	121,200	17,314	68,587	9,798	4	95,770	23,942	95,645	23,911
1935	9	126,700	14,077	75,975	8,441	5	105,870	21,174	105,870	21,174
1936	18	224,300	12,461	131,075	7,281	7	128,020	18,288	120,020	17,145
1937	24	871,300	27,970	416,900	17,370	11	314,600	28,600	234,450	21,313
1938	29	119,300	38,598	780,700	27,265	16	477,290	29,830	295,865	18,491
1939	37	1,948,500	52,662	1,392,100	37,297	25	487,320	19,492	385,333	15,413
1940	38	2,383,500	62,724	1,970,025	51,843	29	503,150	17,350	373,118	12,866
1941	38	3,176,500	88,236	2,319,875	64,441	33	636,650	19,292	555,343	16,829

* 주: 1941년 11월 30일 현재.

* 자료: 滿洲興業銀行, 1941, 「特殊會社並ニ準特殊會社調」.

3호는 1933년 10월 안동 소재 영국계 이룡양행(怡隆洋行)이 소유하는 압록강 하구 항행권 회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38만 원의 大安汽船(주)이었다.²⁸

한편, 특수회사 설립 추이는 〈표 1〉과 같이 1932년 6월 설립된 제1호 특수회사 만주중앙은행(주)을 시작으로 1941년 말까지 총 38사에 달하였다. 1941년

28 關東廳警務局長, 1934. 2. 8, 「日滿合辦大安汽船公司設立と英國人經營怡隆洋行ノ競争の態度」 JAC-AR(ref. B09030140800).

〈표 2〉 만주국의 회사자본과 특수회사의 비중

(단위: 천 원, %)

구분	회사 수	공칭 자본금	납입 자본금
만주국	1,312	4,828,153	3,545,440
일본국	346	1,173,342	947,806
합계(a)	1,658	6,001,495	4,493,246
특수 / 준회사(b)	69	3,157,725	2,424,612
비중(b/a×100)	4.2	52.6	54.0

* 자료: 横濱正金銀行調査部編, 1942, 『滿洲國特殊會社制度に就て』, 142~143면.

당시 특수회사는 공칭 자본금 31억 7,650만 원(평균 8,824만 원), 납입 자본금 23억 1,988만 원(평균 6,444만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준특수회사는 1932년 만주항공(주)을 시작으로 1941년 말까지 33사를 기록하였다. 1941년 말 준특수회사 33사는 공칭 자본금 6억 3,665만 원(평균 1,929만 원)과 납입 자본금 5억 5,534만 원(평균 1,683만 원)을 기록하였다. 특수회사는 준특수회사에 비교해서 공칭 자본금의 약 4.6배, 납입 자본금의 3.8배에 달하였다. 특수회사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했던 반면, 준특수회사는 1938년 이후 감소 국면으로 바뀌었다. 결국 1937년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의 본격화에 따라 특수회사가 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940년 말 특수회사가 만주국 회사자본에 차지하는 비중은 〈표 2〉와 같이 주식회사 1,658사에 대해서 특수·준특수회사 69사의 4.2%에 불과했지만, 공칭 자본금 52.6%(31억 5,772만 원), 납입 자본금 54.0%(24억 2,461만 원)의 비중이었다.²⁹

한편, 1941년 말 만주국에서 자본금 20만 원 이상 업종별 회사자본에서 특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3〉과 같이 1941년 말 자본금 20만

29 横濱正金銀行調査部, 1942, 『滿洲國特殊會社制度に就て』, 143쪽.

〈표 3〉 만주국에서 자본금 20만 원 이상, 업종별 특수회사 일람

(단위: 백만 원, 사, %)

구분	광업	방적	금속	기계	요업	화학	식료품	제재	기타	농수산	교통	판매업	금융	상업	잡업	합계	비율		
총회사수	61	36	43	89	37	82	85	39	66	46	34	197	56	35	188	1,094	100.0		
내역	특수	3	0	2	5	0	7	0	0	3	5	1	2	2	1	7	38	3.5	
	준특수	8	1	1	1	0	6	0	0	2	2	4	0	1	1	6	33	3.0	
	기타	50	35	40	83	37	69	85	39	61	39	29	195	53	33	175	1,023	93.5	
자본	공칭	958	149	506	505	93	517	113	36	372	197	214	185	146	55	839	4,885	100.0	
	납입	832	102	472	347	63	333	83	28	345	159	146	112	91	30	706	3,849	100.0	
내역	특수	공칭	410	0	280	263	-	279	-	-	218	130	100	80	60	3	569	2,392	49.0
		납입	400	0	280	161	-	194	-	-	215	110	56	45	45	2	549	2,057	53.4
	준특수	공칭	323	5	100	20	-	70	-	-	20	28	42	-	20	5	27	660	13.5
		납입	272	1	100	15	-	5	-	-	14	24	40	-	13	1	16	501	13.8
	기타	공칭	225	144	126	222	93	169	113	36	134	39	72	105	66	47	243	1,834	37.5
		납입	160	101	92	172	63	105	83	28	116	25	51	67	33	27	140	1,263	32.8

* 주: 1941년 11월 30일 현재.

* 자료: 滿洲興業銀行(1941), 『特殊會社社二準特殊會社調』.

원 이상의 회사법인 총수는 1,094사였다. 이들 1,094사는 공칭 자본금 48억 8,500만 원과 납입 자본금 38억 4,900만 원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특수 회사 38사는 공칭 자본금의 49.0%와 납입 자본금의 53.4%의 비중이었고, 준 특수회사 33사는 공칭 자본금 13.5%와 납입 자본금 13.8%의 비중이었다. 이

들 특수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광업 18.9%, 기계 7.4%, 기타 공업 11.7%, 전기 11.0%, 배급 6.9%, 교통통신 4.2%, 척식 3.2%, 은행 1.6%, 기타 24.7%의 구성이었다. 이 가운데 특수회사 3대 업종은 광업, 기계, 제철업이었고, 준특수회사는 광업, 금속업, 교통업이었다. 결국, 1941년 말 특수 및 준특수회사 71사는 자본금 20만 원 이상 회사 총수에서 6.5%에 불과했지만, 공칭 자본금 62.5%와 납입 자본금 67.3%의 압도적인 비중과 함께 해당 업종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3. 유형과 특징

만주국 특수회사는 대부분이 개별 회사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1932년 만주국 건국 당초 이들 특수회사는 주로 장쉐량 정권의 ‘적산’을 계승한 것이었지만, 이후 대부분은 만철(주)과 만주국 정부 출자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1937년 12월 설립된 만주중공업개발(주)은 종래 만철(주)과 만주국 정부 출자의 일부를 대신하였다. 따라서 만주국 특수법인은 (1) 만주국 건국 당초에는 장쉐량 정권의 ‘적산’을 만주국 출자로 전환해서 기간산업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2) 1937년 이후에는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출자와 재편을 특징으로 하였다.³⁰ 이하에서는 1930년대 대규모 특수회사 3사의 설립 유형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³¹

첫째, 만주중앙은행(주)이다. 만주중앙은행(주)은 만주국에서 금융 및 관리 통화 구축을 위한 중핵 기구였다. 만주국 정부는 건국과 함께 폐제통일과 금융 기구 재편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1932년 6월 11일 만주국 정부는 만주중앙은행법과 만주중앙은행조직법을 공포하였다. 만주중앙은행(주)은 공칭 자본금

30 鈴木邦夫 編, 2007, 『滿洲企業史研究』, 日本經濟評論社, 135쪽.

31 1930~1940년대에 걸쳐 만주국 특수회사 가운데 시기별 개별 특수회사의 구체적인 설립 실태에 대해서는 鈴木邦夫 編, 2007, 『滿洲企業史研究』, 日本經濟評論社 참고.

3,000만 원으로 법정통화를 발행해서 폐제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만주 중앙은행법 제1조에 기초한 만주중앙은행(주)은 “국내 통화의 유통을 조절하고, 그 안정을 보지하고 금융을 통제한다”³²는 것이었다. 만주중앙은행(주)은 신경 본점을 시작으로 평톈(奉天)·지린(吉林)·치치하얼(齊齊哈爾)·하얼빈(哈爾濱) 본점을 설치하였고, 기타 만주국 주요 도시에 지점과 출장소를 개설하였다. 1935년 5월 만주중앙은행(주)은 폐제통일에 성공하면서 일만 통화등가정책의 확립, 조선은행(주) 철수에 따라 만주국 국폐를 법정통화로 하는 신용체제의 확립이었다. 또한, 만주중앙은행(주)은 통화정책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산금매입법을 공포해서 국폐발행을 위한 금준비를 확충정책을 추진하였다. 1932년 7월 당시 만주중앙은행(주)의 국폐발행 규모는 1억 4,223만 원에 불과했지만, 1938년 12월에 이르러 4억 5,299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1932년 7월 당시 예금 5,029만 원과 대출 1억 2,392만 원에 대해서 1938년 12월 말 각각 4억 8,684만 원과 4억 1,99만 원을 기록하였다. 만주중앙은행(주)의 통화발행량 누증과 예대업무의 확충은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의 급진전에 대응하는 만주국 경제의 압축적 성장 실태를 반영한다. 만주중앙은행법 제38조에서는 매기 이익률이 6% 이하인 경우, 정부출자 지분에 대한 배당 정지와 함께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였다.

둘째, 만주압록강수력발전(주)이다. 1937년 8월 만주국 정부는 조선총독부와 공동으로 압록강 본류 수력전기 개발을 목적으로 ‘만주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법’을 공포하고, 9월 7일 만주압록강수력발전(주)을 설립하였다.³³ 당초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에 따르면, 1941년도 수화력 합계 120만 kW를 목표로 하였지만 그 가운데 수력발전량은 35만 kW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37년 압록강 공동 수력개발에 따라 만주국 수력발전량은 260만 kW로 증가하였고, 전체 필요 전력의 절반을 수력전기로 대체하게 되었다. 1937년 8월 조선

32 菊地主計, 1939, 『滿洲重要産業の構成』, 東洋經濟出版部, 107~111쪽.

33 菊地主計, 1939, 『滿洲重要産業の構成』, 東洋經濟出版部, 159쪽.

과 만주국 수뇌는 압록강 수력개발 각서와 경영 약정서를 교환해서 ‘부부 별성(別性)의 기묘한 제안과 구성’³⁴으로 각각 압록강수력발전(주)을 설립하였다. 이는 “표면상은 회사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책사업이다. 만주회사는 명확하게 특수법인으로 특별한 보호·감독을 받았고, 조선 회사는 보통법인이지만, 사업허가명령서 및 행정지도에서 국책회사에 상당하는 보호·감독”³⁵을 특징으로 하였다. 조선과 만주 양측은 각각 자본금 5,000만 원의 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의 50%를 상호 출자하였다. 양사 경영을 담당하는 것은 1920년대 후반 이래 조선의 부전강과 장진강 수력개발에서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한 일본질소(주)였다. 양사 경영체제는 경영진의 겸임과 자산·부채의 공유, 손익계산의 균등 배분, 발전력의 공동배분을 특징으로 하였다. 만주국 측은 100% 정부 출자였지만, 조선 측은 전부 민간 출자였다. 양사 관계는 이른바 일심이체(一心二體) 혹은 일체불가분(一體不可分)의 관계였다.³⁶

셋째, 만주중공업개발(주)이다. 만주중공업개발(주)은 만주국 중공업 개발을 담당하는 중핵기관으로 아유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³⁷를 총수로 하는 일본산업(주)의 만주국 이주와 함께 만주국 정부 출자 50%의 자본금 4억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³⁸ 만주중공업개발(주)은 1937년 12월 20일 칙령 제460호 ‘만주중공업개발주식회사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대규모 특수회사였다. 투자와 경영은 관리법 제2조의 규정과 같이 철강, 경금속, 자동차 제조, 항공기 제

34 谷川竜一, 2008, 「流伝する人々、転生する構造物—朝鮮半島北部における水風ダムの建設とその再生—」, 『思想』 제1005호.

35 朝鮮電氣事業史編纂委員會, 1981, 『朝鮮電氣事業史』, 財團法人中央日韓協會, 294쪽.

36 朝鮮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 1937. 9. 7, 「朝鮮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定款」.

37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총재 아유카와 요시스케의 기업가 활동과 만주 이주 경위, 그리고 이른바 ‘만주탈출(滿洲脫出)’에 대해서는 宇田川勝, 1976, 『日本を牽引したコンツェルン』, 芙蓉書房出版 참조.

38 宇田川勝, 1976, 「日産財閥の滿洲進出」, 『經營史學』 제11권 제1호.

조, 석탄 채굴이었다.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설립은 닛산재벌(日産財閥)의 만주국 이전에 따른 민간자본의 도입과 외자유치(미국의 자재·자본·기술)라는 대규모 금융경로의 등장이었으며, 일본 민간자본의 대표적인 만주국 진출 사례였다.³⁹ 1938년 3월 만주국 정부는 종래 만철(주)의 중공업 부문 가운데 소화제강소(주), 동화자동차공업(주), 만주탄광(주), 만주채금(주), 만주경금속제조(주) 5사를 분리해서 만주중공업개발(주)에 출자하였다. 만주중공업개발(주)은 증자와 함께 신규자금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만주광산(주), 만주비행기제조(주), 동변도개발(주) 등 자회사를 신설하였다. 또한, 자회사 만주경금속(주)은 손자회사 만주마그네슘공업(주)의 설립, 자회사 만주광산(주)은 만주연광(주)과 안동광업(주)을 설립해서 단기간에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종합 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1939년 3월 당시 만주중공업개발(주)의 관계 회사는 44사, 공칭 자본금 7억 8,000만 원, 납입 자본금 5억 7,185만 원을 기록하였다.⁴⁰ 만주국 정부의 만주중공업개발(주)에 대한 출자 규모는 특수회사 가운데서도 돌출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만주국 정부는 만주중공업개발(주)에 대해서 납입 자본금 2배에 달하는 사채발행을 인정하는 한편, 설립 이후 10개년에 걸쳐 연 6%의 이윤율을 보장하였다. 더욱이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이익금 처분에 대해서도 이익배당금이 납입주금에 대해 연간 7.5%에 달할 때까지 민간지분 10%와 정부지분 5%로 주주배당의 차별화를 인정하였다.⁴¹

39 滿鐵會 編, 2007, 『滿鐵四十年史』, 吉川弘文館, 166쪽.

40 1939년 당시 만주중공업개발(주)의 관계 회사는 소화제강소·동화자동차·만주탄광·만주경금속·만주광산·만주비행기제조·동변도개발·만주자동차제조·번시후매철공사(本溪湖煤鐵公司)·만주아연광·만주마그네슘공업·안동광업·열하광업·무순시멘트 14개사였다. 滿洲重工業開發株式會社, 1939, 『滿洲重工業資源の開發と滿業の使命』.

41 1940년 5월 말 만주중공업개발(주)은 공칭 자본금 4억 5,000만 원(전액 납입), 주주총수 6만 6,087명이었고, 만주국 정부는 발행주식 500만 주(갑종, 을종) 가운데 갑종 주식 450만 주(전체의 50%)를 소유하는 최대 주주였다. 경영진은 총재 아유카와 요시스케, 부총재 요시노 신지(吉野信次)였다. 1941년 말 만주중공업개발(주)은 재만계 31사, 재일계 63사 합계 94사에 대해 출자하였고, 납입 자본금 합계 22억

1930년대 전반 만주국의 특수회사 설립은 장쉐량 정권의 ‘적산’을 계승해서 설립되었고, 전체적으로 농림업과 기간사업에 치중되었다. 특히 육상 운송업의 경우에는 만철(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특수회사 설립은 만주국 단독 출자보다는 만철(주)과의 공동 출자가 대부분이었다. 1936년까지 만주국의 특수회사 설립은 만철(주)의 자금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1937년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설립과 함께 만주국 정부는 광공업 관계 법인의 정리·재편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1937년 이후 특수회사에 대한 만주국 정부 출자는 전체적으로 기간산업과 농림업에 집중되었다. 준특수회사의 경우에는 중후장대형 기존 제철업을 포함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적 편재성과 함께 부차적인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III. 특수회사의 출자구조와 금융원천

1930년대 특수회사에 대한 만주국 정부 출자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하에서는 특수회사의 출자구조와 금융원천 그리고 1934년 만주국이 식민본국 일본에 앞서 도입한 투자특별회계와 운용수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출자구조와 특징

1932년 이래 1937년 6월까지 만주국에서 회사자본의 성장은 신설회사 506사,

6,455만 원을 기록하였다. 당시 미쓰이(三井)재벌계의 납입 자본금 총액이 13억 6,299만 원, 미쓰비시(三菱)재벌이 12억 6,399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자본 규모는 이들 미쓰이재벌과 미쓰비시재벌마저 상회하는 것이었다. 당시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주주 배당은 갑종 주식 5%, 을종 주식 10%였다. 東洋經濟新報社京城支局, 1941, 『大陸會社便覽』, 87쪽; 宇田川勝, 1976, 『日本を牽引したコンツェルン』, 芙蓉書房出版.

공칭 자본금 8억 1,500만 원, 납입 자본금 5억 2,200만 원을 기록하였다. 1937년 6월 당시 만주국 전체의 회사자본 총수 2,984사(일본 법인 2,617사, 만주국 법인 367사), 납입 자본금 15억 6,602만 원(일본 법인 11억 1,594만 원, 만주국 법인 4억 5,007만 원)을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 고빈유한공사(股份有限公司)를 포함한 주식회사는 847사(일본 법인 651사, 만주국 법인 196사), 납입 자본금 14억 7,557만 원(일본 법인 10억 3,152만 원, 만주국 법인 4억 4,404만 원)에 대해 합자회사(兩合公司 포함) 1,706사, 납입 자본금 6,252만 원, 합명회사(無限公司 포함)는 431사, 납입 자본금 2,792만 원을 기록하였다. 결국, 주식회사는 만주국 전체 회사법인 총수에서 28.3%에 불과했지만, 납입 자본금 규모에서는 94.2%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국 만주국의 회사 자본은 소수 주식회사에 집중되었다.

다음은 1937년 6월 말 만주국 정부와 만철(주)의 출자이다. <표 4>와 같이 만주국 전체의 주식회사에 대한 만철(주)과 만주국 정부 출자는 회사 수에서 9%, 납입 자본금에서 3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납입 자본금 33%는 만철 자체를 타사로 취급한 것으로, 만철 자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약 77%에 달한다. 산업별 비중과 관련해서 만철의 교통운수(철도 부문) 5%를 예외로 하면, 만주국 출자는 주로 전기 가스 80%, 요업 광업 78%, 통신 창고 보험 72%, 공업 50% 등 기간산업에 집중되었다. 또한, 만철 관계 회사를 만주국 정부 출자로 간주하면, 만철 65사, 만주국 정부 24사, 만주국 정부와 만철의 공동 출자 14사를 기록하였다. 특히, 1936년 6월 말 현재 특수법인에 대한 만철(주)의 출자는 만주중앙은행(주), 만주홍업은행(주), 만주계기(주), 봉천조병소(주), 만주면화(주), 만주생명보험(주), 만선척식(주),⁴² 번시후매철공사(주) 8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수회사를 망라하였다. 결국, 1932년 만주국 건국 이래 만주국의 각종 사업 부문에서 만주국 정부와 만철의 긴밀한 경제 관계 혹은 만철 관계 회사

42 정안기, 2011,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이민과 鮮滿拓植(주)」, 『동북아역사논총』 제31호.

〈표 4〉 1937년 만주국의 회사자본과 만주국 정부 및 만철의 출자 구성

(단위: 천 원, %)

구분	만주국 전체		정부 및 만철 관계 회사				만주국 정부 출자			만철 출자			합계 (a)+(b)
	회사 수	납입 자본금	회사수		납입 자본금		회사 수	출자금	비중 (a)	회사 수	출자금	비중 (b)	
금융	302	118,164	13	4.0	44,565	38.0	3	22,687	51.0	12	9,617	22.0	73.0
공업	229	324,772	22	10.0	161,203	50.0	6	6,312	4.0	19	106,021	66.0	70.0
요업, 광업	66	84,841	12	18.0	66,440	78.0	5	29,000	44.0	12	31,740	48.0	92.0
전기, 가스	22	125,390	2	9.0	100,000	80.0	1	17,659	18.0	2	50,000	50.0	68.0
교통, 운송	59	676,295	8	14.0	34,450	5.0	2	2,438	7.0	7	23,973	70.0	77.0
창고, 보험, 통신	13	69,044	5	38.0	49,550	72.0	2	6,750	14.0	3	3,716	7.0	21.0
토건, 척식, 청부	104	66,691	8	8.0	29,900	45.0	3	9,750	33.0	6	10,115	34.0	67.0
신문, 인쇄, 잡업	52	10,375	5	10.0	3,550	34.0	2	792	22.0	4	1,784	50.0	72.0
합계	847	1,475,572	75	9.0	489,658	33.0	24	95,388	19.0	65	236,966	48.0	67.0

* 주: 1937년 6월 말 현재.

* 자료: 横滨正金銀行調査部編, 1942, 『滿洲國特殊會社制度について』, 10~12면.

〈표 5〉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직간접 투자회사 일람

(단위: 천 원)

투자 구분	회사명	자본금		투자액			비고
		공칭	납입	투자 총액	내양 수액	신규 투자액	
직 접 투 자	소화제강소(주)	200,000	125,000	108,050	77,000	31,050	-
	만주탄광(주)	80,000	64,000	62,560	31,280	31,280	특수회사
	만주경금속제조(주)	25,000	25,000	24,000	12,000	12,000	특수회사
	만주채금(주)	12,000	12,000	5,260	5,260	-	특수회사
	동화자동차(주)	6,200	6,200	3,602	1,650	1,952	특수회사
	만주광산(주)	50,000	25,000	25,000	-	25,000	준특수회사
	만주비행기제조(주)	20,000	5,000	5,000	-	5,000	특수회사
	동변도개발(주)	30,000	10,200	6,800	-	6,600	준특수회사
소계	423,200	272,400	240,272	127,190	112,882	-	
간 접 투 자	만주연광(주)	4,000	4,000	2,000	2,000	-	만주광업(주)
	만주마그네슘(주)	10,000	2,500	2,500	-	2,500	만주경금속(주)
	안봉광업(주)	1,000	500	500	500	-	만주광업(주)
	열히광업(주)	600	300	210	210	-	주광업(주)
	무순시멘트(주)	5,000	5,000	2,500	-	2,500	만주경금속(주)
	소계	20,600	12,300	7,710	2,710	5,000	-

* 주: 1937년 6월 말 현재.

* 자료: 横滨正金銀行調査部 編, 1942, 『滿洲國特殊會社制度に就て』, 72면.

의 압도적인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 민간자본의 만주국 투자는 극히 미미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1937년 12월 닛산재벌의 만주국 이주와 함께 만주중공업개발(주)이 설립되었다. 만주중공업개발(주)은 철광업, 경금속 공업, 자동차제 조업, 항공기 제조업, 석탄광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 지도를 목적으로 하였다.⁴³ 만주중공업은 산하 관계 회사에 대한 종합적 통제와 함께 3대 광업사업으로 철·석탄·경금속 개발을 담당하는 한편, 주력사업은 사업적 관련성이 높은 자동차와 항공기제조업 그리고 광업 개발이었다. 1938년 9월 당시 만주중공업개발(주)의 관계 회사는 <표 5>와 같이 소화제강소(주)를 비롯한 5개사, 공칭 자본금 3억 2,300만 원, 납입 자본금 2억 3,200만 원으로 철강·석탄·경금속·자동차 부문을 망라하였다. 만주중공업개발(주) 설립 이후 신설 관계 회사는 만주광산(주), 만주비행기제조(주), 만주마그네슘공업(주), 동변도개발(주) 4사였다. 그 가운데 기설 5사는 종래 만철(주)의 소유 주식을 만주국 정부의 현물 출자(1억 2,700만 원)로 전환한 것이었다.

만주국 정부는 이상 5사 외에 1938년 9월 만주중공업개발(주)에 추가 출자를 단행하였다. 기존 5사에 대한 약 7,500만 원을 시작으로 만주광산(주), 만주비행기제조(주), 동변도개발(주) 3사에 대한 신규 출자분 3,680만 원을 포함하면, 만주국 정부 출자분은 2억 4,000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간접 출자분은 만주광업(주)의 자회사 만주연광(주), 안봉광업(주), 열하광업(주), 만주경금속제조(주)의 자회사 만주마그네슘(주), 무순시멘트(주)를 포함하는 총 5사에 대한 현물 출자 270만 원과 신규 출자 500만 원으로 합계 770만 원을 기록하였다. 만주국 정부는 소화제강소(주)와 만주탄광(주)의 2대 트러스트와 함께 경금속·채금·자동차·비행기 등 중요 산업의 유기적 경영을 담당하는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설립과 함께 만주국 정부 출자를 일원화하였다. 결국, 1938년 만주중공업개발(주)

43 實業往來社 編, 1942, 『滿洲經濟の地位と特殊會社の動向』, 實業往來社, 30~31쪽.

〈표 6〉 1930년대 만주국의 신규 및 계승출자와 업종별 누계

(단위: 천 원, %)

구분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은행	7,500	7,500	15,000	15,000	15,000	22,500	22,500	22,500	22,500	30,000
교통통신			6,000	7,388	7,388	9,180	11,170	11,258	21,276	40,100
전력전기					17,694	17,694	32,405	44,905	67,117	56,621
농림			8,754	8,754	12,167	1,500	3,500	23,085	44,250	67,250
광공					250	18,217	35,592	267,330	341,278	409,278
수산						313	625	625	6,250	7,500
제조					388		750	5,500	13,250	20,209
토지					2,750	2,750			5,000	7,500
척식					3,000	4,000	9,000	9,990	15,000	15,000
기타						1,688	2,063	17,942	69,030	90,467
신규출자	7,500	7,500	29,754	31,342	58,635	77,840	117,604	403,135	604,951	743,925
계승출자	18,965	18,965	18,965	18,965	18,965	18,535	18,236	9,321	6,745	4,495
합계	26,465	26,465	48,719	50,307	77,600	96,375	135,840	412,456	611,696	748,420
신규출자율	28.3	28.3	61.1	62.3	75.6	80.8	86.6	97.7	98.9	99.4

* 자료: 國務院總務廳統計處, 1943, 『滿洲經濟參考資料』, 50~51면.

의 등장은 특수회사 제도가 만주국에서 거대 산업독점체 형성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1930년대 업종별 신규 출자와 함께 장쉐량 정권의 '적산'을 계승한 만주국의 출자 총액은 〈표 6〉과 같이 누계 총액 7억

〈표 7〉 1941년 말 특수회사의 대주주와 지분율 분포

(단위 천 원, %)

주주	특수회사				준특수회사				합계			
	공칭 자본		납입 자본		공칭 자본		납입 자본		공칭 자본		납입 자본	
	자본액	비율	자본액	비율	자본액	비율	자본액	비율	자본액	비율	자본액	비율
일본 정부	74,391	2.3	56,710	2.4	0	0.0	0	0.0	74,391	2.0	56,710	2.0
만주국 정부	919,917	29.0	720,976	31.1	60,438	9.5	57,688	10.4	980,355	25.7	778,664	27.1
만주 중공업개발	758,062	23.9	673,062	29.0	235,500	37.0	235,500	42.4	993,562	26.1	908,562	31.6
만업 자회사계	8,140	0.3	8,140	0.4	42,000	6.6	27,000	4.9	50,140	1.3	35,140	1.2
만철	86,002	2.7	77,536	3.3	9,250	1.5	8,750	1.6	95,252	2.5	86,286	3.0
동양척식	36,250	1.1	28,750	1.2	5,165	0.8	4,582	0.8	41,415	1.1	33,332	1.2
오구라 (大倉)계	5,070	0.2	5,070	0.2	40,380	6.3	40,230	7.2	45,450	1.2	45,300	1.6
노구치 (野口)계	90,000	2.8	51,750	2.2	0	0.0	0	0.0	90,000	2.4	51,750	1.8
미쓰이 (三井)계	30,300	1.0	28,800	1.2	4,700	0.7	1,425	0.3	35,000	0.9	30,225	1.1
미쓰비시 (三菱)계	14,630	0.5	12,757	0.6	9,735	1.5	7,434	1.3	24,365	0.6	20,191	0.7
스미모토 (住友)계	6,350	0.2	6,350	0.3	0	0.0	0	0.0	6,350	0.2	6,350	0.2
만주 중앙은행	1,171	0.0	1,171	0.1	8,891	1.4	7,399	1.3	10,062	0.3	8,570	0.3
만주 홍업은행	26,444	0.8	21,061	0.9	100	0.0	25	0.0	26,544	0.7	21,086	0.7
조선은행	22,150	0.7	19,281	0.8	0	0.0	0	0.0	22,150	0.6	19,281	0.7
만주국 예금부	59,801	1.9	35,880	1.5	0	0.0	0	0.0	59,801	1.6	35,880	1.2
기타	1,037,822	32.6	572,581	24.7	220,491	34.6	165,309	29.7	1,258,313	33.0	737,890	25.6
합계	3,176,500	100.0	2,319,875	100.0	636,650	100.0	555,342.0	100.0	3,813,150	100.0	2,875,217	100.0

* 자료: 國務院總務廳統計處, 1943, 『滿洲經濟參考資料』, 155면.

* 출처: 解學詩, 2000, 『滿洲國經濟一般狀況(下)』, 『滿洲國機密資料』, 木の友社.

4,842만 원에 달했고, 1938년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의 본격화와 함께 약 3배에 달하는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만주국 정부 출자는 특수 및 준특수 회사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1941년 11월 말 현재 특수 및 준특수회사의 출자구조이다. <표 7>과 같이 특수회사에 대한 기타를 제외한 15대 자본계열의 출자 비중은 공칭 자본금의 67.4%, 납입 자본금의 75.2%를 차지하였다. 그 가운데 납입 자본금 기준 대규모 출자자는 만주국 정부 31.4%를 시작으로 만주중공업개발(주) 29.0%, 만철(주) 3.3%의 순이었고, 이들 상위 3대 주주의 출자 비중이 전체의 62.5%를 차지하였다. 한편, 준특수회사에 대한 15대 자본계열의 출자 비중은 공칭 자본금 대비 65.3%, 납입 자본금 대비 70.2%를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 납입 자본금 기준 상위 3대 출자자는 만주중공업개발(주) 42.4%, 만주국 정부 10.4%, 만철(주) 7.4%의 순이었다. 특수회사의 지배는 만주국 정부, 만주중공업개발(주), 만철(주)이 분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만철(주)과 만주중공업개발(주)에 대한 만주국 정부의 약 50% 출자 비중을 고려하면, 양사 출자는 만주국 정부 출자에 대신하는 간접 출자로 간주할 수 있다.

2. 투자원천과 금융경로

다음은 이들 특수회사에 대한 투자원천과 금융경로이다.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일본의 만주국 투자를 추계한 <표 8>과 같이 일본의 만주국 투자와 경로는 크게 만철 관계, 회사 관계, 만주국 정부 관계로 구분되며, 합계 40억 8,198만 원을 기록하였다. 투자경로별 비중은 만철 관계 38.3%, 회사 관계 45.6%, 만주국 정부 관계 16.1%를 기록하였다. 특히, 1937년 이후 일본의 만주국 투자 총액은 그 이전에 비해서 약 2.6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930년대 전반까지 만철 관계는 주금납입, 사채발행, 차입금을 중심으로 투자총액 11억 6,171만 원에 대해서 59.9%를 차지하였다. 만철은 당시 일본 금융시장에서 유희자금의 소화 혹은 만주국 투자의 주요 금융경로였다. 그러나 1930년대

〈표 8〉 일본의 만주국 투자와 금융경로

(단위: 천 원, %)

구분	1932~1936		1937~1940		1932~194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만철 관계 (주금 납입, 사채 순증액, 차입금)	691,745	59.5	872,685	30.0	1,564,430	38.3
(2) 재만특수회사 관계(주금 납입, 사채, 차입금)	300,071	25.8	1,561,086	53.3	1,861,157	45.6
(3) 만주국 관계 (공채, 차입금)	170,000	14.7	486,400	16.7	656,400	16.1
합계	1,161,816	100	2,920,171	100.0	4,081,987	100.0

* 주: 원자료는 對滿사무국 발표 자료.

* 자료: 大連商工會議所調査課 編, 1940, 『滿洲事業成績分析, 第四回』, 6~7면.

후반 만주중공업개발(주) 등 회사 관계의 금융경로가 만철(주)의 만주국 투자를 대체하게 되었다. 회사 관계의 금융경로는 만주중공업(주)을 비롯해서 구(舊)남만전기(주), 만주화학(주), 만주전신전화(주), 만주탄광(주), 만주전업(주), 소화제강소(주), 만주척식(주), 만주홍업(주) 등 특수회사였다.⁴⁴

다음으로 1930년대 만주국 투자의 금융경로와 대체투자 실태를 검토해 보자. 만철(주)은 1906년 설립 이래 철도업을 근간으로 연선의 탄광·중공업·항만·공익시설 등 다각적 경영체로 변모하였다. 특히, 만철 연선 부속지에서 토

44 1937~1938년에 걸쳐 이들 9개사가 일본 금융시장에서 사채와 차입금 명목으로 조달한 자금은 2억 2,500만 원에 달하였다. 菊地主計, 1939, 『滿洲重要産業の構成』, 東洋經濟出版部, 68쪽.

목·위생·교육·산업·경비·사회시설·묘지·화장장 등 공익시설까지 망라하였다. 이들 사업비는 역시 철도업 경영의 독점이윤이었다.⁴⁵ 또한, 만철(주)은 연선의 부속지 경영과 함께 원료자원 개발과 대일공급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32년 만주국 건국과 함께 만주국 정부는 일본 경제의 생산력 확충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경제단위로 재편되면서 계획적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만철개조’⁴⁶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38년 만철(주)은 부속지 행정권의 만주국 이관과 함께 치외법권 철폐 등 종래 우월적 권익의 상실과 함께 무순탄광(주)을 제외한 중공업 부문을 만주국중공업개발(주)에 이관해야만 했다.⁴⁷ 1930년대 전반까지 만철(주)은 신규 선로 부설, 통신사업, 광산업 등 정치 군사적 투용자가 지배적이었지만, 1938년 이후에는 철도·석탄·조사 업무에 특화하게 되었다.⁴⁸

1930년대 후반 만철(주)의 후퇴에 대응해서 1937년 이후 만주중공업개발(주)이 만주국 투자를 대신하게 되었다.⁴⁹ 실제로 1937년에 이르러 만철(주)은 만주국 국유철도의 투자 부진과 채산성을 결여한 거액의 국책 투자가 누증하면서 일본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⁵⁰ 또한, 만철의 만주국 특수회사에 대한 투자 여력도 점차 약화되었다. 그래서 만주국 정부는 닛산재벌의 만주국 유치와 함께 만주중공업개발(주)을 설립해서 일본 민간회사의 자본·기술·경영을 이식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1941년 말 만주중공업개

45 實業往來社 編, 1942, 『滿洲經濟の地位と特殊會社の動向』, 實業往來社.

46 財團法人滿鐵會 編, 2007, 『滿洲四十年史』, 吉川弘文館, 154~166쪽.

47 滿洲鑛工技術員協會, 1944, 『滿洲鑛工業年鑑』, 東亞文化圖書株式會社, 33쪽.

48 1940년 5월 당시 남만주철도(주)는 공칭 자본금 8억 원, 납입 자본금 7억 3,621만 원, 주주 총수 7만 387명이었고, 발행 주식 1억 6,000만 주 가운데 일본 대장성이 800만 주를 소유하였다. 주주 배당은 정부 4%, 민간 8%였다. 총재는 오무라 다쿠이치(大村卓一), 부총재는 사사키 겐이치로(佐々木兼一郎)였다. 東洋經濟新報社京城支局, 1941, 『大陸會社便覽』, 93쪽.

49 原朗, 1976, 「滿洲における經濟統制政策の展開 - 滿鐵改組と滿業設立をめぐって」, 『日本經濟政策史論(下卷)』, 東京大學出版會.

50 安富歩, 1997, 『「滿州國」の金融』, 倉文社, 147~180쪽.

〈표 9〉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사채발행 내역

(단위: 천 원, %)

회차	발행 금액	발행 연월	상환 만기일	이율
제1회	30,000	1939. 3. 1	1951. 3. 1	4.3
제2회	30,000	1939. 6. 1	1951. 6. 1	〃
제3회	30,000	1939. 9. 15	1951. 9. 15	〃
제4회	40,000	1939. 11. 20	1941. 11. 20	〃
제5회	40,000	1940. 2. 10	1952. 2. 9	〃
제6회	40,000	1940. 8. 5	1952. 8. 5	〃
제7회	50,000	1940. 12. 10	1952. 12. 10	〃
제8회	50,000	1941. 2. 25	1953. 2. 25	〃
제9회	30,000	1941. 5. 20	1953. 5. 20	〃
특1호	5,000	1941. 7. 15	1942. 5. 30	4.2
제10회	20,000	1941. 8. 20	1953. 8. 20	4.3
제11회	35,000	1941. 11. 20	1953. 11. 20	〃
제12회	20,000	1942. 3. 20	1954. 3. 20	〃
제13회	4,560	1942. 3. 31	1954. 3. 25	〃
제14회	20,000	1942. 5. 1	1954. 5. 1	〃
제15회	35,000	1942. 6. 10	1954. 6. 10	〃
제16회	35,000	1942. 9. 25	1954. 9. 25	〃
제17회	30,000	1942. 12. 10	1954. 12. 10	〃
제18회	25,000	1943. 3. 10	1955. 3. 10	〃
제19회	10,000	1943. 5. 15	1955. 5. 14	〃
제20회	30,000	1943. 8. 5	1955. 8. 5	〃
제21회	15,000	1943. 11. 10	1955. 11. 10	〃
제22회	15,000	1944. 5. 15	1956. 5. 15	〃
제23회	10,000	1944. 8. 10	1956. 8. 10	〃
제24회	5,000	1945. 5. 21	1957. 5. 20	〃
합계	654,560	-	-	-

* 주: 日本興業銀行, 1970, 『社債一覽』, 298~299면.

발(주)은 총자산 17억 9,796만 원 가운데 고정자산 7,245만 원에 대해 투자자
 산은 17억 2,907만 원을 기록했던 반면, 금융원천은 사채 3억 9,970만 원, 차
 입금 7억 5,731만 원, 주주자본 5억 8,598만 원을 기록하였다.⁵¹ 이 가운데 만
 주중공업개발(주)의 사채발행 규모와 내역은 <표 9>와 같이 1939년 3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6억 5,456만 원에 달하는 만주국 보증사채를
 발행하였다. 그 가운데 1941년 말 사채발행 누계는 전체의 약 70%(4억 원)를 차
 지하였다. 만주중공업개발(주)의 발행사채는 일본흥업은행(주)과 조선은행(주)
 등 국책은행과 미쓰이재벌 등 재벌계 은행과 신탁회사로 구성된 대규모 신디케
 이트단이 인수하였다.⁵²

3. 투융자 활동과 ‘투자특별회계’

1930년대 만주국 정부의 투융자 활동이다. 1934년 7월 만주국은 정부 투융자
 를 관리하는 투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1940년 일본 정부의 정부
 출자 특별회계에 선행하는 경제제도의 성립이었다. 1934년 당시 투자특별회계
 는 세입계정 차입금 600만 원에 대해서 세출계정으로 출자금 183만 원과 용자
 금 235만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36년도에 이르러 차입금 1,800만 원과
 출자금 1,600만 원을 기록하면서 단기간에 수지 총액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
 였다. 결국, 만주국 정부는 투자특별회계를 경유해서 특수회사의 투융자를 관
 리하였다. 이러한 만주국의 투자특별회계 총액의 급격한 증가는 1937년 만주
 산업개발5개년계획의 추진과 함께 본격적인 경제적 기능을 발휘했음을 의미한
 다. 만주국은 1937년 재정계획에서 통치재정, 후생개발재정, 기업재정으로 구
 분하였고, 그 가운데 통치재정은 건전재정주의, 후생개발재정과 기업재정은 적

51 東洋經濟新報社京城支局, 1943, 『大陸會社便覽』, 87쪽.

52 日本興業銀行, 1970, 『社債一覽』, 298~299쪽.

〈표 10〉 만주국의 특별회계와 투자특별회계의 비중

(단위: 천 원, %)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자특별회계			투자특별회계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비중	출자	용자	합계	세출 총액
1934	214,899	187,242	173,971	132,487	17,962	15,945	12.0	3,774	8,327	12,101	15,945
1935	132,768	99,835	137,087	90,771	9,249	10,909	12.0	7,063	2,994	10,057	10,909
1936	263,610	220,790	260,552	174,091	25,004	23,875	13.7	16,362	2,903	19,265	23,875
1937	312,754	267,572	676,848	550,040	155,721	144,692	26.3	50,890	72,354	123,244	144,692
1938	396,009	326,479	1,221,738	1,223,281	447,256	447,060	36.5	308,107	11,900	320,007	447,060
1939	603,902	140,746	1,401,373	1,222,207	253,084	263,564	21.6	102,572	9,900	112,472	263,264
1940	758,259	676,862	2,229,384	2,082,934	318,029	319,549	15.3	-	-	-	319,549

* 주: 투자특별회계 세출 비중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비중임. 또한 투자특별회계 가운데 기타 항목은 특별회계 산업, 국채비, 준비금으로 구성.

* 자료: 國務院總務廳統計處, 1943, 『滿洲經濟參考資料』, 18~21면.

극재정주의를 특징으로 하였다.⁵³

다음으로 1934~1939년에 걸친 투자특별회계의 수량적 변화를 검토해서 만주국 정부의 투용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표 10〉과 같이 만주국의 확대재정을 주도한 것은 특별회계였다. 특히, 1937년 이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세출 규모를 크게 상회하였고, 1940년 당시 약 3.1배에 달하였다. 더구나 특별회계 가운데 뚜렷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투자특별회계였다. 1934년 투자특별회계의 세출액 비중은 12%에 불과했지만, 1937년 18%를 시작으로

53 橫濱正金銀行調査部, 1942, 『滿洲國特殊會社制度に就て』, 39쪽.

〈표 11〉 만주국의 공채발행액과 투자특별회계 부담분 발행액

(단위: 천 원, %)

연도	일반회계				투자특별회계					
	내국채	외화채	차입금	합계	내화채		일화채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32	0	20,000	15,100	35,100	7,500	27.3	20,000	72.7	27,500	100.0
1933	50,923	30,000	-	80,923	7,500	27.3	20,000	72.7	27,500	100.0
1934	3,591	10,000	9,500	23,091	10,000	26.3	28,000	73.7	38,000	100.0
1935	8,150	60,000	28,650	96,800	26,957	49.1	28,000	50.9	54,957	100.0
1936	30,000	60,000	40,000	130,000	45,876	63.8	26,000	36.2	71,876	100.0
1937	105,500	45,000	20,552	171,052	129,730	65.3	69,000	34.7	198,730	100.0
1938	150,008	50,000	90,821	290,829	329,730	66.5	166,400	33.5	496,130	100.0
1939	106,000	187,260	306,541	599,801	491,730	71.2	198,800	28.8	690,530	100.0
1940	537,480	216,290	90,640	844,410	472,530	53.5	411,000	46.5	883,530	100.0

* 주: 투자특별회계 차입금은 내화채에 포함, 일화채의 내역은 투자사업공채, 조선은행 차관, 흥업은행공채 등 포함.
 * 자료: 國務院總務廳統計處, 1943, 『滿洲經濟參考資料』, 26면, 155면.

1939년 22%를 기록하였다. 특히, 1938년도 투자특별회계의 급격한 증가는 만주국 정부의 만주중공업개발(주)에 대한 대규모 출자였다. 그러나 투자특별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분류되었던 수력전기 건설업, 대동항 건설업, 개척민 조성 사업, 과학실험사업 등을 포함한다면, 회계 총액은 더욱 증가한다. 실제로 이들 항목까지 포함해서 재계산하면, 1940년 투자특별회계 비중은 약 41.8%에 달하였다. 투자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해서 앞서 〈표 10〉과 같이 특수법인에 대한 정부 투융자가 압도적인 비중이었다. 또한, 투자특별회계의 세입 가운데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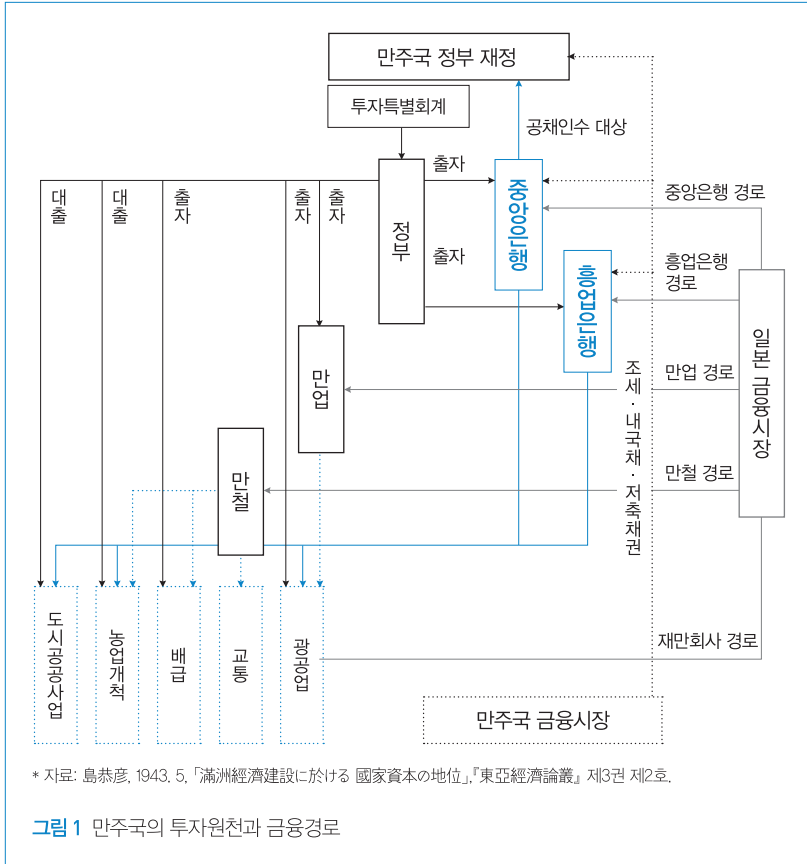
채 발행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고, 1937년 전체 세입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만주국 정부의 특수회사에 대한 투융자는 국채발행을 금융원천으로 하였다.

다음은 만주국 정부의 투자원천으로 공채발행 규모와 추이이다. <표 11>과 같이 만주국은 만주중앙은행(주)을 경유해서 일화채와 내화채를 발행해서 투자재원을 마련하였다.⁵⁴ 만주국의 일화채 발행은 1934년 9월 제1회 사업공채 1,000만 원을 시작으로 흥업은행(주) 공채(2회)와 일화사리(日貨四釐)공채(제2차~제5차)를 발행해서 1940년 말까지 8억 8,353만 원을 계상했던 반면, 내화채(내국채)는 1936년 2,838만 원의 제1차 사리(四釐)공채(제1차~제16차)를 시작으로 1940년 말까지 4억 7,253만 원을 기록하였다.⁵⁵ 내화채와 일화채 발행 비중은 1932년부터 1936년까지 각각 38.7%와 61.3%를 기록했지만, 1937년부터 1940년에 걸쳐 64.1%와 46.5%를 기록하였다. 특히, 1938년도 일화채 발행액의 급격한 증가는 만주중공업개발(주)에 대한 제1회 납입 자본금 1억 9,500만 원이었다.

결국, 만주국 정부는 자본 축적의 저위성으로부터 대중적 자본 동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장기자금 운용이 가능한 신용 창출이 곤란하였다. 그래서 만주국 정부는 내화채와 일화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주국 정부는 투자특별회계를 도입하는 한편, 국채발행에 따른 장기자금을 조달해서 특용자 재원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일본의 만주국 투자의 주요 금융경로는 <그림 1>과 같이 (1) 만주중앙은행(일화공채 발행), (2) 만주흥업은행(사채·흥업채권·차입), (3) 만주중공업개발(사채·차입금·주식), (4) 만철(사채·차입금·주식), (5) 특수회사와 일반회사(사채·주식), (6) 만주척식(주식·차입금·사

54 國務院總務廳統計處, 1943, 『滿洲經濟參考資料』, 41~43쪽.

55 일화공채는 공채발행만이 아닌 조선은행 차입금을 포함하였다. 차입금은 1932년 2,000만 원을 시작으로 1940년 말 800만 원을 계상하였다. 한편, 내국채 가운데 차입금(만주중앙은행)은 1932년 750만 원을 시작으로 1940년 780만 원을 계상하였다. 國務院總務廳統計處, 1943, 『滿洲經濟參考資料』, 42~43쪽.



체)로 다양화되었다.⁵⁶ 그러나 1937년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 이후 금융경로의 뚜렷한 변화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만철(주)에 대신하는 만주중공업개발(주)의 등장이었다.

56 菊地主計, 1939, 『滿洲重要産業の構成』, 東洋經濟出版部, 71~72쪽.

IV. 특수회사의 경영 성과와 구조 개혁

만주국 특수회사는 만주국 정부의 소유와 경영의 지배 그리고 정부의 보호·통제를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만주국 특수회사는 정부실패의 전형으로 경영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1940년 이후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의 제도 개혁과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하에서는 만주국 특수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문제 그리고 제도 개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정부의 보호와 감독

만주국 특수회사는 당초부터 국책대행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들 특수회사는 일반 민간회사가 회사법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특별법에 기초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단속과 감독을 특징으로 하였다. 또한, 지정 산업에서 민간기업은 예외 없이 중요산업통제법 적용을 받았던 것과 달리 특수회사는 별도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특수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회사별 특별법에 구속되었고, 일반 회사 법규는 보완적 적용에 불과하였다. 준특수회사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준하는 정부의 부예명령 등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회사 정관에서 특수회사에 준하는 정부의 단속과 감독 그리고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들 특수회사에 대한 만주국 정부가 규정하는 제한·의무·감독·명령의 제도적 특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⁵⁷

첫째, 주식의 소유 제한이다. 특수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양도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특수회사는 만주국 특별법과 국제조약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의결권의 과반수는 양국 국민과 법인으로 한정되었다. 특히, 만주중앙은행(주)과 만주곡량회사(주) 등에 대해서는 과반수 주식에

57 菊地主計, 1939, 『滿洲重要産業の構成』, 東洋經濟出版部, 210~227쪽.

대한 정부 소유를 규정하였다. 물론, 특수회사 가운데 일반 민간자본을 동원한 만주전신전화(주)와 만주중공업개발(주) 등 그리고 준특수회사 만주전업(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기도 하였다.

둘째, 임원의 선임과 해임이다. 특수회사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만선척식(주), 만주중앙은행(주), 만주광업개발(주), 만주중공업개발(주), 만주양곡(주), 만주임업(주), 만주토지개발(주), 만주흥업은행(주)의 주요 임원은 만주국 정부가 직접 선임하였다. 더구나, 만주척식(주)과 만주전신전화(주)는 일만조약으로 설립된 특수회사였기 때문에 회사 설립 협약서에서 임원의 조건을 양국 국민으로 한정하였고, 양국 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하였다. 물론, 임원 해임에 대해서도 정부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셋째, 경영의 감독과 명령이다.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 경영과 재산상황에 대한 감독권과 명령권을 장악하였다. 주무대신은 회사 경영과 관련한 공익 및 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회사에 대한 업무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 특히, 만주중앙은행(주)과 만주흥업은행(주)은 금융통제의 중요성으로 인해 매월 영업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고, 만주석유(주)와 만주중공업개발(주)에 대해서는 관리관을 파견해서 항상적인 경영의 감시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들 특수회사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넷째, 이익금의 처분이다. 특수회사의 주주배당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회사와 같이 주주배당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만주척식(주)은 회사 설립 규정에서 주주배당을 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한정하였다. 만주곡량(주)은 회사 정관에서 정부지분에 대해서 연간 4% 이내, 민간지분에 대해서 연간 5%의 주주배당을 명기하였다. 실제로 1936년 9월 관동군사령부의 방침은 만주국 산업개발과 일만 양국의 금리수준 등을 고려해서 “주주 배당률은 당분간 각 회사 모두 6% 이내로 제한하도록 만주국 정부를 지

도한다”⁵⁸는 것이었다.

다섯째, 감독관 제도이다. 만주국 정부는 만주중앙은행(주), 만주흥업은행(주), 만주중공업개발(주), 만주석유(주) 등에 대해서 감독관 제도를 설치해서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관리·감독하였다. 특히, 만주국 경제부 대신이 임명하는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회사 경영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영업수지 상황을 보고받을 수도 있었다. 또한, 정부가 파견한 회사 감독관에게는 주주총회 출석과 경영에 대한 의견 개진권이 부여되었다.

이 외에도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에 대해 임원의 겸업 금지, 사채 모집, 흡수 합병, 법인체 해산, 주주총회 결의와 취소, 사업의 위탁과 수탁, 재산의 양도와 담보 제공, 투융자 결정 등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허인가권과 감독권을 장악하였다. 나아가 중요산업특별법은 특수·준특수회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영 감독권과 명령권을 규정하였다. 한편,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 경영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함께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윤 보상이다.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에 대한 이윤 보상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윤 보상은 모든 특수법인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종류에 따라 (1) 주주배당 이익금이 납입 자본금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간 소유지분에 대한 우선 배당을 인정하였다. 주요 대상 기업은 만주전신전화(주), 만주척식(주), 만주중공업(주), 만주중앙은행(주) 등이었다. (2) 일정한 이윤 보상을 규정한 특수회사는 만주면화(주), 만주중공업개발(주), 만주중앙은행(주), 만주유안(주) 등이었다. 만주중공업개발(주)은 매년 영업결산에서 사업순익이 연간 6%에 미달하는 경우, 설립 이후 10개년에 걸쳐 이익부족액 보조를 규정하였고, 만주중앙은행(주)에 대해서는 설립 이후 5개년에 걸쳐 이윤 보상을 규정하였다.

둘째, 증자와 사채발행 특례이다. 일본 상법 제210조에서는 공칭 자본금 전액 납입 이전 증자를 금지했지만, 만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였다. 또한, 만주국

58 關東軍參謀長, 1936. 9. 2, 「滿洲國法人たる特殊會社並準特殊會社の利益金處分の件」.

정부는 회사법 제158조에서 납입 자본금을 상회하는 회사 법인의 사채 발행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특수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법 규정과 무관하게 납입 자본금을 상회하는 사채 발행 특례를 인정하였다. 대상 기업은 만주흥업은행(주), 만주중공업개발(주), 만주양곡(주), 만주척식(주), 만주방산(주) 등이었다. 예를 들어 만주중공업개발(주) 2배, 만주척식(주) 10배, 만주흥업(주) 15배의 사채 발행을 인정하였다. 또한, 1938년 9월 임시자금통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만주국 경제부 대신이 지정하는 중요산업 10개 업종(산금, 석탄, 제철, 경금속, 공작기계, 차량, 항공기, 병기, 액체연료, 전기)에 대해서는 납입 자본금 2배의 사채 발행을 인정하였다.

셋째, 면세 특권이다. 특수회사라 하더라도 영리법인이었기 때문에 영업세를 비롯한 다양한 부세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만주전신전화(주), 만주척식(주), 만선척식(주), 만주광업개발(주)에 대해서는 면세 특례를 규정하였다. 만주전신전화(주)에 대해서는 재산·소득·영업·등기·등록 등 관동주와 만주국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의 조세와 기타 일절의 부세를 면제하였다. 만주척식(주)에 대해서는 등록세·법인세·계세·목세·생축세를 면제하였다. 만주광업개발(주)에 대해서는 광구세를 면제하였다.

이 외에도 만주국 정부는 특수법인의 성격에 따라 사업경영의 독점권을 비롯한 다양한 특권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만주전신전화(주)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전선로 건설, 교통기관 이용, 요금 징수, 기타 사업경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만선척식(주)에 대해서는 법정 적립금의 적립 의무를 면제하였고, 만주석유(주)에 대해서는 유전조사와 시추비용의 보조금 교부를 규정하였다. 만주양곡(주)에 대해서는 미곡의 저장 경비와 손실에 대한 정부 보상을 규정하였고, 만주면화(주)에 대해서는 실면 매수와 조면업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2. 경영 성과와 비효율성

만주국 특수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만철(주), 만주국 정부, 만주중공업개발(주)의

압도적인 출자와 함께 특별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만주국 정부의 보호·감독을 규정함으로써 거의 만주국 정부의 행정기구에 준하였다. 관련해서 1930년대 후반 관동군사령부 경제참모를 역임했던 가타쿠라 다다시(片倉衷)는 “자본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산업경제의 중요 부문을 국가의 지도·감독이 관철되는 통제조직으로 특수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경제방식이었다. 같은 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결점도 있었다. 제도 그 자체는 정부와 기업과 책임의 불명확성, 관료통제의 부적절성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결함은 경영자와 직원들 가운데 특권의식의 안이한 생각,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 결과 채산성을 무시하고 사기업과 같은 창의 공부와 열의 노력의 부족이다”⁵⁹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하에서는 우선 특수회사의 경영성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1930년 후반 특수회사의 주주배당은 <표 12>와 같았다.⁶⁰ 1936년 상반기 영업결산 회사는 8사에 불과했지만, 1940년 하반기에는 58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별 평균 영업결산 29사에 대해서 주주배당 회사는 16사(55.2%)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기별 평균 주주배당 16사 가운데 만주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규정하는 6% 주주배당률의 특수회사는 7사(44%), 6~10% 5사(31%), 1~5% 8사(50%) 순이었다. 결국, 대부분 특수회사 수익률은 공채금리 수준(6%)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더구나 무배당 회사 가운데 이월이익을 계산한 회사는 5개년 평균 4사, 이월 손실 3사를 기록하였다. 또한, 5개년 기별 평균 특수법인의 영업상황은 조업회사 22사, 조업준비 7사였고, 기별 평균 증배 2사, 감배 1사, 거치 10사를 기록하였다.⁶¹ 결국, 1930년대 특수회사의 경영실적과 관련해서 “특수회사 경영이 별볼일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점차 약

59 片倉衷, 1967, 『挫折した理想國：滿洲國의 興亡의 眞相』, 現代ブックス社, 215~216쪽.
 60 滿洲興業銀行普通金融第一課信用調査係調, 1941. 11, 「特殊會社並ニ準特殊會社調」, 11쪽.
 61 大連商工會議所 編, 1941, 『滿州事業成績分析(第五回)』, 大連商工會議所.

〈표 12〉 만주국 특수회사의 영업 성적 추이

(단위: 천 원)

구분	1936		1937		1938		1939		1940		평균	
	상기	하기	상기	하기	상기	하기	상기	하기	상기	하기		
결산회사수	8	17	14	27	19	39	25	52	31	58	29	
배당률· 배당회사수	10%	-	-	-	-	1	1	1	1	1	1	1
	9%	-	-	-	-	-	-	-	-	-	-	-
	8%	-	1	-	1	2	3	3	3	1	-	2
	7%	-	-	-	1	1	2	2	3	2	5	2
	6%	4	4	4	5	3	7	6	10	9	13	7
	5%	-	2	1	6	2	5	-	5	3	8	4
	4%	-	1	1	1	1	1	-	2	-	2	1
	3%	1	1	2	1	1	2	1	3	-	1	1
	2%	-	1	-	-	-	-	-	-	-	-	1
	1%	-	0	-	1	-	-	-	-	-	-	1
	회사수	5	10	8	16	11	21	13	27	16	30	16
무배당회사	총이월익	-	4	1	6	-	5	2	5	2	8	4
	총이월손	2	1	2	1	1	3	1	5	2	11	3
조업중 회사	7	15	11	23	12	28	16	37	20	50	22	
건설중 회사	1	2	3	4	7	10	9	15	11	8	7	
증배 회사	1	1	1	3	4	3	3	2	0	0	2	
감배 회사	0	1	-	2	-	-	-	-	4	0	1	
거치 회사	3	4	2	7	4	13	10	20	10	30	10	

* 滿洲興業銀行, 1941, 「特殊會社並二準特殊會社調」, 11면.

화되는 상황이다. 작년 말(1940) 특수회사 70사 가운데 겨우 재산점에 도달한 것은 30사에 불과하다. 그 외는 전부 적자 경영의 연속”⁶²이었다. 다음으로는 특수회사 경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자.

첫째, 경영의 자율성 결여이다. 특수회사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만주국 정부의 분신이자, 경제개발의 대행자였다. 따라서 특수회사 경영은 만주국 정부의 광범위한 단속과 감독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 내용은 사업과 경영 전반에 걸친 만주국 정부의 허인가, 각종 감독 취체령, 업무집행의 사후 감사 등이었다. 이러한 만주국 정부의 특수회사에 대한 폭넓은 경영 개입은 관료 독점의 폐해와 함께 ‘무채산주의’⁶³를 초래하였다. 만주국 정부의 구속·규제·명령은 특수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었고, 정부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경영의 소극성이다. 특수회사는 사업의 독점성,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보호, 소유와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을 특징으로 하였다. 특수회사는 1업 1사주의 독점경영으로 시장경쟁을 결여하였고, 경영 전반에 걸쳐 만주국 정부의 다양한 보호와 통제를 특징으로 하였다. 특수회사 경영은 만주국 건국이념의 구현 혹은 국책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영업부진에 따른 경영파탄을 우려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특수회사의 정부 출자와 다양한 경영 개입은 일반 민간기업에서 관찰되는 경영자적 리더십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셋째, 방만 경영의 폐해이다. 특수회사 경영은 1업 1사주의에 입각한 소수성과 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실제로, 특수회사 경영 규모는 당시 일본 기업 일반에 비교해서 단위를 상회할 정도의 대규모였지만, 경영진과 사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소하였다. 또한, 특수회사의 경영진 인선은 만주국 건국 과정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퇴역군인 혹은 일본 국내의 퇴직 관료를 영입하는 등 낙

62 山本安次郎, 1941. 9, 「滿州に於ける特殊會社の再組織問題」, 『東亞經濟論叢』 제1권 제3호.

63 大連商工會議所, 1941. 9, 「滿州に於ける企業界の現勢(1)」, 『東亞商工經濟』 제5권 제9호.

하산 인사를 특징으로 하였다. 실제로 “포부와 경륜도 없고 무정견과 무방책으로 대체로 커다란 과실 없이 임기를 마치고자 하는 소극적인 태도의 수뇌자”⁶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이들 경영진은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결여함으로써 방만 경영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과 사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였다.

그래서 1936년 이래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다양한 경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1936년 7월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의 독점적 폐해 시정을 위한 인사, 급여, 조직, 사업, 이익금 처분을 규제하는 ‘특수 및 준특수회사의 지도 감독 방책’⁶⁵을 공포하였다. 1939년 6월에는 ‘특수회사의 특별 감사에 관한 건’을 공포해서 특수회사에 대한 특별감사와 감리관 설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1939년 8월에 이르러 관공서와 동일하게 특수회사 감찰령을 공포하였다.⁶⁶ 또한, 1939년 9월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 사원의 뇌물 수수 등 도덕적 해이를 단속하는 독직처벌령을 공포하였다.⁶⁷ 독직처벌령은 사원들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해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였다.⁶⁸

64 大連商工會議所 編, 1941, 『滿州事業成績分析(第五回)』, 大連商工會議所, 242쪽.

65 滿洲商工會中央會, 1943, 『滿洲産業經濟關係要綱集(第1輯)』, 171~172쪽.

66 滿洲興業銀行普通金融第一課信用調査係調, 1941, 11, 30, 「特殊會社並準特殊會社調」, 156쪽.

67 藤原泰, 1942, 『滿洲國統制經濟論』, 日本評論社, 309쪽.

68 만주국 정부는 1939년 3월 특수회사 회사원의 독직규정 도입을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만주국의 특수회사는 공공목적 및 국방산업의 입장에서부터 자본은 전액 혹은 반액을 국고로 지출하였고, 창립 과정 및 운영은 거의 공영기업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특수회사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은 당연히 보통회사 사원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특히, 사원의 의무 관계는 국가적 사무에 상응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특수회사 사원이 직무에 관련한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는 경우에도 배임이 아니라면, 하등의 국가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관리의 경우에는 독직죄도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폐해가 발생하였다. 특수회사 사원의 자숙자계(自肅自戒) 및 불상사의 방지를 기하기 위해 서라도 이들 사원에 대한 독직규정의 적용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법부 당

3. 제도 개혁과 내용

1939년 말 만주국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일본 금융시장의 위축과 만주국 투자의 부진, 급격한 물가상승과 자금조정의 곤란, 대외무역의 위축과 자본재 수입 곤란, 중국인 노동력 확보의 곤란, 관료 독선의 폐해와 심화, 부적절한 인사정책과 인적 자원 결핍을 배경으로 1937년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에서 표방했던 현지자금주의로부터 중점주의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만주국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특수·준특수회사 및 기타 민간 사업회사에 대한 사업계획의 재검토와 사업자금의 재건 등 필사의 노력을 경주한다”⁶⁹는 취지에서 투자특별회계의 재조정과 함께 특수회사의 제도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는 만주국의 특수회사 제도가 특징으로 하는 국책성 중시와 영리성 경시의 이상주의적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39년 이래 만주국 정부 내부에서는 “만주국의 특수성 및 회사기업의 복잡성에 따라 단일적 주식회사 제도에 의한 특수회사의 운영은 개개 회사에 적용할 때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현행의 특수회사 제도를 검토해서 합리화를 꾀하는 한편, 만주국의 독자적인 운영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⁷⁰는 특수회사 제도 개혁론이 꾸준히 대두하였다.⁷¹ 그래서 만주국 정부는 산업경제부·사

국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특수회사 사원에 대한 형법 규정의 적용을 연구해서 대체로 국방산업, 공공사업, 국채사업 등 특수회사에 대한 형법상 독직죄 구성과 특수회사 사원의 상이점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참작해서 형법상 독직죄 구성 요건을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滿洲日日新聞』, 1939. 3. 27.

69 大連商工會議所, 1941. 9, 「滿洲國經濟の轉換と特殊會社の運營」, 『東亞商工經濟』 제4권 제8호.

70 『滿洲日日新聞』, 1939. 3. 9.

71 재검토 논의의 핵심은 주식회사법의 형식 및 이론과 구별되는 만주국 특유의 특수회사 법제의 성립이었다. 그 요지는 “만주국 특수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각 특수회사법의 시행 혹은 부예명령을 발령해서 창립 및 감독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해왔지만, 회사 운영의 준거는 여전히 상법의 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주국 특수회사의 특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회

법처, 기획처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특수회사의 제도 개혁에 착수하였다.⁷² 실제로 1940년 9월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 제도의 운영 여하는 만주국 통제 경제 운영의 성부에 관한 중요 사항이다. 현재의 경제 정세와 관련해서 특수회사의 충분한 활동과 능률의 발휘가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특수회사의 기능 쇠신 강화에 관한 건’⁷³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률 증진이다. 주요 방침은 (1) 특수회사 운용에 관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 확보였다. 만주국 정부는 물동 및 자금계획에 따라 해당 특수회사에 기대하는 사업의 한도를 명시하고,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업계획과 경영 목표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2) 특수회사의 인사와 급여의 쇄신성 확보였다. 경영체제와 관련해서 이사장 중심주의 강화, 경영진의 소수 정예주의, 임원 상여제도의 개선과 회사별 급여제도의 균형, 사원들의 지도와 훈련의 강화 그리고 직원 처우의 개선이었다. (3) 회사 형태 및 기구의 합리화였다. 사업경영의 일원성 확보, 기업 단위와 회사경영의 합리화 촉진, 현장 제일주의 강화, 감사제도의 개선과 내부 감찰제도의 강화, 연구개발의 향상과 촉진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사업수지의 개선이다. (1) 종래 사업의 기업성 경시에 따른 사업수지의 불량화와 경영실패에서 벗어나 경영의 기업성을 중시한다. (2) 사업 목표와 관련한 시설과 경비의 명확한 구분에 따라 사업수지를 개선한다. (3) 건설업 사업수지는 기존 시설과 신규 건설의 운영수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채산성의 근거를 분명히 한다. (4) 보조금 제도는 가급적 제한하고, 생산장려금과 경비보조금 등 일

사로부터 이탈해서 특수법인의 회사조직으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창립 수속과 회계 사무 그리고 기타 모든 감독권 규정과 관련한 통칙적 특수회사법을 설치해야 한다. 더욱이 특수회사의 사원 신분에 관해서는 (만주국정부) 관리와 동일한 형법 규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南滿洲鐵道株式會社新京支店調査室, 1940. 3, 「滿洲國特殊會社ノ法的性格」, 26~27쪽.

72 『滿洲日日新聞』, 1939. 3. 27.

73 大連商工公會中央會, 1944. 5, 『滿洲國産業經濟關係要綱集』 제1집, 172쪽.

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5) 정부 출자에 따른 방만 경영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흡수를 위해 정부의 출자 범위를 제한한다. (6) 만주국 정부와 만주중공업 개발(주)이 소유하는 특수회사 주식은 사업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민간에 개방한다. (7) 회사별 사업수지 예산제도와 경비절약을 추진해서 수지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셋째, 회사별 및 사업별 중점주의 강화이다. 물동계획 및 자금계획에 기초해서 사업의 중점주의에 철저를 기한다. 사업의 중지와 연기 대상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행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자재를 확실하게 확보한다. 기타 사항으로 (1) 특수회사 설립의 엄선주의이다. 금후 특수회사 신설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이에 필요한 자재·자금·기술·경영자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2) 특수회사의 성격에 따라 각각 적당한 지도와 감독방침을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이상 1930년대 만주국 특수회사 경영은 “채산을 무시한다는 것이 국가적 사업경영 혹은 자선적 사업경영일 수는 있어도 결코 기업적 사업경영은 아니며, 채산을 무시한 경영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⁷⁴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1940년 이래 만주국 정부는 특수법인의 채산성 중시, 기업성 중시, 효율성 증진, 주식 개방과 민간자본의 흡수, 정부 출자 제한이라는 영리성 중시의 제도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⁷⁵ 또한, 1942년 12월 만주국 정부는 건국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본국책요강」⁷⁶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9년 제

74 山本安次郎, 1941. 9, 「滿州に於ける特殊會社の再組織問題」, 『東亞經濟論叢』 제1권 제3호.

75 1942년 1월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와 기타 특수 단체 및 사원에 대한 급여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의 ‘특수회사 사원 급여 통제 요강’을 발표하였다. 滿洲商工公會中央會, 1944, 『滿洲産業經濟關係要綱集(第1輯)』, 176~186쪽.

76 그 내용과 관련해서 (1) 특수회사는 특별히 기업에 대한 국가의 참여가 고도로 요청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2) 1업 1사주의가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폐기한다. (3) 특수회사 및 통제단체의 기능을 쇠신·강화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꾀한다. (4) 기업의 채산성 유지, 경영 합리화, 고능력 기업의 우대 등 기업성 증진을 꾀한다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라 만주국의 경제정책은 물자의 대일기여를 중시하는 대일 종속주의와 물자통제 중심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보다 시장논리를 반영한 특수회사 제도의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러나 1940년대 경제통제의 심화 및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외증에서 특수회사의 제도 개혁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⁷⁷

V. 맺음말

1930년대 만주국 정부는 1업 1사주의 경제정책과 특수회사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특수회사는 만주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을 대행하는 산업 행정기구 혹은 산업개발의 별동대에 상당하는 것이었다.⁷⁸ 당초 만주국 정부는 일본 민간자본을 유치·동원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일본 민간자본의 만주국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결국 만주국 정부는 적극적인 확대재정과 함께 일본 금융시장에 대한 공업화 자금의 의존 그리고 특수회사를 계획단위로 하는 공업화의 추진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영리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결여한 특수회사 경영체제는 경영의 방만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 등 전형적인 정부실패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1940년대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 제도의 전면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만 했다. 이하에서는 1930년대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에서 관찰되는 특질로부터 만주국 공업화의 구조를 지적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회사 제도의 성립과 만주국 정부의 역할이다. 1932년 건국 이래

다. 滿洲鑛工技術員協會, 1944, 『滿洲鑛工業年鑑』, 東亞文化圖書株式會社, 37쪽.

77 『東洋經濟新報』, 1943, 3, 13.

78 菊地主計, 1939, 『滿洲重要産業の構成』, 東洋經濟出版部, 82쪽.

만주국 정부는 만주국에서 고도 국방국가 건설과 대동아공영권 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와 함께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특수회사 제도를 도입해서 만주국의 건국이데올로기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만주국 특수회사는 만주국의 특별법, 국제조약, 부예명령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법인이었고, 만주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지배하는 대규모 기업군이였다. 그래서 특수회사 제도는 사적 독점의 자본주의 폐해를 회피하면서도 자본효과를 활용해서 고도 국방국가 혹은 군수기지 건설이라는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실천하는 전략적 자본체였다. 그 과정에서 만주국은 일본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적극적인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했던 조선과는 달리 단기간에 ‘공채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공채발행으로 경제개발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감당하였다. 1940년 말 특수회사가 만주국의 회사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회사 수에서 4%에 불과했지만, 공칭 자본금에서 약 73%, 납입 자본금에서 약 78%를 기록하였다. 결국, 1930년대 만주국은 단기간에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해서 소수성·독점성·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사회’로 변모할 수 있었다.

둘째, 특수회사의 경영구조와 경영 성과이다. 만주국 정부는 특별법과 부예명령으로 특수회사 경영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보호를 규정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특수회사 제도는 만주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의 계획화와 통제경제를 담당하는 산업행정 기구에 상당하였다.⁷⁹ 실제로 특수회사 경영은 만주국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진의 특권의식, 경영의 자율성 결여, 사원의 관료화, 채산성을 무시한 방만 경영 등 ‘적자 경영의 연속’⁸⁰이었다. 그래서 1939년 이래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고자 특별감리관제, 감찰령, 독직처벌령을 공포해서 경영능률의 적극적인 개선을 꾀해야 했다. 실제로, 1940년 이후 만주국 정부는 특수회사 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전면적인 제도 개

79 南滿洲鐵道株式會社新京支店調査室, 1940. 3, 「滿洲國特殊會社ノ法的性格」, 26쪽.

80 山本安次郎, 1941. 9, 「滿州に於ける特殊會社の再組織問題」, 『東亞經濟論叢』 제1권 제3호.

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결국,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는 경제 주체의 이성과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기초한 이상주의 기업제도였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합리성을 결여하면서 전형적인 정부실패를 초래하고 말았다.

셋째,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에서 관찰되는 정부 기업 간 관계의 특질이다. 만주국 정부는 특수법인에 대해 대규모 출자만이 아닌 특별법과 부예명령 그리고 회사 정관에서 적극적인 경영개입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주식소유의 제한,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 회사 정관의 변경, 이익금 처분, 사채 모집, 합병과 해산, 투용자 인가, 업무 감독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관리와 감독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만주국은 이들 특수법인에 대해 정부 지분의 배당 사퇴와 주주배당의 보조, 조세공과의 면제, 사채발행 특례 등을 제공하였다. 특수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만주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은 경영자의 자율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 등 전형적인 정부실패를 초래하였고, 그래서 만주국 정부는 시장논리를 반영한 제도 개혁에 착수해야만 했다.⁸¹ 결국, 만주국 특수회사는 소유와 경영 전반에 걸쳐 만주국 정부의 공식·비공식의 구속력과 함께 전략적 교섭력의 비대칭을 특징하는 헤게모니 주도형 정부 기업 간 관계를 특징으로 하였다. 1930년대 전형적인 정부 주도형 만주국 공업화의 구조와 특질을 고려하면, 만주국은 20세기 동아시아에서 후발국 공업화의 또 다른 실험장이었다.

81 정부를 전지전능한 계획자가 아니라 기업과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와 동일하게 특유의 인센티브체계를 갖는 정치·경제의 플레이어 혹은 경제시스템의 내생변수로 간주하는 비교제도분석의 연구방법론과 관련해서는 青木昌彦, 1997, 『東アジアの經濟發展と政府の役割』, 日本經濟新聞社; 青木昌彦, 1999, 『政府の役割市場の役割』, 東洋經濟新報社 참조.

참고문헌

- 정안기, 2011,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만주연구』 제12호.
- 정안기, 2011,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이민과 鮮滿拓植(주)」, 『동북아역사논총』 제31호.
- 한석정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한석정, 2015, 『만주모던』, 문학과지성사.
- 岡崎哲二·奥野正寛 編, 1993, 『現代日本經濟システムの源流』, 日本經濟新聞社.
- 久保文克, 1997, 『植民地企業經營史論』, 日本經濟評論社.
- 堀和生, 1995,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 有斐閣.
- 近代日本研究會 編, 1987, 『年報近代日本研究 9』, 山川출판사.
- 金子文夫, 1991, 『近代日本における對滿州投資の研究』, 近藤出版社.
- 大石嘉一郎 編, 1994, 『日本帝國主義史 3 第二次戰大戰期』, 東京大學出版會.
- ダグラス・C・ノース 著·大野一 訳, 2013, 『經濟史の構造と變化』, 日經BP社.
- ダグラス・C・ノース 著·松下公視 訳, 1994, 『制度, 制度變化, 經濟成果』, 晃洋書房.
- 鈴木邦夫 編, 2007, 『滿洲企業史研究』, 日本經濟評論社.
- 山崎志郎, 2011, 『戰時經濟總動員體制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 山本有造, 2003, 『「滿洲國」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 山本有造, 2003, 『帝國の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 山本有造, 2011, 『「大東亞共榮圈」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 石井寛治 編, 2007, 『日本經濟史 4 戰時・戰後期』, 東京大學出版會.
- 小林英夫, 1996, 『滿鉄-「知の集團」の誕生と死-』, 吉川弘文館.
- 柴田善雅, 2011, 『戰時日本の金融統制』, 日本經濟評論社.
- 安富歩, 1997, 『「滿洲國」の金融』, 倉文社.
- 宇田川勝, 1976, 「日産財閥の滿洲進出」, 『經營史學』 제11권 제1호.
- 宇田川勝, 1976, 『日本を牽引したコンツエルン』, 芙蓉書房出版.
- 原朗, 1972, 「1930年代の滿洲經濟統制政策」, 『日本帝國主義支配下の滿洲』, お茶の水書房.
- 原朗, 1976, 「「滿洲」における經濟統制政策の展開-滿鉄改組と滿業設立をめぐる

- て, 『日本經濟政策史論(下卷)』, 東京大學出版會.
- 斎藤直, 2008, 「國策會社における國策性と營利性」, 『早稻田商學』 제416호.
- 斎藤直, 2009, 「戰時經濟下における資本市場と國策會社」, 『經營史學』 제43권 제4호.
-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舎.
- 淺田喬二, 1991, 『日本帝國主義の滿州支配』, 時潮社.
- 青木昌彦 編, 1997, 『東アジアの經濟發展と政府の役割』, 日本經濟新聞社.
- 青木昌彦 編, 1999, 『政府の役割市場の役割』, 東洋經濟新報社.
- 疋田康行, 1988, 「十五年戰爭期の日本の資本輸出」, 『日本植民地研究』 제4호.
- 下穀政弘・長島修 編, 1992, 『戰時日本經濟の研究』, 晃洋書房.
- 下穀政弘 編, 1990, 『戰時經濟と日本企業』, 昭和堂.
- 河合和男, 2000, 『國策會社・東拓の研究』, 不二出版.
- 黒瀬郁二, 2003, 『東洋拓殖會社 - 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 日本經濟新聞社.

1930년대 만주국 공업화와 특수회사 연구

정안기

이 연구는 1930년대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에 주목해서 만주국 공업화의 구조와 특질을 해명하였다.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는 특별법, 국제조약, 정부명령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법인이며, 실질적으로 만주국 정부가 소유와 경영을 지배하는 소수성·독점성·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군이다. 특수회사 제도는 만주국 정부가 자본주의 사적 독점의 폐해를 회피하면서도 자본효과를 활용해서 고도 국방국가 건설 혹은 대동아공영권 이념을 만주국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표상하는 경제제도였다. 이 연구는 만주국 경제사 연구의 일환으로 특수회사 제도의 성립과 이념, 출자와 금융원천, 경영구조와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930년대 만주국 특수회사 제도는 헤게모니 주도형의 정부 기업 간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또 다른 식민지 공업화의 구조와 특질을 시사한다. 1930년대 만주국은 20세기 동아시아 후발국 공업화의 또 다른 실험장이었다.

주제어: 만주국, 1업 1사주의, 특수회사 제도, 식민지 공업화, 헤게모니 주도형 공업화

ABSTRACT

Manchurian Industrialization and Special-purpose Companies in the 1930s

Joung Ank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Manchurian industrialization, focusing on the special-purpose company system in the 1930s. The Manchurian special-purpose company refers to a special-purpose corporation established by special act, international treaty or government order. Its ownership and management were controlled by the Manchurian government, and had the following distinct characteristics: minority, exclusiveness and large scale. This special-purpose company system was an economic system which represented the founding ideology of Manchuria, in which Manchurian government constructed advanced national defense state or implemented the philosophy of 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 by taking advantage of capital effects while avoiding the abuse of capitalist private monopoly. This study specifically reviewed the establishment and philosophy of the special-purpose company

system, investment & financial origin and management structure & performances as a part of the study on economic study of Manchuria. With the features of hegemony-drive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the 1930s, the special-purpose company system impli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Manchurian industrialization. After all, Manchuria in the 1930s was another experimental spot of industrialization for late comers in East Asia in the 20th century.

Keywords : Manchuria, One-business-one-owner Special-purpose Company System, Colonial Industrializatio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Government-driven Industrialization, Industrialization by Later Comers

전후 북한에서의 소련계 숙청과 국적 문제(1954~1958)

조수룡 |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 II. 소련계 숙청의 사회문화적 배경
- III. 소련계에 대한 국적 문제 제기와 반소련계 운동
- IV. 8월전원회의사건 이후 소련계의 소멸과 국적 문제의 해결
- V. 맺음말



I. 머리말

소련은 북한의 국가 건설을 돕기 위해 수백 명의 고려인을 보냈다. 이들은 북한 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의 통치를 보좌하는 한편, 당·정부·군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 건설에 참여하였다. 당시 정치권력 중심에 있던 간부 대부분은 국가 건설은 물론 행정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 따라서 소련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고려인의 참여는 북한의 국가 건설에 큰 힘이 되었다. 기존 연구는 이들을 ‘소련파’ 또는 ‘소련계’로 지칭하였다.¹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 남았다. 그러나 전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이들 파북 고려인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허가의 사망을 시작으로 고려인들은 점차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8월전원회의사건 이후 대대적인 ‘반종파투쟁’ 과정에서 대부분 지위를 잃고 귀국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하였다. 소련으로 귀국한 인사들의 증언이 1990년대 남한 언론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발굴되면서 소련과 북한 모두에서 경계인으로 살아야 했던 이들의 삶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 중 일부가 소련공산

-
- * 투고: 2017년 2월 9일, 심사 완료: 2017년 5월 19일, 게재 확정: 2017년 5월 19일
 - * 본 논문은 2016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연구클러스터 구축 및 학술대회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았음.
 - 1 초기 북한 연구에서는 이들을 ‘소련파’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와다 하루키 등은 이들이 파벌을 형성할 만큼 단일한 정치집단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소련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와다 하루키 지음, 이종혁 옮김, 1992,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비평사, 304~305쪽; 백준기, 1999,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 변동과 권력 재편」, 『현대북한연구』 2권 2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31~32쪽;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50~51쪽.

당의 명령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파견되었지만, 정치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들은 그곳에서도 억압받는 운명에 놓였던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이 문제를 주로 당내 권력 갈등과 북·소관계의 수준에서 다루었다. 소련의 경제정책 개입과 문예·사상사업에서의 ‘소련풍’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련이 북한 내정에 개입하는 통로 역할을 한 소련계 비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이 전후 북·소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소련계를 정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했다는 인식이다. 그중에서도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북한 공산주의의 ‘토착화’라는 관점에서 소련계 비판을 파악하였다. 소련계와 연안계의 세력과 정책에 대한 김일성의 우려가 소련계 비판과 ‘주체’라는 새로운 민족주의 노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² 오코노기 마사오와 백준기는 소련의 북한 경제정책 개입이라는 배경이 소련계 비판에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았다.³ 이에 비해 란코프는 소련의 경제정책 개입보다는 흐루쇼프의 탈스탈린화가 초래한 위협이 김일성이 소련계를 공격하게 만든 주된 동기라고 설명했다.⁴ 이처럼 소련계 비판의

-
- 2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지음, 한홍구 옮김, 1987,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돌베개, 629쪽. 시오토마이 노부오도 김일성이 민족주의를 토대로 소련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소련계를 공격하였다고 파악한다. 시오토마이 노부오 지음, 이종석 옮김, 2012,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논형, 187쪽.
 - 3 Okonogi Masao, 1994, “North Korean Communism: In Search of Its Prototype,” ed. by Dea - Sook Suh,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177~207; 백준기, 1998,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관점을 공유하는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Balázs Szalontai, 2005,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 - 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 - 1964*, Woodrow Wilson Center Press/Stanford University Press; 김보미, 2013,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 『아세아연구』 15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서동만, 2005, 앞의 책; 윤경섭, 2007,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4 Anderi Lankov, 2005,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 - Stalinization, 1956*,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29~32.

배경을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논점을 형성해왔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는 대체로 대외관계와 정책 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와 같은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8월전원회의사건으로 소련계가 사실상 몰락한 이후에도 계속된 ‘반종파투쟁’을 통해 하급 행정관료나 교원과 같은 실무인력까지 철저히 축출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소련계의 몰락에 관한 정치적 설명은 당시 북한 간부와 주민들 사이에 퍼진 ‘반소련파’ 정서의 이유까지는 제시하지 못한다. 이는 곧 소련계 숙청이라는 현상이 사회문화적 수준에서도 분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전후 소련계 숙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들의 국적 문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입북한 소련계 인사들은 북한에서 일한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여전히 소련 국적을 유지한 채 당·정부 등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피선거권과 같은 문제를 낳았고 현지인들에게 신뢰를 얻기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는 소련계 인사들에 대한 국적 전환 문제를 소련 측에 수차례 제기했으나 소련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물론 국적 전환 대상이 된 소련계 인사 대부분도 소련 국적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녀를 국제학교에서 교육시키며 현지인들과 융화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고려인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점점 깊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소련계 비판의 정치적 필요와 결합되어 권력 핵심에 있던 인사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실무인력들까지 정치·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국적 문제를 둘러싼 각각의 입장과 문제 해결의 추이는 파북 고려인과 현지 조선인의 관계, 이들의 조국관, 소수자에 대한 당시 북한 사회의 태도와 같은 여러 주제를 해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정치경제적 접근에 집중된 전후 북한사 연구를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소관계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에 초점을 둔 기존의 설명에 대한 보완적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Ф,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와 러시아국립현대사문서보관소(РГАНИ,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소장 북한 관계 자료를 활용하였다.⁵ 여기에는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과 북한 주요 간부들의 대화록, 소련 대사의 일지,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낸 각종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공식 출판물이 언급하지 않는 사실을 풍부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표된 사실 이면의 여러 맥락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북·소관계의 변화와 소련계 숙청에 관심을 둔 이 연구에서 구소련 자료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II. 소련계 숙청의 사회문화적 배경

1945년부터 1954년 초까지 북한에 파견된 고려인은 약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 내각 간부직장을 지낸 리히준의 증언에 따르면 1945년 8월부터 1953년 3월까지 북한에 파견된 고려인 총수는 428명이었다고 한다. 전후 파견된 기술자 40여 명과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30여 명을 합하면, 파견된 고려인의 전체 숫자는 약 500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⁶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에 장기간 잔류하지 않고 소련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

5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여러 문서고에 소장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왔다. 그중에서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 「소련 외무성 극동과 북한에 대한 보고부 문서군」(фонд 0102) 및 현대사문서보관소 소장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문서철」(фонд 5, опись 28)이다. 국편에서 수집한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중 일부는 원 소장정보(опись, папка, дело)를 누락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문서 제목을 전거로 표기하였다. 국편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6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사』, 한울, 15~16쪽.

인다. 1955년 8월, 김일성은 소련 대사 이바노프에게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이 약 300명이라고 밝혔다.⁷ 이미 이 시점에 200명에 이르는 고려인이 소련으로 귀환한 상태였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북한에 정착하지 않고 소련으로 돌아간 것은 현지인들에게 고려인들이 ‘임시 인력’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소련파’로 불린 고려인 엘리트들은 당시 북한 당·정·군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6차 전원회의에서는 소련계 인사들의 당 지도기관 진출이 두드러졌다. 허가이 사후, 소련계의 새로운 최고 실력자로 부상한 박창옥은 서열 4위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정치위원이 되었다. 16명의 상무위원 중 소련계는 4명(박창옥·박영빈·김승화·남일)으로 1/4을 차지하였다.⁸ 전후 만주빨치산 출신이 다수를 점하게 된 군에서도 소련계는 총정치국장 최중학, 제4군단장 정철우 등이 요직에 진출해 있었다.⁹ 소련계의 비중이 가장 두드러진 권력기관은 내각이었다. 내각의 상(相)급에 해당하는 보직은 계파 간의 정치적 안배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27명 중 4명에 불과했지만,¹⁰ 실무적 능력이 중시된 부상급 직위에는 소련계가 대거 배치되었다. 1953년 8월 현재 내각의 부상급 보직자 51명 중 소련계는 18명으로 1/3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부분 성에는 소련계 부상이 1명 이상 배치되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당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려인 간부 없이는 각 성의 업무가 원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¹¹

7 AVPPΦ, ф.0102, оп.11, п.60, л.7, л.68.

8 서동만, 2005, 앞의 책, 497쪽.

9 김광수, 2006,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 106쪽.

10 AVPPΦ, ф.0102, Структу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КНДР(август 1953 г.), лл.8-9. 내각 상급 고려인 간부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의완(부수상)·남일(외무상)·방학세(내무상)·김승화(국가건설위원장).

11 위의 자료, лл.10-12. 당시 부상급 고려인 간부 1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일무(민족보위성 부상)·리동건(외무성 부상)·리달진(상업성 부상)·김춘삼(내무성 부상)·고희만(중공업성 부상)·남학룡·천치역(이상 철도성 부상)·김재욱·리용석(이

하지만 소련계가 대거 주요 직책에 등용되는 상황에 대해 현지인들은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1954년 초 김일성은 현지인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주요 직위에 대해 출신 지역별 안배를 조정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¹²

인사 문제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만은 다른 배경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시기 북한 권력기구에는 서로 다른 출신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이질적인 여러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다. 중국 출신의 연안계와 소련 출신의 소련계, 전쟁 전후 남한에서 유입된 남로당계, 그리고 북한 현지 출신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1955년 당시 국제여행사 사장으로 일하던 고려인 리철준은 소련 대사관 참사 페트로프에게 조선인들이 각각의 출신에 따라 상호 반목한다고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지인들은 하얼빈에서 온 중국 출신들은 건방지고 소상인적 근성이 있다고, 남한 출신들은 패거리를 짓고 음모를 꾸민다는 이유로 멸시하였다. 그는 현지인과 고려인의 관계도 나빴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전했다.¹³

고려인들은 문화적 차이 외에도 다른 지역 출신들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로 국적이었다. 당시 그들은 대부분 소련 공민이었다. 당 부위원장인 박창옥도, 내각 부수상 박의완도,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중학도 모두 북한이 아닌 소련 국적자였다. 당·정·군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이 소련 공민이라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이미 1950년부터 북한 측에서 국적 전환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 농업성 부상·박병섭·신천택(이상 체신성 부상)·장익환(교육성 부상)·기석복(문화선전성 부상)·김택영(사법성 부상)·조영철(보건성 부상)·김광현(국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김동학(최고검찰소 검사부총장)·김동철(최고재판소 부소장).

12 АВПРФ, ф.0102, оп.10, п.52, л.8, лл.23-26.

13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л.8, лл.154-156.

이들 다수가 전후 시기까지 북한 국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가진 조국관의 일단을 보여준다. 대체로 이들은 소련이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Ⅲ장에서 다루겠지만, 한국전쟁 전부터 북한 외무성은 지속적으로 고려인의 국적 전환을 소련 측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련 측과 고려인 모두 이에 소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1955년 시점에서도 대다수 고려인은 소련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1955년 말 고려인의 국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북한 당국은 이들의 국적 전환을 다시금 중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인민경제대학 학장 유성훈은 국적 전환 의사를 묻는 소련 대사관 영사부장의 질문에 “소련 공민으로서의 행복”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당과 소련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는 조선을 돕는 국제주의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⁴

파북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생각은 현지인들의 편견을 낳고, 상호 간의 융화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다. 애초 그들은 북한에 파견될 때 소련공산당에서 조선로동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동안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당 생활을 하지 않고 소련 대사관 당 조직에서 고려인들끼리 당 생활을 하였다. 전후 어느 시점에선가 소련 대사관 당 조직을 없애고 이들을 소속 기관의 당 조직으로 보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현지인들과 융화하지 못했던 것 같다. 김일성에 따르면 그들은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과오에 대한 비판을 전혀 받지 않았다.”¹⁵ 같은 고려인인 남일조차 그들이 현지인과 융화되지 못하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들 중 다수가 현지인과 어울리는 대신에 고려인끼리 어울렸으며, 평양에는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주택 구역이 조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혁명적 단련을 거치지 못한 소련계 지도자들은 현지인을 무시하고 배척하였다. 이들의 관료주의로 인해 고려인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고립되었고, 현지인은 그들에 대한 적

14 АВПРФ, ф.0102, оп.15, п.22, л.5, лл.17 - 19.

15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111.

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⁶

국적과 당 생활의 차이가 야기한 상호 간의 이질감은 다른 사회경제적 차이들로 인해 확대되었다. 당시 전후의 곤궁한 상황에서 고려인의 경제적 처지는 현지인에 비해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 계통에서 근무하는 고려인은 임금 외에 추가로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¹⁷ 당시 교원의 임금이 2,000~2,400원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처우에 대해서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고려인들조차 불만을 가졌다.¹⁸ 고려인은 대부분 교원 또는 국가기관의 고위 관료나 기술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교원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현지인들에 비해서는 나았다고 볼 수 있다. 1954년 12월 현재 미숙련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이 800~900원, 숙련 노동자가 1,200~1,300원인 데 비해, 고무신 1족이 400~450원, 면포 1m가 380~400원에 달하던 시장 물가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¹⁹

고려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현지인들에 비해서는 양호했지만,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상황은 달랐다. 195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던 리환영은 자신이 한 달에 3,500원을 받지만 8명의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소련 교과서를 번역하는 부업을 병행해야만 했다.²⁰ 마찬가지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반응설은 1956년 11월부터 4,300~4,500원으로 인상된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도 생활이 어렵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키예프에서 대학생 장학금을 받고 살 때가 북한에서 교원 임금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았다고 말했다. 종합대학으로 버스 통근

16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л.97-98.

17 АВПРФ, ф.0102, оп.10, п.52, л.8, л.81.

18 АВПРФ, ф.0102,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декабрь 1954 г.), л.16.

19 АВПРФ, ф.0102, Справка о положении КНДР(1954, 12. 18), л.300.

20 АВПРФ, ф.0102, оп.17, п.26, л.5, л.8.

하는 데만 매달 400~500원(원도 10원)을 지출하기 때문이었다.²¹

리환영의 경우처럼 가족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려인이 느끼는 생활수준의 불만족은 소련에서 생활할 때와의 격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고려인은 소련에 있을 때 생활수준이 더 나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대적 불만족 외에 고려인들의 경제적 곤란을 야기한 원인은 원:루블 환율 문제였다. 1953년 12월 소련과 북한은 원:루블 환율을 4:1에서 30:1로 개정하는 데 합의하였다.²² 루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8 가까이 떨어진 것인데, 소련에 가족을 둔 고려인들이 이 환율 개정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북한에서 받은 임금 일부를 소련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원화 가치 폭락으로 송금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많은 고려인들이 소련의 가족에게 보내는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²³ 앞서 언급한 고려인이 임금 외에 받은 추가적 보조금은 아마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56년 11월부터는 정부 결정에 의해 소련 공민인 고려인에 대해 매월 임금 외 보조금 7,000원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직위에 관계없이 부상급에 해당하는 1급의 공급량이 할당되었다. 소련 공민 고려인에 대한 이와 같은 특혜는 현지인은 물론, 북한 국적으로 전환한 고려인들의 불만을 샀다.²⁴

현지인과 고려인에 대한 경제적 처우의 차이가 확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위화감을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교육 문제였다. 파북 고려인의 자녀는 대부분 조선어를 몰랐기 때문에 소련 외무성이 평양에 설립

21 АВПРФ, ф.0102, оп.16, п.24, д.6, л.60.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임시대리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3. 6. 2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이하 『사료집』) 73, 34쪽; АВПРФ, ф.0102, оп.10, п.52, д.8, лл.37-92.

23 АВПРФ, ф.0102, оп.10, п.52, д.8, лл.89-91; АВПРФ, ф.0102, оп.15, п.22, д.5, лл.17-19.

24 АВПРФ, ф.0102, оп.17, п.26, д.5, лл.28-29.

한 소련학교에서 러시아어로 교육받았다. 또 이 학교에 근무하는 고려인 교원은 조선학교 교원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고, 고려인 자녀가 거주하는 기숙사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였다.²⁵ 자녀를 일반 조선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있던 현지인들은 이를 특혜라고 여겼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54년 6월 정치위원회에서는 신학년도부터 고려인 자녀를 일반 조선학교에 입학시키고, 소련학교 일부 과목의 교육을 러시아어에서 조선어로 바꾸도록 결정하였다.²⁶ 상급학년이 졸업하면 소련학교는 폐쇄될 예정이었다.²⁷

그러자 이번에는 고려인들이 반발하였다. 고려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소련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조선학교에 보낸다면 소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서 ‘망가지게’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²⁸ 고려인의 자녀를 일반 조선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인민경제대학 학장 유성훈은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외무성 참사 전동혁은 자식과 처를 소련의 친척에게 보내버렸다.²⁹ 이렇듯 고려인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북한 당국은 양자 사이의 불만을 절충하여 소련학교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1956년 1월 이바노프가 소련학교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김일성은 학교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며, 저학년은 러시아어와 조선어를 함께 배우고, 상급학년은 러시아어로 배울 것이라고 대답했다.³⁰

학교 문제를 둘러싼 고려인과 현지인 사이의 갈등은 이들 사이의 중요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현지인들은 대체로 고려인이 소련 공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25 АВПРФ, ф.0102, оп.10, п.52, д.9, лл.55-56.

26 АВПРФ, ф.0102, оп.10, п.52, д.9, лл.55-56; АВПРФ, ф.0102, оп.10, п.52, д.9, лл.60-61.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의 일지(1955. 2. 5)』, 『사료집』 73, 212쪽.

28 위의 일지, 212~213쪽.

29 АВПРФ, ф.0102, оп.13, п.72, д.6, лл.330-334.

30 РГАНИ, ф.5, оп.28, д.412, л.112.

들이 조선어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소련에서 파견된 소련 공민이지만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며, 그러므로 북한에 온 이상 조선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고려인의 자녀들까지 조선어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들이 장차 북한에 정착하여 자신들과 동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따라서 현지인들의 이와 같은 생각은 고려인이 북한 국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고려인은 대체로 자신들이 언젠가는 소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일부는 국적을 전환하고 북한에 남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들조차도 자신의 자녀는 소련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녀들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까지 자녀를 소련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소련 대학으로 유학 보낸 것은 그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조선은 자신의 부모가 태어난 곳이지만, 자신은 그곳에 “사회주의 건설의 국제주의적 임무”를 띠고 파견된 것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조국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국적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후 반소련계 캠페인을 추동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소련계에 대한 국적 문제 제기와 반소련계 운동

전 소련 25군 군사회의 위원 레베제프를 인터뷰한 김국후에 따르면, 파북 고려인의 북한 국적으로의 전환은 1946년 7월에 처음 있었다고 한다. 소련 측의 기획에 따라 허가이 등 9명이 소련 공민증을 반납하고 북한 공민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뢰하기는 어렵다.³¹ 이때 소련 국적을 포기했다고 한 9명 중 8명이 1950년 2월 북한 외무성이 소련에 보낸 국적 전환 요청 대상자 명단에 다시 등

31 김국후, 2013, 앞의 책, 110~111쪽.

장하기 때문이다.³² 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측에 의한 고려인의 국적 전환 요청은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2월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북한 외무성은 고려인 174명을 국적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 방학세·최종학·허가이·박창옥·박의완·남일 등 소련계 최고 위 간부를 대부분 포함하였다. 1950년 초 개전 방침이 현실화함에 따라, 전후 통일정부 수립에 대비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측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 문제를 제기한 외교문서에서 언급된 이들 중 상당수가 전후에도 북한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³³ 아마도 동의한 자에 한해서 국적을 전환하였을 것이다. 특히 전쟁 기간 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김재욱(총정치국장)·정률(병기조달국 차장)·장철(후방 부사령관)·리동화(군외국장)조차 국적을 전환하지 않은 사실은 고려인들이 대체로 북한 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³⁴

북한 측의 두 번째 국적 문제 제기는 확실치는 않지만 1951년 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5년 중앙당학교 부교장으로 일하던 박태섭은 1951년에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소련 공민권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민권 포기 신청서를 끝내 작성하지 않았다.³⁵ 이때도 개별적 동

32 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허가이·박창식·김영수·김열·한일무·김재욱·장철·리히준. 「1950년 2월 23일 북조선 외무성에서 조선 주재 소련 대사관에 보낸 외교문서」(박종호 편역,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I』, 선인, 447~453쪽).

33 다음 자료를 통해 박태화·유성훈·박영빈·박의완·김재욱·장철·박길룡·리동화·황발렌진·박병섭·정률·리철준 등이 전후에도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 외무성이 요청한 국적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다. АВПРФ, ф.0102, оп.15, п.22, д.5, л.8; АВПРФ, ф.0102, оп.15, п.22, д.5, лл.17-19;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д.5, л.33; АВПРФ, ф.0102, оп.17, п.26, д.5, лл.28-29; РГАНИ, ф.5, о.п.28, д.412, лл.63-65.

34 서동만, 2005, 앞의 책, 398쪽; 장학봉 외,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255·556쪽.

35 АВПРФ, ф.0102, оп.15, п.22, д.5, лл.6-7.

의 절차를 거쳐 1952년 3월에는 소련 공민 고려인과 그 가족 151명이 북한 국적으로 전환하였다.³⁶ 가족을 포함한 인원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국적 전환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인의 국적을 전환시켜야 할 북한 측의 필요가 크지 않았고, 무엇보다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비대칭적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인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소련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었다.

1955년 8월 22일 김일성은 8·15해방 경축 사절로 방문한 소련 대표단과 회견하면서 고려인들의 국적 전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이전에 두 차례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1951년 이후 4년이나 지나서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그때와는 다른 새로운 동기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김일성은 고려인들이 소련 공민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이 일정한 불편을 낳는다고 말했다. 남한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경우, 통일된 나라의 의회에 소련 공민을 선출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³⁷ 당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유례없는 평화통일 공세를 전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현실성 없는 주장은 아니었다.³⁸ 하지만 이번 요청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연구가 지적한 것처럼 고려인을 북한 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둠으로써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데 있었다.³⁹

이와 관련하여 1955년 상반기 북·소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일련의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5년 4~5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과 뒤

36 1952년 3월 31일 전연방공산당(불세비키)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 「조선 민족 출신 소련 공민들의 소련 공민권 포기 수속을 허가하는 데 대하여」[안드레이 란코프 편, 전현수 역, 2014,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소련 공산당 정치국 결정서(1945~1952)』, 경북대학교출판부, 222~223쪽].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5. 8. 22)」, 『사료집』 73, 281쪽.

38 이신철에 따르면 1954년과 1955년은 북한이 민주기치론에 입각한 가장 격렬한 평화통일 공세를 전개한 시기이다. 이신철, 2008,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1948~1961, 월북·납북인들과 통일운동』, 역사비평사, 333~348쪽.

39 윤경섭, 2007, 앞의 논문, 142~143쪽.

이은 6월 북한 주재 소련 대사의 교체가 그것이다. 1954년까지만 해도 소련은 북한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공업과 급속한 농업협동화에 무게 중심이 실린 경제정책의 실패가 가시화하면서 1955년부터 소련은 북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도하였다.⁴⁰ 이에 따라 소련 지도부는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지난한 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일성은 6월 16~20일에 개최된 당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방소 결과를 설명하며 소련 측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소련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던 공업화 강행 노선과 사기업 불인정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지 않았다.⁴¹ 소련과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으며, 끝내는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소련은 북한 대사 수즈달레프를 이바노프로 교체하였다. 수즈달레프의 교체는 그가 북한 내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 지나치게 동조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컸다. 반면 신임 이바노프 대사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부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헝가리 대사에게 북한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을 넣자고 제안할 정도로 그의 개입주의적 입장은 분명했다.⁴² 다시 말해 소련 대사의 교체는 소련의 대북정책이 관망에서 개입으로 선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련 대사 교체의 정황은 김일성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40 백준기, 1998, 앞의 논문, 457~465쪽.

41 윤경섭, 2007, 앞의 논문, 110~122쪽.

42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August 17, 1955,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OL, XIX-J-1-j Korea, 10. doboz, 24/b, 008020/1955(<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397>); Balázs Szalontai, 2006,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p.72.

같다. 북한 경제위기에 따른 소련의 개입을, 김일성은 소련의 패권 대 경제 자주
의 문제로 받아들였다.⁴³ 특히 이번 개입은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집단지도체제
와 당내 민주주의 요구 등 권력구조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
서 그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이 두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은 소
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을 것이다. 탈소련
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보다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과 처분권
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고려인에 대한 국적 전환은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
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1955년 8월 22일 소련 대사를 통해 고려인의 국적 전환을 공식적
으로 요청한 데 이어, 9월 초에는 이를 흐루쇼프에게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하였
다. 동시에 남로당과 숙청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제휴관계에 있던 소련계에 대한
압박과 감시도 시작되었다. 9월 초 박영빈은 이바노프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예전에는 소련 대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소원해졌다고 말
했다.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자신이 북한 내정을 소련 대사관에 상세하게 알린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⁴⁴ 이미 당 내에서는 고려인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확산되고 있었다. 9월 23일 내무성 사회안전국 부국장 최우현은 소련 대사관
영사부장 세레진에게 북한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외국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⁴⁵ 고려인을 다른 외국인과 별도로 구분하여 등록·관리하겠다는
뜻이었다. 10월 17일에는 남일이 이바노프에게 사증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찾
아오는 고려인을 외무상인 자신이나 부상 리동건에게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
다. 일부 고려인들이 소련을 방문하여 북한 내부의 사상적 동요를 초래할 수 있

43 James Person, 2006,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52*(August), Washingto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p.14.

44 ABПPФ, ф.0102, оп.10, п.6, л.7, лл.85-88.

45 ABПPФ, ф.0102, оп.15, п.22, л.5, л.3.

는 자료를 들여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⁴⁶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고려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 권력집단 내부에서 현지인과 소련계 사이의 반목도 깊어졌다. 10월 어느 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애는 부수상 박의원을 불러 고려인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만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고려인들이 소련학교에서 자녀를 공부시키면서 조선학교에는 보내려고 하지 않으며,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소련 대학에 보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고려인 부인들 또한 도시를 문화적으로 가꾸는 사회적 사업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정애는 고려인이 자신을 일시적인 일꾼으로 생각하고, 한쪽 발은 소련에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만, 고려인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현지인이 고려인에게 반감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였다.⁴⁷

이러한 생각은 단지 박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반소련계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인 1956년 3월, 박창옥은 1953년과 1954년에 이미 몇몇 간부들이 소련계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신들의 해임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회고하였다. 박창옥은 그러한 인물로 최용건·최창익·정일룡을 지목하였다.⁴⁸ 박영빈 또한 자신이 최용건과 반목하고 있으며, 최창익·정일룡 등은 고려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⁴⁹ 그런데 예전부터 소련계와 반목해왔던 최창익을 제외한 최용건과 정일룡은 김일성의 직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들과 소련계의 반목은 김일성의 의도와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김일성은 이들의 고려인에 대한 반감을 반복해서 소련계 인사들에게 전달

46 АВПРФ, ф.0102, оп.10, п.6, л.7, л.125.

47 АВПРФ, ф.0102, оп.10, п.6, л.7, лл.133 - 135.

48 РГАНИ, ф.5, оп.28, л.410, л.75.

49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л.76 - 81.

함으로써 상호 간의 불신이 깊어지는 데 기여하였다.⁵⁰

그런 와중에 11월 29일에는 북한 측의 국적 전환 문제 제기에 대한 소련 측의 반응이 나왔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북한 국적을 가진 소련 공민 고려인들의 소련 국적 포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일견 북한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소련 국적을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이는 다시 말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⁵¹ 즉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고려인들은 계속해서 소련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결정에 대해 김일성은 크게 실망했겠지만, 일단 고려인들의 국적 문제를 해결해준 데 대해 소련 정부에 사의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고려인은 북한 공민권 하나만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가로 복무하는 고려인은 소련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자신의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나 소련공산당의 결정에 반발할 수 없는 이상 이 정령을 근거로 고려인들의 국적 전환을 중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2월 5일 김일성은 내각의 상과 부상 및 각 도 인민위원장과 당 위원장이 참석하는 고려인의 국적 문제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술한 소비에트 상임위원회의 정령에 의거하여 고려인의 국적 전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는 통일에 대비해 국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예전의 논지를 반복했다. 그리고 고려인의 국적 전환은 이들을 임시 인력으로 여기고 있는 현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⁵² 다음 날 남일은 이바노프를 찾아가 이 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해 논의했고, 24일 진행된 대담에서는 국적 전환의 대상이 되는 고려인들과 소련 대사관의 면담을 조직하기로 하였다.⁵³

50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81.

51 АВПРФ, ф.0102, оп.10, п.6, л.7, лл.171-172.

52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4.

53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4;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л.5, л.9.

이처럼 소련 정부의 결정에 따른 국적 전환 사업은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듯 했지만 소련 측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은 불투명했다. 따라서 김일성은 국적 전환 사업과 동시에 소련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 본격적인 소련계 비판과 대중적인 반소련계 캠페인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1955년 12월 2~3일까지 이틀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농업 문제와 함께 연안계 박일우와 소련계 김열에 대한 비판 및 처벌이 회의의 주된 의제였지만, 회의 결론에서 김일성의 비판은 대부분 소련계를 향했다. 특히 당 선전선동부장 박영빈과 국가계획위원장 박창옥이 비판의 표적이 되었고, 문학·예술 분야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석복·정률·송진파·전동혁·정국록 등에 대한 비판도 처음 등장했다. 김일성은 당 조직지도부장 시절 박영빈이 김열의 비리를 은폐한 혐의가 있으며, 중앙위원회 내에 가족주의를 조장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박창옥에 대해서도 국가계획위원장이 된 이후 권위적으로 행동하였으며, 관료주의와 가족주의의 과오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석복과 정률 등에 대해서는 북한 문학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한설야와 리기영 같은 ‘혁명적 작가’들을 공격하고, 리태준과 림화 같은 남쪽 출신의 ‘반동적 작가’들을 옹호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특히 기석복 등과 대립하는 한설야를 ‘반소적 행위’라고 공격하였다면서 박영빈을 재차 비판하였다.⁵⁴

이처럼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비판은 당내 소련계 전반을 겨냥하였다. 그는 박영빈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며, 박창옥·기석복·정률 등을 함께 공격하였다. 특히 기석복·정률 등의 문학·예술 분야 사업에 대한 언급은 이후 이어질 이 분야에서 소련계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의 서곡이었다. 또한 박영빈은 당시 입원 중이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계없이 비판이 진행되었고, 당 선전선동부장에서 해임되었다.⁵⁵ 직접 비판의 대상은

54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л.6-20.

55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7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문제에 대하

되지 않았던 박의완과 김승화도 소련계가 표적이 된 회의 자리가 매우 불편했다고 언급하였다.⁵⁶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비판이 대대적인 반소련계 캠페인으로 확산될 조짐은 이미 회의 직후부터 나타났다. 회의가 끝난 후 김일성은 박창옥에게 “당신은 이미 비판을 충분히 받았으니, 조용히 사업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박창옥은 김일성의 전원회의 결론이 평양시 당위원회에 의해 모든 기초 조직에 배포되었고, 각급 당 회의에서 논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⁵⁷ 이는 소련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중앙위원회를 넘어 당 전체로 확산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김일성은 이때부터 이미 박창옥·박영빈 등을 종파주의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12월 전원회의 결과에 관한 대화에서 이바노프가 이들이 그룹을 조직하거나 반당행위에 연루되었는지 묻자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반당그룹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 일꾼 사이에서 가족주의가 퍼졌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족주의는 종파주의로 귀결된다.”⁵⁸ 김일성은 이미 ‘반종파투쟁’에 준하는 수준으로 반소련계 캠페인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다. ‘종파’와 ‘반당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당의 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소련계로서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할 수 없음 또한 분명했다. 따라서 사태가 적당히 봉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다.

12월 20일, 남일은 이바노프에게 소련계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석복·정률·전동혁이 모여서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에 박창옥도 연루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여: 12월 전원회의 결정서 1955년 12월 2~3일, 『사료집』 30, 670쪽.

56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л.3-4.

57 РГАНИ, ф.5, оп.28, л.410, лл.73-85.

58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18.

아마도 정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⁵⁹ 이때부터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박창옥·기석복 등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들을 확실히 제압해야 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1955년 12월 27~28일 이틀 동안, 김일성의 유명한 ‘주체’ 연설이 있었던 당 상무위원회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전적으로 문학·예술 부문 사업에서의 소련계 비판을 위해 열린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주도 하에 박창옥·기석복·전동혁, 그리고 정철은 자아비판 연설을 하였다. 이들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창옥은 약 100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들의 자아비판이 있은 뒤 안막과 림해, 한설야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먼저 안막은 박창옥 등이 조선작가 동맹에 부르주아 작가인 리태준 등을 끌어들이었으며, 프롤레타리아 작가인 한설야와 리기영을 공격하고 압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이들은 한설야의 작품을 러시아어 번역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러시아어로 출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⁶⁰ 한설야는 박창옥이 나라의 1인자 또는 2인자가 되기 위해 주변의 고려인을 규합하였으며, 박영빈과 함께 자신을 ‘수령 김일성’의 역할로 위치 짓고자 기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김일성은 12월 전원회의에서의 비판을 한층 가혹한 어조로 반복했다. 특히 그는 고려인 간부 15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이 허가이의 추종자라고 비난하였다.⁶¹

12월 전원회의에서의 소련계 비판이 당 주류의 선전포고였다면, 12월 확대 상무위원회는 전면전으로의 확대라고 할 수 있었다.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이들을 ‘반당행위자’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대상무위원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반당행위’로까지 끌어올렸다.

59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94.

60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л.102-103.

61 РГАНИ, ф.5, оп.28, л.410, лл.78-79.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당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탐욕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 그 후에는 오류를 범하고 출세적인 충동에서 자기 과오를 씻지 못하고 문학에서 반당적 노선으로 나가게 되었다.⁶²

계속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였다.

박창옥은 박헌영 분자들과의 투쟁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를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남겨두되 정치위원회에서는 내보내며, 내각 부수상 직책을 유지하게 하고,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며, 기석복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내보내고, 이 사건의 다른 참가자들은 당 검열위원회에 회부한다.⁶³

남일에 따르면 박창옥은 당 앞에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고, 과오를 시정하도록 공장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윤경섭의 지적대로 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⁶⁴ 김일성이 결론에서 제안한 조치는 결정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김일성이 제안한 조치가 20일 뒤인 1956년 1월 17~18일에 열린 제11차 상무위원회 결정서에서 그대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⁶⁵ 아마도 소련계를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발에 부딪힌 끝에 결정을 채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창옥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것이다. 후일 북한의 공식 문헌에서 이 회의에 대해 ‘확대상무위원회’라는 원래 명칭을 쓰지 않고, ‘당 선전선동부문 책임일꾼회의’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⁶⁶

62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103-104.

63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104.

64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104; 윤경섭, 2007, 앞의 논문, 161쪽.

65 「문학·예술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상무위원회 결정 1956년 1월 18일)」, 『사료집』 30, 827쪽.

66 12월 확대상무위원회는 지도부 내의 갈등으로 인해 결정을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확대상무위원회에서 소련계에 대한 비판과 처벌이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비롯한 당 주류는 타협을 통해 사태를 무마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들을 ‘반당행위자’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김일성의 연설은 또 다시 당내 모든 기초 조직에 배포되었고, 회의에서 낭독되었다. 12월 전원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모든 당 조직에서 고려인들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다.⁶⁷

1956년 1월 17~18일 같은 의제로 상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소련계에 가해진 비판의 내용은 한층 강도를 더했다. 상무위원회에서는 박창옥 등의 ‘오류’에 대해 “사업작풍상 문제이거나 혹은 몰라서 범한 ‘실수’인 것이 아니라 부르쥬아 사상에서 나온 개인영웅주의·출세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의식적으로 범한 사상적 오류”이며 “가족주의적 또는 종파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⁶⁸ 12월 확대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반당행위’ 규정과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몰라서 범한 실수’가 아닌 ‘의식적으로 범한 오류’라고 규정하여 타협이나 절충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2월 확대상무위원회가 소련계의 저항에 부딪힌 것과는 달리, 이날 회의는

회의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고, 『1955년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정치·상무위원회 결정집』에서도 결정서를 발견할 수 없다. 반면 당시 소련 대사 일지, 대사관 참사 필라토프와 박영빈·박창옥 등의 대화록은 1955년 12월 27~28일간 내각의 상과 부상, 문예 부문 간부를 포함하여 4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상무위원회가 개최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에 출판된 김일성의 연설 또한 소련 자료에서 인용한 그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박창옥·박영빈 등의 문예선진분야 사업 비판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확대상무위원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선전선동 부문 간부를 따로 소집하여 연설하였을 것이라는 백학순의 추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서동만은 소련 측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북한 출판물의 설명을 받아들여 당시 회의를 ‘당 선전선동부문 책임일꾼회의’로 서술하였다. 김일성, 1969, 『사상사업에 있어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백학순, 2010, 앞의 책, 277쪽; 서동만, 2005, 앞의 책, 524쪽.

67 РГАНИ, ф.5, оп.28, л.410, лл.79-80.

68 「문학·예술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쥬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사료집』 30, 826쪽

별다른 충돌 없이 김일성의 제안대로 결정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와병으로 인해 12월 전원회의와 확대상무위원회에 불참했던 박영빈이 처음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는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⁶⁹ 또 이미 1월 4일 국가계획 위원장직에서도 해임된 박창옥은 처음에는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계속된 토론 끝에 결국은 체념하고 자신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해줄 것을 요구했다.⁷⁰ 이들이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결과, 앞서 김일성이 제안했던 조치가 결정되었다. 이미 부수상과 중앙위원을 제외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박창옥 외에도, 박영빈이 정치위원 및 중앙위원에서, 기석복은 중앙위원에서 제명되었다.⁷¹ 12월 전원회의에서 시작된 대대적인 반소련계 캠페인의 결과, 북한 지도집단의 가장 핵심인 정치위원회에서 소련계는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1956년 2월 이후 김일성은 박창옥에게 모든 것을 잊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며 안심시키고, 이 문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중앙위원회에 전달했다.⁷² 그러나 그 이후로도 문학·예술사업과 관련한 소련계에 대한 비판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로동신문』에는 2월부터 3월 초까지 이와 관련한 사실과 논설이 주기적으로 게재되었다. 3월 19일과 21일자 『로동신문』에 기석복과 정렬이 공개 자아비판문을 게재한 후에야 반소련계 캠페인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⁷³ 1956년 2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의 개인숭배 비판이 반소련계 캠페인의 중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55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시작하여 거의 4달간 계속된 대대적인 반소련계 캠페인의 결과, 소련계가 정치적으로 몰락함은 물론 고려인은 심리적으로

69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77.

70 『로동신문』 1956. 1. 4; РГАНИ, ф.5, оп.28, л.410, л.80.

71 「문학·예술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쥬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사료집』 30, 827쪽.

72 РГАНИ, ф.5, оп.28, л.410, л.81.

73 기석복, 「로동신문 편집국 앞」, 『로동신문』, 1956. 3. 19; 정렬, 「로동신문 편집위원회 앞」, 『로동신문』, 1956. 3. 21.

매우 위축되었다. 1955년 말 반소련계 캠페인이 진행될 당시 정률은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을 떠올렸다고 증언했다.⁷⁴ 12월부터 진행된 고려인들의 국적 전환 사업 과정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불신이 나타났고, 사업에서 무시당하며, 당 회의에서 일상적으로 검토된다며 불안감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반소련계 캠페인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느끼고 있었다.⁷⁵ 이에 대한 불안감은 국적 전환에 대한 고려인의 소극적 대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1955년 기간 동안 300여 명의 고려인 중 67명이 북한 국적을, 24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하였다.⁷⁶ 반소련계 캠페인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이후인 1956년 4월 10일, 이바노프는 남일에게 국적 전환과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한 자가 123명이고, 그 중 소련 국적 탈퇴를 신청한 자가 96명, 이중국적을 희망한 자는 27명이라고 언급하였다.⁷⁷ 재북 고려인 중 반수 이상이 면담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적 탈퇴에 동의한 자는 1/3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고려인의 국적 전환을 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반소련계 캠페인의 와중에서 대다수는 소련 국적 포기를 주저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당시 고려인 중 가장 고위직에 있던 박의완과 김승화조차 4월 10일까지 소련 국적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3차 당대회를 앞둔 시기 자신들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국적 탈퇴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다.⁷⁸

74 김국후, 2013, 앞의 책, 180쪽.

75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111.

76 РГАНИ, ф.5, оп.28, л.314, л.278.

77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л.5, лл.54-55.

78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л.5, лл.56-59;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220.

IV. 8월전원회의사건 이후 소련계의 소멸과 국적 문제의 해결

문예·선전사업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소련계 캠페인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고려인의 국적 문제를 둘러싼 당 주류의 압박은 1956년 4월에 열린 3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3차 당대회 중앙위원 후보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한 회의에서 김일성은 김재욱·장철·리동화를 지목하며 이들은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용건 또한 이들을 “두 개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지목하며 축출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2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선출되었던 이들은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3차 당대회에서는 탈락했다. 또 김승화에 따르면 당내 대남사업을 담당하던 리동화가 해임됨으로써 당 중앙위원회 기구에는 고려인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⁷⁹

김재욱 등 3명이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3차 당대회 중앙위원에서 탈락한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적 전환 사업이 중앙당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급의 고위 간부조차 국적 전환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3차 당대회 직전 압박을 못 이기고 소련 국적 탈퇴 신청서를 작성한 박의완과 김승화가, 당대회 이후 이바노프에게 신청서를 이미 모스크바로 보냈는지 문의하며 탄식하는 모습은 이들의 소련 국적 보

79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л.219-229 자료에 리(Ли)로 등장하는 인물은 당시 인민군 군의국장으로서 근무하던 리동화로 추정된다. 리 성을 가진 고려인 중 리희준과 함께 2차 당대회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리동화는 3차 당대회에서는 나란히 탈락하였다. 그중 당시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이는 리동화이다. 장학봉의 회고에 따르면 리동화는 1948년 시기까지 당 조직부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8년 당 조직부장은 허기이었다. 기존 연구는 리동화가 1946년 8월 이전까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부장 내지는 간부부장을 역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학봉 외, 2006, 앞의 책, 255쪽; 서동만, 2005, 앞의 책, 182·219쪽;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169쪽.

유에 대한 절박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⁸⁰ 3차 당대회 참가를 위해 귀국한 동독 대사 박길룡 또한 자신은 소련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며, 대회 기간 동안 많은 고려인들이 국적 포기를 후회했다고 전하였다.⁸¹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적 탈퇴를 신청한 자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다수는 신청서 작성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것은 3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소련계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차 당대회에서 쇠퇴가 가장 두드러진 계파는 소련계였다. 1948년 2차 당대회에서 67명 중 16명의 중앙위원을 배출한 소련계는 3차 당대회에서는 71명 중 8명이 포함되는 데 그쳤다.⁸²

정치적 입지의 약화보다 이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소련계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억압이 강화되는 분위기였다. 소련계 간부의 소련 측에 대한 접촉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3차 당대회 기간 동안 박의완·박창옥 등은 소련공산당 대표로 참석한 브레즈네프를 만나 국내 상황과 고려인의 처지에 관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주변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⁸³

당대회 이후 김일성은 아예 공식적으로 당·내각 간부들과 외국인의 접촉을 통제한다고 지시하였다. 일부 간부가 외국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이었다. 이후부터 외국인과의 접촉은 외무성 및 대외무역성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당과 내각에서 소련 측과의 연락을 담당하던 박정애와 박창옥의 역할은 박금철과 정준택으로 각각 대체되었다.⁸⁴ 이 조

80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220.

81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л.222 - 224.

82 3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소련계 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창옥·박의완·남일·방학세·김승화·최종학·한일무·허빈. 『로동신문』, 1956. 4. 30; 서동만, 2005, 앞의 책, 217쪽.

83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л.4, лл.27 - 32.

84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л.225 - 229.

치가 소련계를 향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박의완은 이것이 고려인을 외부와 고립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⁸⁵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여파와 관련하여 당 주류 세력은 간부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특히 소련계에 대해서는 압박과 배제라는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3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소련계 간부들이 주요 직위에서 배제되고 이들에 대한 억압과 감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자, 고려인들의 불안감은 점차 불만으로 확대되어갔다. 이때부터 일부 고려인들은 소련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하였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탈락한 김재욱, 장철 외에도, 황 발렌진, 임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전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미가이 등이 국적 전환을 거부하고 소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요청을 소련 대사관에 전달하였다. 임 알렉세이 이바노비치와 전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경우, 1955년 북한의 기술인력 파견 요청에 의해 북한에 왔지만, 고려인에 대한 불신을 견디지 못하고 약 1년 만에 귀국을 요청했다. 북한 국적 취득을 거부한 그들에게 조선로동당은 입당도 허용하지 않았고, 각종 회의에서도 배제시키며, 심지어는 이동증조차 발급해주지 않았다.⁸⁶ 특히 장철의 경우, 1948년 고려인에 대한 귀국 의향 조사 시 적극적인 찬류 의사를 표시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간 고려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심경에 미친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⁸⁷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고려인들이 소련으로의 귀환을 원하게 만든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지적한 국적 전환 압력이고, 다른 하나는 날로 심해지는 반소련계 정서였다. 이는 고려인 스스로 가진 피해의식이 아니라, 북한 간부사회에 실재하는 정서임이 분명했다. 교통상 김희일은 당시 국가건설위원장 겸 부수상인 박의완에게 사업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85 РГАНИ, ф.5, оп.28, л.412, л.228.

86 АВВРФ, ф.0102, оп.12, п.68, л.5, лл.85-96.

87 우동현, 2016,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60~61쪽.

1956년 초 반소련계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그와의 접촉을 기피했다. 나중에 그는 박의완에게 자신이 고려인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판을 당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고려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홍명희 또한 간부들이 갖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 이들이 북한을 떠나고 있다며 우려하였다.⁸⁸

3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강화된 반소련계 기류에 대한 고려인 간부들의 반응은 크게 셋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부류는 박창옥·김승화 등으로 당 주류의 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던 인사들이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적대하던 연안계와 제휴하여 반김일성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8월전원회의사건으로 폭발하였다.⁸⁹ 두 번째는 박의완·박길룡을 비롯한 대다수의 고려인 간부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당 주류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반김일성운동 가담에는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반김일성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1957년 12월 국적문제가 정리되자 이들은 대부분 소련으로의 귀국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부류는 남일과 방학세 등으로 이들은 소련계와 김일성의 분열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이들은 8월전원회의사건 이후에도 숙청되거나 귀국하지 않고 권력 중심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8월전원회의사건은 전후 상이한 사상과 정체성을 갖고 있던 계파들 간의 대회전이었다.⁹⁰ 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대체로 연안계와 소련계가 중심이 된 ‘반김일성연합’과 김일성 지지자들의 충돌로 이해하였다.⁹¹ 반면 윤경섭의 경우, 반김일성운동의 중심 세력은 연안계이며, 소련계는 대체로 김일성의 정책에 대

88 ABPPΦ, φ.0102, on.12, n.68, n.5, n.n.86-87.

89 최창익, 박창옥 등을 중심으로 한 반김일성운동의 전개 과정과 8월전원회의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윤경섭, 2007, 앞의 논문 참조.

90 백학순, 2010, 앞의 책, 489쪽.

91 Anderi Lankov, 2005, *Crisis in North Korea*, p.221; Balázs Szalontai, 2006,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pp.94~103; James Person, 2006, “We Need Help from Outside”; 백학순, 2010, 앞의 책, 488~489쪽.

한 비판적 입장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박창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참여에 소극적이었다고 본다. 그 원인으로는 소련 대사관이 김일성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것,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한 당 주류의 분리 대응 전략 등을 들고 있다.⁹² 실제로 8월전원회의에서 최창익·윤공흙·서휘·리필규·김강 등 연안계 간부 상당수가 출당 등 중징계를 당한 데 비해, 소련계는 박창옥을 제외하고는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반김일성운동과 8월전원회의사건에 대한 소련계의 조직적인 참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반소련계 캠페인과 3차 당대회를 거치며 소련계가 더 이상 독자적인 계파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가 약화된 점을 원인으로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인에게 이 사건은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반고려인 정서가 악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박창옥·김승화 등 소련계 핵심 인사 일부가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8월 전원회의에서 박창옥은 당적만을 유지한 채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였고, 김승화는 전원회의 불과 이틀 전에 모스크바로 유학 보내졌다.⁹³ 전원회의 직후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이 시작되었고, 운전수와 부관들이 소환되어 그들 상관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심문을 받았다. 이 시점이 되자 당시 소련계 중 최고위직에 있던 박의완조차 소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향을 소련 대사관에 전달하였다. 그는 당내에는 상호 불신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으며, 이 때문에 자신은 북한에서 일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차 당대회 직전에 국적을 전환하였지만, 소련으로 돌아가게 되면 소련 국적과 소련공산당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⁹⁴ 8월전원회의 직전 그는 김일성·박정애·김일·남일·방학세 등에게서 “더러운 사업에 말려 들지 말 것”을 요구하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92 윤경섭, 2007, 앞의 논문, 186~232쪽.

93 РГАНИ, ф.5, оп.28, л.410, лл.318. 박창옥은 9월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직만 회복하였다.

94 РГАНИ, ф.5, оп.28, л.410, л.332.

상태였을 것이다.⁹⁵

1956년 말부터 당내 숙청은 8월전원회의사건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넘어 전 당 수준에서 ‘반당종파분자’를 색출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이른바 ‘반종파투쟁’이었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중교환사업과 초급당단체의 결산선거를 통한 기층 간부들에 대한 단속, 그리고 평양시당 등 일부 기관들에 대한 중앙당 집중지도라는 세 가지 수단이 동시에 동원되었다.⁹⁶ 1956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당중교환사업은 “8월 전원회의에서 폭로된 종파분자들의 정체와 그들의 죄상을 전체 당원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킨다는 목표를 중점에 두고 추진되었다.⁹⁷ 그 과정에서 300여 명이 출당, 6,500명은 당중 발급이 보류되었다.⁹⁸ 중앙당집중지도의 경우, 망명자를 낸 건설성·상업성·건재공업국·직업동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단속이 집중되었다.⁹⁹

‘반종파투쟁’은 1957년 중반 소련에서 발생한 ‘말렌코프·카가노비치·몰로토프 반당그룹’ 사건의 여파로 더욱 격렬해졌다. 조선로동당이 소련공산당의 ‘반당그룹’에 대한 처분을 8월전원회의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¹⁰⁰ ‘반종파투쟁’에 대해 소련이 비판적 입장을 취할 명분이 약해지자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제 당내 숙청은 8월전원회의사건의 주모자를 넘어 그 주변 인물과 관망 내지는 소극적 태도를 취한 인물, 예를 들면 김두봉·박의완·허정숙 등에게까지 확대되어가기 시작했다. 1957년 8월 22일 박의완은 이바노프를 만난 자리에서 당 부위원장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반당 집단으로 거론되는 이들 중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김일

95 РГАНИ, ф.5, оп.28, л.410, лл.318-319.

96 서동만, 2005, 앞의 책, 573~574쪽.

97 김하룡, 「당중 교환 사업 진행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로동신문』, 1956. 12. 19.

98 АВПРФ, ф.0102, оп.13, п.72, л.6, лл.174-176.

99 서동만, 2005, 앞의 책, 573쪽.

100 서동만, 2005, 위의 책, 582쪽.

성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그는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이 분명해지면 소련으로의 귀환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⁰¹ 그는 북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분명했다.

같은 날 이바노프는 남일에게 이중국적자의 국적 문제 조정을 위한 협정 체결 의향을 타진했다. 이바노프는 소련이 다른 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도 같은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앞서 언급한 일련의 정세 변화에 따라 고려인의 국적 문제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소련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었다.¹⁰² 소련 측은 고려인의 국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말렌코프 반당그룹’ 사건과 헝가리사태 등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정에 대한 개입 정책도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내 숙청이 확대되고 자신들에 대한 소련 측의 태도까지 변화하기 시작하자 고려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9월 초 평양인민경제대학 교원 안운경은 8월전원회의사건에 박창옥·김승화가 연루된 사실이 다른 모든 고려인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하였다.¹⁰³ 같은 시기 박의원은 국가건설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자아비판이 요구되고 있으며, 종파주의자에 대한 심리가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자백을 강요받고 자살한 사람을 8명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¹⁰⁴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려인들은 소련으로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장주익은 1957년 한 해 동안 20가구의 고려인이 소련으로 귀국했다고 전했다. 그중에는 정률과 송진파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정률은 북한으로 국적을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신청했다고 한다.¹⁰⁵

101 AVPPΦ, ф.0102, оп.13, п.72, д.5, лл.208 - 212.

102 AVPPΦ, ф.0102, оп.13, п.72, д.5, л.214.

103 AVPPΦ, ф.0102, оп.13, п.72, д.6, лл.267 - 269.

104 AVPPΦ, ф.0102, оп.13, п.72, д.5, лл.246 - 250.

105 AVPPΦ, ф.0102, оп.13, п.72, д.6, лл.330 - 334.

당시 극도로 고조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300가구를 헤아리던 고려인 중 한 해 동안 귀국한 가구 수가 20가구에 불과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부인 윤 엘리나의 증언에 따르면 중앙당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허익은 해임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귀국 청원을 제출하였지만, 소련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거절당했다.¹⁰⁶ 내무성 부상을 역임한 강상호도 귀국을 청원하는 편지를 썼지만 담당자는 접수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귀국을 승인받았지만 출국 전날까지도 귀국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¹⁰⁷ ‘반중파투쟁’ 과정에서 사상검토에 직면한 많은 고려인은 귀국을 원했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상당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유가족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수는 47명에 이른다.¹⁰⁸

‘반중파투쟁’과 고려인에 대한 국적 전환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소 양국 간의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12월 7일 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 대표단의 첫 회의가 열렸고, 단 열흘 만에 정식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¹⁰⁹ 1957년 12월 16일 「이중국적자들의 공민권 문제 조절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은 이중국적자가 어느 한쪽의 공민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 중 북한 국적 선택을 희망하는 자는 1년 이내에 청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¹¹⁰ 이중국적을 보유한 고려인은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측이 1950년 2월 처음으로 제기한 고려인의 국적 문제는 근 8년 만에 법적인 해결을 보게 되

106 김국후, 2013, 앞의 책, 234쪽.

107 김국후, 2013, 위의 책, 265~272쪽.

108 김국후, 2013, 위의 책, 251쪽.

109 АВППФ, ф.0102, оп.13, п.72, л.5, л.354.

1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간의 법률상 방조 제공에 관한 조약, 이중국적자들의 공민권 문제 조절에 관한 협약 및 영사협약 체결에 관한 콤뮈니케」, 『조선중앙연감 1958』, 조선중앙통신사, 86쪽.

었다.

이제 재북 고려인들에게는 소련 공민으로서 ‘국제주의적 임무’를 수행하다 귀국하느냐, 귀화하여 ‘조선민족’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양단 간의 선택이 남았다. 하지만 이들을 대변할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 소련계는 ‘반종파투쟁’ 과정에서 소멸되었다. 박창옥의 실각 이후 소련계의 중심인물이 된 박의완도 1958년 11월에 박창옥과 함께 체포되었다.¹¹¹ 이 같은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민족’을 선택할 고려인은 거의 없었지만, 허익과 강상호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련으로의 귀국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60년 9월 소련 대사관이 작성한 고려인의 현황에 따르면 208명의 고려인이 파견되었고, 그중 108명이 귀국했으며, 90명이 잔류 중이었다. 소련 대사관은 그중 84명이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이들은 기회가 오면 귀국을 원하고 있으며, 소련 측이 이들의 귀국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¹¹² 고려인이 자의로 국적을 전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들 중 47명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으로 귀화하여 정착한 고려인은 많이 잡아도 40명에 못 미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파북 고려인에 대한 국적 전환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반소련계 캠페인의 진행, 그리고 이들이 북한 사회 정착에 실패하고 대부분 소련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전 후 고려인 엘리트들은 북한의 당·정·군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실무 인력 또한 학교와 생산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11 이후 재판을 거쳐 박창옥은 총살되었고, 박의완은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АБИПФ, ф.0102, оп.14, п.75, л.7, л.102; 박종효 편역, 2010, 앞의 책, 180쪽.

112 박종효 편역, 2010, 위의 책, 180쪽.

그러나 이들 고려인과 현지인은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이는 상호 간의 융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특히 고려인이 다른 지역 출신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국적 문제였다. 당·정·군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이 소련 공민이라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소련을 자신의 조국이라 여겼고, ‘당과 소련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선을 돕는 국제주의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에 왔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현지인들은 고려인이 장차 북한에 정착하여 자신들과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가 조선어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고려인과 현지인의 인식 차이는 전후 북한의 정치적 변동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격화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1955년 8월 김일성은 고려인들의 국적 전환 문제를 소련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배경은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소련의 대북정책이 관망에서 개입으로 선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력에서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탈소련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과 처분권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고려인의 국적 전환은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 북한 권력집단 내부에서 현지인과 소련계 사이의 반목도 깊어졌다. 현지인과 고려인 사이의 사회문화적 이질감과 더불어, 특히 소련 국적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고려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어갔다. 또한 북한 측의 국적 전환 요청에 대해 1955년 11월 22일에는 소련 측이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불만은 더욱 깊어졌다. 따라서 김일성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내 주류 세력은 국적 전환 사업과 동시에 소련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12월부터 본격적인 소련계 비판과 대중적인 반소련계 캠페인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전원회의, 12월 확대상무위원회,

1956년 1월 17~18일 상무위원회에서 문학·예술 분야에서 소련계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반소련계 캠페인 또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소련계는 정치적으로 몰락하였지만 고려인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면서, 국적 전환에 더욱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고려인들 중 가장 고위직에 있던 박의완과 김승화조차 1956년 초까지도 소련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8월전원회의사건 이후 전개된 ‘반종파투쟁’의 과정에서 국적을 전환하라는 당의 서슬에도 굴하지 않았다. 고려인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북한 사회에서 소련 공민권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유일한 보증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1957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북한 정부는 소련 정부와 「이중국적자들의 공민권 문제 조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북 고려인의 국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책임 있는 지위에서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하고 싶은 고려인은 북한으로 귀화해야 했다. 그러나 상당수 고려인은 이미 북한을 떠난 뒤였다. 1960년 9월 현재, 북한에 남은 고려인은 90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도 소련으로의 귀국을 원하고 있었다.

결국 고려인과 현지인 간의 근본적인 조국관 차이는 국적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반소련계 캠페인, ‘반종파투쟁’과 같은 격렬한 갈등을 촉발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인이 북한 정착을 택하지 않은 원인은, 그들의 조국관 외에도 북한 당국의 반소련계 캠페인과 이에 의해 현지인 사이에 확산된 반고려인 정서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고려인은 왜 소련을 조국으로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다. 소련이 북한보다 더 대국이고 발전한 나라라거나, 그들이 나고 자란 땅이 소련이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어적·문화적 차이, 외부인에 대한 북한 현지인의 배타적 성향이 고려인의 적응과 정착을 어렵게 만든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고려인이 북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민족애’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주의적 유대’였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자료

- АВПРФ, фонд 0102(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련 외무성 극동과 북한에 대한 보고부 문서군」).
- РГАНИ, фонд 5, опись 28(러시아국립현대사문서보관소,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문서철」).
- 『로동신문』.
- 『조선중앙연감(1958년 판)』, 조선중앙통신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8, 『북한관계사료집』 30,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3, 『북한관계사료집』 73, 국사편찬위원회.
- 김일성, 1969, 『사상사업에 있어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박종효 편역,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I』, 선인.
- 박종효 편역,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II』, 선인.
- 안드레이 란코프 편, 전현수 역, 2014,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정서(1945~1952)』, 경북대학교출판부.
-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Digital Archive(<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저서

-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사』, 한울.
-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 백학순, 2010,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 한울.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 시오토마이 노부오 지음, 이종국 옮김, 2012,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논형.
- 역사문제연구소 편, 1998,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 이신철, 2008,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1948~1961, 월북·납북인들과 통일운동』, 역사비평사.
-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지음, 한홍구 역, 1987,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돌베개.
- 윤경섭, 2007,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와다 하루키 지음, 이종석 옮김, 1992,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비평사.
- Anderi Lankov, 2005,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alázs Szalontai, 2006, *Kim II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Woodrow Wilson Center Press/Stanford University Press.

논문

- 김광수, 2006,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
- 김보미, 2013,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 『아세아 연구』 15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백준기, 1998,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 백준기, 1999,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 변동과 권력 재편」, 『현대북한연구』 2권 2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우동현, 2016,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James Person, 2006,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52*(Augus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Okonogi Masao, 1994, "North Korean Communism: In Search of Its Prototype," ed. by Dea-Sook Suh,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 University of Hawaii Press.

전후 북한에서의 소련계 숙청과 국적 문제(1954~1958)

조수룡

이 글에서는 파북 고려인에 대한 국적 전환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그것이 1955~1958년 시기 반소련계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전 후 파북 고려인과 북한 현지인은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당·정·군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이 소련 공민이라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1950년부터 북한 측에서 국적 전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이들 다수는 국적 전환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소련을 자신의 조국이라 여겼고, '당과 소련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선을 돕는 국제주의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에 왔다고 생각하였다. 고려인이 장차 북한에 정착하여 자신들과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현지인과의 인식 차이는 향후 북한의 정치적 변동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격화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1955년 8월 김일성은 고려인들의 국적 전환 문제를 소련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소련계 비판과 대중적인 반소련계 캠페인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전원회의, 12월 확대상무위원회, 1956년 1월 17~18일 상무위원회에서 문학·예술 분야에서 소련계의 사

업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그 결과 소련계는 정치적으로 몰락하였지만 고려인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면서, 국적 전환에 더욱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1958년에 이르러서야 북한 정부는 소련 정부와 「이중국적자의 공민권 문제 조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북 고려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였지만, 이미 대부분의 고려인은 북한을 떠난 뒤였다.

결국 고려인과 현지인 간의 근본적인 조국관 차이는 국적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후 반소련계 캠페인을 추동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인이 북한 잔류를 택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그들의 조국관 외에도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반소련계 캠페인과, 이에 의해 현지인 사이에 확산된 반고려인 정서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소련계, 고려인, 국적, 공민, 숙청

ABSTRACT

The Purge of the Soviet Fraction and Nationality Problems in Postwar North Korea(1954–1958)

Jo Sooryong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nationality transfer for the Soviet Koreans dispatched to North Korea and the process of the anti-Soviet fraction campaign in 1955–1958.

After the Korean War, Soviet Koreans and local Koreans felt heterogeneity due to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difference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many Soviet Koreans who hold important positions in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Army has Soviet citizenship was the main cause for making negative public opinion about them. Since 1950, North Korea had raised an issue of nationality transfer, but many of them refused it. They generally considered the Soviet Union as their fatherland and thought they had come to North Korea to carry out “an internationalist duty to help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Soviet Party and the government”.

In August 1955, Kim Il Sung officially raised the issue of the

nationality transfer of Soviet Koreans to the Soviet Union. In December, a full-scale anti-Soviet faction campaigns was launched. Kim Il Sung criticized the work of the Soviet faction in the field of literary art at the KWP CC Plenum in December 1955, at the Expanded Presidium in December 1955, and at the Presidium in January 1956.

The political environment intimidated the Soviet Koreans who in turn became more passive in the change of nationality. In 1958,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igned the “Agreement on the Control of Citizenship of Dual Citizens” with the Soviet government and secured full control over the Soviet Koreans in the North Korea, but most Soviet Koreans had already left North Korea.

In conclusion, the essential difference of view of fatherland between the Soviet Koreans and the local Koreans explains tension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nationality problem and the subsequent anti-Soviet faction campaigns. In the process, the reason why the Soviet Koreans did not choose to stay in North Korea should be pointed out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anti-Soviet faction campaign to secure control over them, as well as their anti-Soviet Korean atmosphere among the local Koreans.

Keywords: the Soviet faction, the Soviet Korean, nationality, citizen, purge

대중화주의와 신중화주의

– 개념적 정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장현근 | 용인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신중화주의' 개념의 모호성
- III. 화이지변(華夷之辨)과 대중화주의 비판
- IV. 신중화민족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 V. 맺음말

I. 머리말

강국지로(強國之路)를 선언한 중국이 ‘굴기(崛起)’하면서 경제적 의미의 G2를 넘어 정치적·문화적으로도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제 중국은 경제와 군사 등 수치로 표현되는 하드파워(hard power)보다 글로벌 세계에서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문화적·심리적·도덕적 능력인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대한 기대에도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주위 국가들은 오랜 세월 중국 문화우월주의로 대변되는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에 때로는 순응하고 때로는 불편해 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는데, 급변하는 중국의 위상과 오늘날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문화적 행위를 접하면서 또 다른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화주의 자체는 본질적으로 문화우월주의의 산물이며, 중국 중심 세계관의 압축적 표현이자 불평등 의식의 산물이고, 유가사상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과 오랜 세월 동안 교류하면서 우리나라는 중화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유가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은 조선시대 성리학에서는 불평등한 중화문화우월주의를 답습하면서 이를 소중화주의(또는 조선중화주의)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조선 후기 북학론의 등장으로 기존의 소중화 문화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문화와 중국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탈중화주의의 싹은 내부 문화의 발전을 통한 주체적 전환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탈이라는 외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시작되었다.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에서 서양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다. 정치사회

* 투고: 2017년 2월 13일, 심사 완료: 2017년 5월 17일, 게재 확정: 2017년 5월 19일

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와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해 매진하게 되었다. 지성 내부의 비판과 대안 모색의 과정을 생략한 채 친서양적 관념이 중화주의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장현근, 2011).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탈중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요즘 중국의 굴기는 다시 과거 대중화주의의 음영을 생각나게 한다. 이에 두려움 혹은 우려의 시각으로 중국을 보는 눈이 많아지고 있으며 ‘신중화주의(Neo-Sinocentrism)’ 논의는 그렇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중화주의는 그 자체로 중국 내부의 산물로 볼 때 문명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이 외부에 문화적 강제의 형태로 확산될 때는 대중화주의가 되어 일종의 패권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중국사를 폭넓게 관찰해보면 중앙의 권력이 강할 때는 구심력이 작동하고 중앙의 권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원심력이 작동하여 이른바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전개해왔다. 예를 들면 춘추전국시대와 위진남북조시대 등 대분열시기에는 중원에서 먼 사방에 형성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후방 민족에 대해 전쟁과 화해 등을 수단으로 갈등과 통합을 전개해왔다. 한편 한나라와 당나라 등 대통합시기에는 중원의 중앙정부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 민족들을 제어한 뒤 조공무역 등을 통한 시혜, 혹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문화적 지배를 확장해왔다. 중국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에는 강렬한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을 보이며 주변의 민족들에 대해 내부적 단결을 꾀하고, 통합과 안정의 시대에는 문화우월주의 경향을 보이며 주변의 민족들에 대해 외부적 확장을 꾀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역사는 부단히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이민족을 통합하였다. 주로 남북의 대결사를 통해서였다. 양자 모두 이른바 ‘중화주의’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중국을 맞대면하고 있는 주변 민족은 북으로 몽골과 러시아, 동으로 한국과 일본, 남으로 베트남과 태국,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과거 중원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경쟁했던 많은 나라와 민족들, 예컨대 동으로 거란과 여진, 북으로 흉노와 몽골, 서쪽으로 돌궐과 투루판 등은 이미 중국의 일부가 되어 사라졌거나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

에 대해 우리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동북아시아는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누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한국과 중국이 아무리 같이한다 하더라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한국은 민족의 소멸이라는 우려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려는 신중화주의의 형태로 곳곳에서 중구난방 얘기되고 있으며, 중국에 의심 혹은 두려움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윤희탁의 『신중화주의』(2006)는 중화주의의 여러 모습 가운데 특히 중국의 내부 55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국문화의 일방적 혹은 하향적 수용의 강요, 예컨대 ‘한 가정 만들기’ 혹은 ‘온전한 중국의 영역’ 등을 통해 드러나는 패권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윤희탁 교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하며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이철승(2006), 김희교(2006), 유장근 외(2008) 등의 연구의 기본 입장도 여기서 출발한다.

전통시대의 중화주의에 대한 연구도 약간은 민족주의적 혹은 민족배타주의적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에 대한 막연한 의심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왕원주(2009), 김철운(2012), 우경섭(2012)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화주의의 확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그 외에도 국내외의 중화주의 연구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부분이 이른바 ‘동북공정’처럼 기이한 중국의 논리에 대한 기이한 대응인 경우가 많다. 때로는 중국위협론 또는 중국굴기론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개념이 개입된 경우도 있다.

중국과 지척에서 오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한국의 경우 ‘중화주의’에 대해 접근할 때는 매우 정밀한 학문적 작업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부상을 무조건 패권과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독자적인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정부 정책도 장기적 안목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점차 부상하며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의 여러 가지 압박에 대응하여 생존전략과 대응전략을 찾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논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냉철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대중화주의와 신중화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중요하며 감정적이거나 막연한 중국경계론 또는 중국위협론을 피하여 우리만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상대를 우습게 아는 것이 대응전략일 수 없듯이, 상대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대응전략일 수 없다. 그들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다 깊게 이해하고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보다 의미 있는 방안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대응전략이다. 따라서 이 글의 II장에서는 우선 그간의 ‘신중화주의’ 개념이 정확한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며 모호한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III장에서는 화이이변(華夷之辨)과 대중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대중화주의 경향을 역사적·논리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외부로의 확장을 추구하는 중국을 향해 내부의 질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해본다. 맺음말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민주와 자유라는 인류 보편 관념의 지향만이 대중화주의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전략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신중화주의’ 개념의 모호성

신중화주의 또는 신중화사상이 무엇인지 분명한 정의를 내린 책이나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여러 서적이나 책에서 중화주의(예컨대 餘秋雨, 『尋覓中華』¹) 등 용어는 볼 수 있으나 이를 개념적으로 다룬 논문이나 저술은 찾을 수 없다. 그 외 대중화주의(王曉文·高宏存, 2009),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범중화주의, 신천하주의, 중화민족주의, 신중화민족주의(張三南, 呂偉波, 2014), 중화애국주의(江流, 2015), 화하(華夏)중심주의(王培元, 2000) 등 다양한 용어들로 중국과 중국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주장을 견지하며 신한족·신전통·신이성(新理性) 등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묶어서 신중화주의

1 위치우위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2010, 『중화를 찾아서』, 미래인.

로 뭉뚱그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화주의 자체가 치밀한 중국문화의 내재적 논리를 갖는 것이고,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중국문화우월주의 외에도 보편주의적 아이디어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중화주의나 대한족주의 등 관념과는 달리 신중화주의는 중국 밖에서 중국을 보고 ‘만들어낸’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증산도사상, 세계환단학회 등 한국문화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타자화하면서 붙이고 있다. 한편으로 현대 중국의 굴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통시대의 중국문화우월주의를 염두에 두고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적 사유를 전개하면서 강한 우려를 담아 ‘신중화’를 언급하는 측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앞에 언급한 윤휘탁의 『신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2006)이다.

한마디로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는 중화주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청제국이 용유하고 있던 민족과 영토를 온전하게 통합해서 과거에 화려했던 중화민족 국가의 새로운 부흥을 시도하면서 주변 민족 국가의 역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중화주의(新中華主義)’라고도 할 수 있다(윤휘탁, 2006, 7). ‘신중화주의’란 반제(反帝), 반봉건(半封建)의 신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를 거치면서 비판받았던 전통적 중화문화패권주의로서의 ‘중화주의’를 개혁 개방정책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계승한 중국의 ‘팽창적 문화주의’를 의미한다. 전통적 ‘중화주의’에서 ‘신중화주의’로의 전환은 중국 사회의 이완과 민족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단결과 부흥을 추구하려는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족통합 정책에서 비롯되었다(윤휘탁, 2006, 8).

윤휘탁의 연구는 매우 치밀하며 많은 경험과 의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독자적인 분석과 종합을 통한 학문적 성취와 중국 학자들과의 대담을 통한 공감(共感)의 영역을 아우르는 수작이다. 중화주의 연구의 중요한 참고 서적으로 손색이 없으며 신중화주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전후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지침이 되어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마치 중국이 신중화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내세우고 있는 듯 얘기하는 분석은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근거가 약하다. 중국의 어떤 정책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언급, 또는 중국공산당의 문헌 속에서 ‘신중화주의’ 개념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을 문화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중국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 십분 동의하더라도 그것을 신중화주의의 패권적 문화통합 정책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주변 민족 국가의 역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가 박약한 개념으로 이른바 ‘동북공정’ 등 중국 측의 전략에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호하지 않은 보다 분명한 개념적 구상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윤휘탁은 “신중화주의’란 반제 반봉건의 신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를 거치면서 비판받았던 전통적 중화문화패권주의로서의 ‘중화주의’가 개혁개방정책 시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 계승된 중국의 ‘팽창적 문화주의’를 의미한다”(윤휘탁, 2006, 24)고 정의한다. 109쪽·171쪽·207쪽 등에서도 신중화주의를 팽창적 문화주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화주의를 중국문화중심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밖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이며, 중국 안에서 말하는 중화주의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의 중화주의를 ‘팽창적 문화주의’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중국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는 윤휘탁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소중화’ 또는 ‘조선중화주의’ 또는 후기 북학파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중국문화를 ‘전통적 중화문화패권주의’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항로 이래 화서(華西)학과, 즉 면암 최익현과 의암 유인석은 근대 서구문명을 접하면서 진정한 문명을 ‘중화’에서 찾기도 하였다. 예컨대 중화주의에 입각한 ‘이적=서양=일본=금수’ 논리는 면암과 우암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들은 중국이 요임금, 순임금 이하 하·은·주 3대의 제

왕과 공자·맹자·정자·주자의 성현에 힘입어 좋은 문화를 계승하여 훌륭한 중화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 중화의 맥이 오직 조선에서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서양과 일본의 도전을 중화의 ‘맥’을 끊는 일로 받아들였고, 개화파를 이적을 끌어들이어 중화의 맥을 끊고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자들이라고 이해하였다.² 그들은 개화를 야만으로 보았으며 중화를 문명으로 보았다. 면암과 우암의 중국에 대한 숭상은 곧 문명에 대한 숭상이며, 천도(天道)에 대한 숭상이자, 인문주의에 대한 숭상이며, 도덕과 성인에 대한 숭상이다. 곧 도덕 이상주의를 말한다. 중화문명국가를 회복하여 그에 따르는 것을 정치질서[治世]의 이상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일견 관념의 감옥에 갇힌 왕정론자, 심하게 얘기하면 봉건체제를 옹호하려는 고집 센 사대주의 유생의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천리를 구현하려는 궁극적 삶의 목표를 끝까지 끌어올려 성리학의 정점에 오른 이들에게 관념적 이상과 현실의 삶은 일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면암의 얘기대로 차라리 중화의 것을 지키고 사람 노릇을 하다가 망할지언정 이적의 짓을 하고 금수의 짓을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었다(장현근, 2003). 이처럼 우리 선배 지식인들의 상당수는 중화주의를 팽창적 문화주의로 여기지 않았다.

윤휘탁의 논의는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를 ‘신중화주의’와 연결시킨 것이 핵심인데 바로 이 때문에 ‘신중화주의’ 개념의 모호성이 더욱 심해졌다. 중국 내부의 정책을 중국 외부의 시각인 신중화주의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신중화주의’ 특성으로 유가문화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점, 애국주의로 주변 국가의 민족정체성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팽창적 문화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대한족주의’의 속성을 띠고 있는 점, 동북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점, 동

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장현근, 2003,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건설: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사상연구』 제9집, 한국정치사상학회, 35~60쪽 참조.

북공정으로 역사적·문화적 패권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윤 휘탁, 2006, 408~409).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소위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업적의 바탕을 이해하더라도 이렇게 정의된 것을 ‘신중화주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다.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는 거대한 기획이기는 하며 그것으로 새로운 중국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신중화주의로 개념화하여 팽창적 문화주의로 연결시키는 것은 내부적 시선과 외부적 시선을 혼동한 것이며, 특히 일부 한국인의 시선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그들 내부의 한계와 모순에서 찾아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김희교는 ‘애국주의’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신중화주의를 중국 민족주의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김희교, 2006).³ 김희교는 ‘19세기 이후 잃어버렸던 강국의 꿈이 부활하여 나타난 새로운 중화주의를 ‘신중화주의론’이라 부르며 한국의 중국 연구자들 대다수와 한국사 연구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김희교, 2006, 306). 애국주의가 중국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모든 역사적 유물이 애국주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작금 중국의 현실로 볼 때 그것을 ‘신중화주의’로 정의해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누가, 언제, 무슨 이유에서 신중화주의를 언급했으며 어떤 변용을 거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희교는 또한 중화주의에는 화이사상(華夷思想)과 조공책봉체제(朝貢冊封體制)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신중화주의론에는 이러한 사상적 전제나 국가 간 위계질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애국주의를 신중화주의로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진단한다(김희교, 2006, 307). 전통시대의 연속성과 역사성에 비해 근현대에는 단절성과 비역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화주의의 연속으로 신중화주의를 말하는 것은 문

3 김희교, 2006, 「중국 애국주의의 실체: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통권 75호(2006 여름), 역사비평사, 305~311쪽 참조.

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중국의 애국주의는 신중화주의나 중화패권주의라 부르기보다는 민족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희교, 2006, 310)는 그의 결론은 역시 모호하다. 민족주의는 내재하는 논리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신중화주의는 외부적 시각을 견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국주의 개념 속에는 상당한 문화우월주의 또는 패권주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철승은 ‘신중화사상’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한다.⁴ 그는 신중화사상을 현대 사회의 다양한 면을 결합하여 “전통적인 한족 중심의 문화제일주의의 토대 위에 중국 내외의 모든 중화민족 구성원들에 의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이철승, 2006, 511)라고 한다.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로 신중화주의를 정의한 것이다. 이어서 “아편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존심의 회복과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의 패권주의에 대한 대항과 개혁개방정책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중국 내의 수많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21세기에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중화민족 구성원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철승, 2006, 511)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 사상계에 만연되고 있다’는 신중화사상이 ‘현대중국사상계에 나타난 현실’이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주장을 내세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역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중국의 문화적 패권주의에 대한 모호한 우려를 그대로 신중화사상으로 정의해버린 것이다. 그의 말대로 ‘다원일체(多元一體)’의 통일관을 기초로 한 신중화사상을 얘기하려면 다원의 진원지를 밝히고 그것에서부터 비판적 성찰을 통해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신중화주의’는 중국문화팽창주의를 표현하기 위해 보통명사 중화주의 앞에 ‘신(新)’ 자를 붙인 것일 뿐,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개념으로 삼기 어렵다. 중화주의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의 문화와 심리의식을 표현하는 보편적

4 이철승, 『현대 중국사상계에 나타난 ‘중국학열’과 신중화사상』, 2006, 『中國學報』 제54집, 한국중국학회, 499~522쪽 참조.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그 맥락 위에서 중화주의의 각종 경향을 뜻하는 접두사를 붙여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었는데 Ⅲ장에 언급할 ‘대중화주의’ 등이 ‘신중화주의’를 언급한 앞의 주장들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굳이 신중화주의 개념을 만들어 중화주의의 보편적 맥락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신중화주의가 중국에서 얘기되는 신중화민족주의의 약칭으로 쓰일 수도 있어서 장차 다른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면 기존의 논의들과 길항을 일으켜 신중화주의 논의 자체가 근거를 잃을 수도 있다.

신중화주의는 중국 내부와 외부의 시각을 교차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확한 중화주의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중화주의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검토하고, 부정적 요인으로서 문화우월주의인 대중화주의, 때로는 대한족주의까지를 비판적으로 접근한다면 신중화주의의 개념적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중국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임을 염두에 두고 중국 헌법에 명시된 네 가지 기본원칙, 즉 ‘사회주의로의 길,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마오쩌둥 사상의 견지’와 함께 생각해야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의 패권주의도 부정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 우리가 패권적 문화우월주의로서 ‘신중화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 그들에게 제론하려면 훨씬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개념의 모호성을 탈피하고 그들의 용어로 그들을 비판하는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Ⅲ. 화이지변(華夷之辨)과 대중화주의 비판

윤휘탁은 전통적 중화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 신중화주의라고(윤휘탁, 2006, 316) 하지만 전통적 중화주의와의 정밀한 연결고리를 밝히지는 않았다. 신중화주의 개념의 모호성만 더욱 부각되었다. 신중화주의가 모호한 개념이지만 그 출발이 중국의 팽창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한 이

유가 있다. 특히 한국처럼 오랜 역사 동안 중심국가로서 중국에 대해 주변국의 일부로 존재해온 나라는 중국의 패권적 문화정책에 깊은 영향을 받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굴기가 과거와 같은 대중화의 연속선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한다. 이 점에서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대중화주의 관념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의 연장선으로서 과거 소중화와는 반대 개념으로서 ‘새로운’ 중화를 언급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과 중화의 개념부터 접근하여 내면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명칭은 국호로서 정치적·국제관계적 용어라기보다 문화 개념으로서 중심적·천하사상적 용어이다. 중국인들에게 ‘중국’은 국경으로 표상되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로서 중국이라기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주변에 확장시켜온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주변의 이(夷)문화에 비해 화하(華夏)문화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과 대중화주의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화이지만, 즉 화와 이를 구별하는 관념의 형성은 ‘중국’인들이 타자와 자신을 구별하려는 자의식에서 출발한 ‘중국’인 스스로의 용어이다.⁵ 어원상으로는 ‘천문을 살피며 계절에 맞추어 바빠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형한 하(夏)의 발음과 만개한 꽃의 상형인 화(華) 자가 상호 통용되면서 화하 관념이 만들어지고 중원에 사는 사람과 문화를 뜻하게 되었다. 이(夷)에 대해서는 새끼줄에 묶인 포로의 상형, 큰 활을 든 동방의 민족, 움크리고 쪼그려 앉은 사람의 상형 등 주장이 혼재한다. 즉 글자의 어원으로 볼 때 초기에 화와 이는 문화가 다른 중원민족과 동방민족의 구별에 불과하였다.

이(夷)는 동방 사람을 뜻하던 글자에서 차츰 하 민족과 다른 민족을 뜻하는 대표 개념이 되었고 하는 문화가 ‘다른’ 이를 문화가 ‘낮은’ 야만으로 깔보는 문

5 화이(華夷) 관념의 형성과 변화 및 비판적 접근에 대해서는 장형근, 2016, 『중국의 정치사상: 관념의 변천사』, 한길사, 547~592쪽 참조. 일부 문장은 글자를 수정한 경우가 많아 표식 없이 인용하였다.

화우월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서경』에는 만이활하(「舜典」, 蠻夷猾夏)란 구절이 있다. ‘만(蠻)족과 이족이 하족을 어지럽혔다’란 뜻이다. 만이가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중원지역에 들어와 교란을 했다는 적개심 가득한 표현이다. 실제로 유묘(有苗)씨와 유궁(有窮)씨가 하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아마도 하나라 때부터 화이 관념의 기본이 형성⁶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라가 언어나 문자기록 등에서 만이보다 우월했으므로 이념적으로 하민족은 힘에 밀리고도 자기 문화 중심의 문화우월주의로 상대국을 야만으로 비하—마치 중체서용(中體西用)이나 동도서기(東道西器)나 화혼양재(和魂洋才)처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내부에서 화이 관념의 출발은 정치적 정당화의 수단 혹은 정신적 승리법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周)나라의 성립과 유교문화에 그대로 침윤되었다. 먼저 주나라 정권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기록들을 보면 주 왕실 및 중원지역에서 문명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제후국들이 화하이이며 진(秦)·초(楚)·오(吳) 등 변방에 위치한 제후국들을 가리켜 이 또는 이적(夷狄)이라 표현한다. ‘중국’·‘중화’란 개념도 이렇게 성립한다. 춘추시대는 이민족들의 중원 침략이 더 잦았고 따라서 이민족에 대한 문화적 멸시는 더 심해져갔다. 『국어』, 「주어 상」편에는 주민족에게 용적이 쫓겨났다면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공자는 이 시기 인물이다. 주공(周公)을 숭상한 공자는 『논어』, 「팔일」편에서 “이적에 군주가 있음이 하 지역들에 군주가 없음만 못하다”⁷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뜻은 이적의 나라는 문명이 낙후하여 군주가 있더라도 예의가 없으니, 여러 하에 군주가 없어도 예의가 있음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다. 『논어』에는 그 외에도 「자한」편에 공자가 구이(九夷) 지역에 살고자 한다면서 낙후된 곳으로 낮춰보는 누(陋) 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로」편에서는 문화적으로 우매한 지역으로 이적을 언급하기도 한다.

6 장현근, 2011, 「한국에서 대중국관념의 변화: 중화주의, 소중화주의, 탈중화주의」, 『아태연구』 18집 2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97~123쪽 참조.

7 『논어』, 「팔일」편. “夷狄之有君，不如諸夏之亡也”.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주변 민족을 열등한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공자를 추종한 유가사상은 바로 ‘화이지변’에 입각한 중화문화우월주의의 표상이다. 특히 공양학(公羊學)은 가장 대표적인 대중화주의이다.⁸ 『춘추공양전』은 화와 이의 구별을 안과 밖의 구별로 보았다. 「성공 15년」에는 “그 국(國)을 안으로 삼고 여러 하(夏)를 바깥으로 삼으며, 여러 하를 안으로 삼고 이적을 바깥으로 삼을 것”⁹이라는 하내이외(夏內以外, 여기서 內는 곧 中임)를 말하며 화이관계를 내외관계로 보며 화이 사이는 통일과 피통일의 주종관계로 생각한다. ‘대일통’을 핵심으로 하는 공양학에서 중국이 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근래 어떤 백인우월주의자의 ‘문명충돌론’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 『춘추공양전』, 「희공 21년」에는 “이적에게 중국의 일을 맡도록 하지 않는다”¹⁰라고 한다. 공양학과의 존왕양이(尊王攘夷)론은 중국의 천자가 정치의 중심이며 천하 ‘공통’의 주인이라는 관념을 수호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다. ‘화화와 내외의 구별’을 통해 화하 중심의 통일천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정과 순서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천하 제후를 아홉 번이나 회맹시키면서도 병거(兵車)에 의지하지 않은” 관중(管仲)의 ‘어짚’에 대한 공자의 칭찬 또한 이와 관련이 있다.¹¹

예법 질서의 강조는 대중화주의와 관련된 유가의 대표적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이적의 나라라 하더라도 예의를 지킬 수만 있으면 마땅히 제하(諸夏)와 동등하게 대우하지만, 반대로 만약 제하 국가라 하더라도 예의를 저버리면 이적

8 『국어』, 「정어」나 『좌전』, 「양공 14년」이나 「희공 22년」의 기록들을 보면 상이한 생활과 그로 인하여 습속과 문화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견해가 있다. 용족을 사악(四嶽)의 후예로 보기도 하고, 백적(白狄)이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다른 민족이라는 주장 등이 그렇다. 『춘추좌씨전』은 『춘추공양전』과 입장이 다르다. 예컨대 『좌전』, 「양공 14년」에는 “諸戎飲食衣服, 不與華同, 贄幣不通, 言語不達”라고 말한다.

9 『춘추공양전』, 「성공 15년」. “內其國而外諸夏, 內諸夏而外夷狄”.

10 『춘추공양전』, 「희공 21년」. “不與夷狄之執中國也”.

11 『논어』, 「현문」편. “子曰: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으로 내려가 『춘추공양전』, 「소공 23년」처럼 ‘신이적(新夷狄)’으로 부른다.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중국에 사는 자신들이 설정한 예의의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 화하문명의 체계 속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유가의 주장에 따르면 중화의 실체는 바뀌지 않으며 이적만이 바뀌는 것이므로 ‘화이지변’ 입장에서 보면 ‘신이적’은 있을 수 있어도 ‘신중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맹자가 “난 하가 이를 바꾸었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이로 인해 중국이 바뀌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¹²라고 한 말은 이를 뜻한다.

이(夷)를 중화민족에 의한 교화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은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및 진한(秦漢) 이후의 사상가들 거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¹³ 진시황의 중국통일은 화이 관념에 하나의 사항을 더해주었다. 이민족을 포함한 천하 모두가 황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관념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진은 원래 ‘야만’ 국가였다. 또한 예가 아니라 법으로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폐하의 신령과 성명으로 인해 세상이 평정되고 만이를 축출하셨으니 해와 달이 비추듯 그 아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¹⁴라고 말한다. 이렇듯 화이론과 대중화주의가 논리적 귀결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화임은 화이공조(華夷共祖)론, 즉 중화와 이적의 조상이 같다는 주장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중국인의 조상인 황제(黃帝)의 후손이라는 주장은 특히 사마천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었다. 흉노에게 퍽박을 받은 환경적 영향도 작용을 하였겠지만 「오제본기」에서는 전국시대 모든 국가의 조상을 황제와 연결시키고, 마침내 흉노도 황제의 후손으로 여긴다. 이 분위기는 위진남북조시대로 이어져 선비족도 조상이 중국과 같다고 하였다. 사마천은 당시 대일통의 춘추공양항 분위기에 흠뻑

12 『맹자』, 「등문공 상」편. “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

13 예컨대 『관자』, 「소칭(小稱)」편의 다음 언급 참조. “嘗試往之中國諸夏蠻夷之國, 以及禽獸昆蟲之地, 皆待此而爲治亂, 澤之身則榮, 去之身則辱, 審行之身而毋怠, 雖夷貉之民, 可化而使之愛”.

14 『사기』, 「진시황본기」. “賴陛下神靈明聖, 平定海內, 放逐蠻夷, 日月所照, 莫不賓服”.

젓어 산 사람이다. 그의 화이공조론을 민족평등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¹⁵ 한대 대일통의 실상은 혈통의 동질성보다는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여 화하, 즉 한족문화로의 동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물론 공양학에서 비켜서 있었던 당 태종은 “이적도 사람이며 그 성정은 중화와 다르지 않다”¹⁶고 말한 적이 있고, 북방민족 출신 황제들은 화하와 이적의 화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특수한 경우이다. 특히 청의 옹정제(雍正帝)는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을 편찬하며 사상적으로 대중화주의를 이겨보고자 하였다. 순(舜)임금이 동이(東夷) 출신이고, 주 문왕(文王)이 서이(西夷) 출신이라는 예를 들어가며 덕의 유무가 중요하지 출신지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불교계의 전통적인 주장과 합치하지만 특별한 내용도 있다. 옹정제는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불렀으니 진정한 대일통은 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¹⁷ 또한 그는 대일통의 출발은 진시황이라고 얘기하고 만주족이 예법제도를 실천하고 있으니 내외의 구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만주인과 한인의 명색이란 그저 성씨에 따라 각각 본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 중외가 분별되는 것은 아니다.¹⁸

본 왕조가 만주임은 중국에 본관이 있음과 같으며¹⁹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금수와 다른 점은 이 윤리의 강상이 있기 때문이다. …… 인륜을 다하면 사람이라 하고 천리를 없애면 금수라고 말한다. 화와 이로 인하여 사

15 화이공조론을 정식 논문으로 다룬 사람은 많지 않은데, 王文光·翟國強, 2005, 「“五帝”世系與秦漢時期“華夷共祖”思想」, 『中國邊疆史地研究』第3期는 사마천의 민족평등의식을 무척 강조하면서 ‘화이공조’를 사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16 『資治通鑑』 권19. “夷狄亦人耳, 其情與中夏不殊”.

17 예컨대 『淸世宗實錄』 권86. “揆之天道, 驗之人望, 海隅日出之鄉, 普天率土之衆, 莫不知大一統之在我朝”.

18 『淸世宗實錄』 권130. “夫滿漢名色, 猶直省之各有籍貫, 並非中外之分別也”.

19 『대의각미록』 권1. “本朝之爲滿洲, 猶中國之有籍貫”.

람과 금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²⁰

강상윤리 가운데 군신유의(君臣有義)에 최고 가치를 두고 화이지변을 벗어나 만주인의 중국 통치를 정당화하려 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 결국 강상윤리의 예법을 지켜야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대중화주의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하내이외(夏內夷外)의 화이지변은 혼란과 분열의 중국 내 정치상황을 배경으로 한 배타적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승리법의 일환이며, 주변 민족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대중화주의는 존왕양이를 내걸고 대일통을 추구하는 정치적 정당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둘 다 중국문화우월주의 또는 시혜적 온정주의가 깔린 민족 불평등 의식이 깔려 있다. 이 점에서 ‘신중화주의’ 개념은 사실 화이지변 혹은 대중화주의와 같은 말이 된다. 굳이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중화주의를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성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다. 위치우위(餘秋雨)는 ‘중화’란 여러 민족과 어우러진 다문화의 산물이라며 현대 중국은 이러한 다문화적 포용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위치우위는 당나라를 예로 드는데, 외면적으로 화이론을 강조하지 않고 이민족 포용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당나라는 다문화적 통합을 실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 태종은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 실제로 당나라 주류 지식인들은 이민족 종교라고 불교와 논쟁을 벌이면서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중화문화우월주의와 화이론을 견지하였고, 이는 유불(儒佛)논쟁을 촉발시켰는가 하면 유가문화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철저히 ‘화이지변’을 강조하는 성리학은 여기에 연원을 두고 있다.

20 『대의각미록』 권1. “夫人之所以爲人而異於禽獸者，以有此倫理之常也，……盡人倫則謂人，滅天理則謂禽獸，非可因華夷而區別人禽也”. 위치우위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2010, 『중화를 찾아서』, 미래인.

21 예컨대 위치우위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2010, 앞의 책 참조.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화이론은 화하문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사적 역할과 문화적 작용을 하였다. 장타이엔(章太炎)은 그의 『국고논형(國故論衡)』, 「원경(原經)」편에서 “진(秦)나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이(四夷)가 교대로 침공하여 왕도가 중간에 끊긴 지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어지럽히는 자들이 감히 옛 법도를 훼손·파기하지 못하여 반정(反正)하기도 쉬웠다. …… 따라서 오늘날 국성(國性)이 떨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스스로 용적들보다 귀함을 잘 안다. 『춘추』가 아니었으면 그 무엇이 이를 지키게 했겠는가”²²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극단으로 치우친 이러한 민족우월감은 필경 화하가 이적들보다 위대하다는 불평등성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 왕조의 과대망상 또는 폐관 쇠국의 사회문화적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은 힘이 우월한 이민족과 언어문화가 우월한 화하민족이 경쟁한 결과 역사적으로 최후적 승자는 문화의 재배자인 화하민족이었으며, 그들의 정교한 문화가 초원의 강자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시간뿐이었다. 중화주의란 중국인의 저항의 표현인 동시에 중국인을 단결시키고 문화적으로 승리하게 해주는 최후적 무기이기도 하였다.

중화주의는 중국을 중심에 둔 천하사상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천하를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 일반적인 ‘하늘의 아래’이므로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호한 범위를 상정한다. 그러나 은나라 때부터 이미 하늘의 아들이란 의미의 천자(天子)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천자가 하늘을 대신하여 만사를 주재하는 보편적 질서가 통하는 세계를 천하라 불렀다. 즉 천자가 다스리는 지역을 중화(中華 또는 中國 또는 華夏)라 하여 사방(四方) 또는 보다 먼 곳의 이(夷) 지역과 구분시켰으며 직접 통치하는 중국과 천자의 교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이민족 지역을 통틀어 천하라고 부른 것이다. 그래서 천하는 천자의 교화가 미치는 범위로

22 『국고논형(國故論衡)』, 「원경(原經)」편. “自秦氏以迄今茲, 四夷交侵, 王道中絕者數矣; 然搢者不敢毀棄舊章, 反正又易. …… 故今國性不墮, 民自知貴於戎狄. 非春秋, 孰綱維是”.

서 중국과 그 주변 변방국가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중심과 주변이 분열되고 중화주의라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중국인들의 뇌를 지배하게 되었다(양승태 외, 2016, 84).

중화주의는 천하사상뿐만 아니라 봉건(封建) 및 왕토(王土)사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국 중심의 봉건은 중국식 왕도(王道)의 실현을 통해 보편 이념의 토양을 마련한다는 왕토 이념이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내적으로 추구하는 중화사상과 외적으로 표방하는 세계질서 운운 또한 이와 같은 중국 중심의 천하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장현근, 2016b). 땅을 나누어 친족 및 공신에게 책봉하고 조회를 통해 통제하는 봉건제도는 중앙의 중국 천자가 천하의 모든 영역을 제어하여 정치질서를 수립해감을 전제로 한다. 특히 ‘왕의 땅’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국가적 통일 상태를 맞아 강성했을 때는 하늘 아래 모든 지역이 중국 왕실의 지배를 받는, 또는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때 사람들이 사는 공간적 영역은 모두 그 왕실의 천하일 뿐이다. 중국 왕실 외의 주변 왕실들은 소위 형제의 나라 또는 군신의 나라라는 정치적 예측상태로 생각되었다. 물론 이 가천하(家天下)적 의식은 힘의 우위에서 비롯된 문화적 시혜의식이었기 때문에 조공제도를 보더라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았고 중국 왕실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나 이민족의 점령상태에 들었을 때면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수평적·독립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평등의식이 깔리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역시 문화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국수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틀을 벗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천하(天下) 개념은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정책(Cosmopolitics)’으로 이해된다(장현근, 2016b).

중국 중심의 세계정책은 역사적으로 중화주의로 특징화된다. 화이지변은 화와 이의 변별을 통해 문명을 둘러싼 보편사적 의의를 강조하는 긍정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화의식의 확장을 통해 관념적으로 주변을 모두 중화화하려는 문화제국주의적 발상일 수도 있다. 이 중화주의는 천하의식의 보편화 과정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천하사상과 중화주의는 주변 문화를 먹어치우는 확장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 또한 중국 중심의

천하 관념과 중화주의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있다(장현근, 2016b).²³ 특히 중국이 굴기하고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중국공산당은 곳곳에서 이러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도 그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화이지변에 기초한 중화주의의 내부 모순을 공격하고 그 기초 위에서 세계적 보편 이념을 제론하는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신중화민족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 내에서도 그들의 대중화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견해는 줄곧 있어왔다. 중국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민족적 우월성과 문화적 우월성 두 가지를 변수로 보면 크게 빛으로 나눌 수 있다.²⁴ 극단적으로 중국 한족(漢族) 중심 국가와 한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대한족주의, 온건하지만 역시 한족중심주의를 주장하는 한민족주의(漢民族主義), 종족이나 국가 경계 등의 편협성을 넘어서 중국의 문화적 포괄성과 역사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중화주의, 중국문화의 우월성을 천하와 세계로 확대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문화우월주의로서 대중화주의가 그것이다. 예컨대 대한족주의자는 원나라와 청나라를 중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민족주의자는 원나라와 청나라도 중국의 범위 내

23 화(華)와 이(夷)의 어원을 보면 그저 문화적 차이를 뜻하는 단순한 구분이었는데 주공·공자·맹자·순자로 이어지는 유가사상가들은 주변 문화에 대한 중국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중화주의로 포장한다. 이는 화하민족이 힘에 밀린 상태에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인의 정신승리법의 일환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현근, 2014, 「중화주의의 시원과 화이공조(華夷共祖)론 비판」, 『동방학』 31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7~43쪽 참조.

24 필자는 이 네 가지 분류의 아이디어를 중국의 인터넷사이트 ‘漢民族主義者’和‘大中華主義者’의觀點分岐(http://www.360doc.com/content/08/0223/10/27872_1064332.shtml)에서 얻어와 수정하였다.

에 있다가 결국은 중국화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전통적 중화주의자는 주변 민족들과 주변국의 문화가 모두 중국처럼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며, 대중화주의자는 과거 한 때라도 중국의 영향력이 미쳤거나 중국문화를 내면화한 곳이면 모두 중국으로 본다. 다시 말해 한족이 왕이었던 명나라, 송나라 등만을 정통 중국의 정권으로 보는 것이 극단적 대한족주의라면 원나라든 청나라든 과거 고구려든 모두 중국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대중화주의이다.

문화는 융합하는 것이지 우열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네 가지 입장 모두 비판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앞의 세 가지는 중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화주의는 주변 민족을 자신의 역사와 문화 속에 가두려는 시도이자 주장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중국이 빛은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 ‘서남공정(西南工程)’ 같은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그들 내부의 대중화주의야말로 이 글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외부적 시각의 ‘신중화주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대체로 극단적인 대한족주의나 대중화주의를 꺼리며 대부분이 한민족주의와 중화주의를 지지한다. 이 둘을 결합하여 부른다면 중화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한 중국 내부에서 말하고 하는 ‘신한족’·‘신전통’·‘신이성’ 등 용어는 이런 중화민족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화문화를 새로운 곳으로 전진시키고 싶어하는 중국인의 의식이 중화민족주의를 낳은 것이다. 이를 중화신이성주의(中華新理性主義)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국 특색의 이성을 가지고 새로운 중국문화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戰鬥勇, 2001).²⁵ 중국 내부에 이런 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외부의 시각에서 극단적인 대중화주의를 중화주의의 본질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국문화우월주의의 극단적 확대로서 대중화주의는 중국 내부에서도 크게 환

25 戰鬥勇, 2001, 「中華學與中華新理性主義」, 『佛山科學技術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4).

영반는 주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중화주의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선은 중화민족주의에 모이고 있다.

현대 중국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다. 근대 중국이 낙후한 원인을 만주족의 지배에서 찾는 견해, 예컨대 ‘구축달로(驅逐韃虜), 회복중화(恢復中華)’와 같은 민족주의 혁명론자들의 초기 견해가 여기 대한족주의 입장에 가깝다. 중국 중심의 천하대동(天下大同)을 주창한 것은 대중화주의에 가깝다. 중국의 근대는 대한족주의 혁명론에서 출발하여 일부는 극단적인 대중화주의를 이상으로 내걸고 나아가다 차츰 한민족주의와 중화주의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중화민족주의는 중국의 낙후한 원인을 민족에서 찾기보다 중국의 제도나 체제에서 찾게 되었으며 봉건의 극복과 제국주의로부터의 탈출을 중국이 나아갈 길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양사상, 특히 민주주의의 수용은 그 대안이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리다자오(李大釗)²⁶이다. 그는 프랑스에서 돌아온 천두슈(陳獨秀)와 연대하고 미국에서 돌아온 후스(胡適)와 논쟁하였다. 그는 이론과 개량에 반대하고 실천과 혁명을 강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국 공산주의의 선구자,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시종 민족주의 가치관을 지켰다. 「신중화민족주의(新中華民族主義)」²⁷란 글에서 리다자오는 중국이 서양의 ‘민주’와 ‘자유’를 받아들여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변 국가나 국내 소수민족들에 대해 가졌던 전통시대의 잘못된 중화문화우월주의를 극복하고 동서양의

26 중국 초기 공산주의 이념 연구와 전파의 핵심 인물인 리다자오(李大釗)의 釗는 한국어 독음 방식으로는 ‘쇠’로 읽어야 하나 기존 한국의 연구들이 중국음을 변형시켜 관행적으로 ‘조’로 읽으면서 결국 ‘이대조’로 통일하여 쓰인다. 새로운 독음으로 인정하여 이 글에서도 ‘이대조’로 읽는다.

27 리다자오는 도교를 유학하면서 제국주의 창궐을 직시하고 세계적인 민족주의 조류의 유행을 감지하였다. 1916년 귀국 후 다음 해에 정식으로 ‘신중화민족주의’를 제기하였다.李大釗, 2006, 『李大釗全集』 제5권, 人民出版社에 수록. 그가 마르크스주의에 기울기 직전이라고 한다.張三南·呂偉波, 2014, 「李大釗《新中華民族主義》探析」, 『甘肅社會科學』 2014年 4期, 52쪽 참조.

정신을 잘 융합한 신중화민족 소년이 되라고 한다. 리다자오가 『신청년』에 발표한 「나의 마르크스주의관」이란 글에서도 계급혁명보다는 진정한 민족의 해방을 위한 수단을 주장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리다자오는 ‘신중화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편협을 극복하고 이상을 조화시킨 신중국의 미래를 고민한 것이다. 「신중화민족주의」는 내외외환의 심각한 중국의 현실을 보면서 민족 문제의 본질을 보고 민족정신의 중요성과 세계민족주의의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긴밀하게 상호 결합하자는 내용이다. 근대민족주의 발흥이라는 세계 조류와도 맞았으며 그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계급해방보다 민족해방을 중시한 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과 실천은 강렬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그는 중국인 모두가 ‘신중화민족’이 되어 세계의 안목에서 중국의 민족 문제를 보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1,300여 자의 짧은 글이지만 리다자오의 「신중화민족주의」는 다음 몇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²⁹ 첫째, 중국의 민족 문제는 과거 ‘천하주의’ 그늘에 가린 옛 중국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서양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 갱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독립과 통일을 이룬 유럽 민족주의를 배워서 국민정신을 고취하고 신중화민족주의를 발흥시켜 일본식 대아시아주의를 극복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중국 역사의 전개는 수많은 민족들이 융합하여 중화민족을 이루었으니 만주족·한족·몽골족·회족·장족 등 오족(五族)의 공화를 이루어 ‘신중화민족’을 구성하고 이를 민국(民國)의 정전(政典)으로 삼아야 한다.

리다자오의 ‘신중화민족주의’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신중화민족 소년’을 상징하고 중국이 전통적 대중화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의 ‘신중화민족’은 민족통일 사상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

28 張三南·呂偉波, 2014, 위의 글, 51쪽.

29 張三南·呂偉波, 2014, 위의 글, 52~53쪽 참조.

국을 하나의 대가정 내에 존재하는 문화융합체로 판단하기도 한다. 중화민족을 문화적 개념으로 보고 민족 내의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면서 ‘민주와 자유’라는 세계 보편적 가치의 수용을 촉구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쑨원(孫文)의 ‘민족주의’, 량치차오(梁啓超)의 ‘중화민족’ 개념들을 포괄하며 동서양 사상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 짧은 글이라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리다자오의 「신중화민족주의」는 중국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예의 네 가지 시각을 건설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문적 토론편과 문화담론의 구축을 통해 거기에 살을 붙이고 중화주의의 미래에 대해 건강한 논쟁을 해가는 것이 현대 중국의 과제일 것이다.

중국이 대중화주의를 극복하고 강한 소프트파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세계 보편적 가치의 수용이 길이란 점에서 리다자오의 논의는 근대를 넘어 오늘날도 여전히 유용한 개념이다. 현대 중국에서의 그러한 논의들(예컨대 雷頤, 2000; 王培元, 2000; 戢鬥勇, 2001; 江西元, 2007; 王曉文·高宏存, 2009; 張三南·呂偉波, 2014; 江流, 2015 등)에서 신중화민족주의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모두 중국의 굴기 또는 부강지로(富強之路)를 염두에 두고 출발한다. 첫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사상체계를 교직하여 전 세계에 걸쳐 중화민족의 단결과 교류를 강조하는 것이다. 해외 중국 화교들을 총망라하는 중화체계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기도 하다. 둘째, 중국 내 소수민족의 대응함을 꾀하여 중국의 발전을 인도할 중국 내부의 사상적 지주 역할을 기대한다. 현재 중국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 과거 중화주의 처럼 중국문명의 우수성에 기초하여 주변 민족과 세계를 향해 중국 중심 문화우월주의를 확장해가려는 시도이다. 넷째, 여러 민족주의 가운데 중국 특색의 민족주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현대 세계의 민족주의적 경향 속에서 중국 자체의 애국주의를 고양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신중화민족주의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중국 내의 애국주의와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으로 불리는 전통문화와 중국의 세계화전략 등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현대 중국의 애국주의는 예전처럼 민족의 위기를 극복

하고 제국주의 침탈로부터 민족을 독립시키고 국민을 해방하는 차원이 아니다. 오늘날은 조국을 보위하고 건설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독립자주의 국가운영으로 국민들의 행복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그 길을 사회주의에서 찾는다. 중화민족은 새로운 사회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를 건설하고 새로운 민족정신을 고양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애국주의의 중요한 내용이다.³⁰

이미 마오쩌둥(毛澤東), 류사오치(劉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등 현대 중국의 초기 지도자들은 대중화주의·대국주의·대한족주의 등의 극복을 외치고 그러한 비이성적 문화우월주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예컨대 마오쩌둥은 인류를 위한 중국의 공헌을 외치며 겸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대국 소비니즘을 경계하며 “중국인은 국제교류 방면에 응당 견결히, 철저하게, 깨끗하게 전적으로 대국주의를 소멸시켜야 한다”³¹고 말하고 어떤 의미의 패권주의에도 반대하였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중국문화의 새로운 지평으로 제시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 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벽면을 붉은 글씨로 가득 메우고 있는 ‘부강(富強)·민주(民主)·문명(文明)·화해(和譜)·자유(自由)·평등(平等)·공정(公正)·법치(法治)·애국(愛國)·경업(敬業)·성신(誠信)·우선(友善)’은 농후한 중국의 전통 유가적 가치관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현대적 가치를 결합시키고 있다. 이른바 ‘중국몽’의 출발은 여기서 비롯한다. 시진핑(習近平)은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 이래 줄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중국몽’이라 표현하였다.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국민의 행복을 중국몽으로 규정하고 애국주의 총강령이자 명제로 제기한 것이다. 전통을 계승한 위에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를 결합하여 새로운 국내외 전략을 구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와 그 체제 최고지도자의 언어와 최근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한령(限韓令) 등의 사례로 볼 때 아직도 범세

30 江流, 「新時期中華愛國主義」, 『光明日報』, 2015. 3. 26.

31 『毛澤東文集』 제7권.

계적 보편적 가치관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중국몽이 대중화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실현을 위한 정신적 역량의 내적 구축을 주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건 국내 정치 선전용일 뿐 주변 문화와의 관계에서 중국은 여전히 대중화주의적 경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진핑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꿈이고 애국주의와 긴밀히 연결되지만 반드시 평화·발전·합작·공영이라는 중국적 정신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주의의 정신에 맞는 애국주의를 표방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이는 중국인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서 대중화주의를 탈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 정책에서는 여전히 패권적 경향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신중화주의’로 뭉뚱그려 문화패권주의라고 무조건적 비판을 일삼는 것이 우리의 대응전략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패권주의 경향이 없지 않다. 다만 그들 스스로 패권을 부정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내부적으로 대중화주의를 극복하려고 오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대중화주의이고 패권적인 그들의 경향에 대한 전략은 비판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설득의 방향이어야 한다. 그들의 시각과 사유의 전개 양상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그들 내부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서 근거 없는 중국 비판은 중국의 근거 없는 ‘협한’ 처럼 위험한 일이다. 지성과 논리로 무장하여 그들의 논리로 그들을 비판하는 성숙한 전략이 필요하다.

V. 맺음말

한·중 수교가 20년을 넘기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교류실적을 올렸다. 때로 갈등하고 때로 협조하면서 공존과 번영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제 표면적 성과주의와 경제적 이해득실을 벗어나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진지하고 깊은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

점이다. 특히 문화의 영역에서 보다 성숙한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학문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신중화주의’ 담론은 중국문화를 패권적 문화우월주의로 규정하고 부정적 시각에서 우리의 대응전략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다. ‘공존’보다 ‘적대’의 논리에 갇힌 개념으로 중국인 스스로 부정하는 대중화주의와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이어서 진정한 ‘중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한·중·일 공동 노력을 통해 미래 문명에 대한 동아시아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문제를 비판하는 정확한 시선이 필요하다. 과거 중국의 중국문화우월주의에 입각한 대중화주의를 막연히 생각하며 모호한 ‘신중화주의’ 개념을 통해 패권적 문화우월주의로 중국에 대항한다는 논리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정확성도 없다. 중국의 내부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동등한 대응을 통해 한·중관계와 더 넓게는 동북아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위협론이나 중국경계론에서 출발한 ‘신중화주의’라는 외부적 시선에 갇혀 중국을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 문화의 패권적 확장이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중국의 문화적 행위를 모두 ‘신중화주의’의 틀로 가두어놓은 채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일삼거나 방어적 대응을 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전략이 아닐 수 있다. 리다자오의 ‘신중화민족주의’는 대중화주의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 시각을 정리해내는 하나의 예이다. 서양의 ‘민주와 자유’를 수용하여 전통적인 대중화주의 또는 천하주의의 한계를 벗고 문화융합을 통해 주변 민족에 대해 평등하고 조화로운 공동의 번영을 추진하는 것이 중국이 나아갈 길이어야 한다.

당연히 중국의 문화패권주의를 경계하고 예의 주시해야 한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중국의 문화전략에 갇힐 수도 있다. 소중화의식 또는 주자학적 문명론 등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국이 원하는 대중화주의 전략의 틀에 갇힐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문화 행위를 ‘신중화주의’ 등 용어를 만들어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대안은 아니다. ‘중화주의’를 둘러싼 그들 내부의 논리와 사유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전략이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의 문화정책이나 역사논쟁이 비이성적인 폐권의식을 드러낼 때 우리는 대중화주의의 역사적 폐해와 그들 내부의 비판을 끌어와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자신의 문화적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와 연계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실성도 있다. ‘민주’와 ‘자유’ 속에 그 해답이 있다.

시진핑은 여러 방면에서 문화를 강조하고 중화를 강조했으며, 최근에는 급기야 덕치(德治)를 얘기하기에 이르렀다.³² 그는 문화를 보편성에 기초한 융합이 아니라 중국만의 특수한 무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중국이 특수를 보편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은 실체적 힘이 약한 주변국인 우리로서는 대중화주의의 그늘인 ‘신중화주의’를 우려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의 변화와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우리만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란 융합이지 갈등이 아니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 스스로 중화주의를 과도하게 정당화한다거나 과거 중화의 질서만을 문명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중화질서 속에서 보편을 찾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출로라느니 하는 성리학적 중화주의 또한 걷어내야 한다. 이 전략은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인 투쟁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거대한 논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중국 내 대중화주의보다 국내의 중화주의가 더 무서운 적일 수 있다. 소위 유학부흥론, 현대신유가 등이 동양문명을 되살릴 것이고 조선문명이 더불어 부흥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리엔탈리

32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그는 2015년 2월 당 정치국 집체학습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법치와 덕치의 병행’을 강조한 바 있다. 2016년 10월 열린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에 따른 통치라는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법에 따른 국가 통치와 덕을 이용한 국가 통치의 결합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스티이자 신중화주의 신봉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와 동질적이다’라고 한마디 하면 조선문화가 살아날 것이라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유명하다는 외국 학자들을 많은 돈을 들여 초대하여 강연하는 것은 대응전략일 수 없다.

거대담론에서 벗어나는 것도 전략의 하나이다. 특히 자본과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을 뒤에 감춘 채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들먹이며 왜곡시킨 문화를 한류(韓流)로 포장하는 일체의 잘못된 시도들을 철저히 학문적으로 규명하여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난 체하자거나 돈을 많이 벌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중국보다 더 뛰어난 동질성을 유지하였다. ‘세계 최고, 동양 최대, 역사상 초유’라는 표현에는 문화 우열을 가르는 사고가 깃들여 있다. 자칫 ‘우리가 최고’라는 사고에 빠진다면 여태 비판해온 중화주의처럼 자민족 중심주의와 우월의식 또는 배타적 상대비하 등의 모순을 똑같이 범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管子』, 『國語』, 『論語』, 『大義覺迷錄』, 『孟子』, 『書經』, 『詩經』, 『資治通鑒』, 『清世宗實錄』, 『春秋公羊傳』, 『春秋左傳』.
- 김명하, 2013, 「고대 중국 정치사상에서의 보수와 진보」,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김철운, 2012, 「중국 화이분별론의 정형화 과정과 그 비판적 고찰」, 『양명학』 제31호, 한국양명학회.
- 김충렬 외, 1988,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 김희교, 2006, 「중국 애국주의의 실체: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통권 75호(2006 여름), 역사비평사.
- 박병석, 1999,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 교문사.
- 시라카와 시즈카 지음, 윤철규 옮김, 2009, 『한자의 기원』, 이다미디어.
- 안경식, 2007, 「신중화주의」, 『China 연구』 제3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 양승태 외, 2016, 『보편주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정치사상사적 고찰』, 책세상.
- 왕원주, 2009, 「조선 후기 북벌대이론의 변화와 영향: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시론」, 『사회과학논집』 40집 1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우경섭, 2012, 「朝鮮中華主義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 『한국사연구』 159호, 한국사연구회.
- 위치우위 지음, 심규호 · 유소영 옮김, 2010, 『중화를 찾아서』, 미래인.
- 유장근 외, 2008,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윤희탁, 2006, 『신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역사.
- 이철승, 2006, 「현대 중국사상계에 나타난 ‘중국학열’과 신중화사상」, 『中國學報』 제54집, 한국중국학회.
- 장현근, 2003,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건설: 최익현 · 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사상연구』 제9집, 한국정치사상학회.
- 장현근, 2011, 「한국에서 대중국관념의 변화: 중화주의, 소중화주의, 탈중화주의」, 『아태연구』 18집 2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장현근, 2014, 「중화주의의 시원과 화이공조(華夷共祖)론 비판」, 『동방학』 31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장현근, 2016a, 『중국의 정치사상: 관념의 변천사』, 한길사.
- 장현근, 2016b, 「중국에서 천, 천하 관념의 형성과 보편화 및 그 한계」, 양승태 외, 『보편주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정치사상사적 고찰』, 책세상.
- 홍승현, 2011, 「漢代 華夷觀의 전개와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31호, 동북아역사재단.
- 히하라 도시쿠니 지음, 김동민 옮김, 2013, 『국가와 백성 사이의 漢: 한 제국, 덕치와 형벌의 이중주』, 글항아리.
- 江流, 「新時期中華愛國主義」, 『光明日報』, 2015. 3. 26.
- 江西元, 「從新天下主義到和諧世界:中國外交理念選擇及其實踐意義」, 『當代亞太』 2007年 12期.
- 顧詒剛, 1988, 『顧詒剛古史論文集』, 中華書局.
- 雷頤, 2000, 「中國現代的‘華夏中心觀’與民族主義」, 『知識分子立場－民族主義與轉型期中國的命運』, 時代文藝出版社.
- 徐中舒 主編, 2006,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 於逢春, 2007, 「華夷衍變與大一統思想框架的構築－以《史記》有關記述爲中心」, 『中國邊疆史地研究』, 2007년 17/2期.
- 汪高鑫, 2012, 「兩漢正史民族史撰述與統一多民族國家的鞏固」, 『求是學刊』 39集 2期.
- 王文光·張媚玲, 2008, 「司馬遷的民族史研究及其對中國統一多民族國家發展的貢獻」, 『學術探索』 2008년 6期.
- 王文光·翟國強, 2005, 「“五帝”世系與秦漢時期“華夷共祖”思想」, 『中國邊疆史地研究』, 2005年 15/3期.
- 王文光·翟國強, 「“五帝”世系與秦漢時期“華夷共祖”思想」, 『中國邊疆史地研究』, 2005年 第3期.
- 王培元, 2000, 「華夏中心主義的幻滅與近代中國愛國主義的產生」, 『知識分子立場－民族主義與轉型期中國的命運』, 時代文藝出版社.
- 王曉文·高宏存, 「身份自覺與大中華民族精神的尋找認同」, 『當代文壇』 2009年 1期.
- 劉澤華 主編, 1996, 『中國政治思想史』, 浙江人民出版社.
- 李大釗, 1984(2006), 『李大釗文集』, 人民出版社.
- 張其昀, 1963, 『中華五千年史』 1冊, 中國文化大學出版部.

- 張三南·呂偉波, 2014, 「李大釗《新中華民族主義》探析」, 『甘肅社會科學』 2014年 4期.
- 章太炎, 『國故論衡』.
- 剪伯贊, 1984, 『秦漢史』, 中國圖書刊行社.
- 戢鬥勇, 2001, 「中華學與中華新理性主義」, 『佛山科學技術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4).

대중화주의와 신중화주의 - 개념적 정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장현근

중국의 굴기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도 경제적 이해득실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상호 이해를 위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중국을 새롭게 읽는 전략으로서 최근 ‘신중화주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중국문화를 패권적 문화우월주의로 규정하고 부정적 시각에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윤희탁의 논의는 ‘공존’보다 ‘적대’의 논리에 갇혀 있는데, 이런 신중화주의 개념은 중국 내부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중국의 경향을 패권적 문화우월주의로 규정하고 맞대응하자는 한국적 전략으로 제기된 개념이다. 이는 중국인 스스로 부정하는 ‘대중화주의’와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이어서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방해되며 따라서 적절한 대응전략이 되기 어렵다. 주자학적 중화문명을 내세우는 것 또한 과거 대중화주의의 틀에 갇힐 위험성이 있다. 오직 중국의 내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정확한 시선으로 그들의 논리를 통해 대중화주의 경향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국의 내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동질화하는 대응전략을 통해 한·중관계와 더 넓게는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리다자오의 ‘신중화민족주의’는 대중화주의에 대한 중국인 스스로의 부정적 시각에

서 탈피하는 하나의 예이다. 이는 현대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등장한 ‘민주와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민주와 자유를 중심으로 대중화주의의 역사적 폐해를 지적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통해 그들의 대중화주의 경향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전략일 수 있다.

주제어: 대중화주의, 신중화주의, 화이지변(華夷之辨), 신중화민족주의, 대응전략

ABSTRACT

Greater Sinocentrism and Neo–Sinocentrism: Conceptual Definition and Korean Confrontational Strategy

Chang Hyunguen

In response to China's rise, Korea needs to seriously consider various cultural mutual understanding out of economical loss and gain. 'Neo–Sinocentrism' was suggested as a new strategy for a fresh understanding about China. This is an assertion which defines Chinese culture as hegemonic cultural supremacy and urges preparation of our confrontational strategy in a negative perspective. Especially, the discussion of Yoon Hui–Tak is confined to the logic of 'hostility' rather than 'coexistence.' But the concept of neo-Sinocentrism is hardly found inside China. Rather, it is a concept suggested as a Korean strategy defining the recent Chinese trend as hegemonic cultural supremacy and urging confrontation. Since this is in line with 'Greater Sinocentrism' which is denied by Chinese themselves, this disturbs real understanding of China and, therefore, can hardly be a proper

confrontational strategy. Insisting Chinese civilizational theory in neo-Confucian perspective also has a risk of being confined to the former frame of greater Sinocentrism. One can only cope with the trend of greater Sinocentrism by fully comprehending China's own logic and by looking into the inside of China seriously. We need to strengthen Sino-Korean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for conciliation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roug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inside of China and homogenizing the values of China and Korea. Li Da-Zhao's 'Neo-Chinese nationalism' is a way to deviate from Chinese own negative viewpoint. This regards 'democracy and freedom' as a core which emerged as universal value of the modern world. Pointing out the historically harmful influence of greater Sinocentrism and counteracting their trend of greater Sinocentrism can be more effective and adequate strategies.

Keywords: greater Sinocentrism, neo-Sinocentrism, distinction of Hua(華) and Yi(夷), neo-Chinese nationalism, confrontational strategy

동북아 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

구성 -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백미연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 II. 유럽통합의 위기
- III. 동북아 연대와 초국적 정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동북아 지역의 초국적 연대와 협력은 가능할까? 좌우 이념 대립의 시대를 지나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초국적 연대와 통합을 낙관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전망은 유럽통합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동북아 지역의 연대와 공동체 구성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의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였고, 독일·프랑스 등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잔류 혹은 탈퇴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시끄러운 유럽연합의 모습은 동북아 연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국적 공동체와 연대를 통해 평화와 질서를 기대했던 통합론자들의 아이디어는 이제 쓸모없는 것일까?

필자는 이와 같은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견고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현재 유럽연합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통합의 가치를 개발한다면 지속 가능한 연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통합의 해법은 동북아 지역의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유럽연합이 겪고 있는 통합의 위기가 국내적·지구적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 증가와 문화적 다원성의 불인정, 배타성과 국수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등장, 민주주의의 결핍 등에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원인 분석에 따라, 재분배 혹은 다문화주의 혹은 세계시민주의 혹은 제도적 민주주의의 심화 등을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 투고: 2017년 2월 13일, 심사 완료: 2017년 5월 14일, 게재 확정: 2017년 5월 19일

보면, 앞에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화적 충돌,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강화, 민주적 결집 등은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뒤엉켜 있는 위기의 얼굴들(faces of crisis)이다. 유럽통합 위기의 싹은 유럽연합이 성립된 1990년대부터 자라고 있었다.

1990년대는 모순의 시대였다.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국내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이 시기의 진보정치는 경제주의가 아닌 문화주의 중심이었다. 진보정치는 인권과 다문화주의, 정체성 정치를 내세우며 통합과 연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분열과 갈등의 위기였다. 이러한 모순의 시대를 지나오며 보통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점점 악화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보수주의 학자와 정치인들은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국내외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배타적인 인정의 정치를 통한 부정적 통합을 부추겼다.

유럽 보수 세력들과 민족주의 성향의 극우 세력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재편으로 시장에서 열패자가 된 많은 가난한 시민들에게 그들이 원망해야 하는 ‘적(enemy)’은 ‘이민자’라고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민자는 이민 수용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복지 재정을 갉아먹는 파렴치하고 기생적인 사람들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리고 유럽통합으로 인해 이러한 이민자들이 사회로 더욱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유럽 사회에서 반이민정서가 팽배해졌고 배타적·국수주의적 민족주의가 도덕적 잘못(moral wrongs)이라는 생각마저 점점 흐려지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시민들은 빈곤과 사회 양극화 문제에 맞서 구조적 변화와 저항을 추구하기보다는 손쉽고 만만한 ‘적’에게 분풀이하며 고립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럽 사회는 더욱 보수화·우경화되고 있으며, 당당하게 배타적·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주창하며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연출되어왔다. 동북

아 지역 역시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전 지구적 수준의 경제위기와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동북아 지역의 국가는 이민자의 유입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이다. 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가 유럽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반이민정서를 통해 국내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보수적 정치세력은 과거 동북아의 역사적 상처와 영토갈등을 이용하여,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애국심에 호소하며 사회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수주의 경향을 띤 중국의 일부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나, 일본의 민족주의와 우경화 경향, 한국의 일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주창 등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국 보수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체제로 편입하면서 급증한 경제 갈등을 무마시키고 국내통합을 이루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역내 주변국과 민족적·역사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국가 수준, 지역 수준, 전 지구적 수준에서 뒤엉켜 여러 얼굴들로 나타나는 위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바로 각 수준에서의 기존의 연대와 통합이, 다수준(multi-level)—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에서 그리고 다차원(multi-dimensional)—정치·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불리한 사람들(disadvantaged people)의 관점과 목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어왔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유럽 혹은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 수준의 연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국가·지구 수준의 연대와 협력 전망 역시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가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신의 목소리·관점·이해가 더욱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연대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겠는가. 우리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포괄적인(real inclusive) 새로운 연대 패러다임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그러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국적 패러다임은 연대의 관점, 범위, 동기 면에서 기존의 패러다임과 차별성을 가지며, 이는 연대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제고하여 지속 가능한 연대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transnational justice paradigm)은 (1) 무엇보다

도 다차원·다수준에서 지배와 종속(dominations and subjections of multi-dimensions and multi-levels)을 겪는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2) 다양한 지배와 종속에 의해 구조적 이익을 얻는 개인·집단·조직과 구조적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집단·조직 등에 정의의 의무를 져야 하는 책임과 정의를 요구할 권리를 부과하는 ‘유연한 정의의 범위들(flexible scopes of justice)’을 전제한다. ‘초국적’이란 유럽 혹은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을 머릿속에 그리거나 ‘지구’와 같은 단일한 사회를 기획하는 용어가 아니다. ‘초국적’이란 수십, 수백 개의 잠정적인 정의의 공동체 혹은 정의의 범위가 존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개인·조직과 일본의 개인·조직, 그리고 중국의 단체 및 개인, 미국의 개인 및 단체, 유럽의 개인 혹은 단체 등(일본군‘위안부’로 고통을 당한 직접 당사자, 가해자, 관련 당국,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개인 혹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안부 이슈 정의공동체’, ‘시리아 난민 이슈 정의공동체’, ‘결혼이민여성 이슈 정의공동체’ 등 수많은 정의공동체, 즉 초국적 정의연대가 전 지구를 횡단하여 구성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범위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논쟁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들이 ‘정의의 근본적 원칙’을 통과하는 한 정의롭다고 판단한다. 정의의 근본적 원칙은 사람들 간의 ‘사회구조적 관계 혹은 지위의 평등(equality of social structural relations or status)’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 정의의 원칙은 ‘윤리적·문화적 다양성에 민감(diversity-sensitive)’하고, 얇은(thin) 보편규범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두터운(thick)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장에서는 브렉시트로 기정사실화된 유럽연합 분열의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요한 연대 패러다임을 분석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새로운 연대 패러다임으로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동북아 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주장할 것이다. IV장 맺음말에서는 동북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초국적 정의 연대의 구성을 제안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II. 유럽통합의 위기

1. 정당성의 위기

2016년 브렉시트로 정점을 찍은 유럽연합의 위기¹는 유럽연합이 정당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의 공유라는 가치가 더 이상 지역적 통합과 연대의 건실한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대안적 연대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원래 유럽연합 통합의 정당성 아이디어는, 경제성장과 번영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면 평화와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 형태는 가장 합리적인 연대 형태(a highly rational form of solidarity)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연대는 법과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전제로 하여, 합리적 자기이익의 추구를 통한 상호 경제이익(mutual economic benefits)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업적 유대관계나 기존 국가의 시민들 간의 계약적 동의의 기초가 될 수는 있다.²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이익의 공유(a shared economic interest)라는 기초는 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

1 2016년 영국에서 진행된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잔류에 투표한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자로 보고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의 지속으로 인한 영국 사회 내 경제 격차의 급증에 대해 시장의 열패자들은 민족주의로 답했다. 보수적 정치인들은 영국 사회 내 우의 포퓰리즘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국 사람들이 문제의 주소지를 잘못 찾은 결과가 바로 '브렉시트'인 것이다. 칼훈은 이제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들의 탈퇴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Calhoun, 2016, "Brexit Is a Mutiny Against the Cosmopolitan Elite," *New Perspective Quarterly* 33(3), pp.50~58.

2 Jakob Kapeller and Fabio Wolkenstein, 2013, "The grounds of solidarity: From liberty to loyal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6(4), pp.481~482.

당성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의 유럽 경제위기는 유럽연합의 분열을 촉진했고, 영국에 정당하게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였다.

물론 1992년 유럽연합이 창설된 이후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을 통해, 인권규범과 같은 보편적 규범을 통합의 기초로 위치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통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정당성과 동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론가들은 유럽의 통합이 실현되고 지탱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쟁해왔다. 그중에서 종족 민족적 정체성, 공유된 이익, 공유된 정치적 실천이 유럽 정체성의 주요 내용으로 제기되어왔다.

첫째, 연대는 종족 민족적 정체성(ethnonational identity)과 같은 주관적(subjective) 기초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족 민족적 정체성은 친밀성과 상황적 유사성에 기초하는 연대로서,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연대를 구성한다. 둘째, 연대는 인과적 상호의존 혹은 상호취약성에 대한 자각과 같은 객관적(objective) 기초에 기반하여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유된 이해(shared interest)에 기초하여 연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대는 공론장과 정책결정구조에 참여한 경험과 같은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기초에 기반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이는 공유된 정치적 실천(shared political practice)에 기초한 연대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헌법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연대가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버전이다.³

유럽의 연대에 대한 구상안 중에서 하버마스의 구상은 인과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이라는 객관적 기초에 의사소통적 기초를 결합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헌법적 애국주의’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적 연대는 더 이상 태생적이고 본질적인 동일성이 아닌,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성립된 민주적 헌법

3 Nancy Fraser, 2008b, *Scales of Justice*, Polity Press, p.151.

4 Jürgen Habermas,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William Rehg(trans.),

국가는 공동체 내부의 차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민자나 소수자 집단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적 헌법국가는 영토 안에 거주하는 시민이 아닌 사람들 혹은 비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헌법적 애국주의가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을 정치공동체의 완전한 시민으로 포함할 수 있고,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종족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무국적자들을 양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적 애국주의 비전은 너무나 얇은(too thin) ‘우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았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보다 두텁게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주관적 기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문화적 민족주의를 유럽에 확대하여, ‘유럽인’ 혹은 ‘유럽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대교·기독교적 가치’ 정서가 유럽을 하나로 묶는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비유럽인 혹은 무슬림인인 ‘그들’과 대립하는 유럽인인 ‘우리’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⁶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한 세기 전의 배타적·국수주의적 민족주의의 새로운 버전으로서 배타적·국수주의적 유럽중심주의(chauvinistic Eurocentrism)에 대한 주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유럽정체성은 유럽 역사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 즉 숨겨진 전쟁과 수차례에 걸친 대량학살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생겨난 “다시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never again)”는 아이디어에 기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전적인 과거 유럽인인 ‘그들’과 대립되는, 관용적이고 평화주의적인 현재 세속화된 유럽인인 ‘우리’를 상정하는 것이다.⁷ 그

MIT Press, p.308.

5 Jürgen Habermas, 1994, “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my Gutmann(ed.), *Multicultu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07~165.

6 Nancy Fraser, 2008b, op.cit.

7 Ibid.

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할당하기보다는 뭉뚱그려서 과거 유럽인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안에서 역사적 부정의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을 흐려놓을 수 있고,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2. 대안적 연대 패러다임: 감정과 인정 연대

하버마스의 헌법적 애국주의는 유력한 유럽통합의 규범으로 부상하였지만, 너무 얇은 초국적 연대가 구성되기 때문에, 연대를 지탱시킬 동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 결과 보다 두터운 초국적 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1) 도덕적 감정에 기대를 거는 감정적 세계시민주의(sentimental cosmopolitanism) 즉 ‘감정에 기초한 연대(sentiment-based solidarity)’ 접근법과, (2)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이라는 윤리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연대 즉 ‘인정에 기초한 연대(recognition-based solidarity)’ 접근법이 제기되었고, 주목을 받아왔다.⁸

공감(empathy), 연민의 정(sympathy and compassion)과 같이 타인에 대한 감정적 애착은 연대의 기초로 주목받고 있다. 타인의 고통 완화를 목표로 하는 공감은 연대의 온건하고 직관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자연적 조건으로 감정(passion)을 강조한 흄(David Hume)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동료 인간을 도와주고자 하는 감정적 충동과 공감이 연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연대는 대단히 맥락 특수적이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수많은 걸인을 만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까지 그들의 고통을 지나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

8 필자는 감정적 세계시민주의가 도덕적 감정에 주목하여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감정에 기초한 연대(sentiment-based solidarity)’라는 용어로 규정하였으며, 인정의 정치 입장에서의 연대관을 ‘인정에 기초한 연대(recognition-based solidarity)’라는 용어로 규정하였다.

는 개인 상호 간의 공감과 책임에 관한 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⁹ 이와 같은 감정의 강조는 연대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연대를 사적 영역에 국한시킬 수도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사적 영역을 넘어서서 세계시민으로서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유용하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감정적 세계시민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묶어주는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는 인간성에 대한 공감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유감정은 연민(compassion) 감정이라고 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우리는 인정과 관심의 끈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묶여질 수 있다고 한다.¹⁰ 굴드 역시 교차문화적 도덕적 규범의 기초로서 공감 혹은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회적 환경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공감 혹은 연대라는 것이다. 굴드는 현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제한적이고 지방적 수준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감이 적절히 확대되었을 때, 공감은 보편적 인권의 중요한 기초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그리고 감정적 세계시민주의의 주창자들은 연대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누스바움은 교육을 통해, 분노(anger)와 혐오(hatred)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과 교사가 지방적 수준의 집단적 충성심과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문화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¹² 우리가 공유된 인간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은 민족에 대한 애착, 국가에 대한 애착, 자기 이해에 대한 고려 등과 같은 경쟁적 가치보다 세

9 Jakob Kapeller and Fabio Wolkenstein, 2013, op.cit., pp.482~483.

10 Martha Nussbaum, 1998, *Cultivating huma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p.10.

11 Carol Gould, 2007, "Transnational Solidarities,"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8(1), pp.148~164.

12 Martha Nussbaum, 1998, op.cit., pp.65~69.

계시민의 의무를 우선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이러한 공감교육, 즉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지구적 감정의 끈으로 묶여 있다고 교육함으로써 도덕 감정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은 사람들을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자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감정적 애착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이 된다는 논변은, 즉각적인 연대 행위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된 ‘공감’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 자발적·자연적 연대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해왔던 공감 역시 교육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면, 공감에 기초한 연대는 한계가 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에 기초한 연대가 주관성(subjectivity)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라면, 인정에 기초한 연대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기초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에 해당한다. 인정(recognition) 관점에서, 한 인간이 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 인간인 다른 사람에 의해 존중받는 것과 관련된다. 자아의 개념은 상호작용과 상호인정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없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나’는 ‘우리’를 통해서만 구성될 수 있다. 호네틀(Axel Honneth)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경멸(disrespects)에 대항한 도덕적 분노 감정이 바로 사람들을 투쟁하도록 만든다고 한다.¹⁴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이 동일한 정도로 모든 시민에 의해 존중(esteem)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연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주체들이 다양하고 상이한 삶의 방식에 대해 서로를 대칭적으로 존중함으로써, 상호 공감하는 ‘상호작용관계(interactive relationship)’로 이해될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대칭적으로 존중하는 상태란, 타자의 능력과 특성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서로를

13 Graham Long, 2009, “Moral and Sentimental Cosmopolitanis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40(3), pp.330~331.

14 Axel Honneth, 1996,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MIT Press, p.161.

바라보는 상태로서, 이러한 상태는 수동적인 관용 행위가 아닌 타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¹⁵

인정의 부재는 개성의 상실·위해·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대에 의해 묘사될 수 있는 사회는 상이한 형태의 경멸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좋은 삶의 비전을 추구할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다. 그러나 인정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는다. 호네트에 따르면, ‘포스트 전통공동체’는 ‘최소주의’를 특징으로 해야 한다. 최소공동체(minimal community)는 동질적이지 않으며, 그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은 집단 정체성도 공유된 경험의 총합도 아니다. 최소공동체는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 추상적인 가치지평(abstract value horizon)에 의해 통합될 수 있다.¹⁶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비배제적인 연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배제적이고 서로를 경멸하지 않고, 상호 인정하는 것만으로 연대가 구성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 호네트의 인정 연대는 통합과 연대를 가로막는 다른 중요한 정치적·경제적 요인 등을 인정의 개념으로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의 지배와 종속 관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네트의 인정이론에 따르면, 인정은 인간의 자기실현의 보편적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인정의 요구는 수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호네트는 어떤 인정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하는 요구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인정 개념을 통해 신나치주의나 외국인 혐오 주장

15 인정과 관용은 구별된다. 관용은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강력한 배타성을 함의한다. 반면에 상호 관여와 상호 작용을 통한 인정은 관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인정은 ‘타자’ 혹은 ‘다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일부분으로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사회질서로서 포함한다. Rainer Forst, 2012, *The right to justification: Elements of a constructivist theory of jus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6 Axel Honneth, 2007, *Disrespect: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Critical Theory*, Polity Press, p.258.

을 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인정의 요구로 판단할 기준이 부재하다.¹⁷

공감에 기초한 감정적 세계시민주의 접근법과 인정에 기초한 연대 접근법은 모두 인간의 본질적 감정에 기대어 연대와 통합의 정당성과 동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감정적 세계시민주의는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감정적 애착에, 인정 접근법은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경멸을 피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감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 감정에 호소하는 접근 방법은 연대와 통합을 위해 필요한 구조적·제도적 변환으로의 요구가 전면에서 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감정적 세계시민주의와 인정이론은 공유된 인간성에 기초하여 글로벌 연대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수준의 초국적 연대에 정당성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럽연합 혹은 동북아 연대와 같은 초국적 연대의 도덕적 정당성과 현실적인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연대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III. 동북아 연대와 초국적 정의

1. 민주주의가 아닌 초국적 정의(transnational justice, not democracy)

하버마스는 유럽연합 위기의 주원인으로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지목한다. 최근 10년간 유럽연합의 통합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제도적) 민주주의의 심화라고 밝히고 있다. 우선, (1) 유럽연합은 역대 평화유지를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은 준 헤게모니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회원국들 간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한다. (2) 또한 유로존

17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Verso.

내 경제적 불확실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반유대주의와 우익 포퓰리즘, 인종차별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 혐오와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계급 간 경제 격차가 아닌 민족갈등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공동경제존과 단일통화의 창출을 통해 상호 경제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사회경제적 통합체로서 유럽연합의 장밋빛 전망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실패한 아이디어로 간주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사회에서 계급·세대·고용·교육 요인에 의한 경제 격차는 집중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경제 격차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럽연합 수준의 사회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에 주권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하버마스는 유럽연합이 회원국 구성원들이 실제 직면한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EU 의제로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구성원의 피해의식과 타회원국 구성원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게 되었고, 이는 분열과 상호 혐오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EU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유럽 헌법의 공동저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¹⁹ 하버마스는 유럽연합의 민주적 통합을 위해 ‘이중주권(double sovereign)’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은 해당 국가의 시민인 동시에 유럽시민(European citizens)의 지위를 갖으면서, 유럽 헌법의 공동저자(coautho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그렇게 되면, 유럽 의회는 ‘일상적인 입

18 Jürgen Habermas, 2015, “Democracy in Europe: Why the Development of the EU into a Transnational Democracy Is Necessary and How It Is Possible,” *European Law Journal* 21(4), pp.547~550.

19 Ibid., pp.550~553.

20 하버마스의 ‘이중주권’ 구상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구성원들은 유럽연합의 각 회원

법'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유럽 의회는 유럽 사회의 일반 이익에 복무하는 정책 특히 사회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고, 이는 유럽연합의 통합과 연대의 공고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²¹ 이것이 바로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한 유럽연합의 통합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유럽연합의 통합과 연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을 유럽 헌법의 공동저자가 되는 유럽시민으로 포함하는 제도 차원의 민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과 제도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그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상호 신뢰가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연대와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유럽 시민이 참여하는 것만으로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충분치 않다. 연대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삶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이익의 원인되는 구조적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주적 결핍 논쟁이 주로 의회능력과 분화된 정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에, 초국적 정의 논쟁은 인민(people)에 초점을 두며, 권력의 비대칭성 그리고 정의로운 정치적 결과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

국의 시민(national citizens)인 동시에, 유럽시민(European citizens)으로서의 이중지위를 누리면서, 유럽 헌법의 공동저자가 된다면 유럽연합의 정당성 위기가 극복된다는 것이다. Jürgen Habermas, 2015, op.cit., p.554. 하버마스의 이중주권 구상은 이중시민 구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층적 시민 구상으로, 바우벡(Rainer Bauböck)은 유럽연합 내 삼중시민 구상이 있다. 지방·국가·초국적 수준이 상호 연결된 삼중의 시민권 레짐을 제안하고 있다. 바우벡은 회원국가 수준에서의 출생에 기초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지역 수준에서의 거주시민권(residential citizenship), 초국적 수준에서 장기적 거주(long-term residence)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유럽연합시민권(EU citizenship)으로 구성된 다층적 시민권 구상을 제안하면서, 지방 수준, 국가 수준, 지역 수준의 정치적 참여 확대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Rainer Bauböck, 2015, "The Three Levels of Citizenship in the European Union," *Phenomenology and Mind* 8, pp.66~76.

21 Jürgen Habermas, 2015, op.cit., pp.554~557.

라서 유럽연합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통합의 위기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정의(justice, not democracy)’ 개념이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²²

정의의 개념은 국민국가(nation-state)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맥락과 모든 정치적 상황, 그리고 전 지구적 사회구조에 적용될 수 있다. 기존의 유럽연합 정당성에 관한 분석은 주로 심의 민주주의 담론에 의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심의 민주주의 주장들은 민주주의 담론보다는 초국적 정의 담론을 통해 초국적 맥락(post-national context)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다. 원래 국민국가에 초점을 두고 탄생한 민주주의는,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 따라서 민주주의 담론은 주로 의회능력과 분화된 정부에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정의 담론은 인민과 권력 불균형, 그리고 정당한 정치적 결과를 가로막는 방해물의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²³ 따라서 다양한 맥락과 수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규범으로 민주주의보다는 정의 담론이 보다 현실주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정의의 맥락이 오직 ‘경계 지어진 사회’ 혹은 ‘국가’라는 기존의 정의관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간의 지배와 종속 관계, 국가 경계가 양산해내는 부정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경계 지어진 사회’가 유일한 정의의 맥락이라는 전제를 기각한다.²⁴ 대신에 비판적인 현실주의적 지구적 관점(critical realistic global perspective)으로서의 초국적 정의 관점을 주장한다.

현실주의적 지구적 관점이란, 무역·생산·노동·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행

22 Jürgen Neyer, 2010, “Justice, Not Democracy: Legitimacy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Compilation* 48(4), pp.903~904.

23 Ibid.

24 Onora O’Neill, 2000b, *Bound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45.

위자들이 초국적으로 변했다는 사실과 상호관계의 맥락이 지구화되었다는 현실을 기초로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의 맥락을 상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의 모습을 단순히 상호 협력과 상호 의존이라는 상호성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구적 맥락에서의 상호관계를 강압적 협력과 종속의 복합적 체계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의 모습을 ‘일방적이고 거대한 강압적인 협력과 종속의 복합적인 체계’로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국과 빈국 간에 구조적인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다소 고정화된 지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 시스템은 단일한 핵심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안정성과 규칙성을 갖추면서, 그러한 시스템의 작동에 의해 이득을 얻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한다.²⁵ 그리고 비판적인 현실주의의 관점이란, 단순히 실천에 민감한 관점이 아니라 실천이 정당한지에 관심을 갖는 관점이다.²⁶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권력과 지배의 체계(complex and multiple system of power ad domination)’라는 현실을 드러내고 교정을 위한 실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국적 정의 이론은 경제·문화·정치 차원 등 다차원이고 다수준의 불이익(multidimensional and multi-level disadvantages)을 비대칭적인 지배와 종속 관계라는 부정의로 설명하고 교정을 요구하기 위해, ‘지배와 종속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채택한다. ‘지배 혹은 종속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에 서는

25 Rainer Forst, 2001, “Toward a critical theory of transnational justice,” *Metaphilosophy* 32(1/2), pp.160~179.

26 포르스트는 비판적 현실주의(critical realism)와 베이츠·라즈의 현실주의의 정치 이론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베이츠·라즈의 현실주의의 특징인 ‘실천의 내재(immanence to practice)’는 그러한 실천의 정당성 여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 내재적 접근법(practice-immanent approach)이 아닌, 실천 실증주의(practice positivism)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현실주의는 ‘실천 내재적’일 뿐만 아니라, 실천에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Rainer Forst, 2014, “Justice and Democracy in Transnational Contexts: A Critical realists View,” *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81(3), pp.667~676.

경우에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고통과 불이익이 사회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사회구조—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 등—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interconnected)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러한 고통과 불이익을 사회구조와 구조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결과된 ‘종속과 지배 관계’, 즉 부정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와 종속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연대와 통합을 깨는 것이 아닌 ‘초국적 연대’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에 무슬림 이민자가 유입된 역사적 경로를 살펴보면, 이 무슬림 이민자들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럽 제국주의 실천에 의한 피식민지국의 피해자로서 유럽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세기에 탈식민 정책과 민족해방운동을 펼친 결과 식민지 지배가 종식되었지만, 일단 경제적·가족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이상 식민종주국으로의 이주는 계속되어왔다.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 유럽인들은 자신들은 과거 유럽인들이 피식민지국 주민들에게 가한 지배와 억압에 실제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와 억압, 즉 부정의를 교정할 책임은 직접적인 지배 행위나 억압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과거의 지배와 억압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이익을 향유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과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관점’을 채택한다면, 자연스럽게 유럽 각국의 사람들과 무슬림 이민자는 함께 살아가야 하고(living together), 서로에게 정의의 의무가 있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보수주의적 민족주의 입장의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 초래된 브렉시트와 같은 사건 역시 ‘지배와 종속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에 기초하는 경우, 다른 결과가 가능해진다. 영국의 가난한 보통 사람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자신들의 경제적 고통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보통 사람들이 처한 경제적 고통은 그리스의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한 경제적 고통의 급증은 현재 영국

을 포함한 전 세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으로, 20세기 후반부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경제적 통합으로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고통이라는 지배와 억압을 겪는 영국 보통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대상은 유럽의 빈국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강대국 정부 관료 및 정치인들, 다국적 기업, 지구적 경제조직, 약탈적이고 부패한 빈국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 그리고 토착지방기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브렉시트가 아니라 ‘약탈적인 경제 질서’로 이익을 얻는 개인과 단체·조직·정부에 대항하고 부정의에 대한 교정의 책임을 이끌어낼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국적 저항 연대’의 성립일 것이다.

이와 같이 초국적 정의의 관점은 지금까지 정의 논쟁에서 간과되어왔던 정의의 범위 문제를 메타정의의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다.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와 정의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의 범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있는 행위자—개인·조직·국제기구·정부 등—는 정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공통의 ‘거버넌스 구조에 종속(subjection to structure of governance)’을, 포르스트는 ‘정당화 관계(justification relationship)’를 정의의 범위로 주장하고 있다.

프레이저는 정의의 범위를 확정하는 원칙으로 ‘종속된 사람들의 포함 원칙(all-subjected principle)’을 제안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일정한 ‘거버넌스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구조적 제도와의 관계에서 정의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즉 일단의 사람들은 관련된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거버넌스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에 기초하여 평등한 고려를 요구할 자격이 생겨난다. 거버넌스 구조는 국민국가(영토국가)의 틀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상호작용을 구조 짓는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비정부조직까지 포함하게 된다. ‘종속된 사람들의 포함 원칙’은 국민국가라는 틀을 전 지구적 틀로 대체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이슈에 적합한 다양한 수준의 틀을 설정

한다.²⁷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누가 정의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정의의 책임을 져야 하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의 범위는 ‘국경’에 의해 한정될 수 없으며, 종속과 지배의 관계라는 기준에 의해 다양화—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 등—될 수 있게 된다.

포르스트는 정의의 범위를 확정하는 원칙으로 ‘정당화 원칙(principle of justification)’을 제안하고 있다. 정의의 맥락(context)은 특수한 정당화와 책임의 맥락이라는 것이다. 특수한 정당화의 맥락에서 모든 기본적인 사회적·정치적 관계는 관련된 방식으로 모든 영향을 받는 사람들(all-affected)에게 상호적이고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맥락에서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beyond justification)’ 사회적 관계는 하나도 없으며, 당연하다거나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제도·규칙·관습 역시도 정당화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²⁸ 포르스트가 말하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 혹은 ‘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르스트가 제안하는 정의의 범위는 상호성과 일반성 규범에 기초한 정당화가 필요한 다양하고 상이한 수준—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레이저와 포르스트와 같은 초국적 정의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정의의 범위를 확정하는 원칙들에 따라, ‘종속과 지배 관계’라는 지위 혹은 관계 불평등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든 수준을 횡단하며 정의의 연대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국적 정의이론은 어떤 관계가 ‘종속과 지배 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정의의 요구가 정당한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초국적 정의이론은 ‘종속과 지배 관계’라는 사회구조적 부정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평등한 관계(equal relations)’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프레이저가 제시하는 ‘참여의 평등(parity of participation)’ 규범은 “사회의 모든

27 Nancy Fraser, 2008b, op.cit., pp.64~66.

28 Rainer Forst, 2001, op.cit., pp.160~179.

구성원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평등한 동료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서, ‘평등한 사회적 상호작용(equal social interaction)’ 즉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포르스트의 ‘정당화 권리(right to justification)’ 정의 규범도 “모든 사회적 관계는 관련된 방식으로 모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호적이고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정치적 자율성, 즉 ‘평등한 도덕적·정치적 관계(equal moral-political relations)’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프레이저와 포르스트 같은 초국적 정의이론가들은 ‘평등한 관계’를 정의의 목표로 지향하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프레이저의 ‘참여의 평등’ 원칙은 모든 주요한 사회 현실과 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관계) 분야에 적용되어, 참여의 평등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권력의 변환을 주창한다. 프레이저는 정의의 세 가지 차원—경제·문화·정치 혹은 재분배·인정·대표—은 각각이 근본적이고 환원할 수 없는 사회 권력의 차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차원에서 독특한 유형의 종속형태와 부정의—불균형분배·비인정·비대표—를 발생시킴으로써 참여의 평등, 즉 ‘평등한 지위관계’를 가로막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사회구조를 변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회 구성원들의 독립이라는 ‘객관적(경제적) 조건(objective condition)’을 약화시키는 박탈, 착취, 부·소득·노동·여가 시간의 불평등이라는 ‘불균형분배(maldistribution)’가 있을 경우, 경제적 배열의 전환이 요구된다. (2) 평등한 존중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기회의 평등이라는 ‘간주관적(문화적) 조건(intersubjective condition)’을 침해하는 경멸, 문화적 지배 등과 같은 ‘비인정(misrecognition or nonrecognition)’이 발생하는 경우, 문화적 배열의 전환이 요구된다. (3) 평등한 목소리의 보장이라는 ‘정치적 조건(political condition)’을 침해하는 ‘비대표(misrepresentation)’가 발생한 경우, 정책 결정 과정 구조

와 틀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²⁹ 프레이저의 ‘참여의 평등’ 규범은 다양한 불이익과 고통을 부정의로 판단하고, 정의의 요구들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의로운 사회구조’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좋은 삶’ 혹은 ‘좋은 사회’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삶과 사회의 윤곽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포르스트의 ‘정당화 원칙’ 역시 정의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종속과 지배를 부정의로 설명하고, 각 차원에서의 ‘정의로운 사회구조’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포르스트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관계가 ‘정당화 원칙’이라는 테스트 법칙³⁰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도덕·관습·법·경제·문화·정치적 차원은 검증의 대상이 되며,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르스트는 정당한 사회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단계

29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Verso; Nancy Fraser, 2008a, “Prioritizing Justice as Participatory Parity: A Reply to Kompridis and Forst,” Kevin Olson(ed.), *Adding Insult to Injury: Nancy Fraser Debates Her Critics*, Verso; 2008b, *Scales of Justice*, Polity Press,

30 포르스트는 ‘정당화(justification)’ 규범을 다양한 지배를 판단하는 일원적 규범으로 제시한다. 정당화 원칙이란 모든 사회적 관계는 관련된 방식으로 모든 영향을 받는 사람들(all-affected)에게 상호적이고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성(reciprocity)은 관련된 어떤 부분(개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거부된 어떤 권리 혹은 특권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의 타당성과 힘은 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성(generality)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정당화를 요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정당화가 필요 없는 사회적 관계는 없으며, 모든 제도·규칙·관습이 정당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화의 권리는 정의의 다양한 측면—윤리·법·정치·도덕—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내 정의 맥락과 지구적 정의 맥락에서도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정당한 국내적 기본구조와 정당한 초국적 기본구조의 핵심에 정당화의 권리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Rainer Forst, 2001, “Toward a critical theory of transnational justice,” *Metaphilosophy* 32(1/2), pp.160~179; Rainer Forst, 2012, *The right to justification: Elements of a constructivist theory of jus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적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포르스트는 근본적 혹은 최소정의(fundamental or minimal justice)와 최대정의(maximal justice)를 구별하고 있다. 최소정의는 정치적 차원에서 정당화의 권리(개인의 자유권, 정치적 참여권, 제반 권리들의 효과적 사용권 등)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 권리와 제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의로운 담화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최소정의에 의해 확립된 정의로운 담화구조에서 경제체계, 법체계, 교육체계 등에 관한 논쟁의 결과 최대정의를 도출된다. 최소정의는 정의로운 담론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오직 정치적·사회적 평등의 문턱만을 수립하게 되고, 정의로운 담론구조 하에서 정당화 논쟁을 통해 완벽히 정당한 기본구조가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의 평등’ 원칙과 ‘정당화 원칙’과 같은 초국적 정의 원칙의 핵심 내용은 ‘지위 혹은 관계의 평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fact of reasonable pluralism)’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국적 정의 원칙은 ‘교차문화적 규범’으로서 보편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상이한 수준과 맥락을 정의의 범위로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정의의 틀에서 도출된 정의논쟁의 결과는 상이한 문화적 특수성에도 민감한(diversity-sensitive)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논쟁의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의의 책임을 부과하고 실행시키는 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실제 논쟁 과정에 자신의 입장, 목소리, 이해가 평등하게 반영되었다면, 이들 간에는 정의의 의무를 실천하고 연대할 강력한 동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이 강력한 연대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초국적 정의의 원칙이 ‘심의 과정의 민주화’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정의 관점은 정의로운(정치·경제·문화) 기본구조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 민주적 대화 방식을 채택한다. 프레이저는 정의의 내용과 범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대화 과정에서 대화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전달되고 경청될 수 있는 실질적인 담화구조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³¹ 그러한 심의상황에서 도출된 결과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써 ‘지위 평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다. 정의의 주체가 평등한 동료로서 주장을 교환하는 심의 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포르스트 역시 완벽히 정당한 기본구조의 확립이라는 최대정의(maximal justice)의 목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담화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정의로운 담화구조라는 근본적인 최소정의(fundamental minimal justice)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화 권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당화 원칙에 따라 모든 사회적 관계는 관련된 방식으로 모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호적이고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사회적 관계는 하나도 없으며, 당연하거나 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제도·규칙·관습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화 관계에 있는 지배를 바로 잡는 과정이 바로 ‘민주화’이다. 따라서 정의의 실천으로서 민주주의는 항상 민주화, 즉 정당화 권력 혹은 더 좋은 주장을 할 수 있는 힘(justificatory power or the force towards the better argument)을 확대하고 평등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의의 문제, 정확히 말해서 정치 영역에서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³²

2. 초국적 정의에 기초한 동북아 연대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1) 다차원·다수준의 지배와 종속을 겪는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유형과 차원의 복합적인 지배와 종속을 부정적으로 입을 수 있고, (2)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 등—의 수많은 ‘정의연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정의의 범위를 만들어냄으로써, 각기 다른 정의의 요구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로 구성된 정의의 틀을 맥락 특수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따

31 Nancy Fraser, 2008a, op.cit., p.338.

32 Rainer Forst, 2014, op.cit., p.680.

라서 정의의 논쟁에서 간과되어왔던 많은 주제들을 논제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그리고 초국적 정의 규범은 ‘사회적 지위 혹은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현실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의 논쟁의 과정 자체의 민주화, 즉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목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동북아 맥락에서도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연대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어온 기초들—경제적 상호 이득, 공유된 정치적 실천, 문화적 정체성, 공유된 인간성—은 초국적 갈등과 불신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양차대전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사회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한 반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평화 및 질서의 유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동인식이 자리 잡았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통합은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럽연합의 기본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 ‘중속과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관점’이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통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가 핵심 의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논의 과정에서도 소수 엘리트집단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왔다. 따라서 평등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책임이 부과되는 연대의 의무를 지키겠는가.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 과정은 의제 내용과 절차 면에서 배제적이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로 인해 유럽연합의 연대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반목의 역사가 치유될 계기를 가진 적이 없었다. 여전히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고통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으며,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역사적 숙제를 미뤄둔 채, 어떤 때는 경제협력과 안보 협력을 또 다른 때는 역사전쟁과 영토분쟁, 안보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초국적 연대는 필요한가, 그리고 가능한가 하는 의

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반성과 책임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동북아 연대 구성을 미뤄둘 수 있는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그리고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오히려 동북아 연대를 구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핵심적 가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북아 연대를 구성하는 규범은 개인 수준과 사회 수준의 문화적 다양성에 민감한 보편규범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역내 현실은 문화적 민족주의 혹은 자문화 우월주의 담론이 국내적·지역적 수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는 보수화에 따른 민족주의적 경향의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중화 민족주의가 부활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과거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기인한 배타성이 잔존하는³³ 동시에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 세력들이 과거와는 달리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구성하여 국내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베 정권 집권 이후, 경제와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평화헌법 9조 등 일본의 자학사관을 수정하는 역사수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만들기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 개헌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후로부터 일본이 새로운 자주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현상은 현실정치나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강한 국가 일본의 정책들을 수행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진행되는 역사수정주의의 흐름은 향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지역통합이나 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33 한승완, 2006, 「동북아 시민사회와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 『사회와 철학』 11호, 251쪽.

있다.³⁴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이나 애국주의 교육, 애국주의적 역사 교과서 서술, 중국 고대사의 복원, 스포츠 경기에서 보이는 국민들의 과열된 모습 등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애국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에게 강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외부의 평가는 주로 중국의 애국주의를 19세기 이후 잃었던 강대국의 꿈이 부활하여 나타난 문화적 우월주의로서의 '신중화주의'로 보는 입장과, 문화우월주의를 넘어서 '중화패권주의'를 추구한다는 입장으로 모아져 있다.³⁵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일부 정치세력들은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저항적 민족주의 입장이 강고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점차 배타성을 특징으로 한 민족주의적 수사와 행위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독도 방문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한편, 국민 분열과 민족 분열을 막고 국가를 통합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국정교과서 채택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동북아 각국은 경제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족문화의 발전, 즉 문화적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각국의 보수적 정치인들은 경제 격차의 심화를 은폐하고 불안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봉합하기 위해,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 사회는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도, 정치적 이해에 기초하여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간의 경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각 사회의 개인 혹은 집단은 연대와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규범적 공감대와 상호 신뢰가 결핍되었다고 볼 수 있다.

34 이종국, 2016, 「일본 보수정치인들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51호, 209~236쪽.

35 김희교, 2006, 「중국 애국주의의 실체: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75호, 305~306쪽.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동북아 공동체 구상이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등장한 동북아 공동체 담론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거칠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안보적·경제적 상호이익(mutual benefits)에 기초한 경제공동체 담론과 안보공동체 담론이 있다. 둘째,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cultural commonality)에 기초한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이 있다. 유교자본주의, 동아시아 자본주의, 유교 민주주의, 동아시아 민주주의 담론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은 동아시아의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역동적 사회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구성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특히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동아시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대안적인 체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사유된다.³⁶

이러한 공동체 담론들 중에서 상호이익에 기초한 연대 담론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면 연대의 동기도 쉽게 사라지는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며, 문화적 공통성에 기초한 공동체 담론은 비현실적인 문화적 본질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안체제 담론은 유의미한 저항 담론의 사회적 구성을 기획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 담론의 계기를 ‘동아시아적인 것의 특수성’에서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체제’를 발견하고자 시도한다.³⁷ 동아시아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동적인 개념이다. 동아시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실천과제가 필요하며, 그 실천과제는 ‘공생사회 구현’이다. 즉 ‘공생사회 구현’이라는 실천과제를 통해 동아시아 개념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 개념은 다시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공생(더불어 사는 삶)은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의 연결을 모색하는 시도이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공생은 공고(共苦,

36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에 대한 구분은 박승우, 2011,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1권 1호 참조.

37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즉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감당해야지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이러한 동아시아 대안체제 담론은 매우 유동적이며 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실천과제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비정부행위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 담론은 차이의 인정에 기초한 공생을 연대규범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생 규범이 두터운 연대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대안체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동아시아가 더 나아가 지구 수준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이 정체성 형성의 기본 관점과 비종파적 규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두터운 연대의 동기를 형성하고, 또한 다양한 수준의 연대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동북아 지역의 행위자들에게 (다양한) ‘우리’라는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지배와 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는 공동인식일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불리한 상황은 초국화된 지배와 종속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국적인 연대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배와 종속을 겪는 사람들의 관점’에 기초하여,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혹은 지위’를 결과하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구조적 배열의 전환을 주창하는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보편타당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민감하고, 다양한 수준의 연대를 이끌 수 있는 대안 규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지배와 종속을 겪는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전에는 구조적 부정의로 이해될 수 없었던 많은 이슈들을 부정의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며, 이러한 부정의로 인해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직간접적 혹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익을 얻은 행위자들에게 정의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 또한 초국적 정의 규범에 따르면, 동북아 지

38 백영서, 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창작과비평사.

역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초국적 연대와 협력 공동체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동북아 연대의 출발점은, 다양한 차원의 불이익을 지배와 종속이라는 구조적 부정의로 확인하고 그 해결 방법은 논의하는 초국적인 민주적 담론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다. 동북아 연대는 주장과 반주장을 평등한 동료로서 교환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서, 즉 ‘동북아 수준의 기본적 담화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동북아 수준의 담화구조라는 아이디어는 동북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동북아 수준에서 발생된 초국적 지배와 종속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의의 요구자와 책임자로 담화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진행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 간의 합의 과정과 결과는 국내적·국제적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더 큰 갈등과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다.³⁹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 논쟁이 촉발된 것이다. 한·일 정부 간 합의가 발표된 이후, 한국 사회, 일본 사회, 국제 사회 안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다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합의된 결과가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는 의견에서부터, 매춘부에게 무슨 배상이냐는 모욕적 발언,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되었다는 비판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하여 가장 잘못된 부분은 바로 ‘관련 당사자인 위안부 자신들’이 논의와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종속과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은 체계적으로 자행된 부정의가 아닌, 의도치 않게 초래된 개인적 고통과 상처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합의 결과 역시 일본군‘위안부’ 지원을 위한 한국 재단에 일본 정부가 기금을 출연

39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에서 국가 간 ‘합의’되었다. 양국은 ‘위안부 타결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을 밝히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의도치 않은 개인적 고통과 상처에 대한 온정적 위로금이 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정부 간의 공동합의라는 이벤트는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고, 합의 이전보다 더 깊은 분노와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 내 연대와 협력의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필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초국적 연대와 협력의 대안적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바로 ‘종속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관점’ 즉 초국적 정의의 관점이 동북아 지역의 초국적 저항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초국적인 민주적 담론구조의 확립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 구조 하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종속의 당사자인 분들이 일차적으로 포함되고, 그러한 자의적 지배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일본 민간기업, 일본 군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군‘위안부’를 모집한 한국 조직 등이 모두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도출된 결과만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참여자가 자신의 행위와 주장을 다른 행위자에게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부정의한 것이며 적실한 정의의 책임이 할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논의의 결과는 초국적 정의의 핵심 원칙인 ‘지위 혹은 관계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실한 결과물로서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범위는 최대 피해국인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 넘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 사회의 행위자들 간의 논의와 합의의 산물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초국적 틀이 아닌, 전 세계에 걸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직간접적 이익을 얻은 행위자 전부를 포함시키는 민주적 논쟁의 틀이 적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초국적 정의의 틀을 구성하여, 피해자의 목소리와 관점이 논의 과정에 평등하게 포함된다면, 일

본군‘위안부’가 당한 피해는 단순히 일본군이 한국 여성을 성노예로 취급한 사건으로 읽혀지지 않을 것이다. 즉,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지배와 종속이 교차하고 있는 복합적인 부정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각국의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계층의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심층에는 젠더 차이, 계급 차이, 국적 차이 등과 같은 상이한 차이들이 교차해 있는, 남성-여성, 부자-빈자, 일본-식민지국 간의 지배와 종속 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초국적 부정의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저항의 틀은 바로 초국적 정의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국적 정의의 패러다임에 따라, 초국적 부정의에 대한 의제 설정과 해결을 위한 초국적 저항 연대의 구성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포함한 관련 행위자와 사회구조가 자행한 ‘인간의 평등한 관계성’의 부정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한 관계성이 부정될 때 그 피해는 주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바로 ‘피식민지국의 가난한 소녀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 전 지구적 수준에서 인신매매와 성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국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를 초국적 의제로서 설정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초국적 정의 연대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동북아 지역의 초국적 연대와 협력은 가능한가? 최근 브렉시트 사건을 통해 보이는 유럽통합과 연대의 어두운 전망은 동북아 연대와 협력의 기대를 더욱 낮추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지구적 수준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초국적 연대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기존 연대의 기초적 규범—정치적·경제적 상호 이득, 문화적 동질성 등—은 더 이상 지속적인 연대를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대안적인 연대의 규범과 가치들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 수준의 초국적 연대의 역사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대 가치를 분석하는 데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역사적으로 유럽연합은 경제적 상호 이득이라는 기능적 가치를 기초로 한 경제통합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정치적 통합체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통합체로서의 유럽연합은 통합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범 가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본다. 인권 규범이나 다양성 가치를 유럽연합의 보편 규범으로 위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경제적 상호 이득에 기초한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이 유럽 각국의 경제위기 상황마다 증명되었고, 유럽연합은 여전히 ‘정당성의 위기’와 ‘연대 동기의 결핍’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연대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담론들이 제출되어왔다.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버마스와 같은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제도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주장하였고, 보다 두터운 동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적·문화적 유럽정체성 담론, 공감 담론과 인정 담론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들은 연대의 위기의 원인이 구조적 불평등과 종속의 심화와 확대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조적 지배와 종속을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부정의를 교정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전환이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임을 주창하는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초국적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지배와 종속을 겪는 사람들’의 관점(standpoint)을 채택하기 때문에, 현실의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불이익을 사회구조적 부정의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전환을 정당화한다. 또한 ‘지배와 종속을 겪는 사람들’의 관점에 기초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수준, 즉 지방 수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지

구 수준 등의 수많은 정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수많은 정의의 의제를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의를 비판하고 교정하기 위한 가치공동체, 즉 정의공동체가 어떠한 맥락과 수준에서든지 형성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다면, 동북아 연대 혹은 동아시아 연대를 구성하는 것은 실현가능해진다. 특정한 사회구조적 부정의와 관련된 개인·조직·집단·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은 정의의 요구와 책임을 논쟁하고 결정하는 정의의 논쟁의 평등한 참여자로 정의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동북아 연대 혹은 공동체는 단일하고 정태적·고정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수의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구성되는 정의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연대공동체는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정의의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서 기능함으로써 협력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기봉, 2013, 「한국 역사학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 『동북아역사논총』 40호.
- 김희교, 2006, 「중국 애국주의의 실체: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75호.
- 박승우, 2011,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1권 1호.
- 백영서 외, 1995,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 백영서, 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창작과비평사.
- 신기영, 2016,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어서」, 『일본비평』 15호.
- 유희성, 2006, 「중화주의는 과연 패권적인가?」, 『사회와 철학』 11호.
- 윤희탁, 2006,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 이상익, 2008, 「조선시대 중화주의의 두 흐름」, 『한국철학논집』 24권.
- 이종국, 2016, 「일본 보수정치인들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51호.
- 장현근, 2011, 「한국에서 대중국관념의 변화: 중화주의, 소중화주의, 탈중화주의」, 『아태연구』 18권 2호.
- 정재연, 2016, 「동아시아 사회에서 탈국가적 정치공동체의 형성 가능성」, 『법철학연구』 19권 1호.
- 한승완, 2006, 「동북아 시민사회와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 『사회와 철학』 11호.
- Axel Honneth, 1996,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MIT Press.
- Axel Honneth, 2007, *Disrespect: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Critical Theory*, Polity Press.
- Carol Gould, 2007, “Transnational Solidarities,”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8(1).

- Craig Calhoun, 2016, "Brexit Is a Mutiny Against the Cosmopolitan Elite," *New Perspective Quarterly* 33(3).
- Floris Witte, 2012, "Transnational Solidarity and the Mediation of Conflicts of Justice in Europe," *European Law Journal* 18(5).
- Forst, Rainer, 2012, *The right to justification: Elements of a constructivist theory of jus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aham Long, 2009, "Moral and Sentimental Cosmopolitanis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40(3).
- Jakob Kapeller and Fabio Wolkenstein, 2013, "The grounds of solidarity: From liberty to loyal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6(4).
- Jeffrey Flynn, 2009, "Human Rights, Transnational Solidarity, and Duties to the Global Poor," *Constellations* 16(1).
- Jürgen Habermas, 1994, "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my Gutmann(ed.), *Multicultu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ürgen Habermas,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William Rehg(trans.), MIT Press.
- Jürgen Habermas, 2015, "Democracy in Europe: Why the Development of the EU into a Transnational Democracy Is Necessary and How It Is Possible," *European Law Journal* 21(4).
- Jürgen Neyer, 2010, "Justice, Not Democracy: Legitimacy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Compilation* 48(4).
- Martha Nussbaum, 1998, *Cultivating huma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Verso.
- Nancy Fraser, 2007, "Identity, Exclusion, and Critiqu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6(3).
- Nancy Fraser, 2008a, "Prioritizing Justice as Participatory Parity: A Reply to Kompridis and Forst," Kevin Olson(ed.), *Adding Insult to Injury: Nancy Fraser Debates Her Critics*, Verso.
- Nancy Fraser, 2008b, *Scales of Justice*, Polity Press.

- Onora O'Neill, 2000a, "Bounded and cosmopolitan justi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5).
- Onora O'Neill, 2000b, *Bound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iner Bauböck, 2015, "The Three Levels of Citizenship in the European Union," *Phenomenology and Mind* 8.
- Rainer Forst, 2001, "Toward a critical theory of transnational justice," *Metaphilosophy* 32(1/2).
- Rainer Forst, 2007, "*First Things First: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Justific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6(3).
- Rainer Forst, 2011, "Transnational Justice and Democracy," *Normative Orders Working Paper*.
- Rainer Forst, 2014, "Justice and Democracy in Transnational Contexts: A Critical realists View," *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81(3).
- Søren Juul, 2010, "Solidarity and Social Cohesion in Late Modernity: A Question of Recognition, Justice and Judgement in Situ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3(2).

동북아 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 구성 -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백미연

이 글은 동북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인 연대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역 수준의 초국적 연대로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대 가치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기존 연대의 기초적 규범—정치적·경제적 상호 이익, 문화적 동질성—으로는 지속성 있는 연대 창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의 민주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대안 담론 역시 두터운 연대의 동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필자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북아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1) 다차원·다수준의 지배와 종속을 겪는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유형과 차원의 복합적인 지배와 종속을 부정의로 읽을 수 있고, (2)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 등—의 수많은 각기 다른 정의의 요구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로 구성된 ‘정의연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의

의 논쟁에서 간과되어왔던 많은 주제들을 논제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그리고 초국적 정의 규범은 ‘사회적 지위 혹은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목표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현실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의논쟁 과정 자체의 ‘민주화’, 즉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목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다면, 동북아 연대 혹은 동아시아 연대를 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해진다. 동북아 연대 혹은 공동체는 단일하고 정태적·고정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수의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구성되는 정의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연대공동체는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정의의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서 기능함으로써 협력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주제어: 동북아 연대, 초국적 정의,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 사회적 지위의 평등, 평등한 목소리

ABSTRACT

The Construction of Paradigm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Transnational Justice Paradigm

Baik Miyoun

This paper aims at constructing an alternative solidarity paradigm that can lead to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and solidar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tarts with analyzing the specific solidarity values centering on the EU case as a transnational solidarity at the regional level.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 argue that the basic norms of existing solidarity—political, economic mutual benefit, cultural commonality—do not necessarily create sustainable solidarity. Furthermore, an alternative discourse of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is the deepening of institutional democracy, also has difficulties in providing motivation for a solidarity. Therefore, I propose a transnational justice paradigm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constructing a realistic and sustainable Northeast Asian solidarity.

The transnational justice paradigm (1) understands dominations

and subordinations of various types and dimensions as injustice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disadvantaged who undergo multidimensional – multilevel dominations and subordinations. (2) Adopting ‘standpoint of the disadvantaged, it forms numerous justice solidarity communities’ composed of different subjects of the demands and responsibilities of justices in various levels – local, national, regional, global levels.

(3) The transnational justice is aimed at ‘equality of social status or social relation’,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a norm to obtain ‘cross-cultural’ and universal validity. Moreover, since it emphasizes the ‘democratization’ of the process of justice debate, that is, the equal voice and influence of everyone subjected to the governance structure(s), it can provide a strong motive for solidarity. Based on transnational justice paradigm, Northeast Asian solidarities or East Asian solidarities are plausible. The Northeast Asian solidarity or community is not a single, static, fixed community, but rather that of fluid, ever-changing, This Northeast Asian solidarity community will be able to create cooperation and peace, functioning as a community that constantly engages in democratic dialogue and responsibility for justice.

Keywords: Northeast Asian solidarity, transnational justice, standpoint of the disadvantaged, equality of social status, equal voice

서평

버터차에서 피어난 생태환경사적 상상력 - 『동유라시아 생태환경사』(우에다 마코

토 지음, 임성모 옮김, 2016, 어문학사)

백선례 |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 수료



우에다 마코토의 『동유라시아 생태환경사』는 제목부터 ‘동유라시아’와 ‘생태환경사’라는 다소 생소한 두 단어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동유라시아’는 무엇이며 ‘생태환경사’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편, ‘동유라시아’라는 생소한 공간에 대해, ‘생태환경사’라는 생소한 방법론에 대해 장벽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창하고 다소 무거워 보이는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 책을 읽어 보면, 보론까지 합해도 160쪽 정도의 많지 않은 분량에, 학술서라기보다는 일반 독자를 위한 대중서 느낌이 있으며, 중간 중간 지역답사기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동유라시아’나 ‘생태환경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하거나 심원한 논리 전개를 기대했다면, 오히려 두 개념에 대한 맛보기에만 그친 것 같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의 문제의식이나 서술 내용이 깊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을 대중적인 글쓰기로 풀어내는 저자의 역량을 보여준다.

저자 우에다 마코토는 이미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생태환경사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 왔으며, 동유라시아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저자는 『숲과 나무의 중국사』(1999, 이와나미쇼텐)를 통해 생태환경사라는 방법론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며, 이후 『호랑이가 말하는 중국사』(2002, 아마카와출판사)에서는 인간이 아닌 멸종 위기에 처한 ‘아모이 호랑이’를 서술자로 내세워 새로운 방식의 중국사 서술을 시도하면서 생태환경사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2005년 출간된 『바다의 제국』(2005, 고단샤)에서는 처음 ‘동유라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동아시아라는 틀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몽골 고원과 인도차이나 반도, 시베리아 고원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간을 상정하였다. 이후 ‘동유라시아’라는 인식 틀의 기반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해역 신기루 왕국의 흥망』(2013, 고단샤) 및 『화폐의 조건』(2016, 지쿠샤쇼보)을 출간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의 가장 최근 성과는 아니지만 저

자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인 ‘생태환경사’와 ‘동유라시아’를 동시에 내세운 중요한 교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은 동유라시아가 무엇이며 생태환경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창한 설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티베트족 가정 방문기에서 시작한다. 티베트족의 거주 공간을 설명하면서 노파에게 대접받은 한 잔의 버터차에서 동유라시아의 생태환경사라는 거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즉, 티베트족 노파가 손님에게 한 잔의 버터차를 대접하기 위해 필요한 차잎, 소금, 버터, 그리고 구리 주전자 중에, 집에서 직접 만든 버터를 제외한 각 물품들이 어떻게 생산되어 어떻게 이 티베트족 가정까지 흘러들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 시작이다.

첫 번째 물품(책의 1장)은 차다. 티베트인이 즐겨 마시는 차의 주산지는 윈난(雲南) 남서부로, 차는 윈난 남부에서 차마고도를 거쳐 티베트 고원으로 흘러들어 왔다. 북방민족의 압박으로 서북 초원에서 나는 군마를 손에 넣기 힘들어진 송 왕조가 티베트족에게서 말을 공급받기 위해 교역품으로 보냈던 것이 차잎이며, 이때 차와 말을 교역하던 루트가 차마고도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마고도의 기원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지만, 저자가 이러한 차마고도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각각의 생태환경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물산을 서로 보충하기 위해서 원격지를 잇는 장대한 교역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차마고도는 “생태환경의 차이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교역로”였다(45쪽).

두 번째 물품(책의 2장)은 소금으로, 윈난 최대의 제염장인 윈난성 중부 헤이징진(黑井鎭)의 소금이 주인공이다. 중국은 광대한 국토에 비해 제염지가 한정적이었고, 그에 비해 소금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소금 생산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시작되었다. 국가에 의한 소금전매제는 한 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저자는 이렇게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제도화된 물산의 생산과 교역이 생태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소금전매제 하에서는 각 제염장마다 생산되는 소금의 양과 소금이 공급될 지역이 지정되었다.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땀감용 나무가 반드시 필요한

데, 전매제 하에서 일정한 양의 소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주변 산림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광범위한 지역의 산림을 파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찻잎의 경우 단순히 생태환경의 차이에 근거해 교역이 시작되었다면, 소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생산지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가가 관리했고, 이렇게 “제도에 구속된 물산의 생산과 교역”은 주변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끼쳐 자연 풍경을 변화시켰다(67쪽).

세 번째 물품(책의 3장)은 구리 주전자에 사용되는 구리다. 원난은 구리 산지로도 유명하여 구리 채굴의 역사도 오래되었는데, 청대, 특히 18세기에 구리 생산의 전성기를 맞았다. 청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부터 지역 경제의 진흥에 노력하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교환수단으로서의 동전이였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민간에 광산 경영을 맡겼으나 점점 동전 밀조를 통해 사적 이익 추구가 늘어나자 청조는 방본수동(放本收銅) 정책을 통해 구리 채굴 및 동전 제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저자는 청조가 이렇게 방본수동 정책을 통해 구리 채굴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일본과의 교역으로 충분한 구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정부의 간섭으로 중국 국내의 동광산 경영이 다소 쇠퇴하더라도 부족분은 일본산 구리로 보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가 되면 일본 역시 국내의 사정으로 교역물품을 구리에서 해산물로 바뀌어나가는 정책[쇼토쿠신례(正徳新例), 1715]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이에 청조는 다시 동광산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다시 원난에서의 구리 생산은 활발해졌고, 구리를 채굴하고 제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산림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구리를 둘러싼 국제 무역이 생태환경의 변화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다(95쪽).

더 나아가 저자는 구리의 교역이 끼친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수공통감염증, 그중에서도 페스트를 언급하고 있다. 가경대역(嘉慶大疫)이라 불릴 정도의 대규모 페스트가 구리 교역 루트를 따라 퍼져나갔던 것이다. 이는 동광산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로 동물이 인간의 서식지로 들어왔거나, 구리 생산을 위해 더 많

은 노동자가 산으로 들어갔거나,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며, 이 역시 구리 생산이 인간의 생태환경에 끼친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이었다.

이렇게 한 잔의 버터차에서 시작된 저자의 의문은 생태환경의 차이로 인한 차 교역, 한정된 생산지로 인해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는 소금 교역, 국제무역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끼치는 구리 교역에 이르기까지 점점 범위를 넓혀나감에 따라, 마지막 장에서는 드디어 동유라시아는 무엇이며 생태환경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에 다다른다. 저자는 환경의 차이, 국가 권력의 통제, 국제무역환경이라는 다양한 층위를 통해 교역이 생태환경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로 독자를 안내하는 것이다.

저자는 원난의 다리(大理)라는 도시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교역로를 보면서, 티베트 고원을 지나 몽골 고원, 중국의 강남 지방을 지나 일본 열도, 타이와 베트남, 미얀마와 인도를 아우르는 넓은 공간을 그려 낼 수 있었고, 이러한 공간을 ‘동유라시아’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넓은 공간을 아우르는 만큼 기후와 생태환경과 그 안에서의 생산 활동이 제각기 달랐던 동유라시아가 통합성을 갖춘 역사적 무대가 된 시기는 쿠빌라이의 원정에 의해 몽골 고원과 원난이 연결된 1253년으로 보았다. 이후 동유라시아는 원 왕조를 거치면서 다양한 생태환경을 잇는 교역이 활성화되었고, 15세기 후반~17세기 중국의 물산을 축으로 하는 ‘상업의 시대’를 거치면서 각지의 생태환경은 커다란 격변을 겪었으며, 18~19세기 ‘산업의 시대’를 거치면서 또 다시 그 근처에서부터 생태환경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업의 시대, 산업의 시대 등을 거치면서 인간 삶의 모습뿐 아니라 인간 사회를 둘러싼 생태환경 역시 어떻게 변화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관점이 생태환경사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기존의 환경사가 여전히 인간과 자연을 구분 짓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생태환경사는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에 주목하여 생태계라 불리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영위를 응시하려는 시도”라

고 보았다(123쪽). 그러나 이미 상업의 시대나 산업의 시대라는 구분 자체가 인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이 책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 그러한 활동이 생태환경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측면이 있다. 즉 자연의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기보다는 인간사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생태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끼친 영향이 가장 큰 생물이 인간인 만큼, 아직은 인간의 활동과 그것이 생태환경 시스템에 끼친 영향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생태환경사의 고민은 여전히, 혹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안에서도 인간 및 인간 활동을 얼마나 상대화하여 그려 낼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인간 외에 다른 주체를 얼마만큼 동등한 크기로 그려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남아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 보론은 앞서 언급한 저자의 2017년판 신작에서 확대 출간된 내용을 추가로 실은 것으로, 책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 보론에서는 17세기 이전까지 원난 지역에서 재화로 사용되었던 보패를 통해 원난을 중심으로 몰디브와 류큐 지역까지 연결되는, 즉 이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동유라시아의 해상 교역로를 다루었다. 이러한 내용은 동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태환경사적 방법론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수많은 보패들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환문조개와 황보조개가 선호되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류큐 지역의 보패가 17세기 전반에는 이미 거의 고갈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보패의 생태환경사라는 측면에서는 보패 자체가 생산되는 몰디브 지역과 같은 곳에서 보패를 외부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어떻게 채집을 했으며, 그것이 그 지역의 생태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루이지 않았다. 즉 원난 지역에서 나지 않는 보패가 어떤 루트를 통해 공급되었는가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 면에서는 저자가 동유라시아라는 폭넓은 공간을 상정하고 있지만, 실상 책의 제목을 ‘원난의 생태환경사’로 붙여도 무리가 없을 정도

로 책에서 살펴보는 주요 공간이 중국 윈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저자가 이미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에서 다룬 것은 ‘육지의 동유라시아’에 한정되며, ‘바다의 동유라시아’에 대해 다룬 저서(『중국해역 신기루 왕국의 흥망』, 2013)가 따로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저자가 윈난 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원을 그려 낸 공간이 동유라시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윈난이 동유라시아의 중심일 수는 있지만 윈난을 중심으로 그려낸 동유라시아는 전체 동유라시아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베트남·타이·인도를 주축으로 삼아 동유라시아사를 그려 낸다면 윈난을 중심으로 한 동유라시아사와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책의 제목은 ‘동유라시아’라는 포괄적인 지역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윈난을 중심으로 한 동유라시아 생태환경사’가 더 정확한 제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티베트족의 일상에서 버터차가 만들어지기 위해 차와 구리 주전자, 소금이 어떻게 먼 티베트 고원까지 흘러들었는지를 상상해 낸 것처럼 이 책을 읽은 독자는 지금 먹고 마시며 사용하는 각종 음식과 생활용품도 각각 그 고유의 생태환경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생태환경사적 상상력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동유라시아 개념과 생태환경사 각각에 대한 시작점으로서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 학계에서는 ‘동유라시아’라는 인식 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한국 학계에서도 아직 많지 않지만 ‘동유라시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향후 ‘동유라시아’나 ‘생태환경사’가 지금보다 낫고 친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이 책의 제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식민지 유산을 새롭게 생각하기

– 『동화와 배제-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이정선,

2017, 역사비평사)

전영욱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I. 식민지 경험과 현재의 관계
- II. 내선결혼의 의미-이념과 정책과 현실이라는 퍼즐 조각
- III. 평등의 미래-실질적 평등을 위한 역사사지

I. 식민지 경험과 현재의 관계

〈유로파 유로파(Europa Europa)〉라는 영화가 있다. 아그네즈카 홀랜드(Agnieszka Holland)라는 유명한 감독이 1990년에 연출한 영화다.¹ 영화의 독일어 제목은 〈Hitlerjunge Salomon〉인데, 해석하면 “히틀러 청년, 살로몬”이라는 뜻이다. 살로몬 페렐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순수’ 유대인인 그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 유대인과 불세비키 당원, 그리고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을 위태롭게 넘나든다.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한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했던 러시아어를 독일의 승리를 위해 사용한다거나, 독일인 여성과의 사랑을 위해 할레의 흔적을 지우려고 자신의 생식기를 억지로 꿰뚫다거나, 독일이 패전한 후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스스로 유대인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처형될 위기에 처하는 등, 참으로 처절해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살로몬은 히틀러유겐트(Hitler-Jugend)로서 독일인들 사이에 섞여 수업을 받는데,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골상학(骨相學)을 활용하여 그의 인종을 공개적으로 판별한다. 해당 장면의 대사를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어떻게 유대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 …… 아주 간단하지. 유대인의 피는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르다. 유대인들은 이마가 넓고, 매부리코에, 뒤통수가 납작하고, 귀는 뾰족하게 섰으며, 걸음걸이는 마치 원숭이 같지. 눈은 빼빼고 아주 교활하게 생겼지. …… 과학은 객관적이다. 명백하지. 내가 말한 종족 간의 차이점을 완전히 이해해서 유대인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해라.

- 1 홀랜드는 한때 유명한 ‘여성감독’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책은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간접적으로나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인공을 향해 - 인용자] 앞으로 나와 봐. 눈동자, 두개골, 이마, 옆모습을 봐라. 수 세대를 거치면서 조상들의 피가 다른 민족과 섞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리안족 만의 두드러진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발트해 동쪽의 민족과 섞여서 가장 고귀한 게르만족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너는 틀림없는 아리안족이다. (강조는 인용자)

교수는 유대인을 향해 “너는 틀림없는 아리안족”이라고 단언한다. 이 장면은 당시에 최첨단 과학으로서, 의심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았던 우생학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장면이 마냥 창작된 상상의 산물인 것만은 아니라는 근거들이 역사 속에 넘쳐흐르는 가운데, 영화 자체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²

개인이 겪은 ‘점령(식민지)’의 경험은 무엇인가? 그 경험은 당대에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변화해 갔는가? 이런 종류의 경험들은 지금도 남아 있는가? 아니면 사라졌는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외형적으로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이런 고민들은 어느 정도나 정당할까? 독서가 끝난 후, 이미 본 지 20년 가까이 되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비록 책의 소재인 일본 제국주의와 영화의 소재인 서구 제국주의는, 인종주의를 통치에 활용하는 데 있어 꽤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두 매체가 불러일으킨 의문이 종국적으로 같은 궤적 위에 있다. 그것은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인종주의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종주의적 유산이 매우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관한 문제 제기일 것이다.

이런 고민은 결국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을 연구한다는 것이 지금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사실 이런 뉘앙스

2 이 영화는 솔로몬 페렐(Solomon Perel)의 자서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조창현, 2015, 「영화 〈유로파 유로파〉에 대한 고찰 - 유대인소년의 성장과 정체성 탐구」, 『조형미디어학』 18-3.

의 질문은 한국사학계가 식민지 경험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기되었다. 보통 이 문제를 풀어 갔던 과정에는 ‘식민지 유산’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식민지적 현상의 규명과 이에 대한 고발·반성 등이 있었다. 성과는 분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격상 ‘국민국가’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난점을 낳았다. ‘유산’에 대한 ‘청산’은 ‘한국(인)’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데 일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어느덧 한국(인)의 경계가 원래부터 흐릿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유산을 청산해야 하는 주체로서 한국(인)이 강조될수록 무의식적인 배제도 동반되었다. 유산을 발견하고 청산을 행할 때마다 ‘동화와 배제’가 등장하는 이 예기치 못한 역설은, 식민지기 연구와 현재의 관계를 시나브로 유리시켰던 것은 아닐까?

모든 문제의식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내밀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또한 식민지기 연구가 이 문제를 드러내는 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면, 유산과 청산의 관계 역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평자는 최근 들어 등장하는 식민지기 연구 대부분이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나름대로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책 『동화와 배제 -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역사비평사, 2017)의 기본적인 의의 또한 바로 이 고민을 통해 현재를 건드린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II. 내선결혼의 의미-이념과 정책과 현실이라는 퍼즐 조각

간략하게나마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의미를 추출해 보자. 다만 이 글의 성격을 고려하고자 한다. 평자가 식민지기의 어떤 것을 전공하는지와 상관없이 이 책의 소재는 그 자체로 접근하기가 녹록치 않다. 일단 ‘서양자(婿養子)’나 ‘이성양자(異姓養子)’, ‘인지(認知)’ 등의 법률용어가 적잖이 등장한다. 게다가 특정 법령

이 입안·공포되며, 다시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을 읽어 나가다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서는 서술과 서술 사이의 연결고리를 부여잡는 일이 생각보다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복잡함에서 기인하는 문제일 것이다. 오히려 저자는 “적어도 방법상으로는 철저히 이성적·실증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정통’의 길을 걷겠다는”(5쪽) 스스로의 다짐에 매우 충실했다. 내선결혼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왜 복잡할 수밖에 없는가? 이 독서의 출발은 이 지점에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일제의 '내선결혼' 정책」(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2015)을 저본으로 집필되었다. ‘내선결혼’이란 표현은 저자의 창작물이 아니다. 저자는 이 표현이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일종의 역사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일제의 내선결혼 정책을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이자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에 관한 정책이었던 것”(19쪽)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단순히 사적 행위로만 치부하지는 않았다. 저자도 지적하는 것처럼 “해방 이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일제시기의 제도들을 대부분 승계했다.”(459쪽) 결혼과 가족을 제도라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에서 이것이 근대적인 제도가 되는 과정에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로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자는 거의 같은 중요도로 내선결혼이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식민지라는 현실에서 개개인이 내세우는 각양각색의 생활전략들은 결혼이라는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작동되었다. 저자는 이 전략들이 정책 또는 이념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저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단순한 사적 행위로 치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사적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논증 방식의 결론은 아마 다음의 구절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내선결혼을 장려한다는 구호와 선전은 그 자체로 간접적·소극적 장려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전신체제기에 들어서는 내선결혼에 대한 인식과 동화의 이념이 비관적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허구적인 정치 선동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처럼 일

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에 대한 이념과 시책의 변화를 야기한 동력이어야말로, 식민당국의 의도와 통제에서 벗어난 내선결혼 행위자들의 선택과 그들의 생활 현실이었다(451~452쪽).

꽤 아슬아슬해 보이는 이 논증 구도가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취한 관점 덕분이다. 저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이라는 사적 행위가 한국병합 이전부터 현실에 존재했다는 점, 즉 동화정책에 선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어서 식민당국이 동화를 표방하는 이상,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정책으로서 내선결혼 법제의 운용이 필수적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는 동시에 조선인이 ‘구별해야 하는 대상’이었음을 드러낸다. 저자에 따르면 내선결혼과 관련된 정책과 이념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법제와 선전 논리는 자연스럽게 모순될 수밖에 없었고, 이 모순은 현실과 조우할 때 보다 분명히 가시화될 것이다. 이때의 현실이란 결혼 당사자가 처한 환경, 즉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 그리고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의 역전 등으로 정리된다. ‘동화와 구별’ 또는 ‘융화와 불화’라는 표현이 말해 주는 것처럼 내선결혼을 가리키는 이념, 정책, 현실이라는 세 가지 퍼즐이 맞아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자는 내선결혼을 민족과 계급 그리고 젠더라는 관점으로 엮고자 했다. 최소한 세 개의 속성을 지닌 것을 다시 세 개의 관점으로 파악하려 한 시도 덕분에 내선결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해졌다. 이는 기존의 정책사가 취한 방법론과 확실히 구별되는 지점이면서 이 책이 지닌 가장 강력한 연구사적 의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동화’의 이념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상세히 추적하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의 의의와 한계를 매우 세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과 일본에 존재하던 내선결혼의 사례를, 거의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집하여 풀어 놓았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식민지

기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기 구분을 대체로 따른다. 이는 일제의 동화정책이 각각 ‘일시동인, 내선융화, 내선일체’ 등으로 그 내용과 표현을 달리하는 시점을 분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다. 더불어 동화정책이 생물학적·문화적(정신적)·법제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1부는 「1910~1930년대 ‘내선결혼’ 법제의 형성 및 운용」이고, 제2부는 「1910~1930년대 내선결혼의 선전 및 실태」, 제3부는 「전시체제기 내선결혼 정책과 내선혼혈 문제」이다. 각각의 내용을 개략하겠다.

저자가 제1부를 통해 밝히려는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동화와 구별이 섞여 있는 법적 구조이다. 한국병합 이후, 일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인종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일시동인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민적과 호적으로 두 민족을 구별했다. 이러한 혼선은 조선과 일본이 법역(法域)을 달리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조선에 호적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은 “병합 이후 조선인과 일본인은 같은 일본 국적민이 된 결과 혼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역설적인 문제”를(62쪽)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법적인 논리로 해소할 수 있어야 일시동인의 이념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일제가 만든 내선결혼 법제, 즉 1918년의 「공통법」, 1921년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의 민적 절차에 관한 건」, 1923년 「조선호적령」 등이 모두 ‘일인일적’의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음을 강조한다. 내선결혼의 ‘법제적 장벽’을 낮추면서 결혼 당사자 한쪽의 전적은 허용하되 복본적(複本籍)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 차별의 존재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활용”(106쪽)된 것이지만, 당연히 논리적으로 불안정한 제도였다. 저자는 법제 자체가 법에 관한 ‘탈법행위’를 무한정 가능하게 했음을 논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한다면 법제의 허약함 자체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제2부에서는 3·1운동 이후, 새롭게 등장한 내선융화라는 이념과 내선결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장려론에서는 “‘사랑’이 핵심어가 되었”(189쪽). 동화정책이 “조선인의 마음을 얻어 민족적 저항을 방지해야”(182쪽) 하는 통치전략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자는 당시

내선융화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랑을 통해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향했다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런 선전과 반대되는 현실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한다. 내선결혼은 정략적이고 경제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범죄의 결과이기도 했다. 또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부부’처럼 내선융화에 반대하는 내선결혼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265쪽). 게다가 하층계급의 경제적 조건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신하기도 했으며(269~273쪽), 단순한 변심이나 가정불화도 상존했다(273~277쪽). 현지처나 간통처럼 일부일처제를 상징하는 현상 역시 조선인과 일본인의 원만한 가정을 방해하는 요소였다(277~287쪽). 민족 간의 갈등도 사라지지 않았다(287~305쪽). 이처럼 저자는 이념 자체가 지니고 있는 비현실성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내선결혼이 융화와 불화를 공존하게 했다는 저자의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3부는 전시체제기에 등장한 내선일체라는 이념이 내선결혼 정책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가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동화에 대한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약간의 온도차가 있더라도 동화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있었던 이전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저자는 이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두 가지 부분을 중요시했다. 하나는 내선결혼의 의미가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점이다. 저자는 내선결혼을 동화의 ‘수단’이 아니라 동화의 ‘결과’로 인식하기 시작한 여러 정황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생물학적 동화’를 의미했던 혼혈에 대한 인식이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 정부는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부정하면서도 조선인을 열등하게 파악했고, 일본(인)의 순수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 내무성은 일본 사회의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내걸었는데, 저자가 이를 “조선(인)에 대한 방벽을 쌓은 것”(436쪽)이라고 묘사한 것은 논증 과정의 백미다. ‘황민화’를 주장하면서 조선인을 효과적으로 전쟁에 동원하려던 조선총독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선결혼 및 내선혼혈에 대한 장려를 조선 통치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정황은, 이런 켜들이 쌓여 등장한 것이었다.

Ⅲ. 평등의 미래-실질적 평등을 위한 역지사지

이상으로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서평이라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 소개글에 가깝다. 다소 주제넘은 듯하는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독서의 길라잡이를 자처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책이 식민지 유산을 청산해 온 한국의 경험을 매우 파격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시기 동화정책의 반작용으로 강화된 민족주의는 한국인은 부계혈연적·문화적으로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동화=한국인화’의 이념을 창출했다”(459쪽)는 정리를 보자. 또한 과거 일제가 활용했던 인종주의의 원리가 “현재 한국에서도 같은 민족 내부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458쪽)는 정리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채 조선총독부의 선전을 그대로 수용한 쌍생아”(460쪽)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평자 개인으로서는 아직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자의 이러한 비판에 과감히 동조하기도 비판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글의 말미에서야 밝혀 둔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핑계와 상관없이, 실증과 관련해서는 이 지면에서 비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하다.

저자의 머리에는 이미 다음 연구의 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지닌 인종주의적 폭력성을 자신의 연구를 통해 끄집어내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다문화를 존중한다는 표어를 통해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베푸는 ‘관용’은 그 자체로 문제인 것이 대부분이다. “관용은 평등의 확장이 아니라 평등의 대리보충으로 등장한다”는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의 지적처럼,³ 국가의 통치는 강요와 배제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평등’의 이름으로 교묘해졌다. “(이 책이) 진정한 다문화 공존을 모색하는 역지사지의 계기가 되”고, “일제시기의 경험이 동질성을 전제로 한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역사적

3 웬디 브라운 지음, 이승철 옮김, 2010,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갈무리, 125쪽.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포부는 과연 독자에게 어떻게 인식될까?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460~461쪽)는 저자의 고백은 단순히 연구자 개인에게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식민지 연구와 현재의 관계를 고민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의
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
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 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

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1) > 1) > 1) >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노기식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장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원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빈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종수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범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운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편집간사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6호(2017. 6)

초판 1쇄 인쇄 2017년 6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7년 6월 30일

펴낸이 김호섭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